

연구보고서 2005-30(2)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3-2)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낮다.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야기하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외국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출산수준이 낮을수록 정책 실행에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환언하면, 초저출산 경향이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내용과 대상이 명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공론화된 2002년 이래 일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수행된 몇몇의 연구들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특성별로 출산율 차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자체가 사적인 영역인데다가 개인 또는 부부의 생활행태나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저출산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에는 종합연구를 위해 기획·조사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결과가 심층 분석되었다. 다른 연구 결과로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3-1)’와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3-3)’은 별권으로 발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에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변용찬 박사와 장영식 박사에 감사드리며, 편집에 수고해 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약	23
제 I 부 도입부	47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9
제2절 연구내용	53
제3절 연구방법	56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62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62
제2절 인구정책 변천	64
제3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73
제1절 OECD국가의 출산율 수준	73
제2절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	77
제3절 저출산 대응관련 외국 경험의 시사점	95
제4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0
제3절 연구모형	123
제II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127
제5장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129
제1절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129
제2절 생애경로 이행 분석방법	131

제6장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135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35
제2절 여성의 결혼이행 요인	142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146
제7장 무 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149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49
제2절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결정요인	159
제3절 무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	168
제8장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176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76
제2절 첫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181
제3절 둘째 출산 의향 요인	186
제9장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의 이행 요인	190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90
제2절 두자녀 이상 여성들의 추가자녀 이행률과 요인	198
제3절 두자녀 여성들의 셋째자녀 출산의향	203
제10장 이행요인 분석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206
제Ⅲ부 저출산 원인	213
제11장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215
제1절 출산관련 인구학적 요인	215
제2절 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	229
제12장 가치관과 결혼·출산	266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66
제2절 인구 특성별 가치관	269
제3절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27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282

제13장 자녀양육비용과 출산	283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83
제2절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규모	284
제3절 자녀양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28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291
제14장 주거와 출산	292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92
제2절 주거 특성과 출산수준	295
제3절 주거 특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300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303
제15장 경제적 환경과 출산	304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04
제2절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결혼·출산	305
제3절 외환위기가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	312
제4절 경제적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17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325
제16장 일·가정 양립과 결혼·출산	327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27
제2절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결혼생활 행태	330
제3절 일·자녀양육 양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51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357
제17장 노동시장과 출산	361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61
제2절 노동시장과 출산	362
제3절 결혼·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375
제4절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83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387

제18장 생식보건과 출산	389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89
제2절 생식보건수준과 출산행태	391
제3절 생식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9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403
제19장 저출산 원인분석 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407
제IV장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415
제20장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틀	417
제21장 저출산 원인 대응 정책과제	421
제1절 교육단계 정책과제	421
제2절 취업·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424
제3절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428
제4절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436
제22장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472
제1절 저출산관련 태도	472
제2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475
제3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의 시사점	483
제23장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485
제1절 저출산 대응 협력체계 구축방안	485
제2절 인프라 구축	493
제V부 결론	499
제24장 결론	501
참고문헌	507
부 록	517

표 목 차

〈표 1- 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58
〈표 2-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64
〈표 2- 2〉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관련) 내용 변천(1960년~2006년 2월)	72
〈표 3- 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75
〈표 3- 2〉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83
〈표 3- 3〉	유럽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89
〈표 3- 4〉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및 한계성	93
〈표 3- 5〉	OECD 및 동아시아 국가간 출산격차 발생 요인(종합)	94
〈표 3- 6〉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가족급여) 투자비율, 1990~2001	98
〈표 6- 1〉	결혼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36
〈표 6- 2〉	결혼의향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38
〈표 6- 3〉	결혼이행률의 Cox regression model 분석 결과	142
〈표 6- 4〉	결혼의향에 대한 남녀별 로짓회귀분석 결과	146
〈표 7- 1〉	응답자의 첫째자녀 출산간격(개월)	153
〈표 7- 2〉	기혼여성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154
〈표 7- 3〉	무자녀 기혼여성의 자녀추가계획에 따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158
〈표 7- 4〉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에서 연령집단 등 범주형 변수의 부호화 방식	160
〈표 7- 5〉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62
〈표 7- 6〉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연령 대신 결혼코호트를 입력함)	166
〈표 7- 7〉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	171
〈표 7- 8〉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73
〈표 8- 1〉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조사대상자 특성	178
〈표 8- 2〉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180

〈표 8- 3〉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에 대한 콕스회귀분석 결과	183
〈표 8- 4〉	변수별 둘째 출산으로 이행 기간	186
〈표 8- 5〉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188
〈표 9- 1〉	셋째아출산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92
〈표 9- 2〉	추가자녀출산계획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96
〈표 9- 3〉	셋째아출산이행률에 대한 Cox regression model 분석결과	199
〈표 9- 4〉	세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결과	204
〈표 10- 1〉	이행요인분석 종합결과	208
〈표 11- 1〉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217
〈표 11- 2〉	초혼연령 변동추이, 1972~2004	219
〈표 11- 3〉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219
〈표 11- 4〉	유배우 부인(20~34세)의 초혼연령별 모의 출산연령 및 출산간격, 2005 ..	221
〈표 11- 5〉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재 연령별·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	222
〈표 11- 6〉	초혼연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23
〈표 11- 7〉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5~2004(전체 연도 제시) ..	224
〈표 11- 8〉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5~2004	227
〈표 11- 9〉	결혼 후 특정 순위 출산까지 소요기간, 1981~2002	228
〈표 11-10〉	미혼남녀 연령별 일반 특성	232
〈표 11-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234
〈표 11-12〉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 희망여부, 2005	235
〈표 11-13〉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2005	237
〈표 11-14〉	결혼희망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연령, 2005	238
〈표 11-15〉	미혼남녀(25~44세) 특성별 결혼 희망여부 및 시기, 2005	241
〈표 11-16〉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43
〈표 11-17〉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	244
〈표 11-18〉	취업중인 미혼남녀(25~39세)의 직종별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	245
〈표 11-19〉	미혼남녀(20~39세) 특성별 결혼을 미룬 이유, 2005	246
〈표 11-20〉	기혼여성(20~44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생아수	248

〈표 11-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249
〈표 11-2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251
〈표 11-23〉	기혼여성(20~44세)의 가치관별 평균 출생아수	252
〈표 11-24〉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관련 건강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253
〈표 11-2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254
〈표 11-26〉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	254
〈표 11-27〉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도별 이상자녀수 분포, 1971~2005 ..	255
〈표 11-28〉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현존자녀수, 2005	256
〈표 11-29〉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005 ·	257
〈표 11-30〉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58
〈표 11-3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관, 2005	259
〈표 11-32〉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 분포 및 추가출산계획, 2005 ...	260
〈표 11-33〉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2005 ..	261
〈표 11-34〉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연기 이유, 2005	261
〈표 11-35〉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	262
〈표 11-36〉	유배우부인(20~44세)의 지역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	263
〈표 11-37〉	유배우부인(20~44세)의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264
〈표 11-38〉	유배우부인(20~44세)의 취업여부 및 직종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265
〈표 12-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267
〈표 12- 2〉	성별 미혼남녀간 가치관 차이(T-test)	268
〈표 12- 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69
〈표 12- 4〉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270
〈표 12- 5〉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비교, 1999~2005	270
〈표 12- 6〉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71
〈표 12- 7〉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72
〈표 12- 8〉	미혼남녀(20~44세)의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	273

〈표 12- 9〉 미혼남녀(20~44세)의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273
〈표 12-10〉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74
〈표 12-11〉 기혼여성(20~44세)의 이혼관련 태도	275
〈표 1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	276
〈표 12-13〉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76
〈표 12-14〉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 분화에 대한 태도 ..	277
〈표 12-15〉 기혼여성(20~44세)의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277
〈표 12-16〉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278
〈표 12-17〉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279
〈표 12-18〉 가치관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281
〈표 13- 1〉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초통계	284
〈표 13- 2〉 전체가구의 양육비용(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영유아보육교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5
〈표 13- 3〉 영·유아를 둔 가구의 양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6
〈표 13- 4〉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7
〈표 13- 5〉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자녀희망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8
〈표 13- 6〉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희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9
〈표 13- 7〉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90
〈표 13- 8〉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91
〈표 14- 1〉 다변량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294
〈표 14- 2〉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95

〈표 14- 3〉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96
〈표 14- 4〉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 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자녀수 ...	297
〈표 14- 5〉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지출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298
〈표 14- 6〉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비 부담정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99
〈표 14- 7〉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밀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300
〈표 14- 8〉 주거특성이 출생수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 ·	301
〈표 14- 9〉 주거특성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 ...	302
〈표 15- 1〉 주된 가임기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07
〈표 15- 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조건	309
〈표 15- 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309
〈표 15- 4〉 청년층 및 전체 실업률 추이	310
〈표 15- 5〉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분석 변수	320
〈표 15- 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후 5년내 첫째아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22
〈표 15- 7〉 기혼여성(20~44세)의 이전출산순위 출생후 5년 이내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의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24
〈표 16- 1〉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상태	331
〈표 16- 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	332
〈표 16- 3〉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주간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소득, 직장규모	333
〈표 16- 4〉 취업기혼여성(20~44세)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	334
〈표 16- 5〉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 희망 사유	336
〈표 16- 6〉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20~44세)이 취업을 하지 않는 사유 ...	337
〈표 16- 7〉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	338
〈표 16- 8〉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	339

〈표 16- 9〉 남편과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340
〈표 16-10〉 남편과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341
〈표 16-11〉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6개월 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둔 경험	342
〈표 16-1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사유	343
〈표 16-13〉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추가)출산에 관한 의향	349
〈표 16-14〉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과 근로시간 조정	349
〈표 16-15〉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이 향후 (추가)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려는 이유	350
〈표 16-16〉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 후 자녀 양육 주체: 출산 후 일을 계속하는 경우	351
〈표 16-17〉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에 관한 OLS 다중 회귀분석	354
〈표 16-18〉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 결정에 관한 Logistic 다중 회귀분석	356
〈표 17- 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참가별 평균 출생아수	363
〈표 17- 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근로시간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364
〈표 17- 3〉 기혼여성(20~44세) 남편의 취업여부와 평균 출생아수	365
〈표 17- 4〉 남편과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	365
〈표 17- 5〉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366
〈표 17- 6〉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	367
〈표 17- 7〉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68
〈표 17- 8〉 남편과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출생아수	368
〈표 17- 9〉 취업기혼여성(20~44세)과 남편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	369
〈표 17-10〉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시간당 임금·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	371
〈표 17-11〉 남편의 시간당 임금·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372
〈표 17-12〉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3
〈표 17-1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	374

〈표 17-14〉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과 현재의 취업여부	377
〈표 17-1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377
〈표 17-1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과 시간당 임금·소득	378
〈표 17-17〉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379
〈표 17-18〉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과 현재 경제활동상태	380
〈표 17-19〉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첫째아)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381
〈표 17-20〉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시간당 임금·소득	382
〈표 17-2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383
〈표 17-22〉	노동시장특성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386
〈표 18-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과 범주	390
〈표 18- 2〉	연령계층별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피임실천 방법	392
〈표 18- 3〉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생아수별 출산중단 사유	393
〈표 18- 4〉	임신경험 유배우여성(20~44세)의 임신소모 양상별 평균 현존출생아수 비교	395
〈표 18- 5〉	불임진단 부부의 (20~44세 여성 기준) 치료중단 사유 및 출생아수	398
〈표 18- 6〉	기혼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399
〈표 18- 7〉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401
〈표 19- 1〉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종합	412
〈표 20- 1〉	생애경로단계와 저출산원인간의 매트릭스	420
〈표 21- 1〉	교육단계에서의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423
〈표 21- 2〉	미혼남녀(20~44세)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424
〈표 21- 3〉	유배우여성(20~44세)이 결혼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이유	424
〈표 21- 4〉	취업·결혼준비 단계에서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427

〈표 21- 5〉	연령별 불임부부 추계, 2003	428
〈표 21- 6〉	불임부부(20~44세 여성기준)의 치료계획여부, 2005	429
〈표 21- 7〉	유배우 부인(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431
〈표 21- 8〉	성매매 종사여성인구 현황, 2002	432
〈표 21- 9〉	성매매 종사여성의 성병,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 2002 ...	433
〈표 21-10〉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생식보건수준 제고	433
〈표 21-11〉	임신·출산단계에서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435
〈표 21-12〉	교육비 지출 추이	438
〈표 21-1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1	439
〈표 21-14〉	육아지원시설 이용 현황(2004년 연말 기준)	440
〈표 21-15〉	유아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2005년 기준)	441
〈표 21-16〉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차이, 2002~2003	443
〈표 21-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향후 재정소요 전망	444
〈표 21-18〉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현황	449
〈표 21-19〉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450
〈표 21-20〉	선진국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453
〈표 21-21〉	우리나라 출산휴가 이용현황	453
〈표 21-22〉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456
〈표 21-23〉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458
〈표 21-24〉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461
〈표 21-25〉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지원 ..	463
〈표 21-26〉	보육시설 수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464
〈표 21-27〉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470
〈표 22- 1〉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2005	473
〈표 22- 2〉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5	473
〈표 22- 3〉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세금을 이용한 국가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 2005	474
〈표 22- 4〉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직장(회사, 기업 등) 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태도, 2005	474
〈표 22- 5〉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	476
〈표 22- 6〉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	477
〈표 22- 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8
〈표 22- 8〉	무자녀 또는 1자녀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9
〈표 22- 9〉	2자녀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	479
〈표 22-10〉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80
〈표 22-11〉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81
〈표 22-12〉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지원 선호도, 2005	482
〈표 23- 1〉	생애경로단계별 참여주체의 주요 역할 분담(안)	492

그림 목 차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63
[그림 2-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와 인구정책 변천, 1960~2004	71
[그림 3-1]	OECD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76
[그림 3-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79
[그림 3-3]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81
[그림 3-4]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86
[그림 3-5]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91
[그림 3-6]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92
[그림 3-7]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3	96
[그림 3-8]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 예산비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2001	98
[그림 4-1]	가구의 자녀수·질 선택	113
[그림 4-2]	가구의 시간과 재화 투입결정	116
[그림 4-3]	가구의 소비와 출산의 결정	116
[그림 4-4]	여성임금 증가의 효과	120
[그림 4-5]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125
[그림 5-1]	이행단계별 분석대상의 변화	130
[그림 6-1]	연령대(출생연도)별 누적결혼함수	144
[그림 6-2]	교육수준별 누적결혼함수	144
[그림 6-3]	취업경험유무별 누적결혼함수	145
[그림 7-1]	출산력 지표의 변화: 1985~2003	149
[그림 7-2]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을 위한 모형	152
[그림 7-3]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Exp(β)의 값의 변화	167
[그림 7-4] 무자녀 여성의 연령별 현재 피임사용 여부	169
[그림 7-5]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이유들	170
[그림 8-1]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182
[그림 8-2]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첫째아 성에 따른 사건경험의 생존곡선	184
[그림 8-3]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이행: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185
[그림 9-1] 첫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202
[그림 9-2] 둘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202
[그림 11-1]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추이(%), 1970~2000	218
[그림 11-2]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220
[그림 11-3]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4~2004	224
[그림 11-4] 결혼관과 본인 결혼계획 간 차이, 2005	236
[그림 11-5]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결혼연령과 계획결혼연령간의 차이, 2005 ·	239
[그림 15-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를 출산할 생존함수 ·	312
[그림 15-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시기별 첫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313
[그림 15-3]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시기별 둘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314
[그림 15-4] 기혼여성(20~44세)의 둘째아 출산 시기별 셋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315
[그림 16-1]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 중 취업희망 여부	335
[그림 16-2]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1명인 여성	344
[그림 16-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2명인 여성	345
[그림 16-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3명 이상	347

[그림 17-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363
[그림 17-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직종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0
[그림 17-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3
[그림 17-4]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	374
[그림 18-1]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상태	391
[그림 20-1]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의 기본틀	420
[그림 21-1]	보육시설 유형별 예산지원 현황	465
[그림 23-1]	저출산대책 추진관련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485
[그림 23-2]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86

부표목차

〈부표 2-1-1〉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1
〈부표 2-1-2〉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2
〈부표 2-1-3〉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3
〈부표 2-1-4〉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4
〈부표 2-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5
〈부표 2-2-2〉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6
〈부표 2-2-3〉 기혼여성(20~44세) 및 남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527
〈부표 2-3-1〉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8
〈부표 2-3-2〉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9
〈부표 2-3-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0
〈부표 2-3-4〉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취업여부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1

〈부표 2-3-5〉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현존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2
〈부표 2-3-6〉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3
〈부표 2-3-7〉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연령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4
〈부표 2-3-8〉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5

요 약

I . 도입부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우려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의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약화 전망
 - 사망률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 위협
 - 생산연령층 개인당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문제로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손상 발생 우려
 -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및 산업인력 고령화로 직종·산업·지역간 노동력수급 불균형,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 복지, 여성, 고용, 경제, 보건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 필요
 -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대상 파악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

□ 연구목적

-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 규명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방안 도출

□ 기대효과

- 저출산 원인의 정밀한 규명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
- 계층 및 경제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
- 결혼 및 출산행태 변화와 그 미시적 원인에 대한 학문적 수요 충족에 기여
- 출산율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고찰

- 이론적 고찰
 -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간의 관계
 - 사회·경제적 환경과 출산간의 관계
 - 결혼과 출산의 경제이론
- 외국사례 분석
 - 외국의 출산율 변동의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원인
 - 정책적 노력과 효과성 진단

□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결혼·출산 동향 파악 및 계층별·사회경제적 속성별 저출산 원인 검증 및 정책수요 파악
-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 3,802명, 미혼남녀(20~44세) 2,670명
- 조사방법: 조사원 현지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조사표(부록 3 참조)

□ 통계분석기법 적용

- 생애경로이행분석: 콕스회귀분석방법, 이항로짓분석방법
- 저출산 원인 분석: OLS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Kaplan-Meier 생존 함수 분석 및 위험함수 분석 등

2.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가. 출산율 변동

-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급감, 1983년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한 동안 1.6명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
 -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감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 연간 출생아수는 1960~1971년 기간동안 100만명 이상에서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

나. 인구정책 변천

□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 출산억제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도입
 - 1988년 인구대체수준 도달의 목표는 4년 빠른 1983년에 달성, 1995년 1.75명으로 감소목표도 1985년에 조기 달성
 - 1989년에 무료피임보급사업을 저소득층에 한정, 자비 피임으로 전환

□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

- 1990년대 초 이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 관련 전문가집단 논쟁 전개
-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후 인구자질·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에도 불구, 인구의 양적 정책방향 설정 부재의 한계

□ 출산장려 정책기(2004~현재)

-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추적결과(저출산으로 연금재정 고갈) 및 합계 출산율 1.17명 발표 등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공론화
-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설치
- 2005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9월 1일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하여 2006년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3.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주요 OECD 및 동아시아 국가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90년 중반이후 1.1-1.3명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 가족주의적 문화에 따른 출산, 양육, 교육, 결혼 후 분가까지의 자녀양육비용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 ◦ 높은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에도 노동시장구조 경직성, 보육시설 미흡(0~2세), 가부장적 문화 등 ◦ 일-가정 양립 곤란 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 미흡
독일어권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70년대 중반이후 1.3~1.4명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 성분업적(여성-가사, 남성-생계부양) 가족지원제도 유지 - 출산여성의 풀타임 직업유지에 대한 강한 부정적 사회 인식 ◦ 결혼율 하락 등 전통적 가치관(결혼관) 약화 ◦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정책 부재 또는 소극적 추진
동유럽국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3명 이하 지속	◦ 체제전환 후 경제적 곤란 증가 및 국가지원 감소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2000년대 1.3명 미만 감소	[유교주의 문화] ◦ 높은 양육·교육비용 부담 ◦ 고용불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청년층과 여성 구직 곤란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으로 결혼기피, 만혼 일산화 ◦ 일-가정양립 곤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 보육시설의 부족 등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1.6~1.8명 유지	◦ 양육부담경감(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 양성평등의 생활화 ◦ 보편적 복지제도로 일-가정양립 제도적 지원(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제 확립 등)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70년대부터 하락한 출산율 최근 1.9명수준 반등	◦ 국가차원에서 자녀출산과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환경조성 ◦ 공보육제 확립 ◦ 소득대체율이 높은 가족수당 지급 ◦ 탄력적 근무제 등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6~2.0명	◦ 일-가정 양립 용이(유연한 노동시장: 구직·재취업 및 근무 시간 조절 용이) ◦ 정부의 가족지원이 미흡하나, 저소득층에게 염가의 보육 서비스 제공 ◦ 이민세대의 높은 출산율

II.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1. 미혼으로부터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 결혼이행률

-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유경험자가 낮게 나타남

□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 미혼남성들보다 미혼여성들의 경우 낮으며, 남녀 모두 고연령 미혼일수록 결혼의향 확률이 낮음(특히 연령의 역효과는 여성들에게 더 높음)
-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받으나, 미혼여성들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미혼여성은 현재 단독가구나 비혈연동거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결혼에 대한 전망이 남녀간에 다른 기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로 성·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미혼남성보다는 미혼여성들을 통해 결혼의 연기·포기요인으로 작용

2. 무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 결혼과 첫째자녀간의 간격

- 연령과 교육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자연유산 경험은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고,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단축하는데 기여
-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단축
- 1984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파동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축소되나 1997년 이후 첫째자녀의 출산간격 확대
 - 출산력의 템포왜곡은 혼인연령과는 별도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기간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 1자녀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분석 결과

- 최근 유배우 상태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확률이 감소하는 등 혼인연령이 인공임신중절이나 피임사용보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많이 기여
-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계획에 있어 연령변수가 경제적 사정, 혼전 취업경험, 첫 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 등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
- 전반적인 혼인연령의 상승과 별도로 최근 기혼여성들의 출산간격 증가경향으로 인해출산력의 반등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히 시기상조
 - 소자녀 규범의 사회적 용인과 더불어, 실제 한두명 출산으로 끝나는 초저출산력의 상황에서 첫자녀 출산지연 행태는 2000년대 초저출산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

- 이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 여부로, 첫째자녀 출산 후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동안 취업경험은 둘째 출산 연기·포기에 약 2.3배 기여

- 첫째아 출산지연 여성일수록 둘째아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계획이 없음
-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이 낮음
 -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47배 둘째 출산을 앞당김

□ 둘째출산 의향

- 둘째아 출산 의향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 및 이와 연관된 가족구조의 영향이 크며,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결혼 후 첫 출산 시점이 늦어질수록 둘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경향
 -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첫 아이와의 터울을 고려하여 출산 기간을 집중시킴으로써 단산기간을 단축
 - 여성들은 집중적인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이후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하고 있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여전히 보편적 현상
- 둘째 출산으로 이행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내 성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이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경향

4. 두자녀에서 세자녀 이상으로의 이행 요인

셋째아 출산이행률과 출산계획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기존 자녀들의 성구조와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이 영향

□ 셋째아 출산이행률

- 대학이상의 학력, 둘째아 이후의 취업경험, 초혼연령, 초혼부터 첫째아출산간의 기간,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 둘째아 이후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이 부정적 효과
- 첫째아 혹은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셋째아 출산은 현재 없는 남아를 위한 출산으로 특징

□ 셋째아 추가출산계획

-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에 많이 동의할수록 증가

III. 저출산 원인 검증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실제 출산수준 결정에 기인

1.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 등 가치관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결혼관의 약화는 결혼 연기 및 포기 경향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 미혼남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 제거 및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

□ 자녀관 약화의 영향

- 기혼여성의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
- 학령기부터 결혼·자녀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가치 고양 및 자녀를 도구적·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교육 필요

□ 남녀간 성역할관 격차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

-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아노미현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

2.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자녀양육비용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어, 자녀수 결정(기출산수준, 추가출산여부 및 자녀수 등)에 부정적 영향

- 개인 혹은 부부가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좌절 경향의 근절을 위해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자녀양육부담 완화 필요

3. 주거 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주거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무주택은 출산의 축소 경향을 강화시키고, 주거밀도 및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수준은 감소
 - 주거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 국한
- 주택소유여부는 미래 잠재적인 완결출산력(기대자녀수)에 다소 약한 영향을 미치나, 도시의 주거문제 미해결시 출산수준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4. 경제적 환경 변화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만혼으로 가임력이 떨어져, 출산수와 출산 간격을 줄이려는 경향 증가
- 남편의 직업 안정도는 첫째아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부인의 직업 안정성은 부(-)적 영향
 - 남편의 직업안정도는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출산수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부인의 직업안정성의 부적 영향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등 경제적 요인들은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

5.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은 여성의 취업활동의 지장을 초래,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감소하는 등 성분업적 가사분담이 강화되고 경향
 -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 부족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하여 출산수준의 감소 야기
 -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자녀양육 등)을 실제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필요
- 직장을 그만두는 다수의 기혼여성이 자녀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부 또는 모의 경력단절 없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 취업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시 경력단절없이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부모휴가) 등의 제도 정비·활성화 및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 제고 필요
 -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보편적 보장체계의 제도화를 통한 전국민의 일-가정 양립 보장 요구
-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성분업적 역할이 강화되어, 자아성취 또는 소득 확보를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심지어 결혼 자체 기피 가능
 -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부성휴가출산 등의 제도 도입 및 강화가 절실히 요구
 - 자녀수에 따라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생애경로와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정책개발 필요

6. 노동시장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안정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수준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혼과 출산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야기

- 노동시장 재진입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대적 감소경향 증가는 여성의 결혼·출산의 유인을 감소시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여성의 출산기피를 야기하므로 여성의 출산과 직장의 양립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긴요

7. 생식보건의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만혼은 여성의 가임능력저하, 유·사산 위험증가, 선천성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발생확률이 증가에 기여
 -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산과 자연유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임신상실감을 증가시켜 임신·출산에 부정적
 - 유·사산의 사전예방은 모성보호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휴기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이 중요
 - 청소년·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불임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충족은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
 -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며, 치료시기가 중요하므로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긴요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관리와 ‘부모됨’의 중요성 강화 필요

IV.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틀

- 희망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실제 출생아수를 줄인 결과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발생
 - 개인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단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은 심층분석 결과 크게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구분
 - 경제적 장애요인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고용·소득 불안정성 증가
 - 지나친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 사회적 장애요인
 - 고용·소득 불안정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자녀를 맡겨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지원기능 미흡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등
 - 보건학적 장애요인
 -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
 - 임신·출산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여성과 영·유아 건강 약화 및 임신소모 가능성 증대

- 생애경로의 각 단계(학력기-결혼준비가-결혼-임신-출산-양육 등)들은 연속선상에 있어, 어느 한 경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 경로(교육, 취업, 결혼 준비,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 초래
 - 관련정책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될 경우에 투입된 노력(예산, 시간)의 양에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은 미미하므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보다 생애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고안(수직적 종합)
- 저출산 원인의 치유나 극복은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 각각의 원인에 대한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수평적 종합)
- 생애경로별 중점과제
 - 학력기
 -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간의 부조화에 대응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중점
 - 생식보건수준 저하에 대응한 성교육 등의 보건·의료관련 지식 교육
 - 결혼준비 단계
 -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고용·소득 불안정, 지나친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결혼 연기 및 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하되 교육기간 단축(학제개편), 실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청년실업 대책, 고용안정, school-to-work 등 고용정책, 주택가격 안정 및 수급균형 등 주택정책 포함하여 추진
 - ※ 고용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개혁이 필요한 정책분야로서 관련정책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 필요
 - 임신·출산단계
 -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인한 생식보건 수준 저하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
 - 주로 임신·출산관련 의료 지원,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관리 지원 등 포함

○ 자녀양육 단계

-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여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에 중점

2. 저출산 원인별 정책과제

가. 교육단계(학령기)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약화	▶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육 강화(교과내용 개편, 교과체계 개선 등) ◦ 인구: 저출산·고령화 추이, 원인 및 파급효과, 인구자질(성교육 포함) 등 ◦ 가족: 결혼·육아가치와 즐거움 교육(육아체험 등) ◦ 양성평등: 양성평등적 가사분담, 성 평등적 고용문화, 사회환경 조성 등
생식보건 수준 저하	▶ 성문제, 출산·임신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 상담시설 확충 및 민간단체 지원 확대 ◦ 인력개발(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사업복지사 등) ◦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 인식 부족	▶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책 홍보 강화 ◦ 효과적인 내용 개발,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나. 취업·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결혼관 약화, 가부장적 결혼생활부담	▶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 양성평등 가치관 관련 사회교육 강화
청년층 실업 증가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 전국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구직자에게 취업관련 정보 제공 ◦ 장학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에서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청년층 실업과 보육문제 동시 해결) ◦ 주 40시간 근무제 확립(※근로자 가족생활시간과 일자리 확대 동시 도모) ▶ 청년층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 대졸 미취직자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제 확대 및 상용 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절차 제도화 ▶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중장기 검토추진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결혼비용 부담	▶ 장학금 환수기간 및 이자율 등은 취업 후 혼인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저리 강화 ▶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주택구입비 지원(장기저리이자) 및 전세금 보조 등 ◦ 신혼용품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제공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고비용·복잡한 결혼절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결혼문화 개선운동 전개
경력단절 및 직장차별	▶ 결혼 및 자녀 출산 후 재취업 강화 ◦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회 및 비용 제공 등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	▶ 결혼정보 부재 해소 ◦ 국공립 결혼정보센터 운영 ◦ 건전한 민간결혼정보회사 육성 및 지원

다.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 생식보건수준 제고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불임	▶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득수준, 임신가능성, 연령 등 고려 ▶ 불임휴가제도 도입 ◦ 불임치료를 위하여 불임부부에게 일정기간 불임휴가 부여(무급, 경력인정 등 고려)
유사산	▶ 유사산 휴가제 도입(법제화) ◦ 임신4개월 이상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사산시 45일한도의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분담 (고용보험에서 지급) ▶ 태아검진 휴가제(월 1일 혹은 반일 무급) 도입 ◦ 임신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 부여
인공임신중절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존중운동 등 사회인식 개선 추진 등
성매매 및 성산업	▶ 성매매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 강화 및 성매매를 수용하는 남성문화 변화 모색 ▶ 보건 및 성교육관련 상담 및 학교 사회사업 강화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임신·출산비용 부담 증가	▶ 산전검사 보험급여 적용대상 추가 확대 ◦ 양수검사, NST(태아안녕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융모막 검사 등
임신·출산 조력자 부족	▶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산모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제고(※ 여성인력을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의 이중효과)
임신·출산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부재	▶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제공 ▶ 전문민간단체를 통해 보건소에 전문인력 파견 및 주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 상담시설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확대 ▶ 인력개발(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사회사업복지사 등)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라.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보육교육비용 부담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0~4세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단계적 현실화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 연차적 확대 지원 ◦ 두자녀 이상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동·입양아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무상 지원(※장애인복지 확충 및 입양활성화 동시 도모) ◦ 유아학원 이용아동에 대한 수강료 지원(부모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보육적 기능 등 기준을 갖춘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에 대한 수강료 지원) ▶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지원범위 내에서 2자녀이상 대학(원)생 가정의 학자금대출 이용 확대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04.2.17~)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원 ◦ 방과후교실 등에서 예체능교육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소득부족 및 자녀양육비용 부담	▶출산·자녀관련 세제지원 ◦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독신보다는 결혼 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적 지원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여부가 결정되면,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부여 등 출산장려 측면의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Credit) 제도 도입 ◦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적 적용, 부모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도록 하되,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쪽에 균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 육아휴직시 실제 받은 보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선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기준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방안 ◦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자립 교육 등 지원 확대
의료비용 부담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저소득층 미숙아 지원 단계적 확대 및 지원수준 제고 ▶저소득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실시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 확대 및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현재 시행중인 국가 예방접종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평가, 일반 병·의원 확대 검토 ▶미숙아 등 건강상태관리가 요구되는 신생아 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캠페인 및 ‘엄마와 아기가 같이 쓰는 병실’ 확충 등을 통한 모유수유율 제고
주거 불안정 및 질적 수준 미흡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가점 부여 ◦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융자시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직장일과 자녀양육 병행곤란	▶ 산전후휴가제도 개선 ◦ 근로자 출산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제도 도입 검토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육아휴직장려금 단가 인상 ◦ 육아휴직 관련제도 지도감독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 ◦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만3세→만 5세) 및 기간(1년→3년) 연장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강제 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중점 홍보, 우수사례 전파 등)
직장일과 자녀양육 병행곤란	▶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형태 도입(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 공공부문부터 우선 확대한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으로서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 ◦ 공공부문의 운영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사업장에 전파 및 홍보 ▶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 및 보급 ◦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또는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양질(적정임금, 장기고용보장, 적합한 근로조건 등)의 파트타임 모델개발 및 활성화 ◦ 단시간 일자리를 통해 여성고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체계 등 단시간 일자리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개발(보육, 파트타임 일자리 알선 네트워크 구성·운영)
가부장적 및 가족비 친화적 고용문화	▶ 여성고용확대·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일정규모(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근로자현황 및 고용평등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고용평등평가센터 설치·운영 ◦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등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정부·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기업 1직장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기업 대상 1사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각급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 - 결혼한 군인에 대한 군복무 여건 개선 : 부부군인 동일지역 보직, 배우자 출산시 장병휴가 부여, 다자녀가정에 군속소 입주평형 상향 등 ◦ 가사·자녀양육 공동참여를 위한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시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육아인프라의 양적 부족 및 질적 수준 미흡, 접근성 제약 등	▶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의 표준보육비용을 산정, 단계적 적용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 ◦ 육아지원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연차별 시행 ◦ 국공립시설 비율 연차적 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다양한 방안 도입 및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국공립 육아지원시설 확충 - 기존 공공건물 사용시 개보수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시설 신축보다 기존시설 활용 - 지자체 건축비 부담 완화를 위해 BTL 방식 활용 유도 -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하여 국공립 시설로 운영 ◦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운영 ◦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시설 우선 확충 ◦ 어린이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공동주택 보육시설 확충 ◦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별·규모별 보육시설 설치 ◦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을 장기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 국민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임대 배정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육·육아서비스 부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 ▶가정보육 활성화 ◦ 0세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및 영아반운영비를 기본보조금 도입 등에 따라 현실화 및 가정보육시설 설치규모의 소규모화 ◦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꺼리는 부모를 위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아동안전측면 고려하여 관리방안 구체화 후 도입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육아도우미 파견제도 도입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지원 현황에 대한 관리·평가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비용 부담 완화 ◦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직장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 ◦ 방과후 교실(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확충 ▶ 방과후 전담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 확충 ▶ 저소득층위주에서 이용대상자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능 재정비

3.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사항

- ☐ 국민의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 조성에 중점
- ☐ 출산 촉진보다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며, 장애요인 중에서도 장애정도가 큰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요인들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어느 특정 생애경로에서 장애 정도가 커 전체적인 생애경로별 단계의 자연스러운 이행에 방해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에 집중
- ☐ 1가지 정책으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적령기 미혼여성 대상의 결혼지원 정책은 출산율과 모성건강수준을 동시에 제고
- ☐ 정책 수요가 많으면서 가급적 예산소요가 낮은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 사회문화 환경·가치관 변화 정책들은 그 효과가 아주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되며, 예산의 소요도 크지 않은 관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추진

4.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가. 추진체계 구축

- 저출산 원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저출산현상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가족·사회의 양육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중앙, 지방)와 민간(기업, 민간단체)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이들 주체간의 협력체계(네트워킹)를 유기적 연계·구축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

생애 주기	정책대상 및 주요정책 영역	정부(중앙/지방)	민간(기업)	민간(NGO)
가치관 형성기 (중·고·대학생)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성교육, 결혼·출산가치, 남성의 육아참여 등)	-교과서·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육아 체험교실 등) -전문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등		-의식전환 운동전개 등
결혼 준비기 (미혼 남녀)	-청년층 고용안정 -교육제도 등 개선 -결혼비용 경감 -일·결혼 양립제고	-제도 개선(법 제·개정) -기업관행개선을 위한 권고·계몽민간활동 지원	-노동시장 결혼차별 시정 등	-결혼문화개선운동 전개 등
자녀출산·양육기 (기혼 남녀)	-임산출산 건강·의료지원 -일·가족 양립제고 -육아인프라 확충 -자녀양육(교육)비용 경감	-자녀출산·양육 친화적 보건의료제도 확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도개선, 예산 지원 등) -양질의 교육·보육인프라 확충 -양육비용의 사회적 지원(분담)체계 구축	-노동시장 스스로 출산 관련 여성차별 근절 -육아휴직 활성화 -자녀양육 친화적 근무 형태 도입 및 적극적인 환경 조성	-저출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생명존중의식고취(인공임신중절 등 예방) -가족내 양성평등 의식 제고 -양성평등적 고용환경 개선운동

나. 성과관리체계 구축

- ☐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 통합적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다양한 중앙 부처들에 공통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제시
 - 저출산관련 정책은 세대간, 성별, 계층별 형평성 및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전제하여, 성과목표뿐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분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 ☐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 광역자치단체
 -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대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정 및 신속 집행, 중앙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시·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등
 - 기초자치단체
 - 민간시설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요 및 지역복지자원 등을 조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 마련, 정책대상집단의 접근성 제고,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지역내 관련 공공기관간의 협력체제 유지,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수렴 등

다.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
 - 상설조직의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 고려
- ☐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확보하기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 예로, 기존의 훈련기관이나 정책연구기관에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교육수준별, 교육기간별 등)하여 개설
-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
 - 공동워크숍,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
 - 우수정책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정책과제 개발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실시

라. 상시 인구변동감지 체계 구축

- 저출산 대응전략 및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료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구패널을 구축
 -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 출산율 등 인구변동요인들이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 및 기 추진 정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인구 연구의 체계적 실시 등

제 I 부

도 입 부

제1장 서론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제3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제4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구조를 결정짓는 인구동태적(population dynamic) 요인들은 출생과 사망 및 이동으로 구성된다. 출생이 한 국가(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 사망은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경우 유입(전입)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유출(전출)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출생, 사망 및 이동의 인구동태요인들은 특정 연령층이나 성(性)의 인구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권 국가 등 이민을 인구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규모 및 구조는 주로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증감에 의해 좌우된다. 사망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생이 다른 인구동태요인들보다 인구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1960년 초 6.0명으로 아주 높았다.^{주1)}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하나마 감소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

주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출생코호트(cohort)의 출산경험을 합성하여 추정한 출산력 지표로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약 2.1명(부부가 평균 두 자녀를 두는 수준)으로, 동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2002~2004년 사이에는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대체미만의 저출산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변천과정을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경험하였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수준도 아주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로 저출산현상은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만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저출산은 저사망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용을 하며, 가장 주된 결과가 인구고령화(population ageing)이다.^{주2)}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고령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인구의 불균형은 개인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서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이들 증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다. 후자의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이동성을 감소시켜, 직업간·산업간·지역간 노동

주2) 최근의 합계출산율 수준(약 1.2명)이 205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기여도는 2:1로 추정된다(이삼식 외, 2004).

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시기는 19세기 말이다. 프랑스는 18세기 중엽부터 출산력과 사망력이 동시에 감소하여 고출산·저사망에 의한 인구 급증의 전환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세기동안 프랑스 인구의 증가는 유럽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20세기 초 합계출산율이 2.0 수준으로 감소하자,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인구감소공포(fear of population decline)’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00년부터 일정한 자녀수를 둔 가족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불하였다. 현대에 들어 저출산현상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반응은 1983년 프랑스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주3)}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도 노인 증가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 및 의료보호 부담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출산 추이를 변경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최근에 들어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출산율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책 실행에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

주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동안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데 주저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세계적으로 인구폭발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의 대응방안으로 이민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에 관한 논의가 여성으로 하여금 과거의 전통적인 의무를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평등주의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우익주의 및 우생학과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Perte McDonald, 1998). 참고로 호주의 우생학자는 저학력 여성에 의한 출산이 고학력 여성에 의한 출생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의 IQ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M. Teitelbaum and J. Winter, 1985).

하다는 특징이 있다. 환언하면, 초저출산 경향이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내용과 대상이 명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된 2002년 이래 일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수행된 몇몇의 연구들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특성별로 출산율 차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자체가 사적인 영역인데다가 개인 또는 부부의 생활행태나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저출산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혼, 결혼,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등 생애사건들 사이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동시에,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탐색적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이 생애경로별 접근을 통해 도출된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개별 요인들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한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저출산 원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들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의 여건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저출산 원인의 정밀한 규명은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계층별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책대상의 경제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인에 기초한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에 기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즉, 제1부 도입부, 제2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 탐색, 제3부 저출산 원인 구조, 제4부 저출산 종합대책방안, 제5부 결론부로 구성된다.

제1부 도입부는 4개의 장(1~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출산율을 공식적으로 측정한 1960년 이래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이어서 출산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출산율 변동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의 시의성(timeliness)을 진단한다.

제3장에서는 OECD국가와 동아시아국가들의 출산율 변동 추이와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과 그 효과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회복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OECD국가들을 최근의 출산율 수준을 기준으로 ‘상대적 고출산국가군’과 ‘상대적 저출산국가군’으로 구분한다. 각 국가군은 다시 인문·지리 및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의 경우 불어권, 북유럽국가, 영미권 그리고 후자의 경우 독일어권, 남부유럽국가, 동부유럽국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동아시아국가군으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을 포함한다. 이들 국가군별로 사회문화적 특성과 저출산 원인들을 파악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내용과 그 효과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고찰한다. 고찰 결과로서 일부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와 시사점들은 제4부에서 저출산 종합대책방안 개발시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고찰은 결혼·출산

과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 출산결정의 경제적 이론, 자녀양육 비용과 출산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들 이론적 고찰 결과와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한다.

제2부에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분석을 실시하며, 여기에는 총 6개의 장(5~10장)이 포함된다. 우선 제5장에서는 생애경로별 이행단계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생애경로별 이행단계는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결혼에서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첫째아 출산에서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둘째아 출산에서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이행단계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6장부터 제9장까지는 생애경로 단계별로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장애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다. 제10장에서는 생애경로 단계별 이행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서는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장애요인들을 요약한다.

제3부에서는 탐색적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생애경로단계별 이행의 장애요인들 각각에 대해, 실제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분석을 실시한다. 제3부는 총 10개의 장(11장~19장)으로 구성된다.

제11장에서는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제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우선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결혼연령(유배우율)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유배우출산율)의 변동 추이와 최근의 저출산 추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각 요인의 기여도를 측정한다. 이어서 가치관을 포함한 제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 및 출산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각 요인이 결혼을 연기시키거나 출산을 중단시키는 기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과 실제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단변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제12장~제18장에서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제12장에서는 가치관(가족관, 자녀관, 성역할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13장에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14장에서는 주거안정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여기에서 주거안정은 주택소유상태, 주거비용 부담, 주거밀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제15장에서는 경제적 환경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며, 특히 IMF 외환위기와 출산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에는 경제적 요인들로 고용 안정성,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제16장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할애된다. 제17장에서는 노동시간, 직업, 종사상지위, 소득 등 노동시장 참여의 여러 여건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형태와 수준을 분석하고, 이어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제18장에서는 여성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식보건영역을 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각각의 수준이 출산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한다. 제19장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앞서 도출된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제20장에서는 출산을 회복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21장에서는 영역별 및 소영역별로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이어서 제22장에서는 정책방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다. 제23장에서는 위 정책방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한다.

제5부의 제2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론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성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선행연구 고찰,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분석기법 적용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고찰은 다시 이론적 고찰과 외국 사례 분석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고찰은 결혼과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간의 관계, 사회·경제적 환경과 출산간의 관계, 결혼과 출산의 경제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국사례 분석에서는 외국의 출산율 변동의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그 효과성을 진단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에는 횡단면적 및 종단면적 접근을 동시에 적용하여, 결혼·출산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이와 같은 실증적 검증과정을 통해 계층별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한다.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이 집중된 인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동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은 200개 표본조사구 내 10,095가구를 방문하였고, 이 중에서 8,48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완료하였다(가구조사 완료율 84.1%). 가구조사 결과 20~44세 기혼여성은 3,98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3,802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기혼여성 조사완료율 95.4%). 또한, 가구조사 결과 20~44세 미혼남녀는 3,047명이었고 그 중에서 2,670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미혼자 조사완료율 87.6%). 조사가 완료된 기혼여성(20~44세)과 미혼남녀(20~44세)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는 저출산 원인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 결혼 및 출산의 동향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실태는 별도로 발행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참조한다. 한편, 실태조사를 위해 설계된 조사표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 연구방법으로 각종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제2부에서 저출산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생애경로별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생애경로 단계들은 i)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ii) 무자녀에서 한 자녀로 이행, iii)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행, iv)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이행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행 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개인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행 분석의 경우 관찰사건(event)인 결혼 또는 출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찰사건이 ‘시간’을 포함하는 변수이므로, 이것에 적합한 분석방법인 콕스회귀분석방법이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아직 관찰 대상인 결혼이나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향 분석의 경우 관찰사건은 향후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분석 대상은 아직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관찰 사건의 계획 여부’와 같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 분석에 적합한 이항 로짓분석방법이 적용된다. 콕스회귀분석방법과 이항로짓분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대상의 특성들은 제2부 제5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이행단계를 다루고 있는 개별 장(章)에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표 1-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특성	기혼여성 (20~44세)	미혼남성 (20~44세)	미혼여성 (20~44세)	특성	기혼여성 (20~44세)	미혼남성 (20~44세)	미혼여성 (20~44세)
전체	(3,802)	(1,466)	(1,204)	취업여부	(3,802)	(1,466)	(1,204)
지역	(3,802)	(1,466)	(1,204)	취업	48.6	57.7	61.8
동부	79.2	85.0	87.4	비취업	51.4	42.3	38.2
읍·면부	20.8	15.0	12.6	학생		24.2	20.1
연령	(3,802)	(1,466)	(1,204)	기타		18.1	18.1
20~24세	8.7	38.3	54.3	직종	(1,848)	(846)	(744)
25~29세	54.9	32.7	30.1	고위관리직·(준)전문	22.0	23.1	38.0
30~34세	14.4	18.6	10.8	사무직	16.5	15.7	33.6
35~39세	20.3	7.7	3.1	서비스·판매직	37.0	21.9	23.1
40~44세	1.7	2.7	1.7	생산·단순노무직 등	24.5	39.4	5.3
교육정도	(3,800)	(1,466)	(1,204)	직장형태	(1,848)	(846)	(744)
중졸 이하	8.7	3.5	1.5	일반 회사	86.4	92.5	84.7
고졸	54.9	40.8	28.4	공공섹터	7.4	3.9	9.4
3년제 졸업	14.4	34.1	40.7	정부기관	3.9	2.4	3.8
4년제 졸업	20.3	19.9	27.8	기타	2.3	1.2	2.1
대학원 이상	1.7	1.7	1.6	직장 규모	(1,848)	(846)	(744)
혼인상태	(3,802)			10인 미만	67.2	41.2	46.2
유배우(초혼)	92.8			10~50인 미만	21.2	27.5	25.3
유배우(재혼)	1.6			50~300인 미만	9.5	18.1	17.2
이혼·별거	4.4			300인 이상	7.1	13.2	11.3
사별	1.2			종사상 지위	(1,848)	(846)	(744)
가구소득 수준	(3,778)			고용주·자영업자	14.0	9.9	7.1
60% 미만	23.2			무급가족종사자	15.5	2.6	1.4
60~80% 미만	21.4			상용근로자	38.0	59.7	65.6
80~100% 미만	13.7			임시근로자	23.7	22.6	22.9
100~150% 미만	27.7			일용근로자	8.9	5.2	3.0
150% 이상	14.0			주당 근로 시간	(1,834)	(846)	(744)
부부 취업양상	(3,590)			36시간 미만	17.9	5.6	9.2
맞벌이	44.5			36~45시간 미만	27.8	18.5	27.4
남편만 소득	51.5			45~61시간 미만	37.3	57.6	52.1
여성만 소득	2.4			61시간 이상	16.9	18.2	11.3
모두실업	1.5			근로 소득	(1,818)	(846)	(744)
출생아수	(3,802)			100만원 미만	48.2	14.3	26.3
0명	7.2			100~150만원 미만	22.6	34.7	42.4
1명	20.8			150~200만원 미만	10.6	25.7	18.7
2명	61.0			200만원 이상	18.5	25.3	12.6
3명 이상	11.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0,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3부에서 저출산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종 분석기법들을 적용한다.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 요인과 결혼 또는 출산간의 관계도 동일한 함수관계로 규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요인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요인의 내재적인 특성들에 적합한 분석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 적용한 통계기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가치관과 결혼·출산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제12장). 가치관 변수로는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이 포함된다. 결혼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결혼 필요성, 혼전동거 및 이혼에 대한 태도를, 자녀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역할관의 가치변수로는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에 대한 태도가 모형에 포함된다.

자녀양육비용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적용된다(제13장).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와 영·유아보육·교육비용이 이항적인 성격을 가진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 자녀양육비용이 연속변수의 성격을 가진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주거와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제14장). 주거 특징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주택소유 여부’와 ‘주거비 부담 정도’는 이분류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거 밀도’는 연속적인 변수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출산수준으로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가 연속변수인 관계로 회귀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환경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과 위험함수 분석을 각각 실시한다(제15장). 그리고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생존함수는 일반적으로

생명표 추정방법과 Kaplan-Meier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관찰기간’을 일정단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의 구간생존확률을 구하고 이들의 누적으로서 일정기간까지의 누적생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간간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공변량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 ‘집단화된’ 기간을 연구하기 위한 기법이다. 반면 일명 누계한계추정법 (production-limit estimation)이라고 칭해지는 Kaplan-Meier 추정방법은 시간축(time axis)을 분해하여 임의로 만든다. 따라서 생명표 추정방법과의 차이는 선택된 시점에서 발견된 사건들이 구간 간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Blossfeld, Hamerle and Mayer 1989). 그 결과 미리 설정된 구간대신 관찰된 각 시점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후 각 관찰된 사건의 시점 사이들을 하나의 구간처럼 생각함으로써 생존함수를 구한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방법에서는 우측 중도절단 (right censored) 관찰값들이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계산에서 고려된다. 더불어 공변량을 통제함으로서 집단 간의 생존함수 혹은 위험함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카플란-마이어 추정 방법이 생명표 추정 방법보다 효율적이다.

일-가정 양립과 결혼·출산과의 관계 검증에는 OLS다중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적용하며,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연속변수인 취업여성의 출생아수이다(제16장). 한편, 자녀수에 따른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먼저 자녀가 없는 무자녀 취업기혼여성과 자녀가 1명 있는 취업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종속변수는 0,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종속변수는 1로 설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접 출산 순위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노동시장과 출산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작업은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구의 결혼·출산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7장). 즉,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생식보건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작업에는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제18장). 여성의 생식보건 특성변수들로는 임신소모의 원

인이 되는 자연유산, 사산 및 인공임신중절과 임신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불임이 포함된다. 실제 분석에서는 자연유산, 사산 및 인공임신중절 각각의 총횟수와 첫째아 출산전 횟수가 이용되며, 불임의 경우에는 불임진단 경험여부가 이용된다.

제 2 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제 1 절 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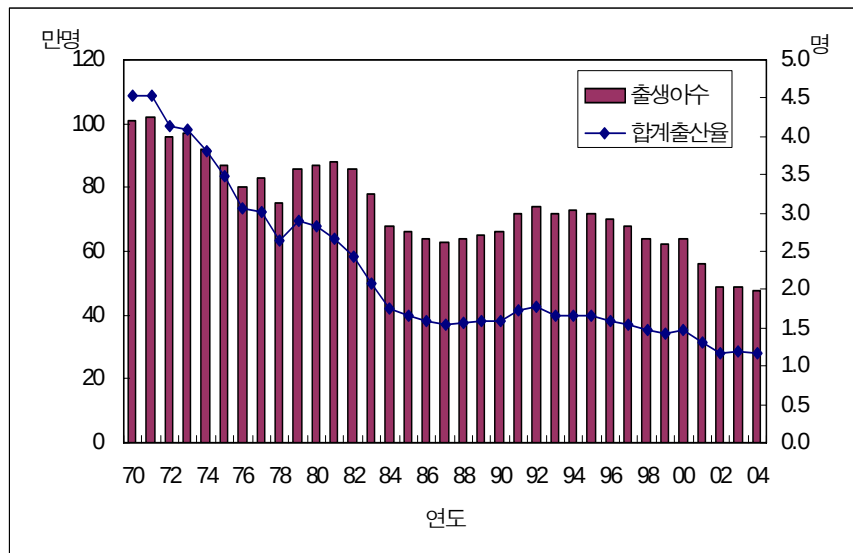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주로 이용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서로 다른 연령코호트(동시출생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 수준을 합성하여,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임기 동안 낳을 출생아수를 가설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연령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실제로 낳게 될 출생아수(코호트출산율, cohort fertility rate)는 합계출산율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일부 가설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출산 수준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코호트출산율을 구하기 위해 분석 대상 여성들이 가임기(15~49세) 전 기간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즉, 코호트출산율은 특정 연령집단의 출산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시의성이 늦어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

합계출산율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1960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된 이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1985~1995년)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에서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01년에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새천년베이비붐(millennium baby-boom)현상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04년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게 될 출생아수는 평균 1.16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08명에

비해 무려 0.92명이 적다. 15~49세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규모가 1,300만명 이라고 하면, 35년 동안 1,196만명이 덜 태어나며, 연평균으로는 34만명이 덜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가임여성인구를 분모로 하고 출생아수를 분자로 구한다. 따라서 출산율 수준은 출생아수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인구의 규모에 의해서도 변동하게 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데, 그 원리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보다 후세대의 인구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 보다 출생아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간 출생아수는 1960~1971년 기간동안 100만명 이상이었으나, 1972~1974년 기간에 연 90만명대, 1975~1983년 기간에 연 70~80만명대, 1984~2000년 연간 60~70만명, 2001년 50만명 수준, 그리고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2004년 기준 출생아수는 47.6만명으로 1960년 출생아의 45.7%에 불과하다.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단위: 명, 여성 1명이 가임기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1960	1,041,000	6.00	1987	629,432	1.55
1970	1,006,645	4.53	1988	637,462	1.56
1971	1,024,773	4.54	1989	646,197	1.58
1972	955,438	4.14	1990	658,552	1.59
1973	967,647	4.10	1991	718,279	1.74
1974	924,311	3.81	1992	739,291	1.78
1975	874,869	3.47	1993	723,934	1.67
1976	797,462	3.05	1994	728,515	1.67
1977	827,079	3.02	1995	721,074	1.65
1978	752,409	2.65	1996	695,825	1.58
1979	864,297	2.90	1997	678,402	1.54
1980	865,350	2.83	1998	642,972	1.47
1981	880,310	2.66	1999	616,322	1.42
1982	858,832	2.42	2000	636,780	1.47
1983	778,362	2.08	2001	557,228	1.30
1984	682,217	1.76	2002	494,625	1.17
1985	662,510	1.67	2003	493,471	1.19
1986	641,644	1.60	2004	476,052	1.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제 2 절 인구정책 변천

190년대 초 이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사회경제발전(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등), 영아사망률 급감, 少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출산율 수준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출산관련 인구정책을 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및 출산장려정책기로 구분하였다.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의 자질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 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2월)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roadmap)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1.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1959년에 보건사회부 기술자문위원회 소분과인 모자보건위원회는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 하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1961년 군사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가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효시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9차 상임위원회의 결의(1961. 11. 13일)에 따라,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전국의 보건조직망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고 피임약재기구의 국내생산과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허가되었다.

1961년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하여 가족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슬로건으로 “적게 낳아 잘 기르자”를 채택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직으로 183개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하고 가족계획원을 배치하였다. 이 당시 가족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수술, 콘돔 및 젤리가 도입되었다. 이어서 1964에는 자궁내장치(IUD) 그리고 1966년에는 경구피임법이 각각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가족계획사업 목표체제를 채택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가족계획어머니회를 육성하였다.

1960년대 출산억제정책은 주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피임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래식 피임방법으로 자궁내장치, 정관수술, 젤리 및 콘돔이 무료로 보급되었다. 당시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의 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에서 제2차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 수준으로 둔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44세 부인의 피임실효율을 1971년까지 45%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책정하고, 1962-1971년 기간에 자궁내장치 100만건, 불임수술(정관) 15만건, 그리고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제기구의 월평균 사용자 15만명 분의 보급을 계획하였다.

한 해 출생아수가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1971년에 정부는 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한 가족 2명 운동을 강력히 펼쳤다. 산아제한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이 당시였다. 정부는 1973년에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된 모자보건법을 공포(법률 제2514호)하여 우생학적 및 유전학적 이유, 특수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내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8호(1963. 9. 10일자)에 기반을 둔 각종 피임시술의 무료보급 및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골자로 한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주4)}

1974년부터 출산 억제를 위한 정책은 인구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도시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 당시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3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보다 효율적인 피임법들이 도입되었는데, 1974년에는 MR법 그리고 1977년에는 여성 불임시술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주5)}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1976년에 부총리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Popul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이 당시 합계

주4)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모든 부처가 보건사회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지원하도록 1963년 9월10일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8호를 시달하였다.

주5) 이를 위해 1975년에 대한불임시술협회가 설립되었다.

출산율이 약 3명으로 어느 정도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정책심의회에서는 추가적인 산아 제한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종래 3자녀까지만 인정되었던 소득세 면제를 2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피고용인의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2자녀 이하를 가진 여성으로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게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사회에 팽배되었던 남아선호 사상이 출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977년에 정부는 가족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슬로건이 채택되었다.

1980년대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에는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 대해 공공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을 감면해 주었다. 정부는 제5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80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8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였다(조남훈, 2005). 이에 따라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49개 시책이 발표되었다. 49개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1) 피임시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2)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의 확산을 위한 시책, 3) 피임실천 및 소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4) 자비피임실천의 촉진, 5) 남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개선, 그리고 6) 홍보교육활동의 강화방안 등이 다(부록 1참조).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 중 인센티브(보상)로는 2명 이하 자녀를 가진 영세민으로서 불임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 부여, 특별생계비 지급, 0~5세 자녀에 대해 1차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불임시술이 포함되었다. 디스인센티브(규제)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지급을 2자녀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목표연도인 1988년보다 4년이나 빠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힘입어 정부는 1986년 3월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인구부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 목표도 이미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한편,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서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대표적인 인구문제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자녀수를 줄이면서도 남아선호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 초에 도입되기 시작한 초음파검사에 의한 태아의 성 감별 및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가능해졌다.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만연은 출생성비를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시켰다. 정부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주6)} 사회제도 개혁으로 1985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였다.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족법이 1989년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에도 계속 낮아져 1980년대 후반에는 이미 1.6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1989년에 무료피임보급사업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시키고, 대신 의료보험 등을 통한 자비에 의한 피임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주6)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2,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홍보계몽활동으로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1년의 107명(출생여아 100명당 남아수)에서 1990년에 11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03년 현재 109명에 이르고 있다.

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에 관한 두 전문가 집단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한 집단의 주장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도 출산행위의 속성상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주장은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중단할 경우 피임실천율은 감소되고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여 그간의 정책성과가 무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보건복지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토록 하였다. 1년에 걸친 연구 후, 이 위원회는 당시의 저출산(1.75명)이 지속될 경우 예견되는 노동력의 감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 등 뿐 아니라, 성비불균형의 심화, 청소년 성문제 및 높은 인공임신중절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은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고려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구정책

의 의미는 그 동안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대신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인구의 양적 증가문제의 해소를 이유로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예산이 삭감되었다. 물론 저소득층과 요보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3.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1998~2000년 기간 1.5명 미만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에 1.30명, 2002년 이래 1.2명 미만으로 더욱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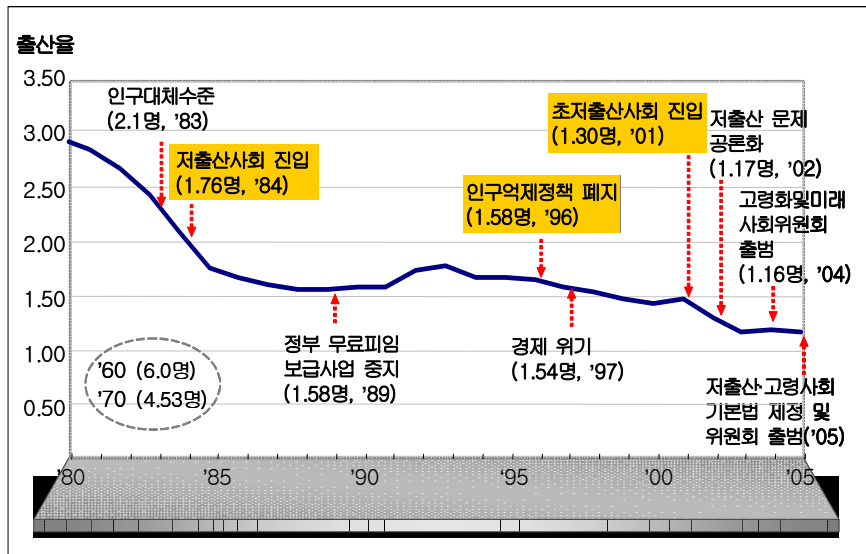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진데다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2002년 국민연금 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을 발표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내에서도 저출산 추이에 대해 적기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즉, 여러 시기에 걸쳐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다. 첫 번째로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인 1.76명으로 낮아져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도 향후 출산율 감소에 대한 검토마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 세 번째로는 1996년 인구억제정책 폐지이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이 없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한 이후에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하여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을 사회적 쇼크로 받아들여 1990년대 초부터 저출산현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실기는 결국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10~20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추진체로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9월 1일 시행)되었다. 이어서 2005년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 발족하였으며, 그 실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2005년 하반기에 설치되었다. 한편, 2005년 초부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은 2006년 상반기에 마련될 계획이다.

[그림 2-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와 인구정책 변천, 1960~2004



〈표 2-2〉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관련) 내용 변천(1960년 ~ 2006년 2월)

구분	정책
1960년대	△ 출산억제정책 도입 ◦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정부가족계획사업 채택('61) ◦ 피임기구 수입/국내생산금지법규폐지('61) ◦ 가족계획사업 개시('62) - 보건소에 가족계획사업 상담실 설치 및 가족계획요원 배치('62) - 정관수술, 콘돔, 젤리 포함('62) - 가족계획요원 및 정관수술 의사 훈련 실시('62), 보건지소에 가족계획요원 배치('64) - 자궁내장치기술 의사 훈련 실시 및 자궁내장치기술 도입('64) - 奥·僻地가족계획사업 이동기술반운영('64), 가족계획어머니회 발족('68)
1970년대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의학적 이유의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공포('73) - 여성의 유산상속을 위한 가족법개정('77) ◦ 도시가족계획사업 실시('74) - 병원가족계획사업, 도시저소득층 가족계획사업, 산업체 가족계획사업, 인구교육사업 ◦ 피임방법의 변화 - 월경조절술 도입('74), 여성복강경수술을 위한 의사훈련 실시('75), 여성불임수술도입('76) ◦ 조직 등 변화 - 군보건소 남성가족계획홍보요원 배치('76), 새마을부인회에 가족계획어머니회 통합('77) - 보건요원의 정규직화('81) ◦ 지원시책 실시 - 2자녀까지 소득세 면제, 근로자 가족계획경비에 대한 기업세 면제('77) -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 공공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피임기구 수입세 감면('78) - 공공병원에서 2자녀 출산후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출산비용 감면('80)
1980년대	◦ 가족계획사업 지원 시책 - 불임수술, 자궁내장치기술 의료보험적용('82) - 두자녀 이하의 불임수술 수용자 주택자금/저소득층 생계비 우선 지원('82) - 저소득층 불임수술자 생계비 지원('82) - 두자녀이하 불임수술자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1차 무료진료 실시('82) - 자녀교육비 감면대상, 공무원 가족수당/자녀교육비 지급 2자녀로 제한('82) - 의료보험대상 친정부모, 장인·장모 확대('85) ◦ 카파-T 보급('83) ◦ 조직 개편 - 농촌지역 가족계획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요원 통합('85) - 20대여성 피임보급전략을 불임에서 일시적 피임방법으로 변경('86) -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성감별 의사의 자격 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87) - 정부무료피임 보급촉진, 의료보험·상업망을 통한 피임수용 확대사업 실시('89)
1990년대	◦ 성감별 의사 처벌강화(3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를 위한 의료법 개정('94) ◦ 보건복지부산하 인구정책발전심의회 설치('94) △ 인구억제정책 폐지 및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한 인구정책으로 전환('96)
2000년대	△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9 시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05) ※ 전신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초부터 운영 ◦ 국무조정실 중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저출산종합대책 마련('0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수립('06)

제 3 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오랫동안 강구, 실시하여 왔던 국가들은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이다. 이들 OECD 국가들이 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여 왔던 정책들의 내용과 그 효과성 등에 관한 고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이 정책들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서 저출산 원인들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우리 문화나 사회 환경에 적용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OECD국들은 최근 출산율 수준 및 변동 추이를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군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북유럽국가들과 프랑스어권 국가 및 영어권국가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 국가군은 과거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였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가군은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군에 비해 출산율이 월등히 높은 국가들이 해당된다. 세 번째 국가군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이들 국가들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머지 국가군 중 첫 번째는 ‘상대적 고출산국가’로 그리고 두 번째 국가군은 ‘상대적 저출산국가’로 칭한다.

제 1 절 OECD국가의 출산율 수준

현 OECD 30개국은 인문·지리적으로 동아시아권국가, 동유럽국가, 남유럽국가, 북유럽국가, 영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기타국가들로 분류된다. 서유럽국가는 불어권과 독일어권 및 영어권 일부 국가로 구성된다. 각 분류에 속한 국가

들은 <표 3-1>을 참조한다. 국가별로 과거 출산율 변동추이는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큰 흐름만을 제시하도록 한다(표 3-1 및 그림 3-1 참조). 예외적으로 각 국가군 중 대표적인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추후 출산율 변동추이를 상술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OECD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예외 없이 감소하여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유럽지역에 속한 OECD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 출산율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국가도 199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올수록 출산율 증감추이가 국가군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출산율 변동 추이를 감안하면, 동아시아권국가(한국, 일본), 독일어권국가, 동유럽국가, 남유럽국가는 상대적인 저출산국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어권국가, 불어권국가, 북유럽국가 및 기타 국가들은 상대적인 고출산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남유럽국가와 독일어권국가(1.3명 이하)들은 저출산현상이 심각한 반면, 불어권국가와 북유럽국가들은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권 국가(한국,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국가군에 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한국은 최근 최저출산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 수준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저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4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인 1.29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9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낮아지자, 이를 “쇼크”로 받아들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엔젤플랜)을 추진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독일어권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가 포함된다. 동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최근 출산율 수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1.2~1.4명 수준에서 다소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지역	국가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동아시아권	한국	6.00	4.53	2.83	1.59	1.65	1.47	1.30	1.17	1.19	1.16
	일본	2.00	2.13	1.75	1.54	1.42	1.41	1.33	1.32	1.29	1.29
영어권국가	영국	2.72	2.43	1.90	1.83	1.71	1.64	1.64	1.65	1.73	1.79
	아이슬란드	4.17	2.81	2.48	2.30	2.08	2.10	1.95	-		
	아일랜드	3.76	3.93	3.25	2.11	1.84	1.89	1.98	-		
	미국	-	2.48	1.84	2.08	2.02	2.06	-	2.01	2.04	
	캐나다	3.90	2.33	1.68	1.71	1.62	1.49	-	-		
	호주	3.45	2.86	1.90	1.91	1.82	1.75	-	1.75		
	뉴질랜드	-	3.17	2.03	2.18	1.98	1.98	1.97	1.90		
불어권국가	프랑스	2.73	2.47	1.95	1.78	1.70	1.88	1.89	1.88	1.89	1.92
	벨기에	2.56	2.25	1.68	1.62	1.55	1.66	1.65	-		
	룩셈부르크	2.28	1.98	1.49	1.61	1.69	1.80	1.70	-		
독일어권 국가	독일	2.37	2.03	1.56	1.45	1.25	1.36	1.29	1.40	1.34	
	네덜란드	3.12	2.57	1.60	1.62	1.53	1.72	1.69	-		
	오스트리아	2.69	2.29	1.62	1.45	1.40	1.34	1.29	-		
	스위스	2.44	2.10	1.55	1.59	1.48	1.50	1.41	-		
동유럽국가	체코	2.11	1.91	2.10	1.89	1.28	1.14	1.14	1.17	1.18	
	헝가리	2.02	1.98	1.92	1.87	1.58	1.33	1.32	-		
	폴란드	2.98	2.20	2.28	2.04	1.61	1.34	1.29	1.24		
	슬로바키아	3.07	2.40	2.32	2.09	1.52	1.30	1.21	-		
남유럽국가	그리스	2.28	2.39	2.21	1.39	1.32	1.29	1.29	-		
	이탈리	2.41	2.42	1.64	1.33	1.18	1.24	1.24	1.26	1.29	
	포르투갈	3.10	2.83	2.18	1.57	1.40	1.52	1.42	-		
	스페인	2.86	2.90	2.20	1.36	1.18	1.23	1.25	-		
북유럽국가	덴마크	2.57	1.95	1.55	1.67	1.80	1.77	1.74	-		
	핀란드	2.72	1.82	1.63	1.78	1.81	1.73	1.73	-		
	노르웨이	2.91	2.50	1.72	1.93	1.87	1.85	-	1.75		
	스웨덴	2.20	1.92	1.68	2.13	1.73	1.54	1.57	1.65	1.71	
기타	멕시코	7.25	6.82	4.71	3.35	2.82	2.40	-	-		
	터키	6.40	5.05	4.22	3.64	-	-	-	-		

자료: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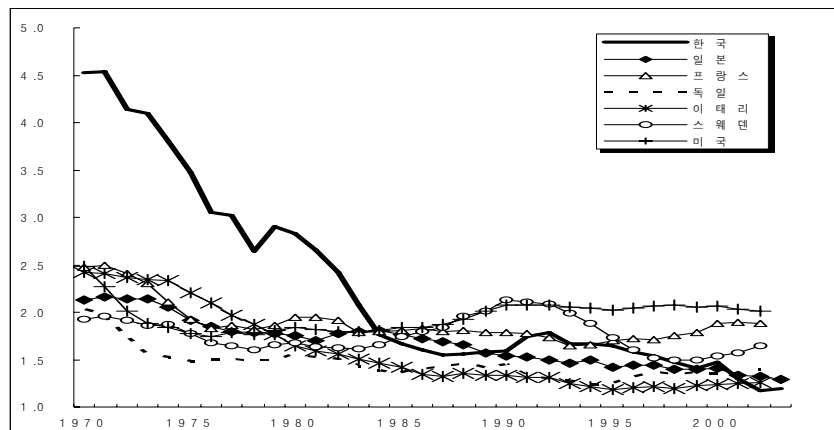
동유럽국가에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약 1.2명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유럽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이탈리아 이들 국가 중 포르투갈이 1.4~1.5명 수준을 유지할 뿐, 나머지 국가들의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영어권국가들에는 인구정책 기조로 이민정책을 강조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출산율은 2.0명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백인보다 흑인, 히스파닉 등 이민자의 고출산력에 기인한다.

북유럽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의 최근 출산율은 1.7명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불어권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출산율은 OECD 평균수준인 1.6명을 상회하며, 특히 프랑스의 출산율은 최근에도 계속 높아져 2.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오랜 기간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포괄적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OECD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제2절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

1.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저출산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북유럽국가, 불어권국가, 영어권국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하게 된 요인들은 문화적 배경, 사회제도, 정책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요인이 모든 국가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 북유럽국가의 저출산 대응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은 유럽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출산율(1.6~1.8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게 된 주된 이유들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국가는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주7)} 구체적으로 소득보장 이외에 육아 휴직제를 활성화 하며,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서 **Papa Quota** 제도 등에 따라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왔다.^{주8)}

둘째,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하고 있다.^{주9)}

주7) 이들 국가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2001)은 덴마크 29.2%, 스웨덴 28.9%, 핀란드 24.8%, 노르웨이 23.9% 등으로 높은 반면, 일본(16.9%)과 한국(6.1%)은 OECD 평균(20.9%)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8) ILO(1994)는 모성휴가와 현금급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보호, 비차별과 고용보장,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등 4가지 요소를 주요 모성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9) GDP대비 조세부담비율(2000)은 덴마크 48.8%, 핀란드 46.9%, 노르웨이 40.3%, 스웨덴 54.2%이며, 이에 비해 일본(27.3%)과 한국(27.2%)은 OECD 전체 평균 수준(3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GDP대비 가족수당비율(2001)은 덴마크 3.8%, 스웨덴 2.9%,

셋째, 이들 국가에서는 넉넉한 육아휴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로 여성의 직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러 OECD 국가들이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모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까지 확충하는 등 공적 보육서비스의 정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주10)}

넷째,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부문(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에서 여성을 대폭 고용(스웨덴 여성고용의 50%, 핀란드 40% 이상)하는 등 여성에게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직장을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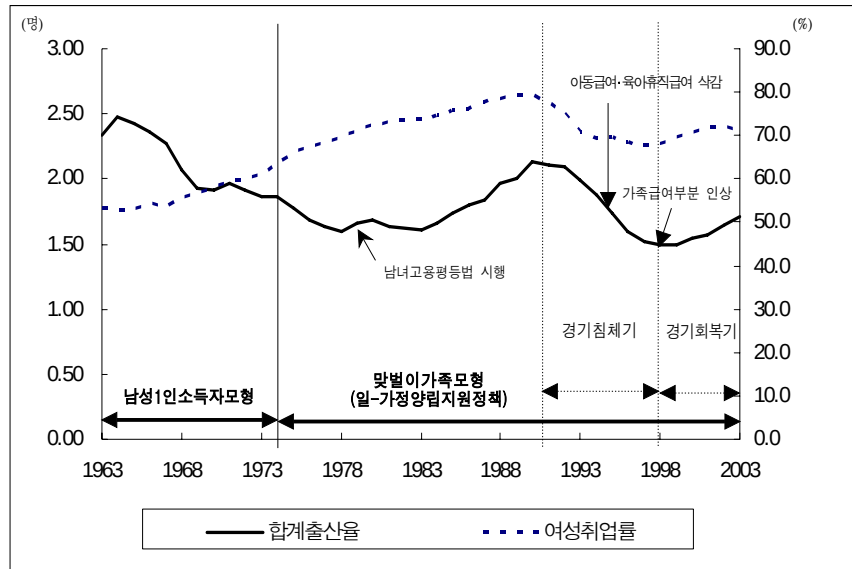
끝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분야의 높은 여성고용을 기반으로 가족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북유럽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여,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의 출산율은 1900~1930년 중반까지 4명에서 2명까지 줄어들었으나, 1930년대 경제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2 참조). 서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가 194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나타나고, 1950년대에 출산율은 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960년대 출산율은 약 2.2에서 2.5명으로 증가하였다. 피임이 도입된 후 출산율은 북서부유럽국가들과 비슷하게 떨어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1.6명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베이비붐을 겪으면서 출산율은 1990년까지 2.14명의 인구대체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에 다시 1.52명으로 급격히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출산율이 경기에 따라 롤러코스터 형태로 변동하고 있는 이유로는 불황기에 여성의 실직 증가로 가계부담이 증가한데다가 국가의 급여가 감축되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급여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다시 회복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3.0%, 노르웨이 3.2% 등으로 OECD 평균(1.8%)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 일본(0.6%)과 한국(0.1%)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10) 이들 국가의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2001)은 덴마크 76.1%, 스웨덴 75.5%, 핀란드 72.7%, 노르웨이 76.4% 등으로 OECD 평균(60.3%) 수준보다 높다, 반면, 일본(64.4%)과 한국(55.6%)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GDP대비 공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은 스웨덴 2.0%(2002), 핀란드 1.1%(2001) 등이다.

[그림 3-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1970년대부터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 보편적 공보육 등 각종 가족정책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질 높은 아동보육,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휴직제도(부성휴가 포함), 휴직시 높은 임금대체율 등이 포함된다. 즉, 스웨덴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및 양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이 1.6명 이상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한 주된 요인들을 요약하면, 첫째 양성평등에 기반한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이다. 참고로 북유럽국가 남성들의 가사분담비율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 둘째,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부모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셋째,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 Speed-Premium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불어권국가의 저출산 대응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불어권국가는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국가가 적극 기여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 하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최근 들어 최대 2.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프랑스의 예). 이들 국가가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첫째,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의 출산과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6년 7월부터 셋째 자녀에게 매월 750유로 보조금을 지급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건실한 공보육제도와 넉넉한 가족수당 지급, 탄력적 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국가가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DP대비 가족수당비율(2001년)은 프랑스 2.8%, 벨기에 2.3%, 룩셈부르크 3.4%로 다른 국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불어권국가 중 프랑스의 경우, 범정부적 저출산대책의 장기적 추진으로 출산율이 2004년 1.9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도 하다(그림 3-3 참조). 프랑스에서 추진한 저출산대책의 주요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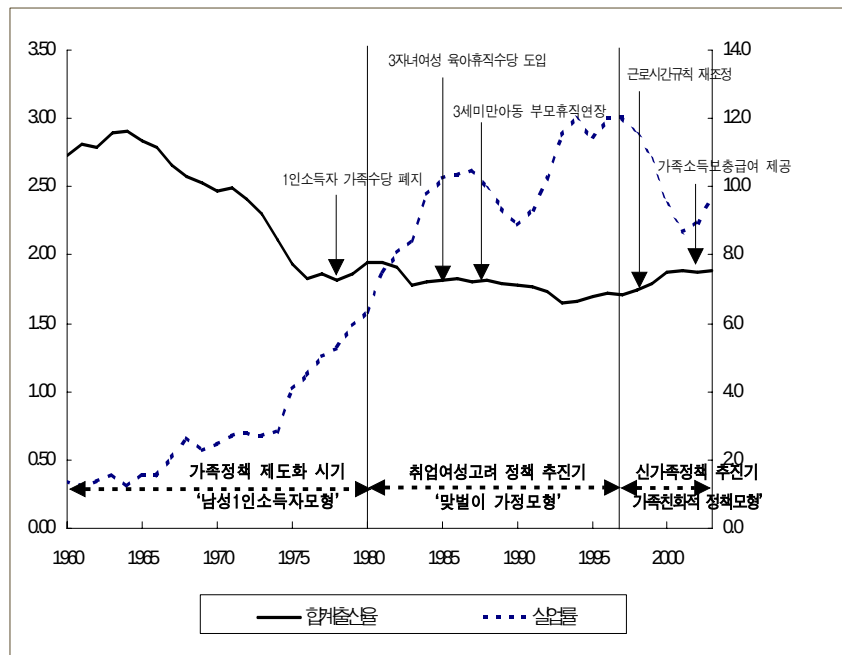
둘째, 공공보육 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수당은 모성의 대가가 아닌 출산으로 인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

셋째,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취약자녀를 둔 가족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확대하였다.

넷째,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산전 및 모성수당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지급하며,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에 대한 소득비율인 가족지수를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에서 37.5년 가입이 완전연금수령의 필요조건이나, 여성의 경우 1자녀마다 2년을 연금가입기간에 합산하며, 3자녀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연금가입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3-3]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다. 영어권국가의 저출산 대응

영어권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들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민 세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나,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염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주11)} 셋째, 구직 및 재취업이 용이하고 근무시간 조절이 용이하여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출산율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에서 1980년대 전반에 1.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하여 2.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실제 다른 영어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파트타임 노동의 보급, 재취업의 용이성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인한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 사회를 ‘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높은 출산율 수준 유지는 이민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민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2.06명으로 높았으나, 백인만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이민자인 히스패닉의 고출산율에 의해 합계출산율은 0.22명이나 상승하였다. 이 당시 총출생아수 236만명 중 흑인이 59만명(25%), 히스패닉이 73만명(31%)으로 나타났다.

이상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대응 경험은 <표 3-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주11) GDP 대비 가족수당비율(2001)은 미국의 경우 0.4%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캐나다 0.9%, 영국 2.2%, 뉴질랜드 2.2%, 호주 2.8% 등).

〈표 3-2〉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구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어권)
합계출산율	1.89('03년)	1.71('03년)	2.1('03년)
[사회문화적 요인]			
◦ 남녀평등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43.7%('01)	사회적·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56.0%('04)	사회적·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33.8%('04)
◦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흑인·히스패닉의 고출산율
[정책적 요인]			
◦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동시 제고 정책	양립지원정책 미흡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용이성 제고(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성 등)
◦ 남녀 가사분담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 분담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분담	
◦ 양육의 경제적 지원	-세제, 연금크레딧 등 간접적 지원 -제 수당 지원(모성이 아닌 임금의 대가로 지급)	제 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 (육아의 사회화)	-국가의 직접적 지원 미흡 -자녀양육 저비용사회 구조화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화
◦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육 인프라 확충
[기타]			
		-개인단위 가족정책 추진 -출산율은 경기에 민감	-국민 대다수가 '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로 생각하여 출산율에 유리

2. 상대적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대응

가. 남유럽국가의 저출산 대응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은 가톨릭 국가로 낙태 금지 등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전통적으로 고출산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1.2명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유럽국가의 출산율이 급락한 이유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유지되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남부유럽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 성분업적 역할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 대신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부유럽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보육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미흡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고용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취업이 용이한 노동시장보다 전일제(full-time) 위주의 노동시장일수록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남유럽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약 50%로 OECD 평균 수준(2001년 60.3%)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증가폭은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남부유럽국가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GDP 대비 가족수당(2001년 기준) 비율은 스페인 0.5%, 이태리 1.0%, 그리스 1.8% 등으로 가족 및 육아를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이 OECD 회원국들 중 최저 수준이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을 유인하는 정책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부유럽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 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이 자립하기가 곤란하며, 이는 출산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가 풀타임 위주로 경직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년층과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25세 이하 여성의 실업률 30%), 취업여성들이 출산 후 종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게다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사 및 육아부담이 여성

에게 전가되고 있으나 공적 보육시설도 부족하여, 여성들은 직장과 출산(결혼)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만혼이 일반화되고 있다.^{주12)}

넷째,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 결혼 후 분가까지의 비용을 부모가 전담하는 남유럽의 가족주의 문화는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의 평균 분가 시기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 20.2세, 여성 18.6세로 아주 낮는데 반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남성 26.7세, 여성 23.6세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다.

다섯째, 남부유럽에서는 자녀부양에 따른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다자녀보다 소수의 자녀를 잘 기르자는 방향으로 부모의 자녀관이 변화하고 있다.

끝으로, 가톨릭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하여 미혼모, 동거부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남유럽국가 중 개별국가로서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면(그림 3-4 참조),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은 1990년 40.4%에서 2000년 51.7%로 크게 높아졌으나, 여성친화적인 정책 부재로 취업여성들은 출산과 경력지속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둘째, 스페인 국민들은 출산율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과거 가족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였던 프랑코 독재정권의 정책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즉, 프랑코정권의 강력한 가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일반국민은 가족이 국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스페인은 자율성이 강한 지방분권적 정부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산관련 정책들을 통일되게 수행하는 데에 한계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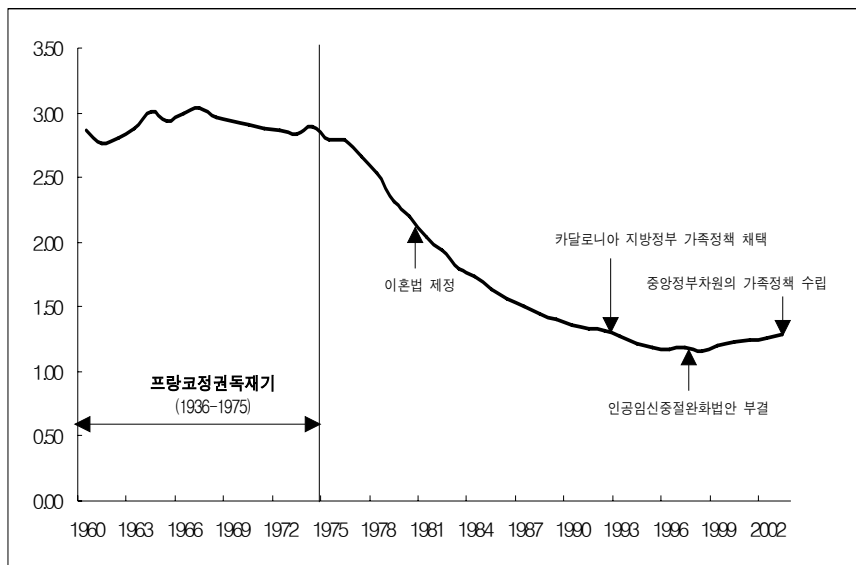
주12) 이탈리아의 경우 결혼연령이 1년 늦어지면 출산율이 0.08명씩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넷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고용 및 소득 불안정(높은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출산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출산회복이 아닌 복지 위주의 가족정책(빈곤층 대상)도 출산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육아지원서비스(교육프로그램·보육프로그램)의 수요적합성 결여, 육아 인프라 부족, 제한적 모성휴가 수급조건, 정책대상에서 자영업 종사 여성의 배제 등도 저출산 관련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 전일제 부모를 둔 아동의 이용에는 부적합하다.

[그림 3-4]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나. 독일어권국가의 저출산 대응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가톨릭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남성은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 및 성분업적 역할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야 한다는 전통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전통적인 규범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결과 혼인율이 하락하고 동거혼이 확산되는 등 전통적인 가족관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취업여성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대 중반 이래 1.3~1.4명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실제 독일어권국가에서 출산은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될 가족의 영역이라는 보수적 인식이 강하게 유지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스위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소극적인 가족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어권 국가의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남성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가족지원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은 주로 시간제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육지원제도도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출산여성의 직업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강하고, 실제 출산 후 풀타임 직장으로의 복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대졸여성의 40%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모가 직접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0~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가 극도로 부족하고, 육아휴직이 모에만 한정되어 있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어권국가들은 보육시설 확충, 직장·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등 적극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수당지급을 통해 출산모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여성들이 직장활동을 통해 벌게 될 소득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참고로 GDP 대비 가족수당비율(2001)은 독일 1.9%, 오스트리아 2.9%,

스위스 1.2%, 네덜란드 1.1% 등으로 OECD 평균수준 1.8%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요컨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녀 출산 시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겠다.^{주13)}

예외적으로 독일어권국가 중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1980년대의 하락세를 멈추고 1990년대 들어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1.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산율 회복의 이유로 네덜란드는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해 여성취업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무비율(2002)이 OECD 평균 24.7%(한국 10.6%)인데 비해 네덜란드는 58.8%로 높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자녀를 둔 부모(특히 모)의 노동시장 참가를 유인하기 위해 보육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 부담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휴직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최고 115%까지 국가에서 지급하여 높은 임금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주간의 유급부성휴가와 2일간의 유급연가도 제공하고 있다.

다. 동유럽국가의 저출산 대응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는 사회주의 시절 강력한 출산정책을 추진하여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였으나, 체제 전환 후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지원의 감소로 출산율은 1.3명 이하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체코공화국의 경우에는 1.1명대까지 낮아졌다. 이들 국가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일종의 체제변화에 대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적응 노력에 기인한다. 개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으며, 가족차원에서 출산을 억제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주13) 결국, 부족한 노동력을 출산보다 이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일환으로 동유럽, 터키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총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독일 9.1%, 스위스 17.3%로 높으나, 이민자의 사회적 동화의 어려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초저출산현상은 적어도 단기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유럽의 저출산국가들의 저출산 요인(원인)을 종합하면, <표 3-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3> 유럽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구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출산율	1.42('03년)	1.29('03년)
[사회문화적 요인]		
◦ 남녀평등	-가톨릭(전 국민의 약 50%) 문화의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 규범 유지 *여성의 취업 지원 미흡 및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전통적 가톨릭(전 국민 대다수) 문화의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 규범 유지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극적 수용(법률혼이 보편적 가치화) *혼외출산율 26.1%('02)	-소극적 수용 *혼외출산율 17.7%('00)
◦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정책적 요인]		
◦ 일-가정 양립	-어머니의 직접 양육 강조로 일-가정 양립 곤란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원 미흡(대졸여성 40% 출산포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 양립곤란(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1.7%('00년)
◦ 양육의 경제적 지원	-자녀 육아·교육지원 미흡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 가정 전가 *가족수당 소득대체율 저조	-출산위주가 아닌 가족복지정책(빈곤층 대상)의 한계 인정 존재
◦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육아지원서비스의 수요 적합성 결여 -보육 인프라 부족
[기타]		
	-히틀러정권의 영향으로 출산장려에 대해 신중한/소극적 접근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실패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인식 존재 *프랑코 독재정권의 가족간섭정책에 대한 반감

라. 아시아국가의 저출산 대응

OECD 국가에 속한 아시아국가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일본 이외 OECD 비회원국인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하여,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저출산 추이와 그 대응을 논하기로 한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은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 1.3명 수준으

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년간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저출산현상을 야기하는 공통적인 요인들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환경 미비,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과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구직이 곤란하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후 시장으로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있다.^{주14)} 양질의 보육인프라 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미비하고 국가차원의 지원들이 미흡한 실정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 후 직장을 퇴직하고 있다. 이외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높은 교육비 부담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국가로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동안 저출산 추이의 반전을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미흡, 가정 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보장 혜택 불충분 등 부분적 정책실패로 인해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2004년 1.29명). 일본의 저출산대책의 주요 특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둘째, 소액이나마 현금지원은 서민층(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런 지원이 필요 없는 중산층에 대한 출산 장려책은 불충분하다. 정부의 목표에 비해 예산배정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제2차 엔젤플랜에 투입된 정부재원은 2002년의 경우 GDP의 0.07%에 불과하다. 결국 기업에 대한 계몽과 권고 위주의 비예산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동에 대한 양성간의 전통적 역할규범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의 부담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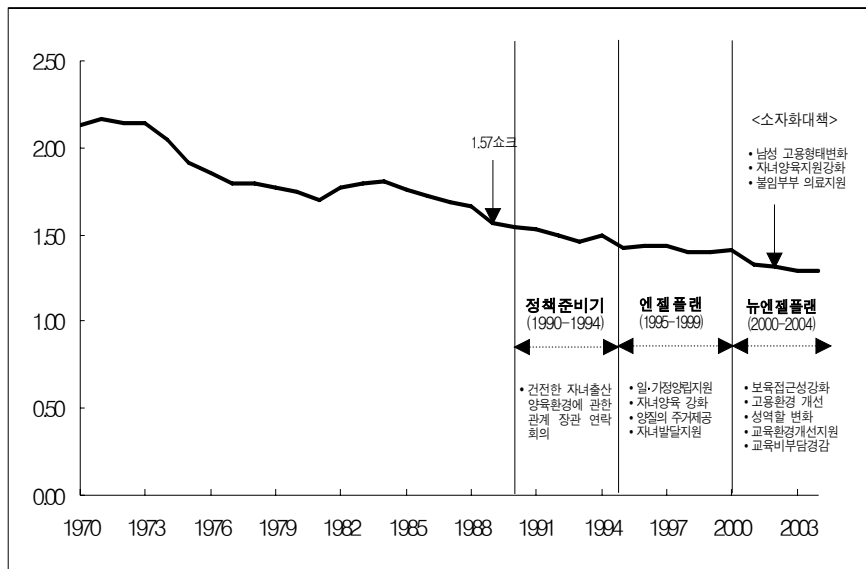
넷째,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 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육아와

주14) 참고로 한국의 미혼율(2005년)은 25~29세 여성의 46%, 30~34세 여성의 13%이며, 일본의 경우 25~29세 직장여성의 미혼율은 78%, 30~34세 직장여성의 미혼율은 47%에 이르고 있다.

직장을 병행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미비하다. 일례로 취업여성의 70%가 결혼 또는 첫아이 출산시 퇴직하고 있다.

다섯째,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고, 대신 시기에 따라 단편적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젤플랜(1995~1999)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신엔젤플랜(2000~2004)에서는 보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자화대책(향후10년)에서는 가족친화적 고용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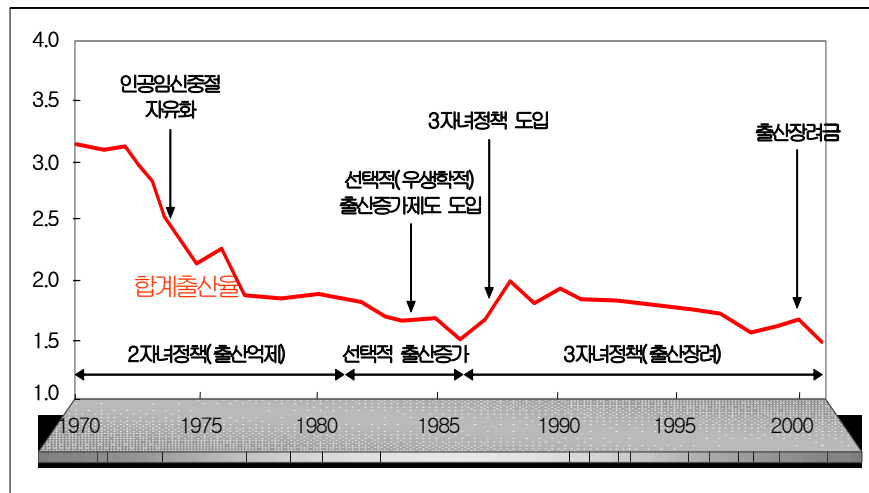


한국과 함께 같은 유교문화권에 위치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싱가포르, 대만 및 홍콩의 출산율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1.2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싱가포르 2004년 1.25명, 대만 2003년 1.24명, 홍콩 2004년 0.8명).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들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인 문화의 영향으로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선택적 출산정책(고학력여성 대상)을 도입한 결과, 전체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그림 3-6 참조). 싱가포르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결혼, 출산, 양육, 보육, 일-가정 양립의 다섯 가지 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에 대한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에 대한 정책에는 주택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육아휴직이,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정책에는 친가족적 기업육성기금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6]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대만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세제 감면, 보육보조금 지급, 산전후휴가 제공, 의료수당 지급, 출산보조금 제공 등 저출산대책들을 추진해왔으나, 효과가 불분명하다. 주된 이유로는 장기적·종합적 계획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의 경우 고실업, 빈부격차 심화, 높은 교육료, 주권반환 후 젊은 전문인력의 해외이주 확대 등으로 미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 강화, 자녀수에 따른 세제혜택, '3자녀 이상

낳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효과성을 진단하기에 곤란하다.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의 저출산 요인들과 정책사례들은 <표 3-4>에 종합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 본 OECD 및 동아시아국가의 저출산 요인들과 정책 사례들은 <표 3-5>에 비교 관점에서 종합 제시되어 있다.

<표 3-4>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및 한계성

구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합계출산율	1.29('04년)	1.25('04년)	1.24('04년)
[사회문화적 요인]			
◦ 남녀평등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 이민 수용성	-사회적 비수용		최근 이민 수용으로 전환
[정책적 요인]			
◦ 일-가정 양립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적 고용 문화 부재(장시간근무 관행, 노동시장 경직화), 양립의 사회적 조건 미약으로 효과성 미흡 *첫아이 출산시 퇴직율 70% *최근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으로 정책 전환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수준
◦ 양육의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족(소액의 아동 수당 등 일부 국한) -현금지원은 저소득층만 대상 으로 하여 한계 존재		-보육보조금, 세제감면, 의료 수당, 출산보조금 등 지원
◦ 육아인프라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보육 인프라 구축		
[기타]	-적기에 종합적 대응 미흡 (단편적 정책 추진) *엔젤플랜('95-'99):일-가정 양립중심 *신엔젤플랜('00-'04):보육 중심 *소자화대책(향후10년):가족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등 -권장·계몽 중심의 비예산 사업의 한계성 존재 -청년층 고용불안정	-적기에의 종합적인 대책 추진 미흡 *2004년 이후 결혼지원(주택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가족친화적 고용 환경조성(친가족적 기업육 성기금 운영)등 종합대책 추진	-장기적·종합적 계획에 기반 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효과성 미흡 *세제감면, 보육보조금, 산전후 휴가, 의료수당, 출산보조금 등

〈표 3-5〉 OECD 및 동아시아 국가간 출산격차 발생 요인(종합)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90년 중반이후 1.1~1.3명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 가족주의적 문화에 따른 출산, 양육, 교육, 결혼 후 분가까지의 자녀양육비용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 ◦ 높은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에도 노동시장구조 경직성, 보육시설 미흡(0.2세), 가부장적 문화 등 ◦ 일-가정 양립 곤란 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 미흡
독일어권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70년대 중반 이후 1.3~1.4명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 성불업적(여성-가사, 남성-생계부양) 가족지원제도 유지 - 출산여성의 풀타임 직업유지에 대한 강한 부정적 사회 인식 ◦ 결혼율 하락 등 전통적 가치관(결혼관) 약화 ◦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정책 부재 또는 소극적 추진
동유럽국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3명 이하 지속	◦ 체제전환 후 경제적 곤란 증가 및 국가지원 감소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2000년대 1.3명 미만 감소	[유교주의 문화] ◦ 높은 양육·교육비용 부담 ◦ 고용불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청년층과 여성 구직 곤란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으로 결혼기피, 만혼 일반화 ◦ 일-가정양립 곤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 보육시설의 부족 등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1.6~1.8명 유지	◦ 양육부담경감(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 양성평등의 생활화 ◦ 보편적 복지제도로 일-가정양립 제도적 지원(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제 확립 등)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70년대부터 하락한 출산율 최근 1.9명수준 반등	◦ 국가차원에서 자녀출산과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환경조성 ◦ 공보육제 확립 ◦ 소득대체율이 높은 가족수당 지급 ◦ 탄력적 근무제 등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6~2.0명	◦ 일-가정 양립 용이(유연한 노동시장: 구직·재취업 및 근무시간 조절 용이) ◦ 정부의 가족지원은 미흡하나, 저소득층에게 영가의 보육서비스 제공 ◦ 이민세대의 높은 출산율

제 3 절 저출산 대응관련 외국 경험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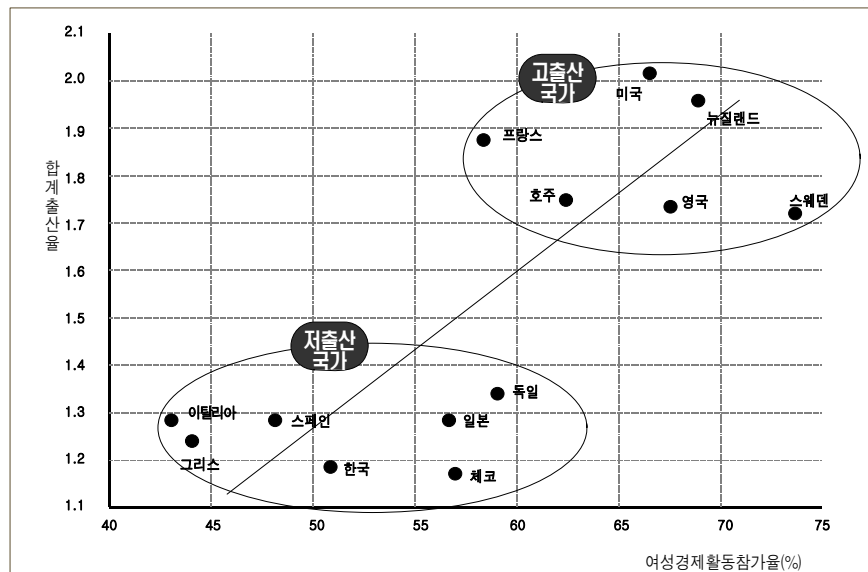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을 출산율 수준에 따라 상대적인 저출산국가와 고출산국가로 분류하여 그 원인과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출산율 추이는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남유럽이나 독일어권 국가의 출산율 변동은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일부 아시아국가의 출산율 변동은 유교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출산율은 전통적으로 아주 높았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분업적인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도 여성의 사회 진출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 진출 특히,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발전상과 전통적인 역할 규범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성들은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급기야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며 또한 자녀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들 문화권에 속한 국가 대부분이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어 온 북유럽국가나 불어권국가 및 영어권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하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도 이들 문화의 영향에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출산율은 사회통념, 풍습, 관습 등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여성의 증가, 사회 관습의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3-7 참조). 결국, 국가적 대응 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의식 개혁, 사회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적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확충 및 지원하고, 산전 후휴가·육아휴직제를 활성화시키며, 탄력적 근무제와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3



자료: 통계청, 『2004 출생·사망통계』, 2005 OECD, OECD Factbook, 2005.

셋째,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인해 고착화된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전가 현상을 양성평등적 분담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 및 출산(자녀양육)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사회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고용(높은 청년실업, 대졸자와 비대졸자간의 임금격차), 교육(교육기간의 장기화, 높은 사교육비, 과도한 대학진학률)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사회-가족분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을 소비주체가 아닌 성장주체로 인식하여 자녀양육을 가족에 전가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대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확산을 고려하여, 이들 다양한 가정에 대해 법률혼 가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실히 정립하여야 한다. 지금은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기억이 상존하고 있는 시기로서, 과거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저출산대책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정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나, 비예산사업만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GDP 대비 0.07%(2002년 엔젠플랜)에 불과하여, 프랑스의 3%와 비교하여 아주 낮다. 실제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정적인 투입수준과 정적(positive)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표 3-6 및 그림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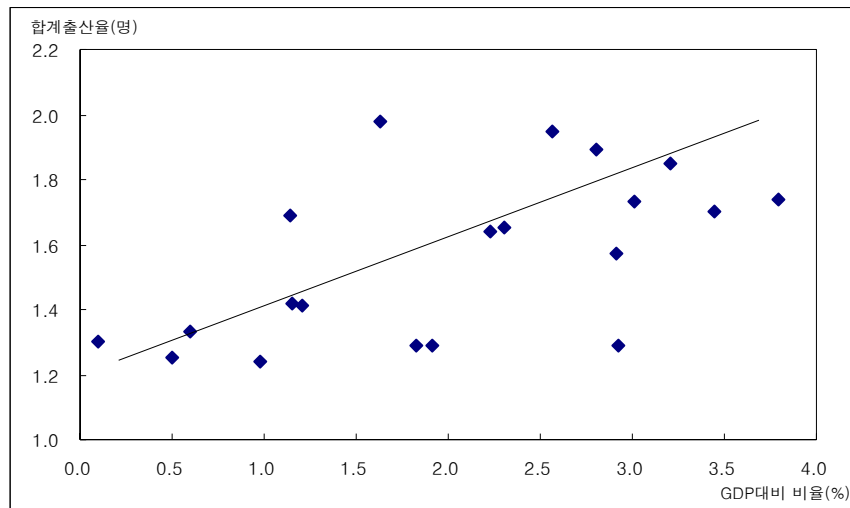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가족급여) 투자비율, 1990~2001
(단위: %/ GDP)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프랑스	2.8	2.7	2.7	2.9	2.9	3.1	3.0	3.1	3.0	3.0	2.8	2.8
스웨덴	4.5	4.9	4.9	4.4	4.2	3.7	3.4	3.2	2.9	3.0	2.8	2.9
미국	0.5	0.6	0.6	0.6	0.6	0.6	0.6	0.6	0.4	0.4	0.4	0.4
독일	1.7	2.0	2.1	2.1	2.0	2.0	1.9	1.9	1.9	1.9	1.9	1.9
일본	0.4	0.4	0.4	0.4	0.4	0.4	0.5	0.4	0.5	0.5	0.5	0.6
스페인	0.3	0.3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한국	0.0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OECD평균	1.8	1.8	1.9	1.9	1.9	1.9	1.9	1.9	1.8	1.8	1.8	1.9
EU 평균	2.1	2.2	2.3	2.3	2.4	2.3	2.3	2.2	2.2	2.2	2.1	2.2

주: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 소득보전, 아동가정의 소득보전, 임신수당, 보육서비스, 학교급식 등 포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

[그림 3-8]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 예산비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2001



주: 동구권국가(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터키 및 비유럽국가(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외.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

제 4 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제 1 절 개요

인구변동요인 중 하나로서 출산에 관한 이론은 대체적으로 출산을 변천이론과 출산을 결정요인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출산을 변천이론은 인구전환이론과 연계하여 전개된다. 출산을 변천이론 중 출산율이 어디까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론은 다시 출산율이 제로(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이론들, 출산율은 일정 수준에서 다시 증가하여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론들, 그리고 출산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론들로 구분된다.

베커의 출산력모형에 의하면, 개인은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기 등을 통해 의무 등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David, 1963).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세대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지 못한 경우 출산율은 0까지 감소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부부가 기대 이상의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경우 자녀 갖기를 주저하여 출산율이 0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Easterlin, 1978). 사회경제적출산력이론(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교육, 도시화, 신상품, 신기술 등이 소득과 시간과 관련하여 자녀보다 이득이 될 경우, 자녀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Easterlin, 1983). 출산력 변화에 대한 이상론적 이론(Ideational

Theories of Fertility Change)에서도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reston, 1987). 인구전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해서도, 출산력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이론들과 달리, Blake는 어느 사회든지 가족 규모의 최저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Blake, 1968).

출산율 변천이론의 일부로서 출산율 변동의 원인 내지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들이 오래 전부터 발달하여 왔다. 과거에 고출산의 원인에 관한 이론들이 발달되어 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이론들이 발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관한 분석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원인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과거 피임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개인 또는 부부가 출산을 조절하여 최종적인 자녀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피임 보급과 함께 개인 또는 부부는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산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산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경제사회적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심리적 요소들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저출산의 원인들도 실로 복잡 다양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들 저출산 원인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서로 얽혀있어 불가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크게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물론, 이들 두 측면을 완전히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일부 고찰결과는 중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고찰

가. 결혼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하여 왔다. 그 결과, 대부분 조기에 결혼을 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 왔다(Kwon, 1977).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현대에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참여와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며, 독신의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 참여 자체는 결혼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교육은 물리적 시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조건과 능력을 변경시키고 심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결혼과 출산 행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수준이 결혼 여부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Moon(1990), Noriko와 Kim(1991) 등은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Choe와 Li(1997)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혼현상이 평생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다. Palomba et. al.(1997)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학력 고연령 여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Goldman, Westoff, and Hammerslough(1984)도 결혼을 원하는 고학력여성들이 결혼시기를 늦춘 결과, 교육수준 및 연령 등의 조건에서 적합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여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한 박민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있다.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는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박민자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가정 경제론의 시각에서 결혼 의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비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의미의 변화는 오히려 적절한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만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결혼의 상관성을 연구한 Oppenheimer(1997)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결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에 따라 결혼 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이 증가하고, 이것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반박한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내 성별 분화에 따른 노동은 더 이상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혼연령의 변화를 산업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 수준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 한경혜(1990)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과 저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목적, 가사 분담이나 여성취업 등에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도 가부장적 결혼이데올로기가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속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양성평등적 관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른바 “동시성의 비동시성”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경향은 상황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함인희 2001).

따라서 결혼의미의 변화를 결혼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는 순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압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른 선택의 범위와 유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혼화 현상을 빚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삼식(2005)은 법률혼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사회에서 만혼과 평생비혼은 출산을 저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만혼은 출산(초산)연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출산(초산)연령 상승은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가임기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가임능력을 저하시켜 출생아수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만혼은 후천성불임증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나. 출산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oussel(1994)는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효과)들을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economic effects)으로는 자녀 출산이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부모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화적 요인(cultural effects)으로는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생한 ‘제2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의 변화, 학생 및 여성의 이동 증가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historical dynamics, life style factors)으로는 출산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biographical

mod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외 많은 연구들은 출산행태에 사회·문화, 경제, 교육,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이나 개발수준 및 문화적 조건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UN, 1995).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은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Beets, 1997). 교육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주15)} 또한, 모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녀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에 의하면, 과거에는 고졸수준이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출생아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 출생아수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 국가나 국민을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데에 대부분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가부장적인 유교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며, 독일어권국가와 남부유럽국가들도 전통 보수적인 가톨릭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본 보고서의 외국 사례 분석 참조).

Atoh(1998)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

주15)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모의 첫아이 출생연령 증가 및 무자녀 비율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은 독일의 제2차 인구전환(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의 모토로 간주되고 있다(Beets, 1997).

비용과 일-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결혼과 출산시에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게 되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한다. 이는 가구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은 결국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고, 남성과의 임금 차이가 적어져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Atoh, 1998).^{주16)} 이에 대해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는 한국사회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한 부인들의 출생아수가 전체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사와 경제활동참가율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Beets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현상을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의 남녀간 불평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대부분 연구들은 남녀간 불평등의 지속은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간의 평등이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alomba와 그의 동료들은 남녀평등이 출산율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Palomba et. al., 1997). 즉,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16) 일본경제기획청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이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A), 자녀출산 및 양육 후 5년 후에 풀타임 직업에 복귀하여 60세까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B), 자녀출산 및 양육 후 5년 후에 파트타임 일에 복귀하여 60세까지 종사하는 경우(C) 등 세 경우에 있어서 생애소득을 비교하면, B는 A의 26.8%, C는 A의 78.4%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toh, 1998).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주17)}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유무형의 비용으로, 음식물이나 의류, 교육비 등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화폐의 양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출을 의미한다(Lazear & Michael, 1988; 김현정, 1999, 재인용). 좁게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순수한 경제적 부담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물자와 금전 등 유형적 지급의 의미와 자녀를 보호와 같은 무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정귀호, 1987).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노동력 창출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주체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Muller(1972)도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를 갖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의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소자녀관 규범이 보편화된다고 하였다.

윤희은(1996)은 자녀양육비 증가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출산율 감소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Atoh(1998) 역시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교육비 증가가 부모에 지우는 부담이 크므로 부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특히, 여성)

주17) 예를 들어, 남녀평등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부장적인 사회풍속이 강한 남부유럽(이탈리, 스페인 등)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도 가사와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앵글로색슨과 노르딕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6장을 참조한다.

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용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em과 Hoem(1996)은 그 실례로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에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Witt와 Wagner(1995)도 동독의 출산율이 통일 전(1990년) 1.6명에서 통일 후(1993년)에 0.7명으로 낮아진 이유를 고실업, 시장에서 노동가격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illari and Kohler(2004)에 의하면,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적 전망은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연령을 상승시키고 출산율을 하강시키기 쉽다고 한다.

일부 연구들은 주거의 안정성이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혜정(2005)은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부담이 낮은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저출산국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음을 통해 주거비용부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주18)} 또한, 높은 주택가격은 여성의 결혼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misch, 1988).

국가 또는 거주지역의 인구밀도(Heer, 1966; Friedlander & Silver, 1967)나 주택거주자의 절대적 주거밀도 또는 주관적 밀도 등 주거밀도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19)} 예를 들어, Felson과 Solaum(1975)

주18) 싱가포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보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핀란드는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면, 주택융자금 등을 제공하며, 스웨덴에서는 유자녀 주택수당을, 프랑스에서는 가족상태, 피부양가족의 수 등 수급자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주거수당을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 및 출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혜정(2005)은 둘째 자녀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분석에 대한 연구에서(응답자의 취업상태를 통제하지 않은 방법론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정책으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장진경(2005)의 연구에서도 자녀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아파트 우선 분양 등의 주거지원 강화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19) 주거밀도는 주택에 대한 불만족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밀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이 잠재적

은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산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자신들도 지적인 것처럼 아파트 거주자의 출산율이 낮다고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문화적 환경이나 주택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Booth(1976)는 토론토의 아파트 거주자와 출산력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Curry 등(1978)은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흑인계와 멕시코계 미국인 등 인종적 특성에 따라 아파트거주여부와 출산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거이동이 가능할 때 출산력이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의 수가 출산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외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다. Freedman(1995)은 저출산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주의적 발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연기 등 사회·문화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데,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Lesthage et al, 1988). 저연령층은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아 가족부양 의무를 지지 않는 일종의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충적 미혼(parasite singles)이 증가하여 결국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Atoh, 1998).

으로 육체적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Fuller 등, 1993)를 통해 주거밀도는 주거 복지를 위한 주요지표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고찰

가. 기본모델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모델은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이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부는 자녀라는 상품의 소비자이다. 부부는 주어진 자녀의 가격과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녀수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

$$U = U(n, s) \quad (1)$$

여기에서 n 은 자녀수이며 s 는 일반적인 재화의 소비를 나타낸다. 효용함수 U 는 효용함수의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 ($U_n > 0$, $U_{nn} < 0$, $U_s > 0$, $U_{ss} < 0$).

부부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함수 (1)를 극대화하는 n 과 s 를 선택한다.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I = \pi_s s + p_n n \quad (2)$$

I 는 가구의 소득, π_s 는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 p_n 은 자녀의 “가격”을 나타낸다. 부부는 소득을 일반상품에 소비하거나 자녀에게 대한 지출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자녀의 가격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지출을 의미한다.

예산제약 하에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요함수(demand-for-children)를 얻는다.

$$n = N(p_n, I) \quad (3)$$

식 (3)은 자녀의 수요가 자녀의 가격 및 소득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녀의 가격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partial n / \partial p_n$ 은 소비자 이론에서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전형적인 소득효과 $\partial n / \partial I$ 로 파악된다.

출산에 관한 경제모델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상승하면, 즉 자녀의 가격이 증가하면 자녀라는 상품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가격의 증가는 다른 한편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자녀가 보통재라고 가정하면 자녀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자녀의 가격이 오르면 자녀수는 감소할 것이다. 둘째, 소득의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소득효과는 이론적으로 불명확하다. 그러나 자녀가 열등재(inferior good)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나. '자녀수와 질' 모델(the quantity-quality model)

앞에서 제시한 기본모델은 부부의 소비행위로서의 출산에 관한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비용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기본모델은 소비자 수요이론을 넘어서는 출산행위에 특유한 함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인 수요이론을 넘어서는 출산행위와 관련된 특징을 반영한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은 Becker(1960)의 '자녀수와 질'에 관한 모델(quantity-quality model)이다. Becker의 연구는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 출산율이 소득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당시 미국의 출산율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Becker는 자녀가 열등재(inferior good)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나 혹은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자녀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대신 그는 자녀에 대한 수요는 양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당 지출로 측정되는 질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Becker의 모델에서 자녀에 대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U = U(n, q, s) \quad (4)$$

식 (4)에서 n 은 자녀의 수, q 는 자녀의 질, s 는 부부의 소비를 나타낸다. 가구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I = \pi_c nq + \pi_s s \quad (5)$$

I 는 소득, π_c 는 자녀에게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 π_s 는 부모가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다. 예산제약식의 특징은 자녀의 수와 질이 곱하여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제약식이 선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녀수-질의 상호관계가 자녀의 수요에 있어 기본모델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식(4)을 식(5)의 제약조건하에서 풀면 부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녀의 수와 질에 관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MU_n = \lambda q \pi_c = \lambda p_n, \quad MU_q = \lambda n \pi_c = \lambda p_q \quad (6)$$

여기에서 MU_n 는 자녀수의 한계효용, MU_q 는 자녀질의 한계효용으로 나타내며, p_n 는 자녀수의 한계비용, p_q 는 자녀일인당 질의 한계비용이다. λ 는 소득의 한계효용이다. 이러한 한계조건은 (6)에서 자녀수의 한계비용($p_n = q\pi_c$)은 자녀질의 증가함수이며, 자녀질의 한계비용($p_q = n\pi_c$)의 한계비용은 자녀수의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는 자녀수와 자녀질이 가져다주는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수준의 자녀수와 자녀질을 선택한다.

이러한 부부의 자녀수와 질의 최적선택을 설명한 것이 [그림 4-1]이다. 그림에서는 가로축에 자녀수를 세로축에 자녀질을 표시하고 있다. 부부의 효용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은 U 로 표시되어 있다. 부부의 선택은 무차별곡선 U_0

와 예산제약식 $C_0 = nq = (I - \pi_s)/\pi_c$ 가 접하는 a 에서 결정된다. 예산제약식 C_0 는 자녀에게 투입된 가구의 실제 지출수준을 말한다. 즉, 전체 가구소득 I 에서 부모 자신을 위한 소비인 π_s 를 뺀 값을 자녀지출의 가격수준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일반적인 수요이론과 다른 점은 부부의 예산제약식이 선형이 아니라 [그림 4-1]과 같은 곡선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산제약식의 비선형성은 소득증가에 따른 자녀수와 자녀질의 상호작용을 결과한다. 부부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수와 자녀질의 사이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는데 만일 자녀질에 대한 소득탄력성(ε_q)이 자녀수에 대한 소득탄력성(ε_n)보다 크다고 가정한다면^{주20} 소득증가에 따라 부부는 자녀수보다는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킨다. 식 (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rac{MU_n}{MU_q} = \frac{p_n}{p_q} = \frac{q}{n} \quad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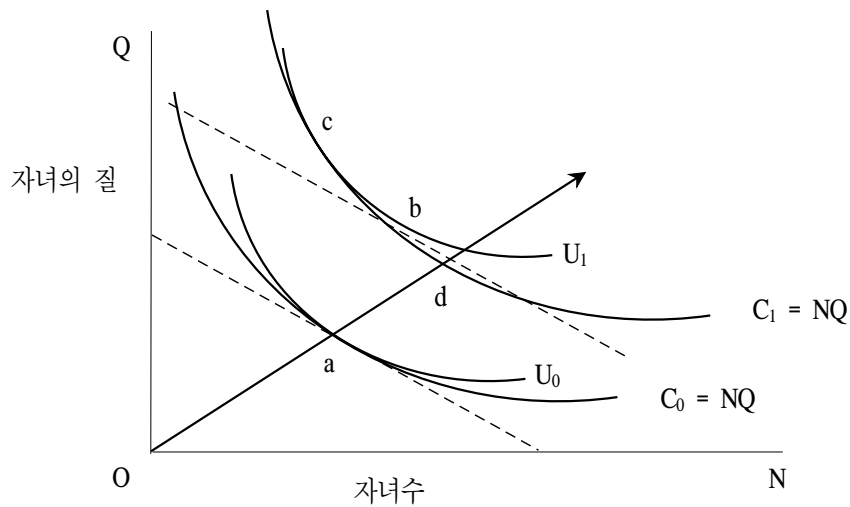
만일 $\varepsilon_q > \varepsilon_n$ 이면 자녀수에 대한 자녀질의 비율(q/n)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의 자녀질에 대한 상대가격(p_n/p_q)이 증가한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부부로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자녀수에 대한 수요보다 자녀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자녀수와 자녀질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증가하여도 자녀수와 자녀질의 한계대체율은 동일할 것이며 소득증가에 따른 균형점의 변화는 Oad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에 대한 총지출은 C_0 에서 C_1 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지출에서 자녀수와 자녀질이 상대적 비중은 소득상승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varepsilon_q > \varepsilon_n$ 이면 C_0 에서 C_1 으로의 소득증가는 균형점이 a 가 아닌 c 가 된다. 이러한 a 에서 c 로의 균형점의 변화는 두 가지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는 순수한 소득효과로서 자녀수와 질의 상대가격 p_n/p_q 가 동일하다고 할 때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수와

주20) 자세한 내용은 Becker and Lewis(1973)와 Willis(1973)를 참조.

질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그림에서는 a 에서 b 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유발된 대체효과로서 순수한 소득효과에 따른 q/n 의 변화가 상대가격 p_n/p_q 를 변화시켜 발생하는 효과이다. 즉, 소득증가로 인해 q 에의 투입이 증가하면 식 (7)에 의해 자녀수의 상대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녀수 대신 자녀질에 대한 투입이 더욱더 증가하는 효과이다. 그림에서는 b 에서 c 로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순수 소득효과를 통해 소득증가가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자녀질에 투입이 증가되는 대체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따라서 소득증가가 자녀수를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그림에서는 양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소득증가가 자녀수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가구의 자녀수·질 선택



출산에 관한 ‘자녀수-질’ 모델이 기본모델과 상이한 점은 부부의 자녀수와 자녀질에 대한 수요를 구분함으로써 소득증가에 따른 자녀수의 수요증가가 자녀질에 대한 투자증대로 상쇄되어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데 있다. 반면 자녀의 출산 및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모델과 동일하다.

다. 가구의 시간배분(time allocation)과 자녀의 수요

출산과 관련된 경제학적 모델의 하나는 가구내 생산(home production)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이 모델은 부부의 효용이 자신들의 소비수준과 자녀수와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는 앞의 모델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자녀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 시장에서의 재화구입과 같은 금전적인 지출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있다. 가구는 가구구성원의 가구내 시간(nonmarket time)과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을 가구내 생산과정(household production process)에 투입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이 산출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예를 들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주부가 제공하는 맛있는 저녁식사는 주부가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과 시간을 투입하여 가정 내에서 생산한 서비스이다. 자녀가 제공하는 효용 역시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부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가구 구성원의 시간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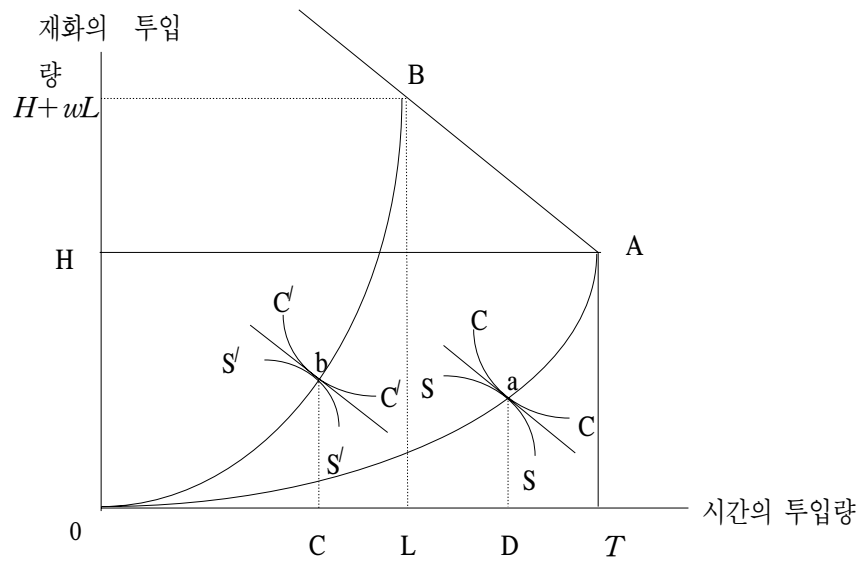
가구 내 생산 모델이 부부의 출산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가정을 하자. 첫째, 남편은 전적으로 시장 활동에 특화하고 있으며 부인만이 가구 내 생산활동을 담당한다고 가정한다.^{주21)} 남편의 소득은 H 이며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부인도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인의 임금은 w 이며 L 은 부인의 시장활동 참여시간이다. 따라서 L 은 부인의 노동공급을 나타낸다. 가족의 총소득 I 는 남편의 수입과 부인의 수입의 합이다. 즉, $I = H + wL$ 이다. 둘째, 부부가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을 ‘자녀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자녀서비스는 $c = nq$ 로 측정된다. 셋째, 가구의

주21) 가구내 생산이론이 특정한 가족내 성별 분업과정을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 즉, 여성이 시장활동에 특화하고 남성이 가구내 생산에 특화된다고 가정하여도 모델의 함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아 여성이 가구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산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내 성별 분업관계를 위와 같이 가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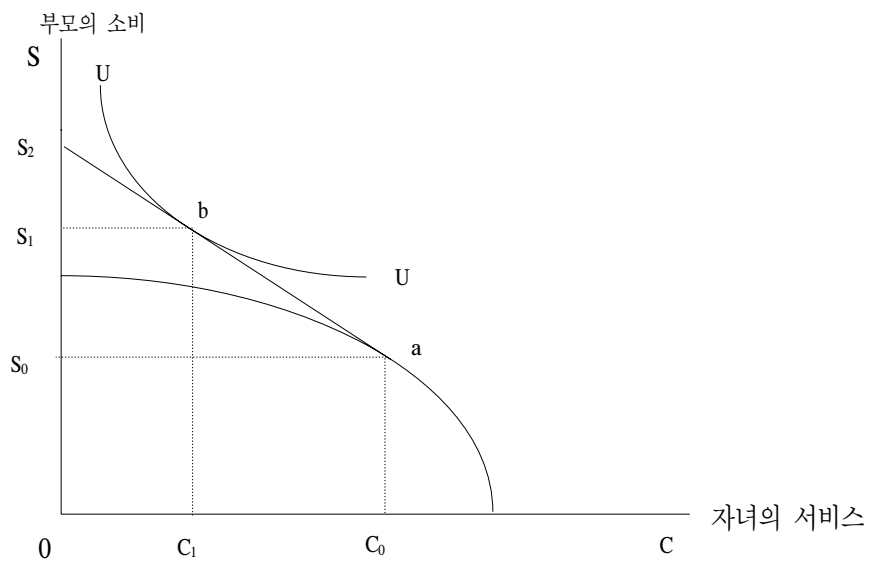
생산함수는 $s=g(t_s, x_s)$ 와 $c=f(t_c, x_c)$ 이다. t_s 와 t_c 는 부인이 가구내의 소비와 자녀의 출산·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을, x_s 와 x_c 는 부모의 소비와 자녀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양이다. 가구내 생산은 부인의 시간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를 생산요소로 한다. g 와 s 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의 형태를 취한다. 모델의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자녀서비스의 생산기술이 부모 소비의 생산기술보다 시간집약적(time intensive)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일반적인 가정내 소비재의 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인의 총 시간 T 는 가사(home work)와 시장활동(market work)에 배분된다. 가사는 가구내 소비재의 생산과 자녀의 출산·양육에 배분되므로 $T=t_c+t_s+L$ 이다. 시장재화의 구입량은 가구의 총소득 $I=H+wL=x_c+x_s$ 에 의해 제약된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가구내에서 시간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2]는 가구내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인 시장재화와 시간의 배분과정을 표현한다. 가로축은 가구내 생산에 투입된 부인의 시간을 세로축은 가구내 생산에 필요한 시장재화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고 있다. [그림 4-3]은 가구내 생산을 통해 산출되는 자녀서비스와 가구내 소비재의 생산량을 표현한다. 가로축에는 자녀서비스의 생산량이 세로축에는 가구내 소비재의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다.

[그림 4-2] 가구의 시간과 재화 투입결정



[그림 4-3] 가구의 소비와 출산의 결정



부부의 의사결정은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가구의 총 수입은 $H\bar{w}$ 가 되고 가구의 재화와 시간의 자원배분은 에지워스상자 (Edgeworth box) $\square_{0TAH}$ 안에서 이루어지며 진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계약곡선(contract curve) QA 곡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자녀서비스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시간집약적이라는 가정은 계약곡선이 [그림 2]에서와 같이 에지워스상자의 원점과 A 를 연결하는 대각선 밑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지워스상자에서 자녀서비스의 산출물의 수준을 표시하는 등량곡선 CC 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이 증가하며 반대로 부부의 소비를 나타내는 등량곡선 SS 는 A 점을 원점으로 하며 A 에서 멀어질수록 산출량이 증가한다. CC 와 SS 가 접하는 접점 a 의 기울기는 가구내 소비재와 자녀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한계생산성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부인이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다.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을 $\hat{w}$ 라고 하면 $\hat{w} = f_t/f_x = g_t/g_x$ 로 정의된다. [그림 4-2]에서는 a 점에서의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직선 AB 의 기울기로 표시된 시장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a 에 상응하는 가구내 소비와 자녀서비스의 생산수준은 [그림 4-3]의 생산가능곡선상의 점 a 에 해당된다.

이제 자녀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여 가구의 결정이 [그림 4-2]의 a 보다 우측에 있는 계약곡선상의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 점에서는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시장에 투입하는 시간의 잠재가격인 시장임금 w 보다 크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인의 시간을 가구내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자녀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여 가구의 결정이 a 보다 좌측에 있는 계약곡선상의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때에는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시장에 투입하는 시간의 잠재가격인 시장임금 w 보다 작기 때문에 부인의 시간을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부인의 노동시장참여는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시장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그림 4-3]에서 생산가능곡선 a 의 우하방에 위치하는 점에서는 여성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a 의 좌상방의 경우에만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4-2]의 접점 a 에서

는 부인이 가구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의 잠재가격이 부인의 시장임금인 w 와 일치한다. 부인은 총 T 의 시간 중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αD 만큼을 투입하고 가구의 DT 만큼의 시간을 가구의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투입한다.

이제 부인이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L 만큼의 시간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가구의 소득은 남편의 소득 H 에 부인의 소득인 wL 을 합한 $H+wL$ 이 된다. 가구의 재화와 시간의 자원배분은 $(LB)(H+wL)$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생산은 C/C' 와 S/S' 가 접하는 접점 b 에서 이루어지며 접점 b 에서의 기울기는 부인이 가구내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의 잠재가격이며 이는 부인의 시장에서의 시간의 잠재가격인 시장임금 w 와 일치한다. 부인은 총 T 의 시간 중에서 노동공급에 LT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αC 만큼을 투입하고 CL 만큼의 시간을 가구의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투입한다.

[그림 4-3]은 [그림 4-2]에서의 재화와 시간의 투입이 부모의 소비와 자녀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타나 있다. a 와 b 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성의 시장임금 w 이다.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점은 a 이다. a 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과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일치한다. 생산가능곡선 a 의 좌측에서는 가구내 시간의 가치가 시장임금보다 작으므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생산가능곡선 a 의 우측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가구내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의 가치가 시장임금을 능가하므로 노동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가구내 생산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a 에서는 C_0 만큼의 자녀서비스와 S_0 만큼의 부모의 소비가 선택된다. 부인이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는 b 에서 가구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부인이 노동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가구소득은 증가하고 부인의 가구내 시간투입이 감소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가구는 여성이 자녀에 시간을 투자할 때보다 가구의 생산가능곡선을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가구의 출산결정은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 중에서 부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즉 가구의 출산과 부모의 소비는 생산가능곡선과 무차별곡선 UU 가 접하는 b 에서 이루어진다. b 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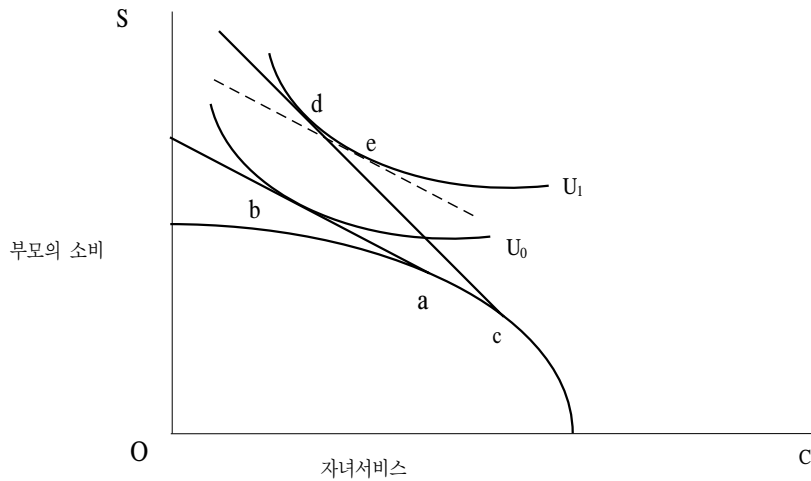
부모의 소비가 S_1 , 자녀서비스가 C_1 만큼 생산된다.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부모의 소비는 증가하고 자녀서비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과연 부부의 출산결정이 a 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b 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부부의 선호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강한 부부의 최적 출산결정은 a 의 오른쪽에 위치한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시장임금을 능가하기 때문에 부인은 노동공급을 하지 않고 가정내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반대로 자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부의 최적 출산결정은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a 의 왼쪽에서 결정된다. 가구내 시간의 잠재가격이 시장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부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자녀서비스의 생산수준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그룹의 가구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될 것이다. 한편, 가구의 선호가 매우 약한 경우 균형점이 S_2 인 모서리 해(corner solution)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호를 가진 부부는 자녀를 갖지 않고 시간과 소득을 모두 자신들의 소비를 극대화하는데 사용한다.

가구내 생산모델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여성의 시장임금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이다. [그림 4-4]를 보자. 여성의 시장임금 w 가 증가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한계점이 a 에서 c 로 이전한다. 따라서 새로운 임금 w' 에서의 생산가능곡선은 종전 임금 w 에서의 생산가능곡선 밖에 위치하게 된다. 여성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금의 증가가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녀에 투입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선택은 b 에서 d 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의 증가가 자녀서비스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가 C 를 증가시키는 소득효과(be)가 시장임금증가에 수반하는 자녀에 투입되는 시간의 기회비용 증가로 인해 C 를 감소시키는 대체효과(ad)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만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다면 자녀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효과가 더 커서 $C=nq$ 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녀수와 질의 대체효과에 의해 자녀수가 감소

하는 반면 자녀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부부의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녀의 질이 감소하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림 4-4] 여성임금 증가의 효과



더구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상쇄하는 정도는 여성의 노동시장활동에 대한 투자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을 보이는 경우 강화된다 (Willis 197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노동시장에의 참여경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시장임금의 증가가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활동에 투입하게 한다. 그 결과 여성의 시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여성의 시장활동에 대한 시간의 잠재비용을 증가시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장활동에 투입하게 만든다. 이는 생산가능곡선이 [그림 4-4]에서와 같은 볼록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d 나 c 점의 좌상향에서 오목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생산가능곡선에서는 자녀를 갖지 않고 대신 여성의 시간을 노동시장경력을 쌓는데 특화시키는 부부나 아예 여성이 노동시장 경력 구축을 포기하고 가구 내 생산에 특화하는 부부

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출산에 관한 가구 내 생산이론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은 여성의 시간을 가구 내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활동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만일 여성의 시간을 자녀의 출산·양육에 투입하는 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부부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면 시장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시간을 더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출산결정은 여성의 가구 내 활동과 시장활동의 상대적 가치 및 부부의 자녀에 대한 선호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임금수준의 증가는 여성의 시장참여를 증대시키고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출산의 생애주기 모델(life-cycle theory of fertility)

출산에 관한 경제모델 중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구의 출산결정에 관한 동태적 모델이다. 동태적 모델은 부부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노동공급과 출산 및 소비를 장기적으로 결정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부부의 효용함수나 예산제약식 등은 앞의 모델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시점마다 효용함수와 예산제약식이 설정되어 있고 부부는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생애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출산과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출산에 관한 동태적 모형은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명시적인 해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모델의 함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동태적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동태적 모델이 부부의 출산 결정은 물론 출산시기의 결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모델(Happel et al. 1984; Mofitt 1984; Hotz and Miller, 1988)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부부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소득감소가 소비와 출산시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선 미래의 소득능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의 소비에 충당하는 것이 자유로운 완벽한 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을 가정해 보자. 자녀의 출산시기의 결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야기하는 비용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에 따른 여성의 장래소득 감소의 정도에 달려있다. 완벽한 자본시장하에서 여성의 시장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자녀의 출산·양육기간 동안에 감소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자녀를 갖는 시기에 관해 무차별하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시기의 결정은 효용극대화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만약 결혼 당시 부인의 소득획득 능력이 작거나 거의 없고 시장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 부인의 평생 소득능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결혼생활 초기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반대로 부인이 일정 정도의 소득획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 출산시기를 늦추고 결혼 초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소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완전한 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 출산시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의 소득능력과 그 소득능력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간 동안에 감소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제 반대로 불완전한 자본시장을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완전자본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남편의 소득이 출산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소득능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감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부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하는 출산시점은 남편의 소득이 가장 높은 때, 즉 소비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이 가장 낮은 때이다. 남편의 소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이 부부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부는 자녀의 출산을 자신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고 소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한다. 둘째, 여성의 소득능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감소하는 경우에는 출산시기의 결정은 부부의 소비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출산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자는 출산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후자는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태적 모형이 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또 하나의 결론은 자녀의 출산·양육비용의 변화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문제는 첫째야 출산과 둘째야 출산 사이의 간격이 부모의 효용극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은 자녀가 미래의 때 시기에 주는 효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효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녀를 갖기로 원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출산간의 간격을 좁혀 초아출산 이후 곧바로 2아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태적 효용극대화를 위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시점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모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우 부모는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때까지 추가적인 출산을 늦추어 출산간격을 조정하게 된다. 부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산간격을 결정하게 된다.^{주22)}

제 3 절 연구모형

이 연구는 저출산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한 부문은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며, 또 다른 부문은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출산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또는 부부)은 추가출산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기가 실천되는지 여부는 소요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비용은 금전비용 이외 시간, 사회규범, 건강,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들과 개인적 특성들의 기능으로서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까지 포괄한다.

요컨대 출산행위는 개인적인 특성들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주22) 출산간격은 자녀양육비용의 변화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일시적인 자녀양육비용의 상승은 부부로 하여금 2아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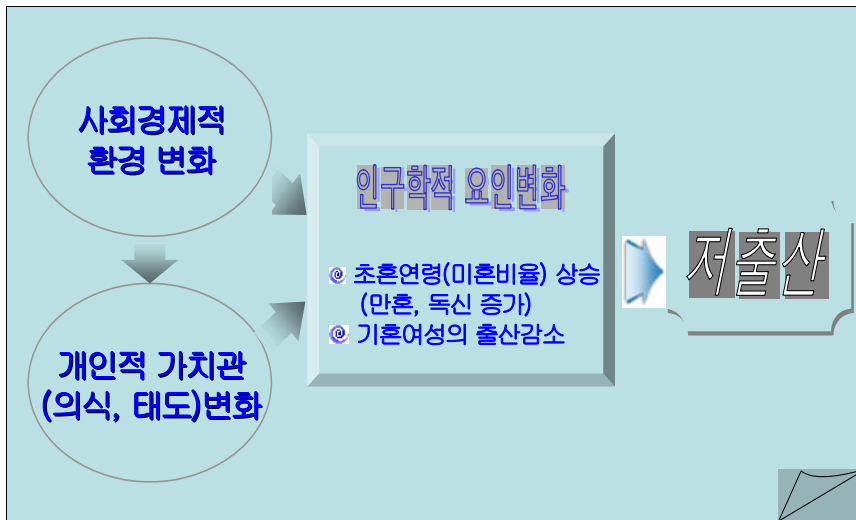
고 할 수 있다. 외국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저출산의 원인들은 아주 다양하며, 이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의 양적 부족 및 질적 수준 미흡,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자녀양육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적 측면에서 저출산 원인들은 가정 내에서의 양성간의 역할 불평등, 가족구조 변화(핵가족 보편화 및 확대가족 감소), 전통적인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등)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 대부분은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혼행태의 변화가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원인도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은 사회구조적 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출산 동기 및 실제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모형에서 출산은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을 그리고 결혼은 유배우율 또는 미혼율로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체적인 출산율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출산과 미혼남녀의 결혼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기본특성 및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은 1차적으로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율의 인구학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나, 궁극적으로는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율을 결정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모형을 도식하면, [그림 4-5]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분석모형은 2단계 작업으로 구분된다. 1단계 작업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혼-결혼-자녀출산의 생애경로별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미혼상태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규명한다. 이어서 결혼 후 무자녀에서 1자녀로, 1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다. 2단계 작업에서는 탐색적 작업에서 도출된 출산관련 요인들 각각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하나의 저출산 원인은 모

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원인별로 경제사회적 환경과의 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계층간 저출산 원인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도 저출산 원인별 정책대상을 파악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된 저출산 원인들은 그 정도에 따라 극복해야할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림 4-5]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제Ⅱ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제 5장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제 6장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제 7장 무 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 8장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 9장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10장 이행요인 분석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 5 장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제 1 절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제2부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초저출산현상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각 단계별로 상이한 이행과정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데에 기간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의 산정방식이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코호트별 태도 및 행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템포(tempo) 왜곡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최근 출생·결혼 코호트의 태도 변화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바, 생애주기별 출산 이행을 분석을 통하여 극히 낮은 출산율 수준의 지속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해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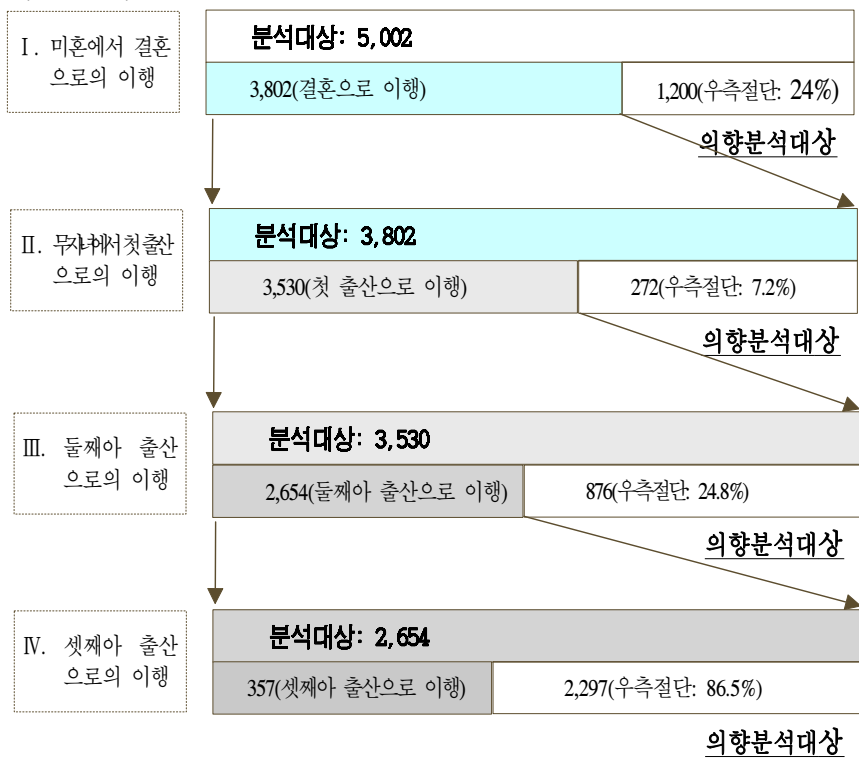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결혼 및 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변화 추세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대상 생애주기는 1)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2) 무자녀에서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3) 1자녀에서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4) 2자녀에서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행연구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 아직 관찰 대상인 결혼이나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각 부분의 연구대상 및

주23) 출산력 연구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한마디로, 한 여성이 재생산기간에 걸쳐 낳는 자녀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코호트율과 기간율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가령, 한 여성의 완결 가족규모 곧 코호트 출산율이 변함없는 경우에도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출산 시기의 지연이 발생한다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저하하고, 혼인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오히려 출산시기가 빨라진다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다르다. 첫째, ‘이행분석’의 경우 관찰사건(event)인 ‘결혼 또는 출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찰사건이 ‘시간’을 포함하는 변수이므로 이것에 적합한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의향분석’의 경우 관찰사건은 향후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분석 대상은 아직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분석 방법은 ‘관찰 사건의 계획 여부’와 같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종속 변수 분석에 적합한 ‘이항 로짓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림 5-1] 이행단계별 분석대상의 변화



실제 분석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에 포함된 각 생애주기별 분석대상은 [그림 5-1]에 제시되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단계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여성 5,002명이 분석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결혼을 한 여성은 3,802명이며 나머지 1,200명은 관찰사건인 결혼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우측절단(right censored) 사례가 된다. 이때 결혼을 경험한 3,802명은 첫 출산 사건에 노출된 집단으로서 다음 단계의 분석대상 모집단이 된다.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우측절단 사례들은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로짓분석의 분석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이행단계별로 분석대상이 조정된다.

제 2 절 생애경로 이행 분석방법

1. 단계별 이행 분석방법

종속변수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할 경우, 이를 분석하는 최적의 방법은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이다(Allison, 1995; Cox and Oakes, 1984).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사건 경험률도 변화한다. 어떤 개인이 다양한 요인의 변화에 따라 관찰 사건으로의 이행률(transition rate)이 매 순간 변할 때, 각 시점에서의 순간 이행률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순간 이행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간 이행률 즉, ‘해azard rate(hazard rate)’^{주24)} 일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 바로 생존분석이다(Allison, 1995; Yamaguchi, 1991).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위험(hazard)의 특수한 모습

주24) ‘hazard rate’의 번역어는 ‘재해율’, ‘이행률’, ‘탈출률’ 등 다양하다. 관찰 기간 동안 관찰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서 이 확률은 관찰 시점에 따라 변화된다. 따라서 관찰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재해율’은,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관찰 기점에서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확률인 ‘생존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건사분석’ 또는 ‘생존분석’이 주로 공학이나 의학에서부터 시작된 연구방법이어서 ‘hazard rate’을 주로 ‘재해율’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이 번역어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어색한 표현인 까닭에 이 글에서는 ‘hazard rate’을 ‘해azard rate’로 명명하고 이후 ‘재해’와 병용하겠다.

을 가정하지 않은 이른바 비모수모형(nonparametric model)을 가정함으로써, 독립변수(covariate)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 생존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점 T_i 를 개인 i 가 관찰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개인 i 가 시간 t 에서 관찰 사건을 경험하는 위험(hazard), $h_i(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h_i(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_i \leq t + \Delta t \mid T_i \geq t)}{\Delta t} \quad (1)$$

결혼 및 출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위험을 정의하면 우리는 결혼 및 출산에 이르는 시점까지, 임의의 시점에서의 생존함수(生存函數) S 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S(t) = \exp \left\{ - \int_0^t h(u) du \right\} \quad (2)$$

비례위험모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h_i(t) = \lambda_o(t) \cdo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quad (3)$$

양변에 대수(對數)를 취하면, 대수-위험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begin{aligned} \log h_i(t) &= \log \lambda_o(t) + \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 &= \alpha(t) + \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end{aligned} \quad (4)$$

위와 같이 도출된 모형에서 계수는 사건으로 이행할 변수별 해자드율을 의미한다. 해자드율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관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해자드율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관찰 사건으로 이

행할 확률은 더 커진다. 분석 계수의 값이 음(-)이면 해자드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 계수의 값이 양(+)이면 해자드율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생애주기별 이행 분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은 우측 절단(right censored)된 경우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분석된다. 이렇게 조사시점까지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측절단된 자료로서 분석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줄이고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건사분석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단계별 이행의향 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양한 예측변수가 있을 때, 결혼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추가자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등의 이분적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때 대단히 유용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해당 특성, 곧 결혼계획이나 추가자녀계획의 확률을 로짓변형(logit transformation)을 예측하는 방정식의 회귀계수(표준오차와 유의수준)로 추정한다.

종속변수인 추가자녀계획의 확률을 $P(y)$ 라고 하면, 이것을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y) = \frac{1}{1 + \exp(-\log \hat{y}(p))} \quad \text{또는}$$

$$P(y) = \frac{1}{1 + \exp[-(\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5)$$

위의 방정식 (5)에서 $\beta_0, \beta_1, \beta_2, \dots, \beta_k$ 은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를 말하고, $x_1, x_2, \dots, x_k$ 는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이다. 또 회귀방정식에서 $x_1, x_2, \dots, x_k$ 이 독립변수이고, $\beta_0, \beta_1, \beta_2, \dots, \beta_k$ 이 회귀계수일 때,

$$\ln(p)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6)$$

위의 방정식 (6)의 양변에 지수(exponential) 값을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게 된다.

$$\begin{aligned} \text{승산비(odd ratio)} &= \frac{p}{1-p} = \frac{\text{추가자녀계획을 가질 확률}}{\text{추가자녀계획을 가지지 않을 확률}} \\ \text{승산비} &= \frac{p}{1-p} = \exp(\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7) \end{aligned}$$

방정식 (7)에서, 우리는 특정의 독립변수 x_i 가 1단위씩 늘어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승산비는 $\exp(\beta_i)$ 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독립변수 x_i 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승산비는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송경일·안재익, 1999).

제 6 장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1. 결혼이행 분석

결혼으로의 이행률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미혼자와 기혼자를 통합하여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기혼자의 경우는 초혼연령이, 미혼자의 경우는 아직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조사시점(2005년 5월)까지의 연령이 고려된다. 기혼자의 경우는 결혼이 두 번 이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혼을 결혼이라는 사건의 발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혼자는 출생 후 초혼까지의 연령을, 미혼자는 출생 후 현재까지의 연령을 관찰기간으로 두는 생존분석이 가능하다. 생존분석에서 분석되는 바는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순간이행률(hazard rate)과 이러한 순간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covariate)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생존분석모형인 Cox proportiona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표 6-1>은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률(이하 결혼이행률)과 그 요인을 Cox proportional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들이다. 결혼이행률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된 변수는 관찰기간(종속변수), 연령대, 교육수준, 취업경험유무이다. 결혼이행률 분석에서 동원된 예측변수(covariate variables)가 연령대, 교육수준, 취업경험으로 제한된 이유는 2005년도 조사에서 기혼자 뿐 아니라 미혼자들의 생애사(life history)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추후분석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조사대상자들의 형제순위와 성구성(sex composition) 등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와 미혼자의 생애사도 다르게 구축되어 있는 면도 자료이용성을 크게 제약하는데 그 한 예로는

최종학력을 마친 시점이다. 학력에 대한 생애사가 기혼여성에 있는 반면, 미혼여성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결혼이행률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즉 기혼자의 경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상황과 태도변수 등은 예측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생존분석에서 가용한 변수들을 제한하게 된다.

결혼이행률의 분석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중도절단(censored) 사례인 미혼여성 1,200명, 결혼이라는 사건을 이미 경험한 사건(event) 사례 기혼여성 3,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원래 미혼조사에는 남녀 2,67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혼여성과의 통합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생존분석에서는 미혼여성(1,200사례)만을 분리하게 된다. 한편, 기혼여성 중에서 교육수준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2사례는 제외하여 3,800사례만을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표 6-1〉 결혼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수	(단위: 명, %)		
	전체	미혼여성	기혼여성
사례수(명)	(5,000)	(1,200)	(3,800)
미혼(중도절단)	24.0%	----	----
기혼(사건)	76.0%	----	----
관찰기간 평균(표준편차)	10.2(3.6)	10.7(4.6)	10.1(3.2)
연령			
20~24세	14.5%	54.7%	1.8%
25~29세	16.3%	30.3%	11.8%
30~34세	23.4%	10.4%	27.5%
35~39세	24.1%	3.0%	30.8%
40~44세	21.7%	1.7%	28.1%
교육수준			
중등 이하	6.4%	0.9%	8.2%
고등학교	47.7%	22.5%	55.7%
전문대학	17.4%	29.6%	13.5%
대학교 이상	28.5%	47.0%	22.6%
취업경험			
취업경험 없음	15.5%	23.2%	13.1%
취업경험 있음	84.5%	76.8%	86.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생존분석에서 다루게 되는 종속변수는 관찰기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는 초혼이 적어도 15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고, 관찰기간을 만연령 16세가 되는 시점부터 조사시점인 2005년 5월까지의 연령(미혼여성의 센서링기간)과 초혼까지의 연령(기혼여성의 생존기간)으로 계산하였다. 계산과정에서 밝혀줄 바는 주어진 조사 자료에서의 출생연월이 음력과 양력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음력으로 출생연월이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는 1개월을 추가함으로써 양력으로 환산한 대략의 현재연령과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차이가 확연한데, 미혼여성들이 기혼여성들보다 젊은 층에 속한 비율이 훨씬 높다. 교육수준은 최종교육기관에 입학하였는지를 통해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차이가 뚜렷하다.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이 젊을 뿐 아니라 교육수준도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한편, 취업경험유무는 결혼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유무는 출생 후 지금까지 취업경험유무를, 기혼여성의 취업유무는 조사지침에 따라 초혼 2년 전부터 초혼 때까지의 취업경험유무를 측정하고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미혼여성의 경우 현재까지의 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76.8%, 기혼여성의 경우 초혼 2년 전부터 초혼까지 취업을 경험한 86.9%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취업경험비율의 차이는 우선 미혼여성의 상당수가 아직 학생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추후분석에서 제시).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가능성에 노출된 기간이 기혼여성에게서 높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분석

미혼여성과 기혼여성들을 상대로 결혼이행률을 살펴본데 이어, 여기에서는 미혼자들의 결혼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혼자들의 결혼계획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결혼이행률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조사 또한 남녀 미혼자를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도 미혼자의 결혼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남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의 결혼계획을 계획여부(종속변수)와 다양한 범주형 독립변수로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로짓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6-2>은 로짓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이다. 조사대상 2,670명중에서 분석에 이용된 사례는 해당 변수에 결측치를 보인 10사례를 제외한 2,640사례이다(미혼남성 1,146사례; 미혼여성 1,194사례). 결혼의향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중 미혼자 조사표의 4번 문항인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을 “1. 결혼할 생각이 있다”를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로 그 이외 응답을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의 결혼의향유무는 구체적으로 결혼의사를 밝히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녀전체 중에서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자는 78.8%이지만 미혼남성(82.7%)보다는 미혼여성(74.1%)의 비율이 낮다.

<표 6-2> 결혼의향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 수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율/평균	비율/평균	비율/평균
사례수(명)	(2,640)	(1,146)	(1,194)
결혼의향유무(1=있음; 0=없음)	78.8%	82.7%	74.1%
결혼필수성(1=하는 편이 좋다; 0=그 외)	61.6%	71.7%	49.4%
성(1=여성; 0=남성)	45.2%	----	----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9.8%	34.9%	23.6%
전문대학	25.2%	21.8%	29.2%
대학교	29.8%	40.1%	43.8%
대학원	3.2%	3.1%	3.4%
거주지역(1=동; 0=읍면)	92.7%	91.7%	93.8%
연령			
20~24세	45.7%	38.4%	54.6%
25~29세	31.8%	33.0%	30.2%
30~34세	14.9%	18.4%	10.6%
35~44세	7.6%	10.1%	4.6%
취업 및 학생여부	54.9%	52.5%	57.9%
취업	54.9%	52.5%	57.9%
비취업	18.0%	17.9%	18.1%
학생	27.1%	29.5%	24.1%

〈표 6-2〉 계속

변 수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율/평균	비율/평균	비율/평균
개인부채여부(1=있음; 0=없음)	13.2%	16.0%	9.7%
단독가구여부(1=예; 0=아니오)	16.4%	17.8%	14.7%
아버지생존여부(1=생존; 0=사망)	83.5%	81.4%	85.9%
어머니생존여부(1=생존; 0=사망)	95.0%	94.4%	95.8%
부모이혼경험(1=있음; 0=없음)	9.2%	9.0%	9.4%
형제자매이혼경험(1=있음; 0=없음)	3.1%	4.0%	2.1%
성관계와 동거에 대한 개방성(표준편차)	4.0(1.5)	4.3(1.4)	3.6(1.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결혼의향분석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 된다: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구 및 가족특성,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태도 등이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전체미혼자 분석에서), 교육수준, 거주지역, 현재 연령 등이 포함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앞서 기혼여성을 포함해 실시한 생존분석과는 달리 고등학교이하를 준거로 하는 한편, 대학교이상을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세분화였다. 이는 미혼남녀 중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례는 극히 드문 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현재 학력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대학원 교육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남녀전체 중 고등학교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29.8%에 지나지 않고, 그 이외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다. 대학원을 다닌 사람들도 3.2%이다. 남녀별로는 대체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사례의 92.7%가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에게서 동 거주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오늘날 농어촌에 젊은 연령층이 매우 적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대는 현재의 만연령을 4개의 집단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40~44세 집단은 하위 연령 집단인 35~39세와 통합하여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미혼

여성에 비해 미혼남성들이 고연령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들의 평균연령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향은 연령에 따라 직선적인 감소 혹은 상승효과를 보인다고 보다는 일정연령을 중심으로 상승 및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현재 연령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다 음으로는 경제활동상태 및 부채유무 등을 경제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여부와 교육상태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미혼자들이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상태이며, 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먼저 마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즉, 미혼자 중 학생들을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여부에 포함하는 것은 결혼계획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의 경제활동상태는 학생이 아니면서 취업한 미혼(취업), 비취업한 미혼(비취업) 및 재학생과 휴학생(학생)으로 나누고 있다. 전체 미혼자 중에서 취업자는 54.9%, 비취업자는 18.0%, 학생은 27.1%를 차지하며, 학생비율은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특성의 또 다른 변수는 부채유무로 개인의 부채유무로 측정하고 있다. 전체미혼자 중에서 개인부채가 있는 비율은 13.2%이며,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개인의 소득 또한 주요한 경제적 특성이 될 것이지만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및 가족특성으로는 현재 거주가구유형, 부모생존여부, 부모이혼경험, 형제자매이혼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가구유형은 미혼자가 1인가구나 비혈연 동거가구(이하 1인가구)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결혼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압박을 좀 덜 받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체 미혼자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은 16.4%이며,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생존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 또한 부모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미혼자 대부분의 부모가 생존

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생존비율이 아버지의 생존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이혼경험과 형제자매의 이혼경험은 가족성원 중에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미혼 중에서 부모가 이혼을 경험한 비율은 9.2%에 이르며, 형제자매가 이혼을 경험한 비율은 3.1%이다.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는 여러 가지 측정문항 중에서 결혼과 무관한 성관계에 대한 찬성도(개방적 성태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와 혼전동거 찬성도(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두 가지 문항의 합을 이용하였다.^{주25)} 이 두 문항은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측정하는 여러 문항들 중에서 결혼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판단과 함께 통계적인 상관성도 서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주26)} 이 같이 구성된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1점부터 7점까지 그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25)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이외에 결혼의사에 가장 중요한 태도변인은 결혼의 필수성에 대한 찬성도이다. 이는 결혼의 필수성을 결혼의사의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혼의 필수성이 결혼의사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나타난다. 결혼의 필수성은 결혼의사와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결혼의 필수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 본 분석에서는 결혼의 필수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짓모형을 부록에 첨부하고 있다.

주26) 본 분석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요인분석에서 이 두 측정항목간의 관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여성의 결혼이행 요인

<표 6-3>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행률을 분석한 Cox regression model의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유무 모두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연령의 경우, 준거집단인 40~44세에 비해 35~39세의 결혼이행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결혼이행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가령, 현재 연령이 20~24세인 여성들은 40~44세 여성들의 결혼이행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exp(-0.83)=0.44$).

<표 6-3> 결혼이행률의 Cox regression model 분석 결과

	b(s.e)	exp(b)
연령(준거: 40~44세)		
20~24세	-0.83 (0.13)***	0.44
25~29세	-0.43 (0.06)***	0.65
30~34세	-0.16 (0.04)***	0.85
35~39세	0.01 (0.04)***	1.01
교육수준(준거: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3 (0.06)***	0.72
전문대학	-0.72 (0.08)***	0.49
대학교 이상	-0.97 (0.07)***	0.38
취업경험유무(vs. 없음)	-0.40 (0.05)***	0.67
χ^2 (d.f)	680.00(8)	

† p<0.1, *p<0.05, **<0.01,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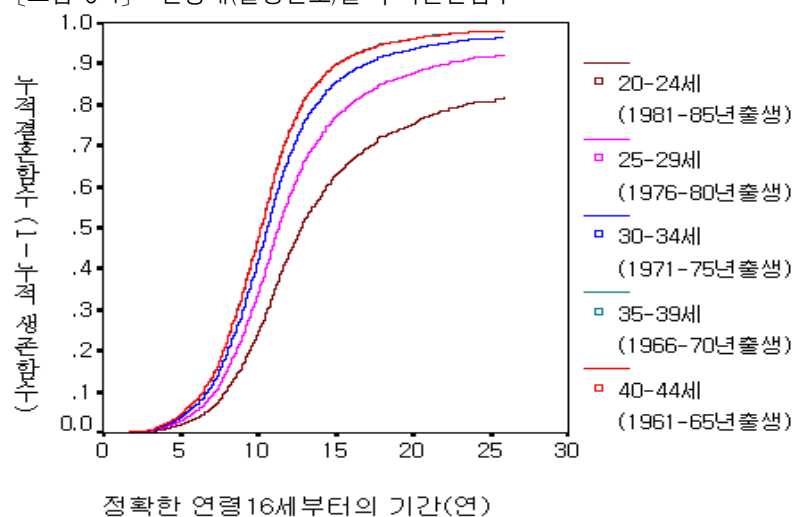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교육수준의 효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행률이 낮게 나타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결혼이행률은 절반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전문대학 $\exp(-0.72)=0.49$; 대학교이상 $\exp(-0.97)=0.38$). 또한 취업경험도 결혼이행률과 부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이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exp(-0.4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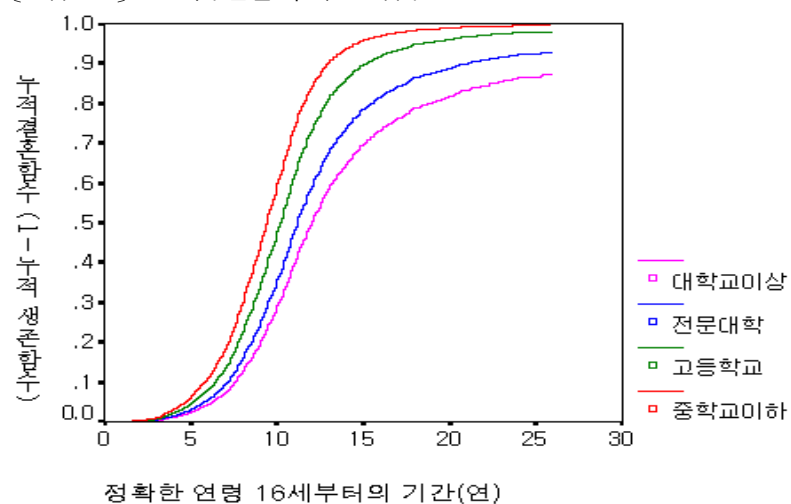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들은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이 적어도 현재의 연령, 최종교육 수준, 결혼이전의 취업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연령은 곧 출생코호트(birth cohort)로도 해석가능하다. 즉, 최근의 코호트에 비해 이전의 코호트들의 결혼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생코호트 효과는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의 높은 교육수준과 함께 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생코호트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결혼전 취업은 결혼시기를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결과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그림 6-2] 및 [그림 6-3]은 앞에서 얻어진 Cox regression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 교육수준, 취업경험유무별로 누적결혼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6-1]은 연령대별 누적결혼함수(1-누적생존함수)로 정확한 연령16세(즉, 15세를 지나면서)부터의 일정시간에 이르기까지 결혼한 비율(누적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림에서 제시한 누적비율함수값은 Cox regression의 계수값에 따라 추정된 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경우 실제 관찰된 값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할 비율을 예측한 값이 된다. 이 그림에 의하면, 40~44세와 35~39세의 누적결혼함수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겹쳐서 나타난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최근의 출생코호트일 수록) 누적결혼함수가 각 기간에 낮게 나타남으로써 결혼이행률이 낮을 뿐 아니라 그 속도 또한 느림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누적결혼함수를 보여주는 [그림 6-2]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함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행률이 낮고 느리게 진전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6-3]에서는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누적결혼함수가 낮게 나타나 결혼이행의 정도와 속도가 느림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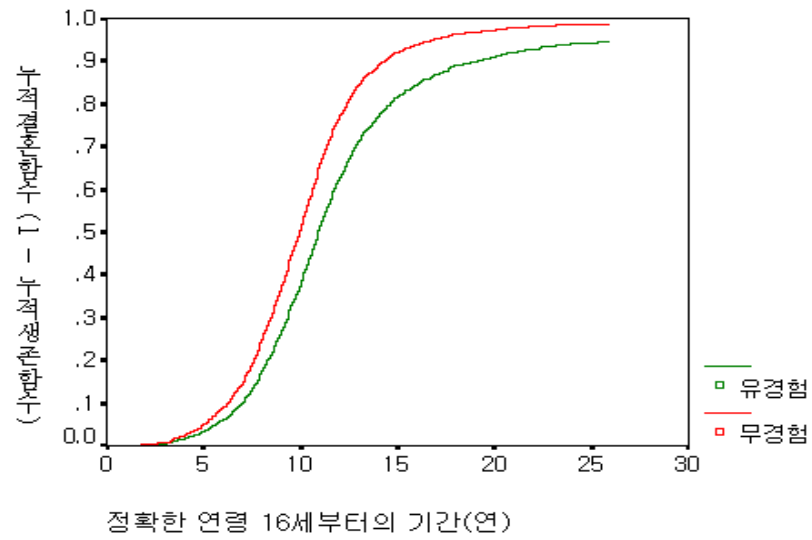
〔그림 6-1〕 연령대(출생연도)별 누적결혼함수



〔그림 6-2〕 교육수준별 누적결혼함수



[그림 6-3] 취업경험유무별 누적결혼함수



제 3 절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결혼할 생각 여부에 대하여 남녀전체와 남녀별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 우선 남녀전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이 결혼할 의향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여성변수의 계수값 ($b=-0.76$; $\exp(-0.76)=0.47$)은 로짓회귀모형에 동원된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결혼의향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들의 절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은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표 6-4> 결혼의향에 대한 남녀별 로짓회귀분석 결과

	남녀전체		남자		여자	
	b(s.e.)	exp(b)	b(s.e.)	exp(b)	b(s.e.)	exp(b)
상수	0.73 (0.34)**	2.07	0.49 (0.47)	1.64	0.10 (0.53)	1.11
성	-0.76 (0.11)***	0.47	---	---	---	---
교육수준(준거: 고등학교이하)						
전문대학	0.46 (0.14)***	1.58	0.65 (0.22)***	1.92	0.31 (0.19)	1.36
대학교	0.37 (0.13)***	1.45	0.55 (0.19)***	1.73	0.21 (0.18)	1.23
대학원	1.04 (0.36)***	2.84	1.62 (0.62)***	5.05	0.64 (0.46)	1.89
거주지역	0.06 (0.19)	1.07	-0.22 (0.27)	0.81	0.36 (0.27)	1.44
연령대(준거: 35~44세)						
20~24세	1.06 (0.20)***	2.89	1.08 (0.26)***	2.95	1.10 (0.34)***	3.01
25~29세	1.09 (0.19)***	2.97	0.98 (0.24)***	2.67	1.18 (0.33)***	3.25
30~34세	0.86 (0.20)***	2.38	0.77 (0.24)***	2.15	1.01 (0.36)***	2.75
취업 및 학생여부(준거: 취업)						
비취업	-0.33 (0.13)***	0.72	-0.55 (0.18)***	0.58	-0.13 (0.18)	0.87
학생	-0.10 (0.15)	0.91	-0.36 (0.25)	0.70	0.08 (0.20)	1.08
개인부채여부	-0.08 (0.15)	0.93	-0.24 (0.19)	0.79	0.12 (0.24)	1.13
단독가구여부	-0.14 (0.13)	0.87	0.04 (0.19)	1.04	-0.32 (0.19)*	0.72
아버지생존여부	-0.08 (0.14)	0.92	0.09 (0.19)	1.10	-0.28 (0.22)	0.76
어머니생존여부	0.29 (0.21)	1.33	0.25 (0.29)	1.28	0.32 (0.32)	1.38
부모이혼경험	-0.26 (0.16)	0.77	-0.19 (0.24)	0.83	-0.30 (0.22)	0.74
형제자매이혼경험	-0.36 (0.25)	0.70	-0.38 (0.31)	0.68	-0.23 (0.46)	0.79
성과 혼전동거태도	-0.09 (0.04)***	0.91	0.01 (0.05)	1.01	-0.17 (0.05)***	0.85
$\chi^2_{(d.f.)}$	138.30 (17)		75.68 (16)		52.49 (16)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성과 더불어 교육수준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자들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수준의 관계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혼남자들의 경우 교육수준은 결혼의향과 정적인 관계, 즉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혼여성들에게서는 교육수준과 결혼의향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곧 미혼남성들과는 달리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은 자신들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된다. 한편, 결혼의향에 있어 거주지역의 효과는 미혼남녀 어디에서도 유의미하지 않다.

현재 연령은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미혼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효과의 크기는 남녀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준거집단인 35~44세에 대비한 연령효과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곧 미혼남녀 모두 젊은 층일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여성들에게서 더 크다는 뜻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혼자 전체에서 취업과 학생여부의 효과는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 전체에서는 취업자들에 비해 비취업자들이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한편, 학생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혼남성들 중에서 비취업자들은 취업자들에 비해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다. 반면, 미혼여성들 중에서는 취업자, 비취업자, 학생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미혼 남성들의 경우 결혼을 위해서는 우선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반면, 미혼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에 앞서 반드시 자신의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약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현재 미혼 남녀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결혼의향 자체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거주형태와 결혼의향간의 관계 또한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혼남성의 경우 현재 혼자 살거나 비혈연과 동거 중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

들에 비해 결혼의향의 차이가 없다. 반면,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다소 통계적 유의성($p < 0.1$)은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단독가구 형성의 의미가 남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혼 남자들의 경우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을 떠나 단독가구를 형성한다면, 미혼 여자들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미혼 여성의 단독가구 형성 자체가 현재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된 것일 수 있다. 한편,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단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보다는 독신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결과일 수도 있다.

가족 구성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포함된 부모의 생존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경험유무와 형제자매의 이혼경험유무도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고 있다. 가족구성 효과의 효과를 보다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혼 남녀의 형제순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결혼의향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녀별 차이는 뚜렷하다. 미혼 남자들의 경우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 반면, 미혼여성들의 경우 성과 혼전동거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남자들이 성과 혼전동거에 대하여 가진 태도는 자신들의 결혼과는 무관하지만, 여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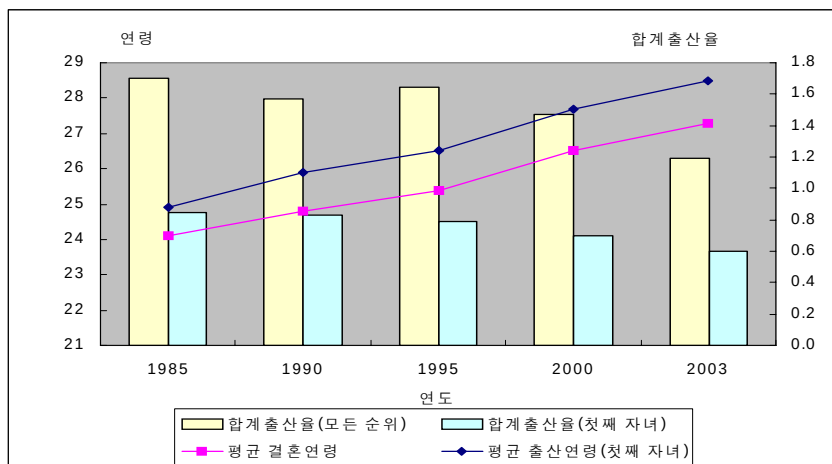
제 7 장 무 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내용

한국 여성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1985년의 24.1세에서 2003년의 27.3세로 2.8세 상승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첫 자녀의 출산연령도 1985년의 24.9세에서 2003년의 28.5세로 3.6세 상승하였다. 한편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합계출산율은 1985년의 1.70명에서 2003년의 1.2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첫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의 0.85명에서 2003년의 0.6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단산행위 또는 출산지연을 통하여 첫 자녀의 출산율 감소가 모든 자녀의 출산율 감소에 50%를 기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1] 출산력 지표의 변화: 1985~2003



우리나라에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혼인연령이나 혼인코호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은기수, 2001). 혼외출산이 현재에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혼인연령의 상승은 곧 첫째자녀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만약 혼인연령에 큰 변화가 없다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 후 첫째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기간인 “첫째자녀의 출산간격”(first birth interval)이 될 것이다.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길어지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반대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짧아지면 기간 합계출산율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의 변화 즉, 무자녀에서 첫 자녀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중에서 우선 결혼 후 첫째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기간, 곧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색출함으로써 최근 출산력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을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콕스 회귀분석(Cox regression equation)의 결과를 사용하여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다(송경일·안재익, 1997).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조사당시 아직 첫째자녀의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들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우측절단된(right censored) 것으로 처리된다. 또 분석의 과정에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경우도 출산간격을 0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물론, 이 마이너스 출산간격을 분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분석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60개월 이후에 출산한 경우, 이것을 가임력에 문제가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콕스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위험율의 모습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는 이른바 모수형 모델(parametric model)을 추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과도는 별도로 현재 무자녀인 기혼여성과 하나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자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무자녀의 추가자녀계획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이 분석기법은 무자녀에서 1자녀 이상으로의 출생순위 확대(parity progression)를 분석하거나 필요에 따라 출산력의 근접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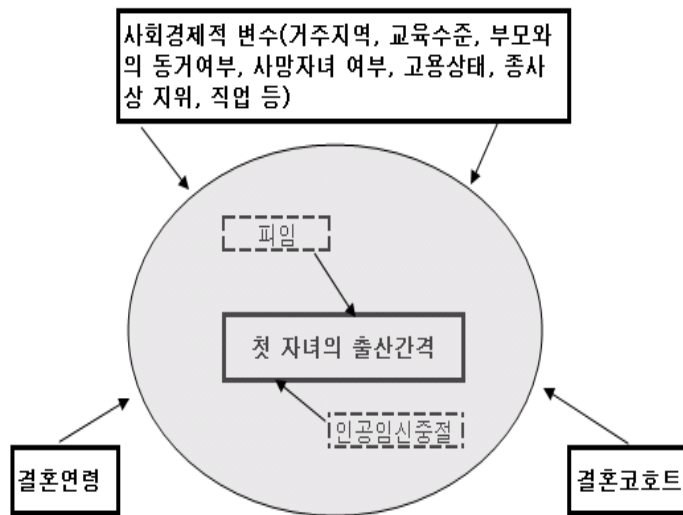
분석에 이용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중 20~44세 기혼여성(3,802명) 자료에서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과정, 특히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출산근접요인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그림 7-2]에 제시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관련된 변수로는 응답자의 출생연도, 응답자의 출생월,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혼인상태, 응답자의 혼인연도, 응답자의 혼인월, 응답자의 혼인연령, 첫째자녀의 출생연도, 첫째 출생의 월, 첫째 출생의 연령, 첫째 출생의 쌍태아 여부 등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첫째자녀를 낳았거나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았거나 조사당시 임신 중인 경우들을 모두 포함하여 첫째 출산간격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는 응답자의 첫째 결혼의 연도, 첫째 결혼의 월, 첫째 출생의 연도, 첫째 출생의 월이 있기 때문에 첫째자녀의 출생의 시점과 첫째 결혼의 시점의 차이를 계산하여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3,802명의 기혼여성 중에는 조사시점까지 한명의 자녀도 낳지 않은 경우와 조사시점 바로 직전에 결혼하여 조사 당시 임신 중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생존분석에서 우측절단(right censo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열린 출산간격(open birth interval)을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272명으로서 전체 표본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기혼여성 중에서 우측절단의 272명의 기혼여성을 제외하고 첫째자녀를 출산한 3,530명 중에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계산하였을 때, 출산간격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45명이었는데, 이것은 첫째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첫째자녀를 낳은 후 결혼하는 이른바 “혼전

임신” 등의 이유로 첫 출산간격이 음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산간격 8개월 미만으로 확실히 혼전임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619명으로, 첫째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표본의 1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7-2]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을 위한 모형



응답자들이 가임능력이 최고일 때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임신에 필요한 평균 대기기간은 대략 7~8개월이다(Bongaarts and Potter, 1983). 이 점을 고려하여 결혼 후부터 7개월 이내에 임신한 응답자는 1,598명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45.3%에 이른다. 또 첫째자녀 출산간격이 15~29개월의 범위에 있는 응답자가 993명으로 이것은 비율로는 28.1%에 해당하며, 30~59개월의 범위에 있는 응답자는 263명으로 7.5%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염두에 둘 것은 출산간격이 60~119개월과 120개월 이상의 범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이 69명과 21명으로, 첫째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2.0%

와 0.6%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피임이나 인공임신 중절과 같은 의도적 방법으로 출산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간격이 대체적으로 60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Bongaarts and Potter, 1983). 그러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기혼조사표는 첫째자녀의 출산이전에 피임경험이나 피임형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임 경험이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통제하고 가임력 상태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표 7-1 참조).

조사결과 중 무자녀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자녀의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첫째자녀의 출산계획이 없지만 현재 임신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첫째자녀의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무자녀 여성 272명 중에서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응답자가 2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7.1%이고,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35명으로 전체의 12.9%에 해당된다.

〈표 7-1〉 응답자의 첫째자녀 출산간격(개월)

구 분	% (사례수)
혼전출산	1.27 (45)
7개월 미만	15.33 (541)
8~14개월	45.27 (1,598)
15~29개월	28.13 (993)
30~59개월	7.45 (263)
60~119개월	1.95 (69)
120개월	0.59 (21)
계	100.00 (3,53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7-2>은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분석 중 일차적 관심인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사용될 기혼여성 3,802명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 구성을 보면, 35~39세가 30.8%로 가장 많고, 40~44세 28.1%, 30~34세 27.5%, 25~29세 11.8%, 20~24세 1.8% 순이다. 무자녀 여성과 1자녀 이

상을 낳은 여성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두 집단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무자녀 비율은 35~39세와 40~44세에서 거의 비슷하며, 1자녀 이상은 35~39세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44세, 30~34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혼인연령은 23~25세가 40.4%로 가장 많고 26~8세 24.5%, 20~22세 19.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9세 미만(5.2%), 32~34세(1.6%), 35세 이상(1.3%) 등의 혼인연령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높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무자녀 여성의 경우 26~28세에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고, 1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23~25세에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무자녀 여성들이 최근에 결혼하였으며, 최근에 이룰수록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7-2〉 기혼여성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자녀없음	자녀1명이상	계
연령	20~24세	1.1 (3)	1.9 (67)
	25~29세	13.6 (37)	11.7 (413)
	30~34세	22.4 (61)	27.9 (983)
	35~39세	31.6 (86)	30.7 (1,085)
	40~44세	31.3 (85)	27.8 (982)
초혼연령	19세 미만	1.5 (4)	5.5 (193)
	20~22세	5.9 (16)	20.8 (733)
	23~25세	25.0 (68)	41.6 (1,469)
	26~28세	36.0 (98)	23.6 (832)
	29~31세	19.9 (54)	6.3 (223)
	32~34세	5.5 (15)	1.3 (46)
	35세 이상	6.3 (17)	1.0 (34)
결혼코호트	2000~2005년	86.0 (234)	15.2 (537)
	1994~1999년	9.2 (25)	26.9 (948)
	1988~1993년	2.2 (6)	29.1 (1,026)
	1982~1987년	2.6 (7)	21.2 (748)
	1981년 이전	0.0 (0)	7.3 (258)
교육수준	중학 이하	0.0 (0)	0.4 (13)
	고등학교	52.4 (142)	56.0 (1,975)
	대학교(2~3년제)	14.0 (38)	13.5 (476)
	대학(4년제) 이상	20.7 (56)	22.8 (803)

〈표 7-2〉 계속

구분		자녀없음	자녀1명이상	계
결혼전취업경험	없음	13.6 (37)	13.0 (458)	13.0 (495)
	있음	86.4 (235)	87.0 (37)	87.0 (3,307)
결혼후첫출산까지의 취업경험	없음	87.5 (238)	87.8 (3,100)	87.8 (3,338)
	있음	12.5 (34)	12.2 (430)	12.2 (464)
자연유산경험	없음	88.2 (240)	78.8 (2,782)	79.5 (3,022)
	있음	11.8 (32)	21.2 (748)	20.5 (780)
인공임신중절경험	없음	91.9 (250)	60.6 (2,138)	62.8 (2,388)
	있음	8.1 (22)	39.4 (250)	37.2 (1,414)
계		100.0 (272)	100.0 (3,530)	100.0 (3,80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혼여성의 결혼시점을 나타내는 결혼코호트를 보면, 1988~1993년 결혼코호트가 27.1%로 가장 많고, 1994~1999년 코호트 25.6%, 2000~2005년 코호트 20.2% 순으로 나타난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 2000~2005년 코호트가 86.0%로 가장 많고 그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반하여 1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 전체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1988~1993년 코호트가 29.1%로 가장 높고, 1994~1999년 코호트 26.9%, 2000~2005년 코호트 15.2% 순으로 나타난다.

분석 대상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55.7%로 가장 많고, 2~3년제와 4년제의 대학(전문대 이상)이 36.1%로 나타나, 고학력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52.4%, 전문대 이상 34.8%, 1자녀 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56.0%, 전문대 이상 13.5%로 무자녀와 1자녀 이상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결혼 전 취업경험과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취업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무자녀 여성은 결혼 후 조사당시까지 취업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첫째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87.0%이고, 결혼 후 첫째자녀의 출산까지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2.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무자녀와 1자녀 이상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 후 첫째자녀의 출산에 이르기까지 피임사용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여부를 살펴보고, 출산력의 근접요인이 첫째자녀의 출생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혼여성 중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5%와 37.2%로 나타난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이 11.8%와 8.1%, 1자녀 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21.2%와 33.4%로 각각 나타난다. 이는 혼인지속기간과 출산 위험에 노출된 기간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또 하나의 관심영역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이다. 무자녀의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분석은 불임 등의 요인이 개입된 무자녀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무자녀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3>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에 따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준다. 무자녀 기혼여성 271명 중 12.9%에 불과한 35명만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추가자녀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는 35~39세 31.6%, 40~44세 35.0%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는 25~29세 45.7%, 30~34세 28.6%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혼인연령별로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는 26~29세 35.4%, 23~25세 24.5%이고, 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는 26~29세 40.0%, 23~25세 28.6%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연령이 낮은 층이 혼인연령이 높은 층보다 추가자녀계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코호트별로 자녀추가 계획이 없는 경우는 2000~2005년 코호트 83.1%, 1994~1999년 코호트 1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는 2000~2005년 코호트 91.4%, 1994~1999년 코호트 5.7%로 나타나고 있다. 무자녀 여성 중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가 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자녀계획 여부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것인지는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수준별 추가자녀계획을 보면, 자녀를 한명 낳겠다는 계획이 없는 경우는 고등학교 54.7%, 전문대 11.9%, 4년제 대학 19.0%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계획

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37.1%, 전문대 28.6%, 4년제 대학 31.4%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녀의 추가계획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거주지별 추가자녀계획을 보면,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서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가자녀계획과 관련하여 기혼여성과 남편의 직종을 살펴보면,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무직(31.4%), 관리전문직(17.1%) 등에서 높은 반면,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는 판매직(16.9%), 사무직(1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 비경제활동의 비율이 추가계획이 없는 응답자보다 추가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남편의 직종을 보면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사무직의 비율이 4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 관리전문직 24.5%로 나타나지만, 기계 및 단순 노무직이 27.0%이고 사무직이 23.2%의 비율로 나타남을 볼 때, 추가자녀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족과 낮은 가족이 혼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월평균 소득상황을 보면, 평균소득인 300만원을 100%로 했을 때, 그것을 넘는 응답자의 비율이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는 34.3%이고 자녀추가계획이 없는 경우는 45.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무자녀 기혼여성들이 결혼 후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유하기 위하여 첫째자녀의 출산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첫째자녀의 출산시기에 대한 선호도를 명시화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3〉 무자녀 기혼여성의 자녀추가계획에 따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없다	있다	전체 (사례수)
연령	20~24세	0.0 (0)	8.6 (3)	1.1 (3)
	25~29세	8.9 (21)	45.7 (16)	13.6 (37)
	30~34세	21.3 (51)	28.6 (10)	22.4 (61)
	35~39세	34.6 (82)	11.4 (4)	31.6 (86)
	40~44세	35.0 (83)	5.7 (2)	31.3 (85)
조혼연령	19세 미만	1.7 (4)	0.0 (0)	1.5 (4)
	20~22세	6.3 (15)	2.9 (1)	5.9 (16)
	23~25세	24.5 (58)	28.6 (10)	25.0 (68)
	26~28세	35.4 (84)	40.0 (14)	36.0 (98)
	29~31세	21.1 (50)	11.4 (4)	19.9 (54)
	32~34세	5.1 (12)	8.6 (3)	5.6 (15)
결혼코hort	35세 이상	5.9 (14)	8.6 (3)	6.3 (17)
	2000~2005년	83.1 (197)	91.4 (32)	84.2 (229)
	1994~1999년	11.8 (28)	5.7 (2)	11.0 (30)
	1988~1993년	3.0 (7)	0.0 (0)	2.6 (7)
교육수준	1982~1987년	2.1 (5)	2.9 (1)	2.2 (6)
	중학 이하	14.4 (34)	2.9 (1)	12.9 (35)
	고등학교	54.7 (129)	37.1 (13)	52.4 (142)
	대학교(2~3년제)	11.9 (28)	28.6 (10)	14.0 (38)
현거주지	대학(4년제) 이상	19.1 (45)	31.4 (11)	20.7 (56)
	서울특별시	83.1 (197)	91.4 (32)	84.2 (229)
	광역시	11.8 (28)	5.7 (2)	11.0 (30)
	중소도시	3.0 (7)	0.0 (0)	2.6 (7)
응답자의 직종	농촌(읍면)	2.1 (5)	2.9 (1)	2.2 (6)
	관리직, 전문직	12.7 (30)	17.1 (6)	13.2 (36)
	사무직	16.9 (40)	31.4 (11)	18.8 (51)
	판매직	10.6 (25)	5.7 (2)	9.9 (27)
	농림어업직	1.7 (4)	0.0 (0)	1.5 (4)
	기계단순노무직	12.7 (30)	5.7 (2)	11.8 (32)
남편의 직종	비경활	45.6 (108)	40.0 (14)	44.9 (122)
	관리직, 전문직	24.5 (58)	22.9 (8)	24.3 (66)
	사무직	23.2 (55)	42.9 (15)	25.7 (70)
	판매직	12.2 (29)	0.0 (0)	10.7 (29)
	농림어업직	3.0 (7)	0.0 (0)	2.6 (7)
	기계단순노무직	27.0 (64)	22.9 (8)	26.5 (72)
가구소득수준	비경활	10.1 (24)	11.4 (4)	10.3 (28)
	60% 미만	20.7 (49)	25.7 (9)	21.3 (58)
	60~80%	18.1 (43)	17.1 (6)	18.0 (49)
	80~100%	15.6 (37)	22.9 (8)	16.5 (45)
	100~150%	33.3 (79)	28.6 (10)	32.7 (89)
	150% 이상	10.6 (25)	5.7 (2)	9.9 (27)
점유형태	무응답	1.7 (4)	0.0 (0)	1.5 (4)
	자가	38.4 (91)	25.7 (9)	36.8 (100)
	전세	43.9 (104)	54.3 (19)	45.2 (123)
	월세	16.0 (38)	14.3 (5)	15.8 (43)
계	기타	1.7 (4)	5.7 (2)	2.2 (6)
		100.0 (236)	100.0 (35)	100.0 (271)

마지막으로 무자녀 기혼여성의 주택점유 형태를 보면, 자녀추가계획이 없는 경우 자가점유자의 비율이 38.4%이고 전세입주자의 비율이 4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경우 자가점유자의 비율이 25.7%로 전세입주자의 비율이 54.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월평균 소득상황과 비슷하게 자녀추가계획이 없는 경우가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경우보다 경제적 상황이 영호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결정요인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방정식 (3)과 (4)를 사용한다. 생존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했던 방정식 (4)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log h_i(t) &= \log \lambda_o(t) + \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 &= \alpha(t) + \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end{aligned}\quad (4)$$

방정식 (4)에서 종속변수인 $\log h_i(t)$, 곧 특정시점 t에서 기혼여성 i가 결혼을 한 후 첫째자녀를 출산할 위험률(hazard rate)을 구하기 위하여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서 네거티브(-) 간격은 모두 0으로 처리하여, 기혼여성 3,802명을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콕스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 추정에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연령집단, 교육수준, 혼전 취업유무, 첫째출산 이전 취업유무, 자연유산 경험유무, 그리고 혼인연령(세) 등을 포함한다. 혼인연령(세)을 제외하고 연령집단을 포함한 모든 변수들은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여, 회귀계수의 추정에 사용하였다. <표 7-4>는 연령집단, 교육수준, 혼전 취업유무, 첫째자녀 출산이전 취업경험유무, 자연유산 경험유무, 인공임신중절 경험유무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주화되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범주형 변수가 준거범주로 처리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표 7-4>에서 연령집단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등의 5개의 연령범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연령집단인 20~24세의

기혼여성이 준거범주가 된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2-3년제), 대학(4년제 대학 이상) 등의 4개 범주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교육수준인 중학교 학력의 기혼여성이 준거범주가 된다. 취업경험과 관련하여 혼전취업 경험 이 없는 기혼여성과 첫째자녀의 출산 이전의 취업경험이 없는 기혼여성 모두를 준거범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출산근접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이 준거범주가 된다. 이상의 범주형 변수의 부호화 방식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생존분석의 회귀방정식 (4)에서 $\lambda_0(t)$ 즉,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는 평균 혼인연령에 결혼한 기혼여성들 중에서 20~24세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혼전과 첫째출산 이전에 취업경험이 없 으며,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들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주형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범주형 변수의 준거범주와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s)를 설명하게 되는데 회귀계수 $\beta_i > 0$ 이면 상대적 위험도는 증가하게 되고, 회귀계수 $\beta_i < 0$ 이면 상대적 감소 하게 된다.

〈표 7-4〉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에서 연령집단 등 범주형 변수의 부호화 방식

	구분	빈도	(1)	(2)	(3)	(4)
연령	1.00=20~24세	69	0	0	0	0
	2.00=25~29세	450	0	0	0	1
	3.00=30~34세	1,044	0	0	1	0
	4.00=35~39세	1,170	0	1	0	0
	5.00=40~44세	1,067	1	0	0	0
교육수준	1.00=중학 이하	310	0	0	0	
	2.00=고등학교	2,117	1	0	0	
	3.00=대학교(2~3년제)	514	0	1	0	
	4.00=대학(4년제) 이상	859	0	0	1	
결혼전취업경험	0.00=없음	495	0			
	1.00=있음	3,305	1			
결혼 후 첫출산 까 지 의 취업경험	0.00=없음	3,336	0			
	1.00=있음	464	1			
자연유산경험	0.00=없음	3,021	0			
	1.00=있음	779	1			
인공임신중절경험	0.00=없음	2,386	0			
	1.00=있음	1,414	1			

<표 7-5>의 칼럼(1)은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표 7-4>의 범주형 변수의 부호화 방식에 따라 입력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또 칼럼(2)과 칼럼(3)은 연령집단을 크게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 수준, 혼전 취업유무, 첫째자녀 출산 이전 취업유무, 자연유산 경험유무, 인공임신중절 경험유무, 그리고 혼인연령(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를 보면, 준거범주인 20~24세보다 다른 연령의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30~34세의 경우 $\beta = -0.10$ 이고 $\exp(\beta) = 0.90$ 이 되기 때문에, 준거범주인 20~24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 위험도가 대략 10%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 위험도가 적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준거범주와 대비할 때 다른 연령층의 경우 상대적 위험도의 감소는 40~44세 12.1%, 35~39세 11.6%, 25~29세 15.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집단의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주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첫째자녀의 출산에 관한 코호트 경험을 반영하는 연령집단 변수는 준거범주인 20~24세 연령집단의 효과와 비교할 때 출산간격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효과를 보면, 중학교 학력 기혼여성인 준거범주에 대하여 고등학교($\beta = 0.05$), 전문대($\beta = 0.01$), 그리고 대학이상($\beta = 0.01$)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육수준의 범주형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방법으로 출산간격을 늘이거나 줄이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혼전 취업의 경험($\beta = 0.03$)은 출산간격을 약간 줄이는데 기여하고 첫째자녀 출산 이전의 경험($\beta = -0.046$)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같이 출산간격을 늘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혼 여성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지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첫째자녀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자연유산 경험은 회귀계수 $\beta = -0.178$, $\exp(\beta) = 0.84$ 로 준거범주인 자연유산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상대적 위험도를

16.2%를 감소시킨다. 한마디로 자연유산의 경험은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회귀계수 $\beta = 0.21$, $\exp(\beta) = 1.23$ 으로 준거범주인 인공임신중절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상대적 위험도를 23.4%를 감소시킨다. 한마디로 자연유산의 경험은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연령은 회귀계수 $\beta = -0.02$, $\exp(\beta) = 0.98$ 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연령이 1세씩 올라갈 때마다 상대적 위험도는 1.7%씩 감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근의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른 이른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5〉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β	$\exp(\beta)$	β	$\exp(\beta)$	β	$\exp(\beta)$
연령						
20~24세(준거범주)						
25~29세	-0.17	0.85				
30~34세	-0.10	0.90				
35~39세	-0.12	0.88				
40~44세	-0.13	0.88				
교육수준						
중학 이하(준거범주)						
고등학교	0.05	1.05	0.07		-0.34	0.71
대학교(2~3년제)	0.02	1.02	0.04	1.07	-0.38	0.69
대학(4년제) 이상	0.01	1.01	0.03	1.04	-0.39	0.67
결혼전취업경험	0.03	1.03	-0.01	0.99	0.25 †	1.29
준거범주(없음=0)						
결혼후첫출산이전취업경험	-0.05	0.96	-0.01	0.99	-0.19 **	0.83
준거범주(없음=0)						
자연유산경험	-0.18 ***	0.84	-0.16 ***	0.85	-0.33	0.72
준거범주(없음=0)						
인공임신중절경험	0.21 ***	1.23	0.23 ***	1.25	0.15	1.16
준거범주(없음=0)						
혼인연령(세)	-0.02 ***	0.98	-0.02 ***	0.98	-0.01	1.0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경우 35세 미만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35세 이상의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혼전취업경험도 35세 미만의 경우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는데 기여하며,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35세 이상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 $\alpha = 0.079$ 로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위험도를 28.8%나 증가시키고 있다. 첫째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은 35세 미만의 경우와는 달리 35세 이상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와 대비할 때 상대적 위험도를 18% 가량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통계적 유의도 $\alpha = 0.130$ 으로 엄격한 통계검정의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취업과 출산을 양립하는 것이 “첫째자녀의 출산”이라는 가족형성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출산력의 근접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의 경험도 무경험자 준거범주와 비교할 때, 35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의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연령은 현재 35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연령 1세 상승이 특정 시점에서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를 2% 정도 감소시키는 변수이지만, 현재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에서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를 미미한 수준이나마 감소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도 검정을 통과하기 힘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표 7-5>에 제시된 생존분석의 회귀방정식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집단은 준거범주인 20~24세와 비교할 때,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 위험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준거범주인 중학교 학력과 비교할 때, 35세 미만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35세 이상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혼전 취업경험은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이 없

는 경우에 대하여 특정시점에서의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첫째자녀 출산 이전의 취업경험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특정시점에서 첫째자녀 출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출산속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데, 35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의 기혼여성에 대하여 자연유산의 경험은 출산간격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출산간격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결혼연령과 별도로 결혼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하여 연령집단 대신에 결혼코호트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결혼코호트는 2년 간격으로 나누어 14개의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며, 이용된 기혼여성자료에서 25년 전의 경험에 해당하는 1979년 이전의 결혼코호트를 준거범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결혼코호트의 효과는 준거범주인 1979년 결혼코호트와 1980년대 이후의 13개 결혼코호트와의 경험이 비교되었다. 결혼코호트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출생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연령집단 변수를 콕스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 추정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령, 코호트, 기간 등의 APC 모형에서 흔히 논의되는 식별의 문제(identification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7-6>에서 회귀방정식의 기저위험함수 $\lambda_i(t)$ 를 구성하는 집단은 1979년 이전의 결혼코호트로서 교육수준이 중학교 학력이고, 혼전취업과 첫째자녀 출산까지 취업의 경험이 없고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준거범주인 중학교 학력의 기혼여성에 대하여 고등학교($\beta = 0.03$), 전문대($\beta = 0.01$), 대학(4년제) 이상($\beta = 0.00$)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특정시점에서 첫째자녀의 출산을 경험할 확률이 커지지만 그 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고, 회귀계수 자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혼전취업($\beta=0.02$)은 출산간격을 줄이고 첫째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beta = -0.05$)이 출산간격을 늘이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한편, 출산력의 근접요인인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모두 특정시점에서 첫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alpha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자연유산의 경험은 회귀계수 $\beta = -0.03$ 로 $\exp(\beta) = 0.81$ 의 값

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유산 무경험을 준거범주로 할 때 상대적 위험도를 19% 가량 감소시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는데 기여한다. 반대로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회귀계수 $\beta = 0.16$ 으로 $\exp(\beta) = 1.17$ 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 무경험을 준거범주로 할 때 상대적 위험도를 17.3% 가량 증가시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단축하는데 기여한다. 혼인연령의 효과도 혼인연령이 1세씩 올라가면 특정시점에서의 첫째자녀의 출산위험을 1%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효과는 미미하며 회귀계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림 7-3]은 <표 7-6>의 결혼코호트에 대한 14개 범주형 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지수값을 도표화한 것이다. 결혼코호트의 전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alpha = 0.01$), 준거범주를 제외한 13개의 범주형 변수 중에서 유의수준 $\alpha = 0.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1982-1983년, 1990-1991년, 1992-1993년, 1994-1995년, 2004-2005년 등 5개이다. 그러나 결혼코호트의 경험 이 지난 25년 동안 상이한 시점에서 특정시각에 첫째자녀를 출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 특히 최근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의 실제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7-6〉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연령 대신 결혼코호트를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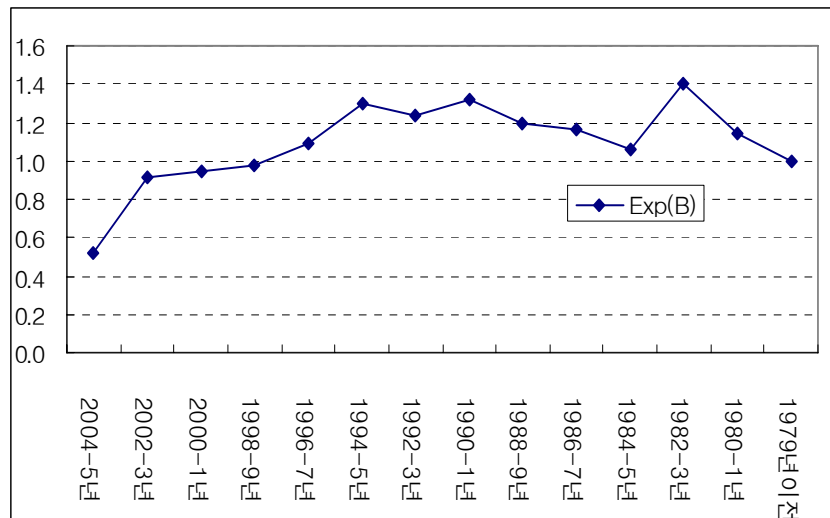
구분	β	$\exp(\beta)$
교육수준		
중학 이하(준거범주)		
고등학교	0.03	1.03
대학교(2~3년제)	0.01	1.01
대학(4년제) 이상	0.00	1.00
결혼 전취업경험	0.02	1.03
준거범주(없음=0)		
결혼 후 첫출산이 전취업경험	-0.05	0.95
준거범주(없음=0)		
자연유산경험	-0.03 ***	0.81
준거범주(없음=0)		
인공임신중절경험	0.16 ***	1.17
준거범주(없음=0)		
혼인연령(세)	-0.01	0.99
결혼코호트		
2004~5년	-0.66 *	0.52
2002~3년	-0.09	0.91
2000~1년	-0.05	0.95
1998~9년	-0.02	0.98
1996~7년	0.09	1.10
1994~5년	0.26 *	1.30
1992~3년	0.21 †	1.24
1990~1년	0.28 *	1.32
1988~9년	0.18	1.19
1986~7년	0.15	1.16
1984~5년	0.06	1.06
1982~3년	0.34 *	1.40
1980~1년	0.14	1.15
1979년 이전(준거범주)		

†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1984~1985년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제2의 인구변천 시대” 이전에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예컨대, 1982~1983년 결혼코호트의 경우는 준거범주인 1979년 이전의 결혼코호트보다 특정시점에서 첫째자녀의 출산을 경험할 확률이 40%가량 증가하여 첫째자녀에 이르는 출산간격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2의 인구변천 시대”가 시작되는 1984년부터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IMF 구제금융(救濟金融: relief finance)에 의존했던 1997년에 이르기까지는 약간의 파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줄어들고 1979년 이전의 결혼코호트에 비하여 특정시점에서의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상황은 전반적으로 반전되어 다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미치는 상대적 위험도는 감소하여,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력에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혼인연령과는 별도로 기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3]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text{Exp}(\beta)$ 의 값의 변화



제 3 절 무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

1. 무자녀 기혼여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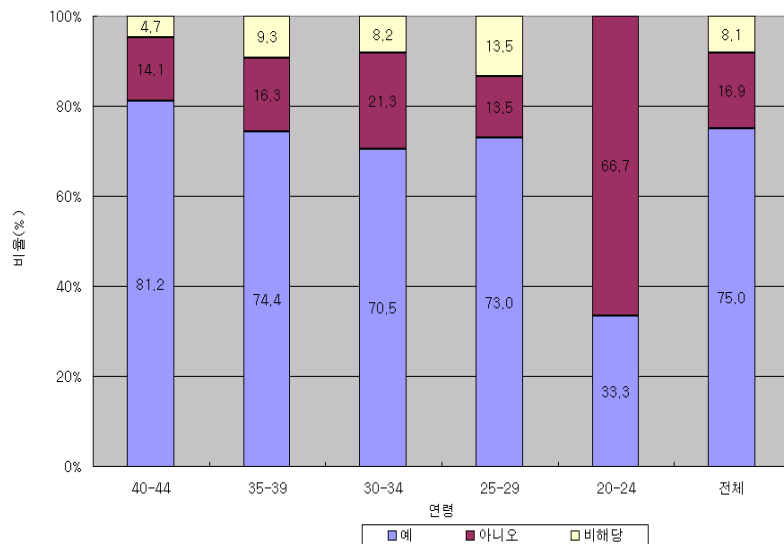
본 분석에는 출산력의 근접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혼인연령, 피임, 인공임신중절이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영향을 주고,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는 혼인연령, 피임,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7-2의 분석모형 참조). 혼인연령 또는 연령별 혼인확률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피임사용과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서 최근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기혼여성조사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대하여 피임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불임여부나 현재의 피임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기혼여성 3,802명 중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불임진단을 받은 여성 42명의 불임진단 치료여부를 보면, 38명에 해당하는 90.5% 정도는 불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으며, 7.1%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머지 2.4%는 치료 중으로 나타난다. 치료중단자의 2/3은 불임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불임치료가 성공하여 첫째자녀를 임신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불임치료를 중단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불임으로 진단 받은 기혼여성이 적은 편이나,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여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무자녀 상태에서부터 탈출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무자녀 여성의 열린 출생간격에 대하여 피임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그림 7-4]와 같다. 전체 무자녀 여성 중 피임사용자의 비율이 75.0%이고, 현재 임신중이거나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8.1%이며, 유배우 상태로 현재의 자녀계획대로 출산을 위하기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9%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현재 피임사용 여부를 보면, 무자녀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사용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여성 중 고령자일수록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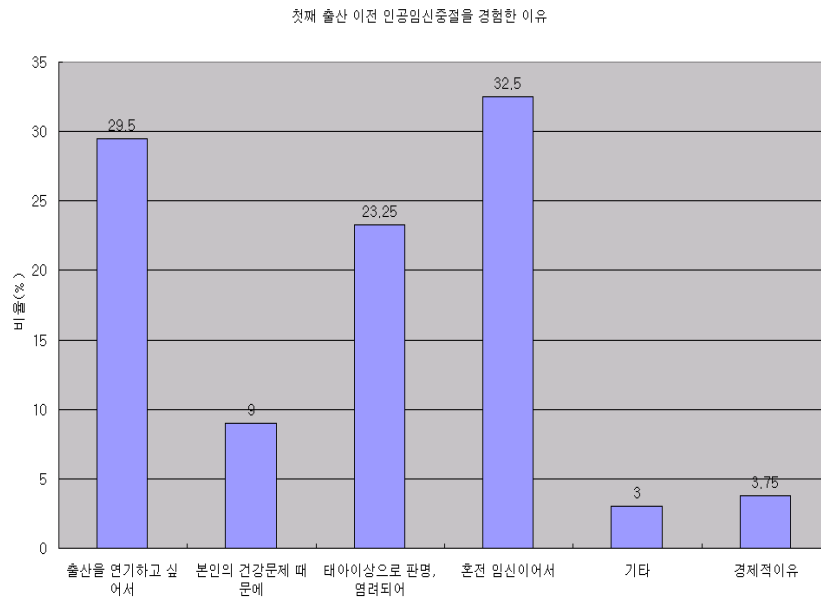
[그림 7-4] 무자녀 여성의 연령별 현재 피임사용 여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기혼여성 중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경험한 여성들의 특성을 본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 그것이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일어난 경우만을 검토하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혼전임신(32.5%), 출산연기(29.5%), 태아이상(23.3%), 경제적 이유(3.8%)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에 대한 혼외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연기가 인공임신중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태아이상도 무시할 수 없는 인공임신중절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첫째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에 근거한 인공임신중

절의 근절이 가족정책의 존립근거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며, 이것은 둘째자녀의 출산행위나 인공임신중절 등과도 연계하여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5]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이유들



2.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 경험

추가자녀계획을 분석하기 전, 출산력 근접요인 중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첫째 자녀 출산 이전에 경험할 확률을 분석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검토하여 본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p ,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1-p$ 라고 할 때, 승산비 $\frac{p}{1-p}$ 는 앞에서 분석모형을 제시할 때 설명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text{승산비} = \frac{p}{1-p} = \exp(\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7)$$

<표 7-7>에서 회귀방정식에 사용된 범주형 변수들의 준거범주를 보면, 교육수준은 중학교, 혼전취업은 취업경험 없음, 첫째자녀 출산이전 취업경험은 취업경험 없음, 결혼코호트는 14개의 범주형 변수 중 1979년 이전 코호트로 되어 있다. 따라서 <표 7-7>에 제시된 모든 회귀계수 β 와 $\exp(\beta)$ 의 값은 범주형 변수 안에서 준거범주의 회귀계수와 비교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7>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

구분	β	$\exp(\beta)$
교육수준		
중학 이하(준거범주)		
고등학교	-0.047	0.954
대학교(2~3년제)	-0.131	0.878
대학(4년제) 이상	0.130	1.139
결혼전취업경험	-0.158	0.853
준거범주(없음=0)		
결혼후첫출산이전취업경험	-0.159	
준거범주(없음=0)		
혼인연령(세)	-0.050 ***	0.952
결혼코호트		
2004~5년	-3.194 ***	0.041
2002~3년	-2.246 ***	0.106
2000~1년	-1.755 ***	0.173
1998~9년	-0.877 ***	0.416
1996~7년	-0.799 ***	0.450
1994~5년	-0.452 *	0.636
1992~3년	-0.261	0.770
1990~1년	-0.054	0.947
1988~9년	-0.123	0.884
1986~7년	0.031	1.032
1984~5년	-0.162	0.850
1982~3년	-0.138	0.872
1980~1년	-0.035	0.965
1979년이전(준거범주)		
상수	1.411	4.100

†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먼저 교육수준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승산비에 대한 효과를 보면, 중학교 학력을 준거범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beta = -0.047$)나 전문대($\beta = -0.131$)는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를 5%와 12%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대학이상($\beta = 0.130$)은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를 13%나 늘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추정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혼전 취업경험과 첫째자녀 출산 이전의 취업경험은 모두도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를 15% 정도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혼인연령의 경우, 1세씩 혼인연령이 상승할 때 $\beta = -0.05$ 로 $\exp(\beta) = 0.952$ 가 되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를 5%씩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혼인연령이 높아질수록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코hort별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보면, 1979년 이전의 결혼코hort를 준거범주로 할 때, 1994~5년 결혼코hort의 회귀계수부터 최근의 결혼코hort에 이르기까지 회귀계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 조사에 포함된 유배우 여성들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할 확률이 최근에 이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의 “제2의 인구변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혼인연령의 상승, 피임사용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낮추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연령이 인공임신중절이나 피임사용보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전광희, 2005).

3. 무자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영역인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에 대해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범주형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혼전취업 유무, 첫째자녀 출산전 취업경험 유무, 현재주

지, 응답자의 직종, 남편의 직종,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등이 포함된다. 범주형 변수에서 준거범주로는 연령은 20~24세, 교육수준은 중학교, 혼전취업과 첫째자녀 출산 전 취업경험은 취업경험 없음, 현거주지는 서울, 여성과 남편의 직종은 비경제활동,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의 60% 미만, 그리고 주택소유형태는 자가로 각각 사용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개별범주들의 회귀계수 β 는 준거범주의 회귀계수와 비교된다. 회귀계수 β 가 0보다 크면 자녀추가의 승산비를 높이고, 반대로 β 가 0보다 적으면 승산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 또한, 회귀계수 β 의 지수값인 $\exp(\beta)$ 가 1.0보다 크게 되면 자녀추가의 상대적 위험도는 증가하고, 반대로 1.0보다 적게 되면 자녀추가의 상대적 위험도는 감소하게 된다.

〈표 7-8〉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구분	β	$\exp(\beta)$
연령		
20~24세(준거범주)		
25~29세	0.845	2.328
30~34세	2.235	9.346
35~39세	4.536 *	93.278
40~44세	25.367 ***	
교육수준		
중학 이하(준거범주)		
고등학교	0.080	1.084
대학교(2~3년제)	0.785	2.192
대학(4년제) 이상	0.558	1.748
결혼전취업경험	0.737	2.089
준거범주(없음=0)		
결혼후첫출산이전취업경험	-0.601	0.548
준거범주(없음=0)		
혼인연령(세)	0.035	1.035
현 거주지		
서울특별시(준거범주)		
광역시	-0.981	0.375
중소도시	-0.331	0.718
농촌(읍면)	-0.824	0.438
응답자의 직종		
관리전문직	-0.081	0.922
사무직	0.866	2.377
판매직	1.496	4.463
농림어업직	2.989	19.864
기계단순노무직	0.138	1.148
비경제활동(준거범주)		

〈표 7-8〉 계속

구분	β	$\exp(\beta)$
남편의 직종		
관리전문직	-0.238	0.788
사무직	0.109	1.115
판매직	-21.024	0.000
농림어업직	-20.732	0.000
기계단순노무직	0.606	1.834
비경제활동(준거범주)		
월평균가구소득		
60% 미만(준거범주)		
60~80% 미만	0.591	1.805
80~100% 미만	0.768	2.155
100~150% 미만	0.684	1.982
150% 이상	0.987	2.683
무응답	-19.345	0.000
주택소유형태		
자가(준거범주)		
전세	-1.245	0.288
월세	-0.101	0.904
기타	-0.633	0.531
상수	-4.747	0.00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7-8>에서 제시한 이분형 회귀방정식 추계결과,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연령을 제외한 모두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단순 통계표가 암시하는 것보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특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회귀방정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로는 무자녀 여성들의 추가자녀계획을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령의 경우 준거범주인 20~24세에 대하여 30~34세와 35~39세의 경우가 추가자녀계획의 승산비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혼전 취업경험,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연령변수가 오히려 첫째자녀를 낳고자 하는 가족형성의 계획 자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앞에서 소개하였던 인구학적 변수나 사회경제적 변수 외에 태도나 가치관에 관련된 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여,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예측능력을 개선

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이상자녀수, 이상자녀수에 아들과 딸의 구분을 포함하는가 등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으나 <표 7-8>에 제시된 결과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 결국, 무자녀 계획은 최근의 자발적 무자녀의 선호 경향인지, 기혼여성조사에 상세히 표시되지 않은 불임 때문인지, 아니면 출산연기형의 기혼여성들이 점진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지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질적인 심층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8 장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첫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는 ‘첫째 출산 이후 둘째 출산까지의 기간(duration)’이 포함되므로 종단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반면, 한 자녀만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가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와 “추가출산 계획이 없다”와 같이 두 가지 값을 가지므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분석의 대상은 관찰사건인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노출된 사람들 즉, 첫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출산으로 이행의 분석대상은 결혼한 여성들이다. 조사대상 전체 여성 가운데 결혼에 이른 집단은 3,802명이며 이 가운데에서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3,505명이다. 즉, 전체 여성의 7.8%인 297명이 조사 시점까지 첫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중도절단된 사례이다. 첫 출산을 경험한 3,505명이 이 장의 분석대상으로서 둘째 출산사건 경험에 노출된 집단이다. 이 가운데 24.3%인 851명이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중도절단된 사례가 되고 나머지 2,654명이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였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종속 변수는 둘째출산경험의 순간이행률이다. 종단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독립변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분석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자료의 제약 때문에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母)의 취업 상황 변수가 구체적인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고 취업 유무만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에 적용된

독립변수들로는 ① 출생 코호트: 5세 간격으로 5개 범주, ② 교육 수준: 각급 학교별로 중퇴, 졸업 포함하여 4개 범주, ③ 초혼 연령: 5년 간격으로 5개 범주, ④ 취업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취업 유무, ⑤ 첫째아 성별, ⑥ 자연유산 경험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경험 유무, ⑦ 인공임신중절 경험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경험 유무 등이다.

둘째출산의향분석의 대상은 851명 가운데 둘째 출산계획이 비교적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35세 미만 여성 516명이다. 즉, 첫 출산을 경험하였으나 조사시점까지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추가출산의향분석의 대상이 된다. 둘째출산의향분석의 종속변수는 추가출산 계획 여부로서 두 가지 값을 지닌다. 둘째출산의향분석의 독립변수들은 4개영역, 16개변수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영역에는 출생코호트(5세간격 3개 범주), 교육수준(각급 학교별로 중퇴, 졸업 포함하여 4개 범주), 거주지(동부/읍·면부)가 포함된다.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는 부인의 종사상지위(자영·고용, 상용, 무급가족종사, 임시·일용, 무직), 남편의 종사상지위, 가구소득(5개범주)이 포함된다. 가족구성 영역으로는 0~2세자녀 유무, 3~7세자녀 유무, 65~80세미만 고령자 유무, 80세 이상 고령자 유무, 총가구원수(연속변수), 총자녀수(연속변수), 남아수(연속변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태도영역에는 남편의 가사분담시간(남편의 자녀돌보는 시간=평일+토요일+일요일), 부부의 형평성(가사분담 공평성 인식+가사 분담률+자녀양육 분담률), 이상적인 자녀수(2명인지의 여부에 따라 2개 범주), 자녀 성구분 여부(성구분/상관없다 2개 범주)가 포함된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의 분석대상 특성은 <표 8-1>과 같다.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 2,654명과 조사 당시 첫째 출산으로 그친 여성 851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비교적 고연령층으로, 교육수준과 초혼 연령 등의 변수와도 연동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여성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며, 초혼 연령은 조금 빠른 편이다. 두 집단의 취업유무 비율은 매우 대조적이다. 첫째 자녀 출산을 경험한 여성 중 첫출산 이후 취업 경험 여성은 전체의 37.5%인 반면, 둘째 자녀 출산을 경험한 여성 중 첫 출산 이후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9.5%에 불과하다.

두 집단의 첫째아 성별에도 차이가 있다. 한 자녀 여성의 자녀가 남아인 경

우는 전체의 56.7%인 데 비해, 둘째 출산 경험 여성의 첫 자녀가 남아인 경우는 51.0%이다.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 비율은, 둘째 출산 경험 여성이 좀더 나이 든 집단인 것과 관련되어 이 집단에서 조금 높다. 그러나 2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이 한 자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조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표 8-1〉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조사대상자 특성

(단위: 명, %)

	한 자녀 여성(중도절단) 도수(%)	둘째출산 경험여성 도수(%)
출생코호트		
20~24세	33 (3.8)	9 (0.3)
25~29세	185 (21.3)	143 (5.4)
30~34세	298 (34.4)	659 (25.0)
35~39세	186 (21.5)	949 (36.0)
40~44세	165 (19.0)	879 (33.3)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51 (5.9)	251 (9.5)
고졸(중퇴포함)	416 (48.0)	1586 (60.2)
전문대졸(중퇴포함)	148 (17.0)	298 (11.3)
4년제 대졸(중퇴포함)	252 (29.1)	502 (19.0)
초혼연도		
2000~2004년	369 (42.6)	166 (6.3)
1995~1999년	229 (26.4)	708 (26.8)
1990~1994년	133 (15.3)	889 (33.7)
1985~1989년	98 (11.3)	645 (24.4)
1977~1984년	38 (4.4)	231 (8.8)
취업유무		
없다	542 (62.5)	2389 (90.5)
있다	325 (37.5)	250 (9.5)
첫째아성별		
남성	485 (56.7)	1309 (51.0)
여성	370 (43.3)	1259 (49.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8-1〉 계속

	한 자녀 여성(중도절단) 도수(%)	둘째출산 경험여성 도수(%)
자연유산경험		
없다	791 (91.2)	2372 (89.9)
1회	63 (7.3)	228 (8.6)
2회	10 (1.1)	33 (1.3)
3회	3 (0.4)	1 (0.0)
4회	-	5 (0.2)
인공임신중절경험		
없다	725 (83.6)	2170 (82.2)
1회	114 (13.2)	415 (15.7)
2회	25 (2.9)	40 (1.5)
3회	2 (0.2)	9 (0.4)
4회	1 (0.1)	5 (0.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8-2〉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구분	도수 (%)	구분	도수 (%)
출생코호트		주택소유여부	
20~24세	33 (6.4)	무주택자	241 (46.7)
25~29세	185 (35.9)	주택소유자	275 (53.3)
30~34세	298 (57.7)	월가구총소득	
교육수준		176만원 이하	140 (27.1)
중졸(중퇴포함)	9 (1.7)	176만원-234만원	121 (23.5)
고졸(중퇴포함)	228 (44.2)	235만원-292만원	65 (12.6)
전문대졸(중퇴포함)	122 (23.7)	293만원-439만원	117 (22.7)
4년제 대졸(중퇴포함)	157 (30.4)	440만원 이상	73 (14.1)
주거단위		취업유무	
동부	435 (84.3)	없다	332 (64.3)
읍/면부	55 (10.7)	있다	184 (35.7)
부인의 직종		첫째아 성별	
무직	332 (64.3)	남아	277 (53.7)
관리전문	68 (13.2)	여아	239 (46.3)
사무직	51 (9.9)	초혼연도	
판매서비스	44 (8.5)	2000-2004년	336 (65.1)
농림업	1 (0.2)	1995-1999년	161 (31.2)
기계단순노무	20 (3.9)	1990-1994년	18 (3.5)
남편의 직종		1985-1989년	1 (0.2)
무직	34 (6.6)	가사부담 공평성	
관리전문	148 (28.7)	매우 그렇다	37 (7.5)
사무직	106 (20.5)	대체로 그렇다	185 (37.2)
판매서비스	104 (20.2)	별로 그렇지 않다	184 (37.0)
농림업	3 (0.6)	전혀 그렇지 않다	91 (18.3)
기계단순노무	121 (23.4)	집안일 분담정도	
부인 종사상지위		전적으로 부인이	124 (25.8)
자영업, 고용직	14 (2.7)	대체로 부인이	237 (49.4)
무급가족	18 (3.5)	부부가 함께	117 (24.4)
상용직	103 (20.0)	대체로 남편이	2 (0.4)
임시/일용직	49 (9.5)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비경제활동	332 (64.3)	전적으로 부인이	62 (13.5)
남편 종사상지위		대체로 부인이	221 (48.3)
자영업, 고용직	107 (20.7)	부부가 함께	172 (37.6)
무급가족	2 (0.4)	대체로 남편이	2 (0.4)
상용직	326 (63.2)	전적으로 남편이	1 (0.2)
임시/일용직	47 (9.1)	2세 미만 자녀여부	
비경제활동	34 (6.6)	없다	198 (38.4)
7세 미만 자녀여부		있다	318 (61.6)
없다	381 (73.8)	이상자녀수: 2명	360 (69.8)
있다	135 (26.2)	기타	156 (30.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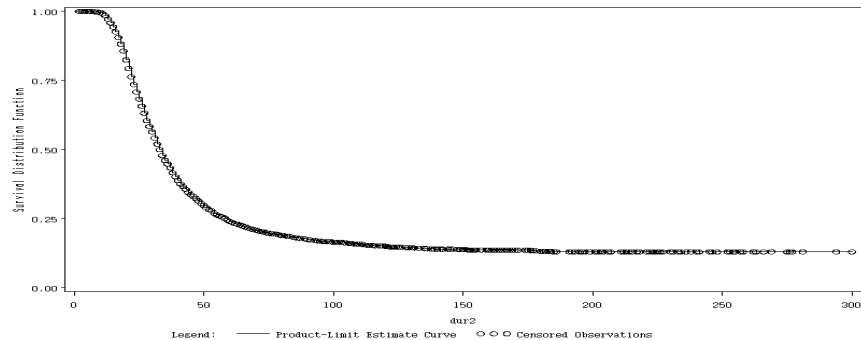
조사시점 당시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에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둘째 출산 의향의 분석 대상은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867명의 기혼여성 중 둘째 출산계획 응답이 비교적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20~34세의 기혼 여성 516명이다. 조사 시점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8-2>와 같다.

이들 분석대상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7.7%인 298명이 30세-34세에 집중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절반가량이 고졸 학력자이며, 30% 정도가 4년제 대졸 학력자이다. 또한 이들 중 8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35.7%인 184명이다. 이들 가운데 53%는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61.6%, 3세 이상 학령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은 26.2%이다. 첫째 자녀의 53.7%가 남아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69.8%인 360명은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지만,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했다.

제 2 절 첫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그림 8-1]은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둘째 출산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의 곡선은 관찰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여성들 즉, 첫 출산으로 그친 여성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첫 출산 후 50개월까지 전체 여성의 3/4 가량이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고, 나머지 1/4 가량의 여성이 최대 관찰 기간인 300개월까지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림 8-1]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그렇다면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둘째 출산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는 <표 8-3>과 같다. 출생 코호트에 따른 둘째출산이행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미 결혼하고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느냐 출산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당사자 여성들의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초혼연령에 따른 둘째출산이행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1977-1984년 결혼코호트에 비해 1985-1989년 결혼코호트의 둘째출산이행률이 90% 유의도 수준에서 좀 더 높다.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둘째출산이행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고졸 여성에 비해 4년제 대학졸업 여성들의 이행률이 낮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관찰기간 내 여성의 취업 여부이다. 첫 출산 이후부터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중도절단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 동안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이 기간 동안 취업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2.3배 정도 더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였다.

결혼 후 첫 출산까지 소요기간이 둘째출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출산이행률이 낮다. 첫째 출산을 늦게 한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아의 성별이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이 낮다.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47배 더 둘째 출산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모두 해당 여성들의 둘째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 두 변수는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둘째 출산 의향의 대리변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

〈표 8-3〉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에 대한 콕스회귀분석 결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연령	
20~24세	-0.30 (0.35)
25~29세	-0.04 (0.12)
30~34세	0.09 (0.08)
35~39세	0.05 (0.06)
40~44세(준거범주)	
초혼연도	
2000~2004년	-0.15 (0.13)
1995~1999년	-0.08 (0.10)
1990~1994년	0.06 (0.09)
1985~1989년	0.14 (0.08) [†]
1977~1984년(준거범주)	
교육수준 ¹⁾	
중졸	0.11 (0.07)
고졸(준거범주)	
전문대졸	-0.10 (0.06)
4년제대졸	-0.23 (0.05)***
취업유무	
없다(준거범주)	
있다	-1.32 (0.07)***
결혼-첫출산 기간	-0.02 (0.00)***
첫째아 성	
남성	-0.17 (0.04)***
여성(준거범주)	
자연유산경험	
없다(준거범주)	
있다	-0.47 (0.07)***
인공임신중절경험	
없다(준거범주)	
있다	-0.41 (0.05)***
합 계	3456
event	2595
censored(%)	861 (24.9)
-2 L.L.	37586.84 ***
d.f.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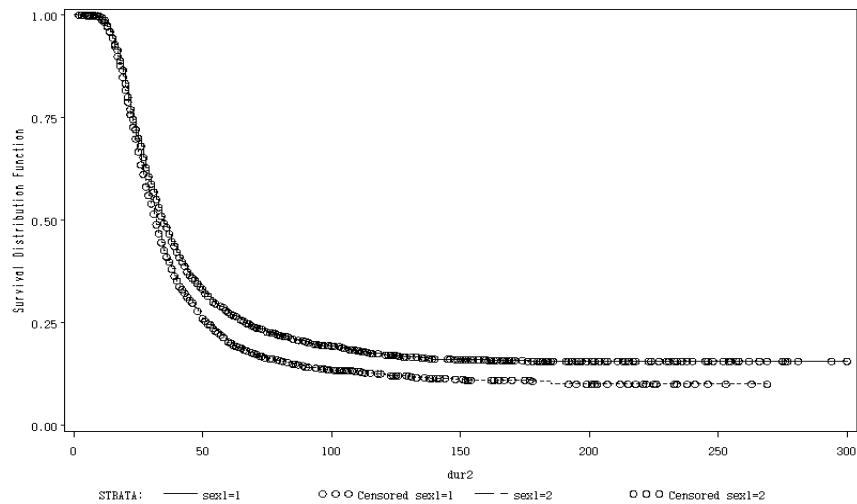
[†] p<0.1, *p<0.05, **<0.01, ***<0.001

주: 1) 각 교육수준별로 졸업자에는 중퇴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8-2]는 첫째아의 성에 따라 둘째출산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존곡선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이는 [그림 8-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체 관찰대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면서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대상들, 즉 각 관찰시점에서 한 자녀만을 둔 여성들의 생존분포를 나타낸다. 두 곡선 가운데 위에 있는 곡선은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곡선보다 둘째출산이행률은 낮고 생존율은 더 높다. 분석 대상 여성의 50%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34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경우 31개월이 소요된다. 분석대상 여성의 75%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66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경우 51개월이 소요된다. 둘째 출산 이행의 평균 기간은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60.2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경우 52.5개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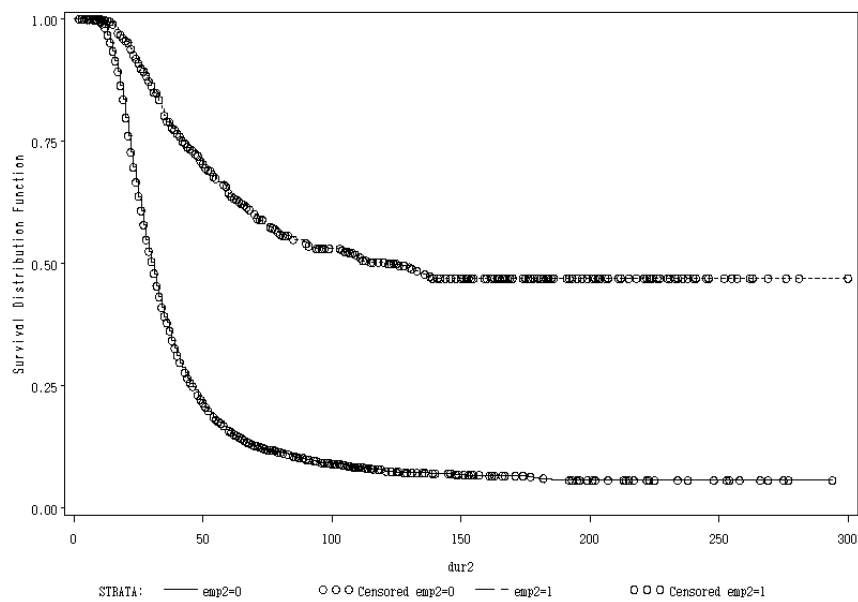
[그림 8-2]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첫째아 성에 따른 사건경험의 생존곡선



[그림 8-3]는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둘째출산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존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곡선 가운데 위의 곡선은 관찰기간 동안 취업

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곡선보다 둘째출산이행률이 현저히 낮다. 분석대상 여성의 50%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31개월,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무려 118개월이나 걸린다. 분석대상 여성의 75%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46개월이 걸리고,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들 가운데 절반만이 둘째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값을 지니지 않는다. 둘째 출산 이행의 평균기간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45.3개월,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93.8개월이다. 여성들의 관찰기간 내 취업유무는 둘째 출산 이행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3]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이행: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표 8-4〉 변수별 둘째 출산으로 이행 기간

(단위: 월)

	50% 이행기간	75% 이행기간	둘째 출산 이행 평균 기간
첫째아 성			
남아	34	66	60.2
여아	31	51	52.5
모의 취업유무			
취업경험 있음	118	값 없음	93.8
취업경험 없음	31	46	45.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둘째 출산 의향 요인

둘째출산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8-5>와 같다. 분석 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55.2%이고, 나머지 54.5%는 둘째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둘째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 및 이와 연관되는 가족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도 둘째출산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출산의향에 대한 출생코호트별 효과를 살펴보면, 준거범주인 30~34세 여성보다 젊은 여성인 25~29세 여성의 둘째출산의향이 유의미하게 높다. 이와 같은 연령효과를 가족구성 변수와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둘째출산의향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의향보다 1.9배 정도 높다.

분석대상 여성의 연령 및 이와 연계된 가족구조가 둘째출산의향에 영향을 준 것과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은 둘째출산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거주지(농촌, 도시), 총가구소득 등은 둘째출산의향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8-5>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탐색적으로 분석한 여러 모형들에서 남편의 종사상 지위, 주택소유 여부 등도 둘째출산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수들 중 총가구원수는 둘째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여성들은 둘째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 조력자의 존재가 둘째출산의향을 높일 수 있다는 추론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자녀수가 1명이지만, 실제 출산수가 더 많은 여성들의 경우는 둘째출산 계획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사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둘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8-5>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탐색적으로 분석한 모형들에서 65~80세 미만 가구원 유무 변수와 80세 이상 가구원 유무 변수는 둘째출산의향에 별다른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해석에 유의할 점은, 연령만으로 나눈 고령자 집단 구분으로는, 그들이 부양 대상으로 존재하는지, 자녀 양육 조력자로서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80세 이상 고령자 변수의 경우 표준오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연령으로 나눈 고령자 집단이 둘째출산의향 분석과 관련하여 그다지 적합한 분류가 아님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조부모의 존재와 둘째출산의향과의 관계는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단정적인 결론을 유보하고자 한다.

출산관련 태도변수로는 이상자녀수가 2명인지의 여부와 자녀의 성을 구별하여 원하는지 하는 두 가지 변수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둘째출산의향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실제로 계획하는 자녀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녀수와 실제로 낳는 자녀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있다는 데, 오늘날의 초저출산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녀 출산시 성(性)을 구분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둘째출산의향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성이 둘째 출산을 계획하게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 현재 여아만을 둔 여성이다. 분석 결과, 현재의 자녀가 남아인 여성들은 둘째 출산 의향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현재의 자녀가 여아

인 여성들은 둘째 출산 의향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가족의 출산계획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8-5〉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계수 (표준편차)
intercept	-1.63 (0.66)
연령	
20~24세	0.50 (0.45)
25~29세	0.52 (0.22)*
30~34세(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	-0.94 (0.90)
고졸(준거범주)	
전문대졸	-0.00 (0.25)
4년제 대졸	-0.10 (0.25)
거주지	
동부	-0.18 (0.27)
읍/면부(준거범주)	
부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0.56 (0.61)
무급가족	0.37 (0.53)
상용직(준거범주)	
임시/일용직	-0.11 (0.37)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준거범주)	
176만원~234만원	0.19 (0.28)
235만원~292만원	0.23 (0.33)
293만원~439만원	0.97 (0.29)
440만원 이상	0.09 (0.35)
2세 미만 자녀여부	
없음(준거범주)	
있음	0.74 (0.30)*
7세 미만 자녀여부	
없음(준거범주)	
있음	0.04 (0.31)
종가구원수	0.26 (0.14)†
남아수	-0.31 (0.19)†
남편가사노동시간	8.73E-6 (0.00)
성형평성	0.11 (0.21)
이상적인자녀수	
두 자녀 원함	0.34 (0.21)
기타(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 없이(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60 (0.23)**
-2 Log(d·f)	631.02 (21)***

† p<0.1, *p<0.05, **<0.01, ***<0.001

주: 1) 각 교육수준별로 졸업자에는 중퇴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마지막으로 부부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 변수와 둘째 출산 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부부의 성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편의 자녀돌보는 시간’ 변수와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여성의 주관적 인식’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부부의 성 형평성 변수는 여성들의 둘째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Torr & Short(2004)의 미국 맞벌이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성 형평성이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가, 성 형평성이 중간인 부부보다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한 여성의 40.6%가 둘째출산의향을 나타낸 반면,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한 여성 가운데 둘째출산의향을 나타낸 비율은 35.8%였다는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사분담과 관련한 성 역할 분담은 여전히 완고한 편으로서, 이와 같은 관행이 여성의 결혼이행률을 낮추지만, 둘째 출산이행에는 주목할 만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9 장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셋째 자녀로의 이행률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의 여성을 통합하여 두 번째 자녀 출산이후부터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세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는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간격이 이 기간에 해당한다. 현재 두 자녀인 여성들의 경우는 둘째아 출산이후 사회조사시점(2005년 5월)까지의 기간이 고려된다. 따라서 세자녀 이상 여성은 둘째아 출산부터 셋째아 출산까지의 기간, 두자녀 여성은 현재까지의 기간을 관찰기간으로 두는 생존분석이 가능하다. 생존분석에서 분석되는 바는 두자녀에서 세자녀로의 순간이행률(hazard rate)과 이러한 순간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covariate)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생존분석모형인 Cox proportiona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표 9-1>은 두자녀에서 세자녀로의 이행(이하 셋째아출산이행률)과 그 요인을 Cox proportional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들이다. 셋째아출산이행률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된 변수는 관찰기간(종속변수),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유무이다. 셋째아출산이행률 분석에서 동원된 예측변수(covariate variables)는 연령, 교육수준, 둘째아 출산이후 취업경험, 초혼연령, 초혼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 둘째아 출산 이후 셋째아간의 인공임신중절경험과 자연유산(사산 포함) 경험, 기존 출산아들의 성구조이다.

연령, 교육수준 등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연령은 출산코호트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다. 본 분석에서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24세 이전에 이미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조사대상자들에 비해 매우 특수한 사례들로 간주된다. 이들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이상사례(outlier)가 되어 회귀모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아 이후 취업여부는 세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는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사이의 취업경험을, 두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는 둘째아 출산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둘째아 이후의 취업여부는 세자녀 출산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혼연령, 결혼후 첫출산까지의 기간, 첫출산과 둘째출산까지의 기간 등은 여성들의 셋째아 출산에 노출된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과 첫출산 간격 및 첫출산과 둘째아 출산간격이 클수록 셋째아 출산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늦게 시작한 여성들은 셋째아를 갖기에 생리학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셋째아를 원한다 하더라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아 이후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과 자연유산(사산 포함)은 모두 셋째아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이 갖는 함의와 영향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면도 없지 않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셋째아를 갖지 않겠다는 여성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둘째아 이후 자연유산 혹은 사산의 경험은 그것이 셋째아를 갖기 원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그러하다면 자연유산과 사산의 경험은 셋째아의 출산으로 가는 힘든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셋째아의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존 출산아들의 성구조는 남아선호가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출산이행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첫째아이가 남아인 경우와 둘째 아이가 남아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아든 둘째아든 적어도 한 명의 남아가 있다면 셋째아의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9-1〉 셋째아 출산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 수	전체	두 자녀 여성	세 자녀 이상 여성
	비율 / 평균	비율 / 평균	비율 / 평균
사례수	2503	2146	357
3자녀이상 여성 비율	14.3%	----	----
관찰기간 (월)	96.2(61.1)	104.2(61.4)	48.1(29.0)
연령대			
25~29세	5.4%	6.0%	2.2%
30~34세	25.0%	25.8%	20.4%
35~39세	36.3%	35.8%	39.1%
40~44세	33.3%	32.4%	3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0%	8.4%	12.7%
고등학교	59.5%	58.9%	63.1%
전문대학	11.4%	11.5%	10.6%
대학교 이상	20.2%	21.3%	13.6%
취업경험(vs. 없음)	45.8%	47.2%	37.7%
초혼연령(년)	24.6(2.8)	24.7(2.8)	23.9(2.9)
초혼후 첫출산까지의 기간(월)	14.0(9.8)	14.2(9.8)	13.3(9.7)
첫출산부터 둘째출산까지 기간(월)	34.4(20.5)	35.3(21.2)	28.7(15.0)
둘째아이후 인공임신중절경험 (vs. 없음)	23.7%	23.9%	23.0%
째아이후 자연유산/사산경험 (vs. 없음)	3.3%	2.4%	8.5%
첫째아 남아여부(vs. 아님)	50.4%	53.5%	31.3%
둘째아 남아여부(vs. 아님)	53.4%	57.3%	29.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셋째아 출산이행률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는 두자녀 여성 2,146명(중도절단사례, censored data)과 세자녀 이상 여성 357명이다. 총 2,503명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해당 변수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사례들이다. 특히 셋째아출산이행에서 기존 출산아의 성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출산아의 성구조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둘째아를 임신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조사시점 현재 셋째아를 임신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둘째아와 셋째아간의 출산간격을 월단위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임신 중인 사례는 제외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을 한 사례만 포함되었다.

생존분석에서 다루게 되는 종속변수는 관찰기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관찰기간은 둘째아 출산이후 조사시점인 2005년 5월까지의 월단위 기간(두자녀 여성의 센서링기간)과 셋째아 출산까지의 월단위기간(세자녀 이상 여성의 생존기간)으로 계산하였다. 앞의 <표 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자녀 여성의 관찰기간(센서링기간) 평균값 104.2개월이며, 세자녀 이상의 평균생존기간은 48.1개월이다. 여기에서 세자녀 이상 여성의 평균생존기간은 둘째아와 셋째아의 월단위 평균출산간격이 된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 여성간의 차이가 분명한데, 대체로 세자녀 이상 여성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두자녀 여성이든 세자녀 여성이든 25~29세와 같은 저연령층에 속한 비율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적어도 두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대부분은 30대 이상임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세자녀 이상 여성보다는 두자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자녀 여성에서 21.3%인 반면, 세자녀 이상 여성에서는 13.6%에 그치고 있다. 둘째아 이후 취업경험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비록 두자녀 이상 여성의 취업경험이 현재까지의 경험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세자녀 이상 여성의 취업경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혼연령, 결혼 후 첫째아 출산시점, 둘째아 출산시점 등은 두자녀 여성보다는 세자녀 이상 여성에게서 빠름을 알 수 있다. 특히 둘째아 출산시점(첫째아 출산이후부터의 기간)은 세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 평균 28.7개월인 반면, 두자녀 여성의 경우는 평균 35.3개월로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아 이후 셋째아 이전까지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은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 여성 모두에게서 23-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일한 기간 동안 자연유산이나 사산 경험은 인공임신중절경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은 세자녀 이상 여성에게서 훨씬 높다.

기존 아이의 성구조에서는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 여성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두자녀 여성의 경우 첫째아가 남아인 비율은 53.5%, 둘째아가 남아인 비율은 57.3%이다. 반면, 세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율은 각각 31.3%, 29.6%로 매우 낮다. 이러한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 여성간의 차이는

기존아이의 성구조에 따라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여성을 통합해 세자녀 출산이행률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두자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셋째아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실시한 세자녀 출산이행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속성과 여성들의 과거 역사(history)를 나타내는 변수를 통해 이행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두자녀 여성의 추가출산계획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속성과 더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족상황 등에 따라 추가출산계획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관심이 여성들의 추가출산계획 여부(이분형 범주변수)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고려된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통계모형인 로짓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9-2>는 로지스틱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사례분포이다. 분석대상은 2,014명으로 세자녀 출산이행률에 포함된 두자녀여성 2,146명보다 132사례가 적다. 그 이유는 추가출산계획분석에서는 이행률 분석과는 달리 응답결측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태도설문문항들을 포함하면서 결측사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질문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례에만 적용되어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추가출산계획여부는 기혼자 조사표의 자녀계획부문의 제1번 문항인 ‘귀하는 앞으로 (추가)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있다, 없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의 세 가지 응답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있다고 대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셋째아를 임신 중인 여성들도 셋째아 자녀 추가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추가자녀계획여부는 현재 셋째아를 임신 중이거나 추가자녀에 대한 계획이 다소 분명한 경우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비율은 전체 2,014명중 85사례로 4.2%로 나타났다.

추가자녀계획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은 크게 다섯 집단으로 구분가능하다.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부모생존여부 및 가구원수, 기존자녀들의 특성, 출산에 대한 일반태도이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에는 교육수준, 거주지역 및 현재 연령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의 경우는 세자녀 출산이행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연령을 연령집단으로 구성하고 않고 만연령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출산계획과 일방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즉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표 9-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들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높고 연령 또한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면에서는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동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출산계획분석을 위해 고려된 경제적 특성으로는 여성과 그 배우자들의 종사상지위, 총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있다. 종사상지위는 자영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종사자,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비경제활동 등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셋째야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등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여성집단간에 비경제활동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종사상지위 분포에서는 셋째야 출산계획여부에 따른 여성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총가구소득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대비한 비율에 따라 다섯 범주로 구분하였다.^{주27)}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들보다 최하위소득집단과 최상위소득집단에 속한 비율이 약간씩 낮다. 주택소유여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뿐 아니라 그 이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는데, 추가자녀출산계획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그 비율이 약간 높다.

부모생존여부 및 가구원수는 두자녀 여성의 부모와의 세대관계 및 가구구성 특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부모생존여부는 추가자녀출산에 친정부모와 시부모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양가를 함께 알아보았다. 이미 연령분포에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듯이,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생존한 비율도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가구원수는 출산계획여부에 따른 여성집단간에 차이가 없다.

주27) 월평균가구소득 구분과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소득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75만원 이하(60% 미만); 176~235만원 이하(60~80% 미만); 236~293만원(80-100%); 294~440만원 이하(100~150%); 441만원 이상(150% 이상).

〈표 9-2〉 추가자녀출산계획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 수	전체	두 자녀 여성	세 자녀 이상 여성
	비율 / 평균	비율 / 평균	비율 / 평균
사 례 수	2014	1929	85
출산계획여부(1=있음, 0=그 외)	4.2%	----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5%	7.6%	4.7%
고등학교	59.1%	59.0%	61.1%
전문대학	11.9%	11.5%	20.7%
대학교 이상	21.5%	21.9%	13.6%
거주지역(1=동, 0=읍, 면)	87.5%	87.7%	83.2%
연령	36.7(4.5)	36.9(4.4)	32.8(3.9)
여성종사상지위			
자영자와 고용주	7.0%	7.0%	8.0%
무급가족	8.7%	8.5%	13.3%
상용	17.4%	17.5%	14.4%
임시와 일용	15.0%	15.2%	10.7%
비경제활동	51.9%	51.8%	53.5%
남편 종사상지위			
자영자와 고용주	34.0%	33.9%	36.8%
무급가족	0.2%	0.2%	0.0%
상용	53.1%	53.2%	50.1%
임시와 일용	9.3%	9.3%	9.7%
비경제활동	3.3%	3.3%	3.5%
총가구소득			
175만원 이하	17.7%	17.4%	23.7%
176만원 이상~235만원 이하	22.2%	22.3%	19.4%
236이상~293만원 이하	13.8%	13.8%	14.5%
294만원~440만원 이하	30.6%	30.9%	25.0%
441만원 이상	15.7%	15.6%	17.4%
주택소유여부(1=있음, 0=없음)	75.0%	71.0%	59.3%
친정아버지생존여부(1=생존, 0=사망)	57.8%	57.3%	68.8%
친정어머니생존여부(1=생존, 0=사망)	86.4%	86.1%	94.0%
시아버지생존여부(1=생존, 0=사망)	49.9%	49.5%	60.7%
시아머니생존여부(1=생존, 0=사망)	81.1%	80.8%	87.4%
총가구원수	4.1(0.6)	4.1(0.6)	4.1(0.9)
2세 이하 자녀유무(1=있음, 0=없음)	16.6%	16.2%	25.3%
3세 이상 미취학자녀 유무(1=있음, 0=없음)	30.2%	29.0%	57.4%
첫째아 남아여부(1=예, 0=아니오)	53.6%	54.3%	38.1%
둘째아 남아여부(1=예, 0=아니오)	57.1%	57.7%	43.2%
이상자녀수 3명 이상여부(1=예, 0=아니오)	34.4%	33.1%	63.5%
이상자녀에서 성구분여부(1=예, 0=아니오)	30.3%	29.6%	46.2%
부부의 자녀돌봄태도	4.8(1.1)	4.8(1.1)	4.6(1.2)
자녀태도1	8.4(1.5)	8.4(1.5)	8.7(1.4)
자녀태도2	5.1(1.7)	5.0(1.7)	5.8(1.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존자녀들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가족구성의 일면으로 볼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 변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 변수군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자녀의 특성에는 연령특성을 보여주는 2세 이하 자녀유무, 3세 이상 취학전 자녀유무 등이 포함되며, 첫째아와 둘째아 성도 고려되었다.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에 비해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2세 이하 자녀와 취학전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은 한편, 남아가 있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여러 문항의 태도변수들로 구성된다. 우선 여성들의 이상적인 자녀수가 3명 이상인지 여부와 이상적인 자녀수에서 딸·아들을 구분하는가를 고려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가 3명이라면 두자녀 여성은 아직 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이상적인 자녀수에서의 자녀 성구분은 현재 자녀들의 성구조와 맞물려 추가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는 비율과 이상적인 자녀수에서 자녀성을 구분하는 비율은 셋째아추가계획이 있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의 일부로 자녀돌봄에 대한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부의 자녀 돌봄 태도)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와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도로 측정되었다. 부부의 자녀돌봄 태도는 이 두 문항의 찬성도를 합한 값으로 1에서 7까지의 값을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평등한 자녀돌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값들은 셋째아 추가계획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는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자녀가치는 자녀의 특정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인식(자녀태도2)을 나타내는 것들과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가치(자녀태도1)를 나타내는 것들을 구분하였다. 자녀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반영하는 태도변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등의 세 문항에 대한 찬성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이 값들은 셋째아추가계획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자녀태도2) 변수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세 문항에 대한 찬성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셋째아 추가계획이 있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두자녀 이상 여성들의 추가자녀 이행률과 요인

<표 9-3>은 두자녀 여성과 세자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셋째아 출산이행률을 분석한 Cox regression model 의 결과들이다.^{주28)} 본 분석에서 Cox regression model은 위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계모형은 추가변인의 영향력을 살피는 동시에 기존 변인의 영향력 변인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모형의 수준에서 추가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해 보자.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으로 이루어진 모형1에 초혼연령, 결혼후 첫출산까지의 간격,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간격 등을 추가한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Delta-2LL=37.03$, $\Delta df=3$). 따라서 추가된 변수(초혼연령, 결혼후 첫출산까지의 간격,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간격)는 전반적인(global)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형2와 모형3을 비교해보면($\Delta-2LL=21.15$, $\Delta df=2$) 추가된 변인들인 인공임신중절경험과 자연유산경험이 대체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3과 모형4의 비교($\Delta-2LL=156.77$, $\Delta df=2$)에서 추가된 변인들인 첫째아와 둘째아의 남아여부는 매우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셋째아 출산이행률을 이해하는 데에는 최종모형인 모형4에 의존할 수 있다.

주28)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계수에 대한 표준오차는 자료제시 관계상 생략되어 있다.

〈표 9-3〉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대한 Cox regression model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대(준거: 40~44세)								
25~29세	0.25	1.29	-0.19	0.83	-0.27	0.77	-0.13	0.88
30~34세	0.24	1.28	0.04	1.04	0.03	1.03	0.04	1.04
35~39세	0.13	1.14	0.06	1.06	0.05	1.05	0.01	1.01
교육수준(준거: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4	0.78	-0.07	0.93	-0.06	0.95	-0.02	0.98
전문대학	-0.25	0.78	0.01	1.01	0.01	1.01	-0.01	0.99
대학교 이상	-0.70 ***	0.50	-0.40 *	0.67	-0.42 *	0.65	-0.40 *	0.67
취업경험(vs. 없음)	-0.67 ***	0.51	-0.76 ***	0.47	-0.74 ***	0.48	-0.71 ***	0.49
초혼연령			-0.08 ***	0.92	-0.08 ***	0.92	-0.08 ***	0.92
초혼-첫출산 기간			-0.01	0.99	-0.01 *	0.99	-0.01 *	0.990
첫출산-둘째출산 기간			-0.02 ***	0.98	-0.02 ***	0.98	-0.02 ***	0.98
둘째아 이후 인공임신중절 경험					-0.31 **	0.74	-0.28 **	0.76
둘째아 이후 자연유산사산 경험					0.81 ***	2.24	0.55 ***	1.73
첫째아 남아여부 (vs. 아님)							-0.86 ***	0.42
둘째아 남아여부 (vs. 아님)							-1.13 ***	0.32
χ^2 값 (df)	50.28 (7)		84.654 (10)		113.78(12)		268.56(14)	
-2LL	5315.52		5278.50		5257.35		5100.58	
이전모형과의차이								
Δ -2LL (Δ df)	----		37.03(3)		21.15(2)		156.77(2)	
유의확률	----		p < 0.01		p < 0.01		p < 0.01	

†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모형4에 따르면 모형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통제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연령은 세자녀 출산이행률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동일한 변수들을 이용해 세자녀 출산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셋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

다. 이 같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셋째아의 출산이 연령이 높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Cox regression model에 따른 세자녀 출산이행률은 셋째아 출산여부보다는 둘째아 이후 셋째아를 가질 가능성, 즉, 출산이행률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은 아직 셋째아를 출산하지 않았지만,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 상태로 처리된다. 셋째아 출산에 노출된 시간(censoring time)이 이행률 계산에서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모형과는 다른 결과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연령효과와 부재는 두자녀에서 세자녀 출산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연령대에 관계없이 세자녀를 출산할 경우의 출산시점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발견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학교이상 학력의 여성들이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률은 67% 정도에 그친다($b=-0.40$; $\exp(-0.40)=0.67$). 또한 둘째아 이후 셋째아 출산이전(두자녀 여성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취업경험은 셋째아 출산이행률을 감소시킨다. 이는 셋째아를 출산하기 이전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셋째를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 된다.

초혼연령, 초혼이후 첫출산까지의 기간,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 등은 모두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첫출산까지의 기간과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이 길수록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낮아지고 있다. 가령, 초혼연령이 1년 높아지면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8% 정도 낮아지게 된다($b=-0.08$; $\exp(-0.08)=0.92$).^{주29)}

출산노출기간을 의미하는 이상의 세 변인들과 함께 둘째아 이후의 유산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산의 형태에 따라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대한 함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셋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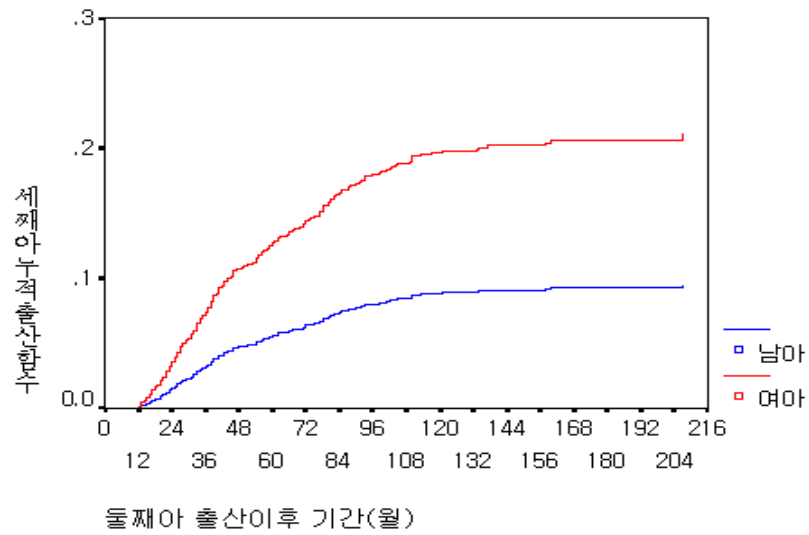
주29) 여기서 8%는 $1-\exp(-0.080)$ 에 해당한다. 보다 엄격히 말해서 주어진 위험함수에서 다른 covariate의 값을 평균점에 설정하였을 때 초혼연령의 한 단위 증가는 위험함수값을 기본위험함수값보다 8% 높게 이끈다는 뜻이다.

출산이행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b=-0.28$). 이러한 결과는 둘째아 이후의 인공임신중절이 셋째아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둘째아 이후의 자연유산이나 사산 경험은 오히려 셋째아 출산이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0.55$). 자연유산이나 사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개인의 출산억제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셋째아 출산으로 가는 힘든 과정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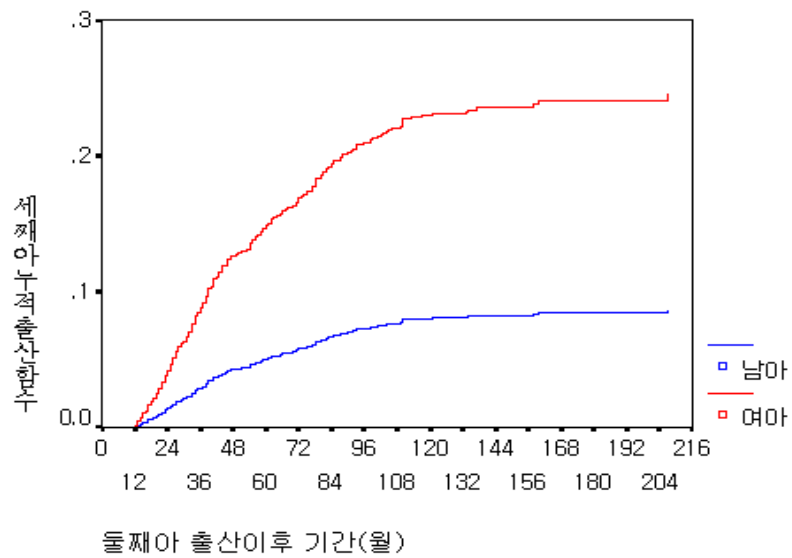
이미 출산한 아이들의 성구조는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57.7% 정도 낮아진다($b=-0.860$; $\exp(-0.860)=0.423$). 한편,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67.8% 정도 낮아져($b=-1.134$; $\exp(-1.13)=0.32$), 첫째아의 경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진다. 이 같은 결과는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둘째아까지 남아를 출산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그림 9-1]과 [그림 9-2]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존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셋째아 출산누적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9-1]은 첫째아의 성별 셋째아 출산누적함수(1-누적생존함수)로 둘째아 출산시점 이후 일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셋째아를 출산할 비율(누적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림에서 제시한 누적비율함수값은 Cox regression의 계수값에 따라 추정된 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자녀 여성의 경우 실제 관찰된 값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셋째아를 출산할 비율을 예측한 값이 된다. 이 그림에 의하면, 첫째아가 여아인 경우에 비해 남아인 경우의 셋째아 출산누적함수가 각 기간에 낮게 나타남으로써 그 이행률이 낮을 뿐 아니라 속도 또한 느림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9-2]에서는 둘째아의 성별 셋째아 출산누적함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여아인 경우에 비해 이행률이 낮고 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다.

[그림 9-1] 첫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그림 9-2] 둘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제 3 절 두자녀 여성들의 셋째자녀 출산의향

셋째아 출산계획 유무에 대하여 위계적 모형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4>와 같다.^{주30)} 모형1은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연령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2는 모형1에 경제적 특성인 여성과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가구총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모형간의 비교($\Delta\text{chi-Square}=12.212$ $\Delta\text{df}=13$)에서 추가된 변인들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서 전업주부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자녀추가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3은 모형2에 부모생존여부와 추가구원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모형간의 비교에서 추가된 변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3과 모형4의 비교에서는 현재 자녀의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Delta\text{chi-Square}=24.699$ $\Delta\text{df}=4$). 한편 모형4와 모형5의 비교를 통해서도 추가된 태도변인들 또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text{chi-Square}=67.290$ $\Delta\text{df}=5$). 이 같은 모형간의 비교는 셋째아 출산계획여부를 살펴볼 때 있어 기존자녀의 특성과 태도 변수 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최종모형인 모형5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은 다른 조건들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은 낮아진다. 한편, 여러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여성의 종사상 지위 또한 어느 정도 유의미해진다. 전업주부에 비해 여성 자영업자와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들은 자녀추가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상용직, 임시와 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전업주부와 차이가 없다. 부모의 생존여부에서는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만이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친정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으면 추가자녀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령, 여성의 종사상지위 및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를 제외한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30)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계수에 대한 표준오차는 자료제시 관계상 생략되어 있다.

친정부모 및 가구원수 등은 셋째아 출산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4〉 세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 수	4.644 ***	108.939	5.037 ***	154.031	4.517 **	91.552	6.395 ***	598.681	5.869 **	353.776
교육수준(준거: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87	0.679	-0.338	0.713	-0.383	0.682	-0.527	0.590	-0.407	0.666
전문대학	-0.082	0.921	-0.091	0.913	-0.147	0.863	-0.207	0.813	0.100	1.105
대학교 이상	-0.748	0.473	-0.869	0.419	-1.012	0.363	-0.971	0.379	-0.679	0.507
거주지역	-0.112	0.894	-0.051	0.950	-0.045	0.956	-0.150	0.860	-0.120	0.887
연령	-0.209 ***	0.811	-0.225 ***	0.799	-0.220 ***	0.802	-0.252 ***	0.777	-0.281 ***	0.755
여성종사상지위(준거: 비경제활동)										
자영자와 고용주			0.673	1.961	0.743	2.103	0.726	2.068	0.904 *	2.471
무급가족			0.747 *	2.110	0.820 **	2.271	0.812 *	2.251	0.929 **	2.533
상용			-0.017	0.983	-0.002	0.998	-0.048	0.953	0.233	1.263
임시와 일용			-0.091	0.913	-0.019	0.981	-0.123	0.885	0.018	1.018
남편 종사상지위(준거: 비경제활동)										
자영자와 고용주			0.071	1.074	0.097	1.101	0.070	1.073	0.167	1.181
무급가족			-3.165	0.042	-2.922	0.054	-2.715	0.066	-2.240	0.106
상용			-0.033	0.967	0.026	1.026	0.049	1.050	0.201	1.223
임시와 일용			0.049	1.051	0.143	1.154	0.071	1.073	0.164	1.179
총가구소득(준거: 175만원 이하)										
176만원 이상~235만원 이하			-0.248	0.780	-0.288	0.750	-0.404	0.668	-0.455	0.635
236만원~293만원 이하			0.089	1.093	0.070	1.072	-0.024	0.976	-0.156	0.855
294만원~440만원 이하			0.140	1.150	0.128	1.137	0.080	1.083	-0.049	0.952
441만원 이상			0.611	1.842	0.651	1.918	0.588	1.800	0.566	1.761
주택소유여부			-0.220	0.803	-0.210	0.810	-0.189	0.828	-0.268	0.765
친정아버지생존여부					0.164	1.179	0.158	1.171	0.248	1.282
친정어머니생존여부					0.774	2.169	0.868 *	2.383	0.854 *	2.348
시아버지생존여부					0.098	1.103	0.158	1.171	0.125	1.133
시아머니생존여부					0.044	1.045	0.020	1.021	0.199	1.220
총가구원수					-0.136	0.873	-0.125	0.883	-0.197	0.821
2세 이하 자녀유무							-0.817 **	0.442	-0.935 ***	0.392
3세 이상 미취학자녀 유무							0.304	1.356	0.279	1.322
첫째아 남아여부							-0.777 ***	0.460	-0.872 ***	0.418
둘째아 남아여부							-0.550 **	0.577	-0.672 **	0.511
이상자녀수 3명 이상여부									1.501 ***	4.486
이상자녀에서 성구분여부									0.144	1.155
부부의 자녀돌봄태도									-0.266 **	0.766
자녀태도1									0.025	1.025
자녀태도2									0.322 ***	1.380
χ^2 값 (df)	72.075 (5)		84.286 (18)		89.071 (23)		113.770 (27)		181.060 (32)	
-2LL	633.545		621.333		616.548		591.849		524.56	
이전모형과의차이										
Δ -2LL (Δ df)	---		12.212 (13)		4.785 (5)		24.699 (4)**		67.29 (5)**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현재 자녀들의 특성에서는 만2세 이하 아동의 유무와 자녀들의 성 구성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들은 추가자녀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부모의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의 존재로 인해 추가자녀를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보육과 양육에 따르는 현재의 어려움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한편, 첫째아나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셋째아 출산이 남아를 얻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서 이상적인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여성들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상적인 자녀에서의 성구분은 여기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아이의 성구조 효과에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부의 자녀돌봄에 대한 태도는 셋째아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부 모두가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수록 셋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낮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겠으나, 부부의 평등한 자녀돌봄역할에 대한 태도는 실제 자녀양육에서도 부부간의 공동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부들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출산계획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세자녀 이상은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태도(자녀태도1)는 셋째아 출산계획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자녀태도2)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그리고 필수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여성일수록 셋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제 10 장 이행요인 분석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이행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0-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통합하여 초혼으로의 이행물로 살펴 본 결혼 이행물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한편,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율은 미혼남성들보다 미혼여성들의 경우 낮다. 남녀 모두 고연령 미혼일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다.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역효과는 여성들에게 더 높다. 미혼남성들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대신 현재 단독가구나 비혈연동거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에 대한 전망이 남녀간에 다른 기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령,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미혼남성보다는 미혼여성들을 통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개인의 전망과 이행은 남녀간 구분을 통해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혼여성들이 무자녀에서 첫째자녀에 이르는 이행의 역학을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령, 결혼연령, 교육, 취업경험 등을 포함하는 생존분석의 회귀방정식에서 연령, 교육은 첫째자녀의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모두 첫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자연유산 경험은 상대적 위험도를 19% 감소시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는데 기여한다. 반대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상대적 위험도를 17.3% 증가시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단축하는데 기여한다. 혼인연령이 1세씩 올라가면 첫째자녀의 출산위험을 1% 정도 감소시키나, 회귀계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독립변수로 결혼코호트를 포함한 생존분석의 회귀방정식 추정결과는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단축되고 있다. 한편 1984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는 약간의 파동이 있기는 전반적으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줄어들고, 첫째자녀 출산의 상대적 위험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다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 위험도는 감소하여,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출산력의 템포왜곡은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혼인연령과는 별도로 기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불임진단을 받은 여성의 42명의 불임진단 치료여부를 보면, 그 중에서 38명에 해당하는 90% 정도는 불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치료중단자의 2/3은 불임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불임치료가 성공하여 첫째자녀를 임신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며, 나머지는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불임치료를 중단하였다. 불임자체가 극소수의 기혼여성의 문제일 수 있기는 하지만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고 기간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첫째자녀 출산 이전에 경험한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혼전임신(32.8%), 출산연기(26.9%), 태아이상(22.5%), 경제적 이유(3.5%)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미혼여성에 대한 혼외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연기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태아이상도 무시할 수 없는 인공임신중절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예측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에서 교육을 물론 혼전 취업경험과 첫째자녀 출산 이전의 취업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혼인연령이 1세씩 상승하게 될 때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를 5%씩 감소시켜, 혼인연령이 높아질수록 첫째자녀 출산이전에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코호트별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의 승산비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보면, 1979년 이전의 결혼코호트를 준거범주로 할 때, 1994-1995년 결혼코호트의 회귀계수부터 최근의 결혼코호트에 이르기까지 회귀계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유배우 상태에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할 확률이 최근에 이

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 혼인연령이 인공임신중절이나 피임사용보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10-1〉 이행요인분석 종합결과

변수	미혼→결혼	결혼(무자녀)→ 1자녀(출산간격)	1자녀→2자녀	2자녀→3자녀이상
이행률 분석결과				
연령	+	×	×	
교육수준	-	×	-	-
취업경험유무	-	×	-	-
초혼연령	na	-	×	-
첫출산소요기간	na	na	-	-
둘째출산소요기간	na	na	na	-
이전인공임신중절경험	na	+	-	-
이전자연유산산경험	na	-	-	+
첫째아남아	na	na	-	-
둘째아남아	na	na	na	-
추가방향 분석결과				
거주지역	na	×	na	×
성(여성)	-	na	na	na
연령	-	+	-	-
초혼연령	na	×	na	na
교육수준	-	×	×	×
취업	+	×	na	×
성·동거 개방적 태도	-	na	na	na
부인 중사상지위	na	×	×	+(무급,자영업)
남편 중사상지위	na	×	na	×
가구소득	na	×	×	×
주택소유여부	na	×	na	×
친정어머니 생존	na	na	na	+
이상자녀(해당자녀수 이상)	na	na	×	+
이상자녀 성구분	na	na	+	×
2세 미만 자녀수	na	na	+	-
3세 이상 미취학자녀수	na	na	×	×
첫째아 남아	na	na	na	-
둘째아 남아	na	na	na	-
남아수	na	na	-	na
부부 자녀돌봄태도(형평성)	na	na	×	-

주: 1) 결혼의향에서 부채, 단독가구, 부모생존여부, 부모이혼경험, 형제자매이혼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4) 친정 아버지생존여부, 시어머니 및 시아버지 생존여부, 총가구원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추가자녀계획과 관련하여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 연령을 제외한 모두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준거범주인 20~24세에 대하여 30~34세와 35~39세의 경우가 추가자녀계획의 승산비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적 사정, 혼전 취업경험,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연령변수가 오히려 첫째자녀를 낳고자 하는 가족형성의 계획 자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단히 낮은 출산력과 관련하여 기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혼인연령의 상승과 별도로 최근에 출산간격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력의 반등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히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결혼코호트별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단히 낮은 출산력 수준이 속도변화의 요소인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변화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직 최근에 결혼한 코호트의 출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호트출산율의 측면에 확실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미 소자녀의 규범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고, 실제로 한명 또는 많아야 두 명으로 끝나는 초저출산력의 상황에서 첫째자녀의 출산을 늦추는 출산행태의 변화하는 모습은 2000년대의 낮은 출산력을 더욱 더 낮은 방향으로 떨어뜨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여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출생 코호트에 따른 둘째출산이행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미 결혼하고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느냐 출산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당사자 여성들의 연령과는 무관하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둘째출산이행률이 낮아,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관찰기간내 여성의 취업 여부였다. 첫 출산 이후부터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중도절단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 동안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이 기간 동안 취업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2.3배 정도 더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였다. 또한 첫째 출산을 늦게 한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이 그만

큼 늦어지거나 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이 낮아졌다.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47배 더 둘째 출산을 앞당겼다.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여성들의 둘째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 및 이와 연관되는 가족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도 둘째출산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첫 자녀와의 터울 조절 등 가족구성의 시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 후 첫 출산 시점이 늦어질수록 둘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론 둘째 출산 계획이 없어서 첫 출산 시점이 늦어진 것일 수도 있다. 즉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첫 아이와의 터울을 고려하여 출산 기간을 집중시킴으로써 단산기간을 앞당기고 있다.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 가운데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성들은 집중적인 자녀 출산 및 양육기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바로 한국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향이 여전히 보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출산의향 분석에서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이 여성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둘째 출산으로 이행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 가족내 성 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을 마치고서 다시 재취업하는 생애과정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으로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한다. 즉 우리 사회 초저출산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집단은 결혼관계내로 들어가기려 꺼리는 미혼집단이며, 결혼관계 내의 출산력 수준은, 성 역할 규범과 함께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고한 성 역할 규범이 미혼자들의 대안적 생애과정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미혼자 집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

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자녀 혹은 세자녀 이상을 둔 25세 이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연령(출생코호트)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현재 고연령층의 여성이 세자녀 이상을 둔 비율이 높다고 할 지라도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이행하는 이행률과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자녀 여성의 센서링기간이라는 방법론적 제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들 여성이 출산을 완료하는 연령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코호트별 실제 출산 이행률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아 출산이행률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변인들로는 우선 대학이상의 학력, 둘째아 이후의 취업경험, 초혼연령, 초혼부터 첫째아출산간의 기간,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 등이 있다. 이들 변인들은 모두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아 이후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둘째아 이후의 자연유산과 사산 경험은 오히려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셋째아를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아 출산이행률에 있어 이상의 변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변인은 기존자녀의 성구조라고 보여진다. 첫째아 혹은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셋째아 출산은 현재 없는 남아를 위한 출산이라는 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아를 가질 것인가를 두자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고 있다. 대신 연령은 높을수록 추가자녀계획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연령, 여성의 종사상 지위 일부와 친정어머니 생존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부모특성은 유의미한 추가자녀출산계획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셋째아 추가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자녀의 특성과 자녀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 특성의 경우, 만2세 아동이 있으면 셋째아

출산계획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첫째아 혹은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계획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태도 변수에서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추가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부부의 공동역할을 강조할수록 셋째아 출산계획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평등한 부부일수록 소자녀를 지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에 많이 동의할수록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을 가질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셋째아 출산이행률과 출산계획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기존 자녀들의 성구조와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에 설명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행요인분석 결과로서 나타난 이행의 장애요인들은 분석에 이용된 조사결과로서 변수들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횡단면적 조사에서 종단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성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보다 많은 관심사를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일부분의 조사목적으로서 종단면적인 분석에 보다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데 한계성도 존재한다. 요컨대, 정밀한 종단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구패널 구축 등의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이행분석 결과로서 각 이행단계에서 장애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들 장애요인들 중 일부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가 각 이행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서,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이 결혼 또는 (추가)출산으로의 이행에 장애가 되도록 하는 매개적인 원인들을 정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 결과로서 판명된 일부 장애요인들, 예를 들어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 또는 사산 등은 직접적인 저출산 원인으로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정책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이행분석에서 탐색적으로 도출된 장애요인들은 제3부에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데 단초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제 Ⅲ 부

저출산 원인

제11장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제12장 가치관과 결혼·출산

제13장 자녀양육비용과 출산

제14장 주거와 출산

제15장 경제적 환경과 출산

제16장 일-가정 양립과 결혼·출산

제17장 노동시장과 출산

제18장 생식보건과 출산

제19장 저출산 원인분석 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 11 장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대부분 출산이 정상적인 결혼부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전체 여성의 출산력(합계출산율)은 유배우율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유배우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유배우율은 초혼연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앞서 이행분석에서 초혼연령은 추가출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이들 인구학적 요인들(초혼연령, 유배우출산율)은 자체적으로 변동하기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제 경제·사회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인들로는 이상자녀수나 성 및 혼전동거와 같은 가치관이 있으며, 교육수준, 취업경험 등 경제사회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이행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 사산 및 불임 등의 생식보건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 및 외국의 사례와 탐색적인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어떠한 인구학적 및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체계화시키는 분석을 한다.

제 1 절 출산관련 인구학적 요인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간개념의 합계출산율이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기간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로 측정된다. 여기에서 ‘평생기간동안’은 생리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간 즉, 인구학적으로 15~49세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일정 기간동안(보통 1년) 서로 다른 연령코호트의 경험을 한 여성의 경험을 가정하여 추정한 가설적인 수치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실제 경험한 출산율인 코호트출산율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코호트출산율 대신 합계출산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한 여성(또는 집단)의 출산경험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연령별(각세 또는 5세계급)로 기혼이나 미혼의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여성 전체를 분모로 하고,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1년 동안)를 분자로 하여 연령별출생률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이를 단순 도식화하면, 출생아수(B)를 전체 여성인구(P)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출산 대부분은 법률적으로 결혼한 여성들(M)로부터 발생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출생아수(B)를 유배우여성(M)으로 나눈 유배우출산율(B/M)을 적용한다. 합계출산율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도 감안하므로, 유배우출산율에 기여할 전체여성 인구 중 결혼한 여성의 비율인 유배우비율(M/P)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주31)}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식1과 같이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부인비율(미혼여성비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frac{B}{P} = a \left(\frac{B}{M} \times \frac{M}{P} \right) + (1 - a) \left(\frac{B}{S} \times \frac{S}{P} \right) \dots\dots\dots(\text{식 1})$$

(여기에서 B는 출생아수, P는 가임여성수, M은 유배우부인수, S는 미혼여성수, a는 총출생아수 중 유배우부인이 낳은 출생아 비율)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를 가져오나, 가임여성인구의 감소폭이 유배우여성인구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또는 미혼여성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최근까지 가임여성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므로, 최근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는 가임여성수의 지속적 증가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합계출산율을 구성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이 최근 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기 전에 각 요인별로 최근의 변동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31) 유럽 등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미혼모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에 의한 출생아수는 극히 미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즉, 1-a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짐).

1. 여성유배우율

우선 여성유배우율 또는 미혼여성비율의 추이다. 유배우율은 100-미혼율로 산정되며, 연령별 유배우율은 [그림 11-1]과 같다. 여기에서는 <표 11-1>에 제시된 미혼율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임기(15~49세) 여성 전체의 미혼비율은 1970년 31.5%에서 2000년 34.9%로 상승하고 있다. 출생이 집중된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서 2000년 40.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출생이 집중된 20~24세 및 30~34세에서 미혼여성비율은 1970년 57.2%, 1.4%에서 2000년 89.1%, 10.7%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5~29세와 30~34세의 경우 1995~2000년간 미혼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악화된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 45~49세에서의 미혼율은 1970년 0.1%에서 2000년 1.7%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아직 미세한 수준이나, 급속히 상승할 전망으로 향후 출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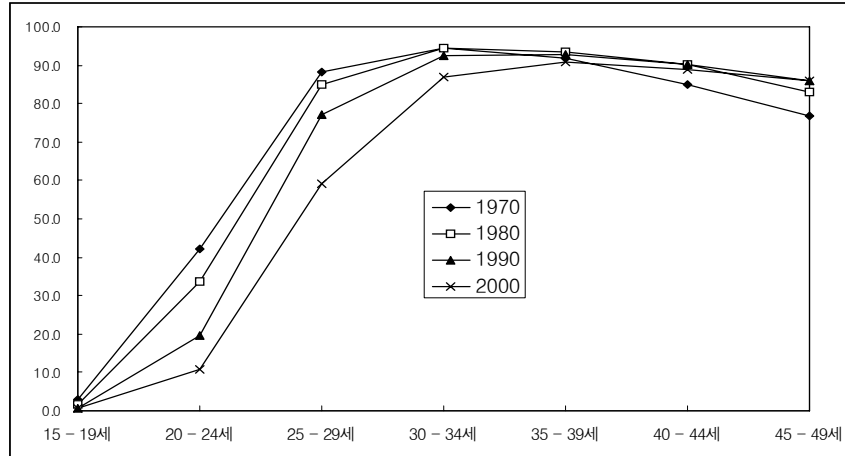
<표 11-1>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단위: %)

구분	여자 연령층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70	31.5	97.1	57.2	9.7	1.4	0.4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36.5	98.2	66.1	14.1	2.7	1.0	0.5	0.3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11-1]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추이(%), 1970~2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이와 같은 미혼여성비율의 상승은 초혼연령의 증가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2년 22.6세에서 2003년 27.3세로 약 30년 동안 4.7세가 증가하였다. 참고로 일본여성의 초혼연령(2004년)은 27.8세로 우리나라 여성과 근접하며, 프랑스 여성은 28.5세(2003년), 스웨덴 여성은 30.1세(2002년), 독일 여성은 29.0세(2003년)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보다 여전히 높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2.1세가 증가하여 일본 1.5세, 프랑스 1.9세 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11-2).^{주32)}

주32) 여성 초혼연령(1995-2004)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1995년 26.3세에서 2000년 27.0세, 2001년 27.2세, 2002년 27.4세, 2003년 27.6세, 2004년 27.8세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5년 26.9세에서 2000년 28.0세, 2001년 28.1세, 2002년 28.3세, 2003년 28.5세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은 2001년과 2002년 공히 30.1세 증가하지 않았다. 독일은 2002년 28.8세에서 2003년 29.0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11-2〉 초혼연령 변동추이, 1972-2004

(단위: 세)

성별	1972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26.7	26.4	27.9	28.4	29.3	29.6	29.8	30.1	30.6
여성	22.6	23.2	24.9	25.4	26.5	26.8	27.0	27.3	27.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초혼연령 상승은 초산연령은 물론, 둘째아, 셋째아 등의 출산연령의 증가에 기여하는 등 만산화로 이어진다. 전체 출산의 평균연령은 1981년 25.9세에서 1990년 27.0세, 2000년 29.0세, 2004년 30.1세로 계속 상승하였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1981년 24.2세에서 2004년 28.9세로 상승하여 평균초산연령이 점차 30대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아 출산연령은 1981년 26.1세에서 2004년 30.8세로 상승하여, 30대 출산에 진입하였다.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 출산모의 평균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표 11-3과 그림 11-2 참조).

〈표 11-3〉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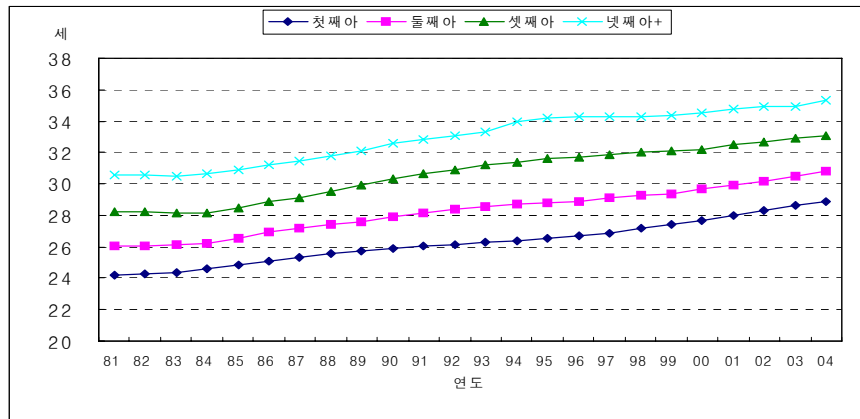
(단위: 세)

출산순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25.9	25.9	27.0	28.0	29.0	29.3	29.5	29.8	30.1
첫째아	24.2	24.8	25.9	26.5	27.7	28.0	28.3	28.6	28.9
둘째아	26.1	26.5	27.9	28.8	29.7	29.9	30.2	30.5	30.8
셋째아	28.3	28.4	30.3	31.6	32.2	32.5	32.7	32.9	33.1
넷째아 이상	30.6	30.9	32.6	34.2	34.5	34.8	34.9	34.9	35.3

자료: 김태현 외, 2005(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분석 결과).

[그림 11-2]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단위: 세)



자료: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출산력 저하의 원인』, 2005.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을 연기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임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후천성불임률 등을 발생시켜 가임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을 우려하여 고령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초혼연령 상승은 부분적으로 유배우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실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표 1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5세에 결혼하는 여성의 첫째아 출산은 26.8세, 둘째아 출산은 29.5세, 셋째아 출산은 32.8세로 각각 나타난다. 이에 비해, 29세에 결혼한 여성의 첫째아 출산은 30.7세, 둘째아 출산은 32.9세로 높게 나타난다.

〈표 11-4〉 유배우 부인(20~34세)의 초혼연령별 모의 출산연령 및 출산간격, 2005

초혼연령	출생순위별 출산시 모의 연령(세)				출산간격(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결혼~첫째아	첫째아~둘째아	둘째아~셋째아	셋째아~넷째아
15~19세	20.2	23.5	27.6	30.0	1.42	3.42	4.40	5.00
20~24세	24.4	27.2	30.7	31.1	1.33	3.03	4.68	5.99
20세	22.0	24.9	28.6	28.5	1.49	3.32	4.26	4.00
21세	22.7	25.9	29.2	29.8	1.17	3.54	4.79	6.07
22세	23.8	26.5	30.7	32.7	1.34	2.81	4.91	2.53
23세	24.9	27.6	31.2	37.5	1.41	3.03	4.82	8.00
24세	25.8	28.5	32.1	24.5	1.29	2.89	4.45	-
25~29세	28.1	30.5	33.5	34.2	1.31	2.90	3.58	4.49
25세	26.8	29.5	32.8	32.9	1.31	3.03	3.39	6.16
26세	27.8	30.3	32.8	34.2	1.33	2.83	4.30	2.36
27세	28.9	31.5	35.0	-	1.38	2.98	3.65	-
28세	29.7	32.1	34.8	37.6	1.22	2.63	2.77	3.00
29세	30.7	32.9	34.8	-	1.20	2.52	1.99	-
30~34세	32.9	34.9	37.1	-	1.17	2.93	2.3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또한, 초혼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임기간의 단축, 후천성불임증, 육체적·물리적(자녀양육 등) 부담 증가 등으로 실제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4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5명이나, 30-34에 결혼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22명, 35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0.71명으로 아주 적다. 동일 연령층에서도 초혼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재 35~39세 여성으로서 24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2.11명, 24-29세에 결혼한 경우 1.93명, 30~34세에 결혼한 경우 1.37명, 35이상에 결혼한 경우 0.56명만이 출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연령을 특정연도로 한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현재 35~39세 여성으로서 25세에 결혼한 경우 출생아수는 2.0명에 이르나, 결혼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여 29세에 결혼한 경우에는 1.63명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현재 동일한 출생코호트일지라도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11-5〉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재 연령별·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단위: 명)

초혼연령	부인의 현재 연령					전체 (20~4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0.73	1.09	1.66	1.96	2.01	1.77
24세 이하	0.70	1.47	1.99	2.11	2.09	1.95
15세	-	-	-	2.00	-	2.00
16세	2.00	-	-	2.00	2.69	2.31
17세	1.00	2.00	1.71	2.65	2.39	2.27
18세	1.43	1.84	1.90	2.13	2.27	2.05
19세	1.05	1.81	2.28	2.13	2.17	2.02
20세	1.17	1.72	2.03	2.05	2.04	1.98
21세	1.01	1.82	2.07	2.22	2.10	2.03
22세	0.52	1.47	1.98	2.09	2.13	1.94
23세	0.23	1.45	2.05	2.12	2.01	1.94
24세	0.00	1.16	1.89	2.07	2.06	1.88
25~29세		0.66	1.51	1.93	2.00	1.65
25세		0.93	1.80	2.00	2.03	1.80
26세		0.71	1.69	1.95	2.00	1.69
27세		0.35	1.42	1.90	1.98	1.55
28세		0.38	1.07	1.95	2.15	1.50
29세		0.00	1.07	1.63	1.84	1.36
30~34세			0.65	1.37	1.67	1.22
35세 이상				0.56	0.86	0.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거시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초혼연령의 변동을 비교하여 보면, 1990~2003년 기간동안 초혼연령 1세 상승시 합계출산율은 평균 0.16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교기간을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지난 10년간에 맞추어 보면, 전체 출산순위를 포함한 평균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04년 30.0세로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동기간에 1.47명에서 1.16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5-2004년 기간동안 출산연령 1세 증가시 합계출산율은 0.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은 연동하므로, 결국 초혼연령을 1세 상승시 합계출산율은 0.28명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11-6 참조).

〈표 11-6〉 초혼연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구분	1995	2000	2004
평균출산연령	28.0세	29.0세	30.0세
합계출산율	1.71명	1.47명	1.16명
기간	1995~2000	2000~2004	1995~2004
합계출산율 차이	0.24명	0.31명	0.28명

2. 유배우출산율

결혼한 여성 1천명당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표 11-7>과 [그림 11-3]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주된 특징으로는 20~24세와 25~29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5~29세 유배우부인의 유배우출산율은 1995년 253명에서 2004년 193명으로 여성 1천명당 60명꼴로 감소하였다. 예외적으로 2000년에 이 연령층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새천년베이비붐의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24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1995년 377명에서 2004년 259명으로 약 120명이 감소하여, 15-19세 여성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5-19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같은 기간에 469명에서 325명으로 약 140명이 감소하나, 이 연령층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규모가 아주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유배우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들 10대와 20대와 달리, 30대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0~34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1995년 76.1명에서 2004년 99.5명으로, 35~39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같은 기간에 16.4명에서 20.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는 혼인연령 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출산을 30대로 늦추는 이른바 캐치업(catch-up) 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에서 유배우출산율의 증가폭이 20대와 10대의 감소폭에 턱없이 낮아, 전체적으로 1995~2004년 기간동안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40대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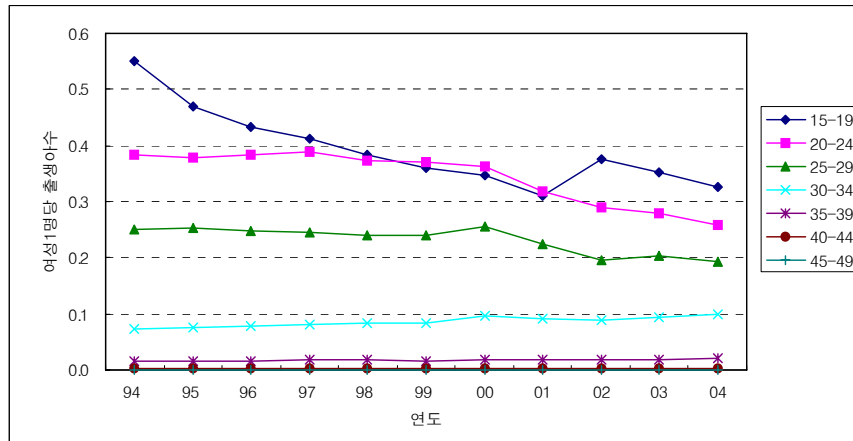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40~44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2.8명 수준에서, 그리고 45~49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은 0.2~0.3명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어,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표 11-7〉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5~2004(전체 연도 제시)
(단위: 유배우 부인 1,000명 당 출생아수)

연령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15~19세	468.9	411.5	359.6	310.5	351.0	325.2
20~24세	377.2	388.5	370.1	317.4	278.2	259.0
25~29세	253.4	245.5	240.9	224.7	202.6	193.4
30~34세	76.1	81.4	82.8	90.6	93.6	99.5
35~39세	16.4	17.5	16.9	19.0	19.3	20.8
40~44세	2.6	2.8	2.7	2.8	2.8	2.8
45~49세	0.3	0.2	0.2	0.3	0.3	0.2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2005

[그림 11-3]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4~2004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2005

3. 출산율 변동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기여도

여기에서는 인구학적 요인들로서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고 한다. 초혼연령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미혼율을 증가시키거나 유배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다. 따라서 초혼연령 대신 유배우율(1-미혼율)이 실제 분석에 이용된다. 물론, 미혼인구의 출산은 전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아주 미세하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출산 대부분이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가정은 충분히 설정될 수 있다.

유배우율(초혼연령)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는 과거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한다. 다만, 사이연도나 향후 연도에 대한 유배우율은 내삽법 또는 외삽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합계출산율(B/P)은 미혼인구의 출산(a)을 무시할 경우 앞의 식1에서와 같이 유배우출산율(B/M)×유배우율(M/P)로 산출된다. 비교연도의 연령별 유배우율과 기준연도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곱하여 기간개념의 연령별출산율이 산출한다. 이들 연령별출산율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합계출산율 구한다. 이렇게 구한 합계출산율을 기준연도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여 구한 차이가 유배우율 변동의 기여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유배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유배우출산율 변동은 앞의 <표 11-8>의 수치를 적용한다. 유배우율의 기여도를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유배우율과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곱하여 연령별출산율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합계출산율을 추정한다. 이렇게 구한 합계출산율과 기준연도의 합계출산율간의 차이는 유배우출산율 변동의 기여도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추정작업에 기준연도는 1995년과 1999년 두 연도를 적용하였다. 1995년은 IMF 외환위기 이전 어느 정도 출산율이 안정되었던 시기를 대표하며, 1999년은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1999년은 5년 단위의 분석에서

1995~2004년간의 중간시기이기도 하다. 2000년은 새천년베이비붐 현상으로 전체 시계열에서 불규칙성을 나타내므로, 그 영향을 피하기 위해 1999년을 중간 연도로 이용하였다.

우선 1995~1999년 기간동안 유배우율(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 변동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합계출산율은 0.23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배우율 변동(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유배우율 변화)은 102.0%, 유배우출산율 변동은 -2.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0~34세 연령층에서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유배우출산율 수준은 오히려 상승하여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국,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저하는 전적으로 유배우율의 급격한 감소 또는 초혼연령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기준연도인 1999년을 적용할 경우, 두 인구학적 요인들이 합계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기여정도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1999~2004년 기간동안 합계출산율은 0.25명이 감소하여, 1995~1999년 동안의 감소(0.23명)폭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합계출산율감소에 대해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는 49.1%, 유배우율의 기여도는 50.9%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이 기간동안에는 혼인연령 상승뿐만 아니라 유배우출산율 감소가 동반적으로 발생하여 초저출산현상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전 기간동안(1995~2004년)에 합계출산율은 0.48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배우율은 71.0% 그리고 유배우출산율은 29.0%를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IMF 외환위기 전후에 합계출산율 감소는 유배우율 감소(또는 초혼연령 상승)가 주도한 결과이며,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은 원래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력이 큰데다가 유배우출산율까지 감소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주33)}

주33) 일본의 경우, 1975~1980년간 합계출산율 0.2명 감소(1.94명→1.74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 87%, 출산행동변화 13% 기여. 1980~1990년간 합계출산율 0.19명 감소(1.74명→1.55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 90%, 출산행동변화 10% 기여. 1990~2000년간 합계출산율 0.25명 감소(1.55명→1.30명)에 대해 결혼행동변화 39%, 출산행동변화 기여. 과거에는 혼인행동변화 즉, 초혼연령 상승이 합계출산율 감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 1990~2000년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에는 오히려 출산행태변화 즉, 유배우출산율의 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8〉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5~2004

기간	출생아수(천명)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여도(%)	
	기준연도	비교연도	차이	기준연도	비교연도	차이	유배우 출산율	유배우율 (초혼연령)
1995~1999	721	616	-105	1.65	1.41	-0.23	-2.0	102.0
1999~2004	616	476	-140	1.41	1.16	-0.25	49.1	50.9
1995~2004	721	476	-245	1.65	1.16	-0.48	29.0	71.0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기여정도는 향후 정책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중점을 미혼층에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혼층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미혼층과 기혼층 모두에 동일한 수준으로 중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두 인구학적 현상을 중심으로 향후 변동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초혼연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여 왔다. 과연 어디까지 초혼연령이 상승할 것인가는 비단 인구학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등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참가의 증가 등과 연동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80%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높은 대학진학률은 적어도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들이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하게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부족으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 물론, 대학졸업 여성의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하겠지만, 대학원 졸업 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과잉되어 실업 혹은 잠재 실업상태의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및 경제활동참가 또는 취업대기로 여성은 혼인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전문직이나 사무직종 등에서의 종사비율이 증가하여, 자아실현을 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유럽국가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상승한 후 다소 둔화된 것을 보아도,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은 여러 사회

현상과 맞물려 적어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배우출산율의 경우, 출산이 집중된 20대 연령층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결혼한 후 직장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연기하는 현상이 증가하여, 이 연령대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동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11-9),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은 1990년 1.44년에서 2002년 1.77년으로 10여년 동안 0.33년이나 증가하였다. 즉, 결혼 후에도 바로 출산하기보다 그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후 둘째아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30대 연령층에서 유배우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그 상승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 만혼은 만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고령출산은 육체적 및 물리적인(가임기간 단축, 고연령에서의 자녀양육 부담, 후천성불임 등) 한계성으로 인하여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20대 유배우출산율의 감소폭이 아주 크고, 30대 유배우출산율은 낮은 수준에서 상승세가 곧 둔화되어, 전체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11-9〉 결혼 후 특정 순위 출산까지 소요기간, 1981~2002

(단위: 년)

구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첫째아	1.45	1.42	1.44	1.56	1.68	1.72	1.77
둘째아	3.40	3.51	3.74	3.87	3.89	3.93	3.99
셋째아	5.39	5.32	5.42	5.55	5.41	5.41	5.37

자료: 김태현 외, 2005(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분석 결과).

이와 같이, 초혼연령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유배우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현재보다 더 낮아지거나 현재의 아주 낮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경제사회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혼연령의 상승세를 정지 또는 둔화시켜야 하며,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제 2 절 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

초혼연령 상승이나 유배우출산율 감소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중 초혼연령 상승 즉, 만혼은 가임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고령출산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후천성불임증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이 되어 유배우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초혼연령 및 유배우출산율 자체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실로 이들 인구학적 현상은 개인수준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위의 여러 경제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내린 의사결정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결혼 및 출산에 유리하지 못한 가치관이나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바로 저출산의 선행원인들이 되며,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행분석 결과에서도 교육수준과 취업경험 등은 추가자녀로의 이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서는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저출산을 야기하는 경제사회적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개인의 가치관도 결혼이나 출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앞선 이행분석에서 성과 혼전동거 등에 관한 개방적인 태도는 결혼으로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 역시 사회문화나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강제로 후행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다. 즉, 이들 요인들이 결혼으로의 이행을 저지하는 매개적인 원인들을 정밀히 규명하여,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미혼남녀 특성별 결혼 행태

가. 미혼남녀의 특성

조사당시 미혼상태로 남아있는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1-10>과 같다. 우선 만혼인구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미혼남성의 경우, 25~29세 연령층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인데 비해, 30~34세 연령층 중에는 67.4%,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63.3%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25~29세의 경우 57.4%, 30~34세의 경우 56.8%, 35~44세의 경우 50.3%로 고연령층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역으로 나이가 많은 미혼여성은 중소도시나 농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학력수준으로는 모두 대졸, 고졸 순이다. 25~29세의 경우 고졸은 24.5%, 대졸은 71.7%로 대졸비율이 월등히 높다. 반면, 30세 이상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25~29세 연령층에 비해 고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30~34세 40.6%, 35~44세 36.6%), 대졸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30~34세 57.2%, 35~44세 57.8%). 미혼여성의 학력수준도 미혼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25~29세 미혼여성의 학력수준은 대졸과 대학재학이 65.2%로 높은 반면, 30~34세는 대졸(51.6%)이 고졸(44.8%)과 유사한 수준이며,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졸비율이 54.4%로 대졸비율 30.5%보다 높으며, 중졸 비율도 15.1%나 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취업비율이 비취업(구직 중과 비경제활동상태) 비율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미혼남녀 모두 25~29세 연령층보다 3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30~34세인 미혼남자의 취업률은 82.8%, 35~44세의 경우 81.4%로 25~29세 미혼남자의 취업률 72.8%보다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25~29세의 취업률이 68.9%인데 비해, 30~34세의 경우 78.0%, 35~44세의 경우 77.3%로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취업 중인 미혼남자의 직종분포는 25~29세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생산노무직 순으로 높다. 30~34세 미혼남성의 직종도 25~29세의 경우와 같은 분포를 보이나, 전문직이나 사무직 비율이 다소 낮고, 대신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노무직이 상대적으로 높다. 35~44세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전문직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전문직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생산노무직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경우 25~29세에서 생산노무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순인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생산노무직, 전문직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며, 사무직 비율은 가장 낮다. 특히, 35~44세에서 생산노무직 비율이 57.3%로 아주 높다. 또한, 고연령층일수록 전문직(25~29세 25.9%, 30~34세

27.0%, 35~44세 18.6%) 비율이 낮으며, 사무직 비율도 25~29세 20.7%, 30~34세 18.2%, 35~44세 6.4%로 고연령층에서 현저히 낮다.

종사상지위로는 미혼남녀 공히 모든 연령층에서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고연령층일수록 상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5~29세 9.6%에서 30~34세 12.1%, 35~44세 이상 31.9%로 급상승하여, 자영업 등 본인이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 만혼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미혼남성의 경우 30~34세에서 30.3%로 25~29세와 35~44세의 1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율은 35~44세 연령층에서 28.0%로 25~29세 25.2%, 30~34세 1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대부분 연령층에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혼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경력 증가로 인하여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30~34세에서 고연령층 비율이 정점을 이루고 35~44세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여성 중 고소득층은 30대 전반에 결혼으로 이행하여 미혼상태에서 이탈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여성들의 결혼으로 이탈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미혼남성의 경우 41~50시간 비율이 25~29세와 35~4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시간 이상의 비율로 나타난다. 30~34세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50시간 이상 장기간 근무비율이 41~50시간의 비율보다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50시간 이상 근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35~44세 미혼여성의 50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51.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남녀 공히 모든 연령층에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의 종사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아주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성 중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비율은 35~44세에서 무려 61.4%이며, 동일 연령층에 속한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50.9%에 이르고 있다.

〈표 11-10〉 미혼남녀 연령별 일반 특성

(단위: %)

구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25~29세	30~34세	35~44세	25~29세	30~34세	35~44세
지역별						
대도시	58.4	67.4	63.3	57.4	56.8	50.3
중소도시	26.9	24.8	26.0	26.9	30.1	29.7
농촌	14.7	7.8	10.7	15.7	13.1	2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	1.3	5.6	2.0	3.2	15.1
고졸	24.5	40.6	36.6	32.8	44.8	54.4
대졸	2.8	0.8	0.0	13.6	0.4	0.0
대졸 이상	71.7	57.2	57.8	51.6	51.6	30.5
취업여부						
취업	72.8	82.8	81.4	68.9	78.0	77.3
비취업	27.2	17.2	18.6	31.1	22.0	22.7
직종						
관리전문직	44.8	38.6	40.9	25.9	27.0	18.6
사무직	34.0	28.5	20.6	20.7	18.2	6.4
서비스판매	17.7	26.5	30.8	18.0	23.7	17.7
생산노무직	3.5	6.3	7.8	35.5	31.0	57.3
종사상지위						
비임금	6.8	12.1	32.4	9.6	12.1	31.9
상용직	74.6	57.6	49.1	65.2	70.5	40.1
임시일용직	18.6	30.3	18.6	25.2	17.4	28.0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13.9	10.9	8.6	6.5	5.3	8.8
100~149만원	32.2	30.3	17.1	24.3	18.2	20.0
150~199만원	15.4	26.2	27.4	21.5	22.7	18.2
200~249만원	8.0	8.9	15.9	10.5	17.9	16.4
250만원 이상	3.1	5.1	12.0	6.0	14.1	12.4
무직	27.4	18.7	19.0	31.2	21.8	24.2
근무시간						
40시간 이하	24.3	27.8	23.6	13.5	14.5	20.6
41~50시간	41.9	31.8	42.3	37.8	38.8	27.6
50시간 이상	33.8	40.5	34.1	48.7	46.6	51.7
직장규모						
10인 미만	33.2	36.8	61.4	33.0	38.0	50.9
10~50인 미만	22.8	25.9	16.5	30.2	19.9	23.3
50~301인 미만	16.1	13.6	4.9	18.2	15.9	13.7
301~400인 미만	9.8	8.9	6.5	12.2	18.2	7.9
400인 이상	18.0	14.8	10.6	6.4	8.1	4.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현재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 달리 결혼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미혼남성 중 71.4%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강한 결혼관을 가진 비율은 더욱 낮은 29.4%에 불과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남성에 비해서도 더 낮은 12.9%에 불과하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199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1998년 63.3%에서 2005년 49.2%로 낮아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동 기간에 20.3%에서 12.9%로 낮아져,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더 약화되고 있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관이 더 비관적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감수하여야 직장 등에서 애로사항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해 후술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하지 않은 편이 좋다)가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 포함)가 20~24세에서 78.0%, 25~29세에서 72.5%, 30~39세에서 68.3%, 35세 이상에서 48.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남성보다는 약하지만,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도 연령 증가와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4세 미혼여성 중 52.9%가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이러한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져 35세 이상 미혼여성 중에는 24.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방향은 결혼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미혼남녀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방향으로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이미 결혼한 계층이 미혼인구에서 이탈함으로써,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녀들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갖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이 두 방향의 해석은 현재 고연령층에 속한 미혼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며, 이는 만혼이나 평생 비혼으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표 11-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단위: %)

구분	반드시 결혼 해야함	결혼 하는 편	해도 안해도 무방	결혼하지 않는 편	모름	계(명)
미혼남성 ¹⁾	29.4	42.0	23.5	2.2	3.0	100.0 (1,466)
20~24세	34.9	43.1	17.6	1.2	3.2	100.0 (562)
25~29세	29.4	43.1	22.3	2.7	2.5	100.0 (480)
30~34세	26.8	41.5	26.8	2.2	2.6	100.0 (272)
35~44세	13.7	34.6	42.5	4.6	4.6	100.0 (153)
미혼여성 ¹⁾	12.9	36.3	44.9	3.7	2.2	100.0 (1,205)
20~24세	14.2	38.7	42.2	3.2	1.7	100.0 (654)
25~29세	12.4	37.3	43.9	3.0	3.3	100.0 (362)
30~34세	9.2	29.8	53.4	5.3	2.3	100.0 (131)
35~44세	7.0	17.5	61.4	12.3	1.8	100.0 (57)
1998 ²⁾ 미혼여성	20.3	43.0	32.2	1.3	3.2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분석결과임.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미혼남녀들이 본인의 결혼에 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가는 <표 11-12>에 제시하였다. 20~44세 미혼남녀 중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82.5%, 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73.8%로 나타난다. 결혼을 유보하는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12.0%, 미혼여성의 경우 17.4%이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미혼남성 5.5%, 미혼여성 8.8%이다.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일반적인 결혼관이 부정적인 만큼,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결혼을 유보하는 태도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조사 당시 연령이 35~39세인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무려 19.1%로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례수가 작아 대표성이 낮을지라도 이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31.0%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결혼을 늦추면 늦출수록 결혼하기가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과 결혼을 아예 포기하여 고연령층에서 미혼상태로 남아있는 경향 모두를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만혼은 평생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 11-12〉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 희망여부, 200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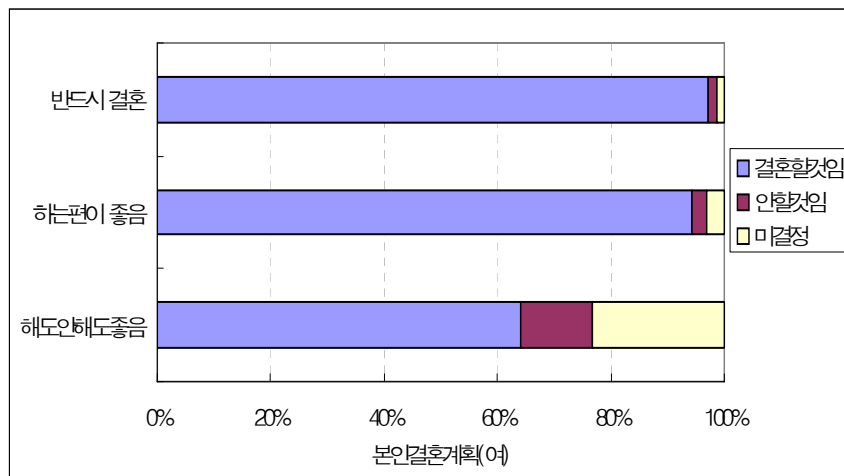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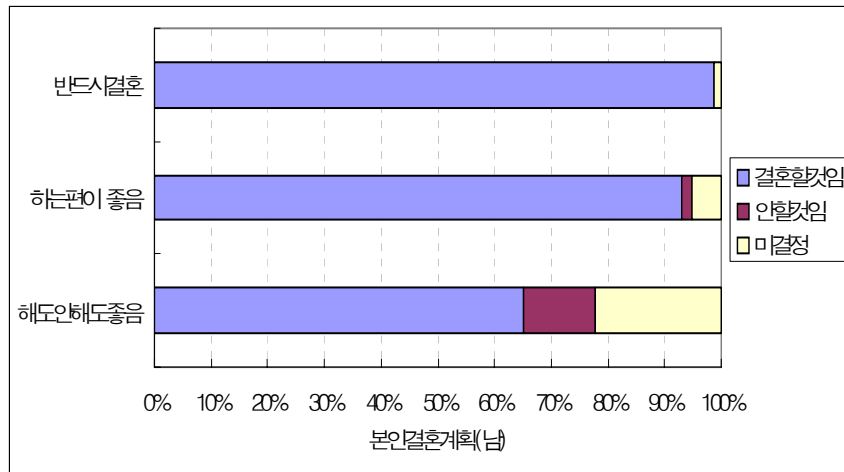
구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 희망	비혼 희망	결혼 유보	계(명)	결혼 희망	비혼 희망	결혼 유보	계(명)
전체	82.5	5.5	12.0	100.0 (1,466)	73.8	8.8	17.4	100.0 (1,203)
20~24세	85.7	2.5	11.8	100.0 (561)	75.5	7.7	16.9	100.0 (652)
25~29세	85.6	4.8	9.6	100.0 (479)	76.0	6.1	17.9	100.0 (363)
35~39세	80.6	5.5	13.9	100.0 (273)	69.2	13.1	17.7	100.0 (130)
35~44세	64.5	19.1	16.4	100.0 (152)	50.0	31.0	19.0	100.0 (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과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상당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1-4]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미혼인구 중 본인은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소 일치성은 낮지만, 결혼을 하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보인 미혼인구 중 본인은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인 미혼인구 중 본인은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신 본인의 결혼을 유보하는 태도와 평생 비혼으로 남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일반적인 결혼관은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그림 11-4] 결혼관과 본인 결혼계획 간 차이, 200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 미혼인구의 결혼시기에 관한 태도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는 30세(39.6%)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28세(14.2%), 32세(12.4%) 순으로 많다.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로는 여전히 30세가 38.8%로 가장 많으나, 다음으로 32세(20.3%), 28세(8.4%), 33세(7.4%)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8세에 25.3%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27세(21.8%)로 나타난다. 반면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8세(29.1%), 30세(25.1%), 27세(18.3%) 순으로 나타난다(표 11-13 참조).

요컨대, 미혼남성은 자신과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신과 남성의 결혼적령기를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남녀간의 기대혼인연령 차이는 만혼 및 비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11-13〉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2005

(단위: %,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미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
24세 이하	0.6	0.1	5.9	0.9
25세	1.2	0.1	14.0	3.3
26세	1.4	0.3	16.6	8.0
27세	5.2	2.0	21.8	18.3
28세	14.2	8.4	25.3	29.1
29세	8.4	6.5	4.7	7.2
30세	39.6	38.8	9.8	25.1
31세	5.7	6.4	0.2	2.0
32세	12.4	20.3	0.8	3.9
33세	5.7	7.4	0.4	1.1
34세	1.3	3.3	-	0.3
35세 이상	4.3	6.4	0.5	0.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461)	(1,198)	(1,461)	(1,19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본인의 결혼 시기는 남성의 경우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각각 나타난다. 특히, 미혼남성의 45.0%와 미혼여성의 19.9%가 30세 이후에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표 11-14 참조). 물론 선택효과로 고연령층 미혼인구일수록 결혼희망연령도 고연령화되고 있다. 비록 이미 결혼한 인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사당시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녀의 결혼희망연령은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평균보다 많다. 이는 미혼인구가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여러 이유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를 초과해서 결혼을 연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14〉 결혼희망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연령, 2005

(단위: %, 명)

성·연령별	결혼계획연령(%)						계(사례수)	평균결혼 계획연령(세)
	20~24세	25~29세	30세	31~32세	33~34세	35세 이상		
미혼남성	0.5	26.7	27.8	17.8	11.8	15.4	100(1,186)	31.8
20~24세	1.3	53.6	32.2	9.9	2.0	1.0	100(480)	29.5
25~29세	-	14.5	42.7	30.6	9.8	2.4	100(405)	31.2
30~34세	-	-	-	18.1	41.5	39.4	100(217)	34.4
35~44세	-	-	-	-	-	100.0	100(83)	40.4
미혼여성	0.7	57.4	21.9	10.5	3.9	5.5	100(871)	29.7
20~24세	1.3	78.3	16.3	3.7	0.2	0.2	100(492)	28.4
25~29세	-	41.7	37.6	17.2	2.4	1.1	100(275)	30.1
30~34세	-	-	8.8	30.4	30.8	29.9	100(85)	33.8
35~44세	-	-	-	-	-	100.0	100(19)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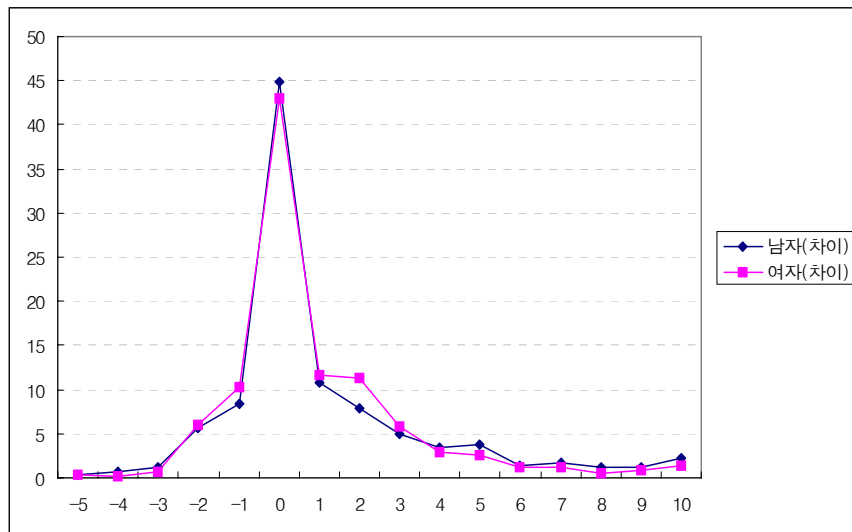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전체적으로 20~44세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적령기보다 늦은 비율은 남성의 경우 36.1%, 여성의 경우 38.6%로 나타난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은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보다 모두 평균 2.5세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는 30.6세인데 비해, 본인의 결혼희망연령은 33.1세이며,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는 28.9세, 결혼희망연령은 31.4세이다. 그러나 미혼남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적

령기와 그들이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간의 차이(적령기-희망연령)는 [그림 11-5]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11-5]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결혼연령과 계획결혼연령간의 차이,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라.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계획

만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한연령의 기준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평균결혼연령을 초과한 경우 만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지난 경우를 만혼의 기준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초혼연령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나,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평균초혼연령을 기준으로 만혼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리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연령을 만혼의 기준으로 삼은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로는 생리적으로 적합한 연령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 연령을 무시한 생리적 연령만을 감안

하는 경우 비판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위적으로 남녀 공히 33세를 만혼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미혼남녀 중 33세 이상에서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만혼으로 규정하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를 비혼으로 규정하였다.

만혼 또는 비혼을 희망하는 미혼남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1-15>와 같다. 한편, 만혼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에서 비율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다만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 참고할 뿐이다. 우선 도농간의 차이를 보면, 미혼남녀 공히 만혼 경향은 도시에서 높으나, 비혼 경향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저학력층일수록 비혼과 만혼 경향이 높아,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운 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 비혼 경향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만혼 경향은 취업의 경우가 비취업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직종별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생산·노무직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에서 비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만혼 경향은 남성의 경우 생산·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에서, 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과 관리·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상지위별로 비혼 및 만혼 경향은 남녀 공통적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근로(사업)소득별로 비혼 경향은 미혼남녀 공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으며, 만혼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11-15〉 미혼남녀(25~44세) 특성별 결혼 희망여부 및 시기, 2005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희망		비혼 희망	결혼 유보	소계	결혼희망		비혼 희망	결혼 유보	소계
	33세 미만	33세 이상				33세 미만	33세 이상			
지역										
도시	44.5	33.8	7.3	14.4	100.0	54.0	15.1	10.0	20.9	100.0
농촌	44.2	30.7	8.8	16.3	100.0	58.4	7.7	12.2	21.7	100.0
교육정도					100.0					100.0
중졸 이하	19.1	44.9	26.1	9.9	100.0	30.6	19.9	34.6	14.9	100.0
고졸	40.0	30.7	9.6	19.7	100.0	51.8	12.7	12.5	23.0	100.0
대졸 이상	50.6	34.9	4.1	10.4	100.0	61.8	9.3	8.7	20.2	100.0
취업상태					100.0					100.0
취업	43.5	34.9	7.0	14.6	100.0	59.1	10.8	10.0	20.1	100.0
무직	46.9	29.1	9.2	14.8	100.0	55.5	9.7	11.1	23.7	100.0
직종										
관리전문직	50.0	37.0	2.3	10.7	100.0	58.5	12.0	8.4	21.1	100.0
사무직	54.6	34.4	3.6	7.4	100.0	65.4	7.2	8.8	18.6	100.0
서비스판매직	35.2	43.9	7.7	13.2	100.0	53.2	12.3	16.2	18.3	100.0
생산노무직	38.5	29.0	11.3	21.2	100.0	48.3	16.0	4.6	31.1	100.0
종사상지위										
비임금	21.1	48.8	9.2	20.9	100.0	38.7	22.9	23.5	14.9	100.0
상용직	48.8	33.0	4.9	13.3	100.0	64.8	8.1	6.7	20.4	100.0
임시일용직	42.9	31.6	11.0	14.5	100.0	50.7	13.5	13.6	22.2	100.0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41.4	26.4	10.5	21.7	100.0	59.4	8.1	13.9	18.6	100.0
100~149만원	50.7	26.0	7.6	15.7	100.0	60.8	5.6	12.1	21.5	100.0
150~199만원	46.7	34.3	6.2	12.8	100.0	62.4	14.9	8.7	14.0	100.0
200만원 이상	35.7	46.3	6.1	11.9	100.0	54.5	17.0	2.8	25.7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마. 미혼인구의 결혼 연기·포기 이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외부환경의 제약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개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애주기의 계획과 진행에 있어 결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지연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지나치게 늦게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국가나 사회가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미혼남성(25~39세)이 조사당시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순으로 나타난다. 미혼남성들은 생계부양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무려 57.8%가 주택마련이나 소득 및 고용 등의 가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미혼남성들도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순의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용(주택가격 포함)을 반영하고 있다. 농촌의 미혼남성들은 결혼비용 마련보다 소득부족과 실업·고용불안정이 결혼을 늦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어, 농촌총각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미혼여성들(25~39세)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로는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결혼비용(혼수 등) 부담,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실업·고용불안정 순으로 나타난다. 즉, 미혼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결혼제도 자체가 부담스러워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 미혼여성들간의 결혼 연기 이유는 차이가 없이 전국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1-16〉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단위: %)

이유	미혼남자			미혼여자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소득부족	19.2	18.5	23.3	4.7	4.8	3.6
실업/고용 불안정	17.3	17.8	14.1	6.1	5.8	8.4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곤란	5.3	5.0	6.6	17.8	18.1	15.1
결혼비용(주택/혼수 등) 부담	21.3	22.8	12.5	13.2	13.0	14.0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5.1	5.3	4.1	8.9	8.8	9.2
마땅한 사람 못 만남	11.6	11.2	13.5	24.4	24.2	25.6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5.1	4.5	8.4	6.5	6.4	7.2
기타	15.1	14.8	17.4	18.5	18.7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51)	(642)	(109)	(460)	(402)	(5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취업여부별로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이유는 <표 11-17>에 제시하였다. 취업 중인 미혼남성들(25~39세)이 결혼을 늦추고 있는 이유들은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소득부족,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실업·고용불안정,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순이다. 반면, 비취업 중인 미혼남성의 결혼연기이유는 실업·고용불안정, 소득부족,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순으로 나타나, 실업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취업 중인 미혼여성(25~39세)의 결혼지연 이유는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결혼비용(혼수 등) 부담,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순이다. 비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가 가장 주된 이유이며, 다음으로 실업·고용불안정,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 곤란, 결혼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난다.

〈표 11-17〉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단위: %)

이유	미혼남자		미혼여자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소득부족	22.2	10.8	5.5	2.2
실업/고용 불안정	7.0	46.4	2.9	15.8
일(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양립곤란	6.0	3.3	19.8	11.6
결혼비용(주택/혼수 등) 부담	26.2	7.7	14.0	10.8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5.6	3.6	9.6	6.5
마땅한 사람 못 만남	13.6	5.8	25.2	22.0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5.9	2.8	6.5	6.6
기타	13.5	19.7	16.5	24.4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55)	(196)	(344)	(11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직종별로 결혼지연 이유는 미혼남성(25~39세)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은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소득부족 순으로 나타난다.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소득부족,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순, 생산기능직에 종사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소득부족,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 순으로 나타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25~39세)의 결혼지연 이유로는 일-결혼생활 양립곤란이 가장 주된 이유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결혼비용(혼수 등) 부담 순으로 나타난다.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일-결혼생활 양립곤란이 주된 결혼지연 이유로 나타나며, 이외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 소득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 못 만나서 이유가 일-결혼생활 양립 곤란보다 중요한 이유로 나타난다(표 11-18 참조).

〈표 11-18〉 취업 중인 미혼남녀(25~39세)의 직종별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단위: %)

이유	미혼남자				미혼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등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등
소득부족	10.5	15.7	26.4	30.9	2.1	4.8	12.6	8.7
실업/고용 불안정	5.1	1.9	9.7	8.5	2.1	2.0	4.3	0.0
일-결혼생활양립곤란	8.5	7.9	5.3	3.8	20.7	19.3	24.9	0.0
결혼비용(주택/혼수 등) 부담	35.4	31.5	28.3	16.0	14.0	10.5	17.8	21.9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5.3	4.2	3.5	7.8	9.5	7.9	10.1	23.0
마땅한 사람 못 만남	15.9	21.0	9.7	11.4	25.4	34.2	11.2	32.0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4.4	7.0	6.4	6.2	5.7	7.9	5.8	0.0
기타	14.8	10.7	10.7	15.4	20.5	13.4	13.1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39)	(97)	(112)	(203)	(144)	(109)	(74)	(1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1-19〉 미혼남녀(20~39세) 특성별 결혼을 미룬 이유¹⁾, 2005

(단위: %)

성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경제활동상태			직 종			종사상 지위		
		취업중	구직중	비취업	전문직	사무직	생산 직등 ¹⁾	비임금	상용직	임시/ 일용
미 혼 남 성	소득이 적어	19.5	13.0	3.9	9.0	13.3	26.1	22.3	16.3	26.6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7.0	6.0	25.1	9.4	9.3	5.3	4.3	8.0	6.0
	결혼시기 놓쳐	4.6	1.2	0.9	4.7	5.0	4.5	6.5	4.6	3.6
	마땅한 사람 못만나	11.9	4.9	4.9	13.7	17.8	9.6	14.5	13.6	6.5
	시간이 없어서	4.2	0.0	1.0	7.2	1.8	3.6	6.0	4.0	3.6
	이성을 만날 기회 없어	5.2	3.5	0.9	3.8	5.9	5.6	3.4	5.4	5.7
	실업고용 불안정	6.1	48.7	26.8	4.4	1.6	7.9	4.6	2.8	15.0
	집장만 등 결혼비용	22.9	6.8	6.1	30.4	26.8	18.1	15.8	27.9	13.4
	직장문제	0.4	0.8	1.1	0.6	0.0	0.4	0.0	0.2	1.1
	결혼생활부담	4.9	3.7	2.3	4.6	3.6	5.6	5.1	5.0	4.5
	자아성취	5.4	6.4	17.2	7.9	6.7	3.6	6.6	4.9	6.0
미 혼 여 성	기타	7.9	5.1	9.7	4.3	8.2	9.5	10.9	7.2	8.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례수)	(634)	(132)	(99)	(161)	(114)	(354)	(88)	(400)	(145)
	소득이 적어	4.7	2.6	1.5	1.7	4.1	10.4	2.0	4.4	6.7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11.2	7.6	5.4	14.4	11.1	6.1	5.8	13.0	8.4
	결혼시기 놓쳐	3.5	0.0	1.8	2.3	2.5	6.8	2.4	2.9	5.7
	마땅한 사람 못만나	21.5	18.0	23.0	21.1	29.5	12.9	12.5	25.5	14.0
	시간이 없어서	2.5	0.0	0.0	3.5	1.9	1.6	7.0	2.7	0.0
	이성을 만날 기회 없어	5.5	6.1	6.1	4.7	6.8	4.2	5.5	5.8	3.4
	실업고용 불안정	2.4	18.7	9.9	1.8	1.8	3.1	2.8	0.7	6.1
	집장만 등 결혼비용	11.9	10.8	9.0	11.6	9.1	16.1	7.6	11.6	14.8
	직장문제	5.7	3.2	0.0	5.0	5.6	7.2	8.3	3.4	11.8
	결혼생활부담	8.2	4.8	7.5	7.8	6.8	10.7	21.9	6.4	8.0
	자아성취	12.5	8.1	23.0	14.3	11.1	11.6	14.0	12.6	12.2
	기타	10.4	20.1	12.7	11.8	9.7	9.3	10.0	11.1	8.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례수)	(405)	(68)	(58)	(174)	(127)	(103)	(39)	(274)	(9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1) 생산직 등은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노무직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기혼여성 특성별 출산 행태

가. 기혼여성 특성별 출산수준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및 경제사회적 속성별 평균 출생아수는 <표 11-20>과 같다. 각 속성별로 전체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출생아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20~44세를 포함한 상대적인 저연령층의 경우 기혼여성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연령별 출산수준보다는 속성별 전체 출산수준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 20~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77명이며, 연령별로 는 연령 증가와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평균 출생아수는 25~29세 1.09명에서 30~34세에 1.66명으로 급격히 많아지나, 35~39세부터는 2.0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어 30대 중반에 출산이 거의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별로는 평균 출생아수는 농촌의 경우 1.88명으로 도시 여성의 1.74명보다 0.14명이 더 많다.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후에도 여전히 농촌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도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정도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난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02명인데 반해,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1.57명으로 적어진다. 학력간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최대 0.45명이 나고 있다. 학력간 출산수준의 차이는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후에도 그 폭이 다소 좁혀질 뿐,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 출생아수는 재혼부부 1.94명, 초혼부부 1.85명, 이혼여성 1.84명, 사별여성 1.73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구조를 표준화하면, 출생아수는 혼인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초혼부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혼여성, 사별여성, 재혼 유배우여성 순이나 혼인상태간 출생아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20〉 기혼여성(20~44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¹⁾	STD ¹⁾
전체	0.73	1.09	1.66	1.96	2.01	1.77	1.77
지역							
도시	0.71	1.04	1.60	1.93	1.99	1.74	1.73
농촌	0.79*	1.24	1.86	2.06	2.11	1.88	1.90
교육정도							
중졸 이하	1.07*	2.02*	1.77	2.06	2.06	2.02	1.96
고졸	0.79	1.27	1.80	2.00	2.03	1.86	1.85
전문대	0.77*	1.02	1.59	1.96	1.95	1.58	1.72
대졸 이상	0.23*	0.70	1.41	1.84	1.93	1.57	1.58
혼인상태							
초혼유배우	0.73	1.07	1.66	1.97	2.04	1.85	1.78
재혼유배우	0.00*	0.00*	1.52*	1.91*	1.93	1.94	1.55
사별	0.00*	0.00*	1.71*	1.86*	2.01*	1.73	1.61
이혼	1.00*	1.69*	1.62*	1.79	1.76	1.84	1.71

주: *는 30명 미만을 나타냄.

1) U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지 않은 전체 평균임, 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평균 출생아수는 <표 11-21>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택소유여부별로는 주택소유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1.77명으로 무주택가구의 1.64명보다 0.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집단간 연령구조 차이를 표준화한 경우에도 무주택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주택소유가구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소유여부별 출생아수 차이는 저연령층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고연령층에서는 주거불안정 및 주거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출산을 억제·포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근소한 차이나마,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분가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후에는 두 집단간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는 노부모가 자녀돌봄노동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가구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컨대, 부모와의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가 출생아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계층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구분한다. 소득계층별 평균 출생아수는 소득수준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 국가구 평균소득수준 이하 계층의 출생아수가 평균보다 높은 계층에 비해 많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표 11-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평균 출생아수(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¹⁾	STD ¹⁾
주택소유여부							
소유	0.88	1.14	1.70	1.98	2.04	1.77	1.80
비소유	0.66	1.04	1.60	1.93	1.93	1.64	1.71
부모동거여부							
비동거	0.67	1.07	1.67	1.97	2.01	1.78	1.77
동거	0.91*	1.19	1.57	1.93	2.05	1.70	1.76
가구소득(%)							
50% 미만	1.01*	1.25	1.76	1.87	1.97	1.78	1.78
50~70% 미만	0.76*	1.21	1.72	1.99	2.00	1.75	1.80
70~100% 미만	0.78*	1.14	1.70	2.02	2.02	1.80	1.81
100~120% 미만	0.44*	0.77	1.60	1.95	2.01	1.74	1.71
120~150% 미만	0.55*	0.87*	1.47	1.90	2.03	1.72	1.67
150% 이상	0.49*	0.92	1.59	1.98	2.04	1.81	1.74

주: *는 30명 미만을 나타냄.

1) U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지 않은 전체 평균임, 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는 <표 11-22>와 같다. 연령 차이를 표준화하기 이전에 취업여성의 출생아수가 1.76명으로 비취업여성의 1.78명보다 적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그러나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이후에는 두 집단간의 차이는 커져 약 0.13명의 차이가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경우 25~29세에서 0.84명에 불과하나, 30~34세에 1.53명으로 무려 0.7명이 많다. 반면,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30~34세에서 1.75명, 35~39세에서 1.98명으로 두 인접 연령집단간 0.2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취업여성의 출생아수가 30~34세에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취업, 결혼연기 등으로 20대에 억제되었던 출산이 3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catch-up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catch-up 현상은 취업여성의 대부분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비취업 여성 중 구

직 중(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아예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은 여성들보다 근소한 차이나마 적게 나타나, 실업 또는 실직 등이 출산행위에도 영향을 다소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여성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구조의 표준화 작업 전후로 공히 전문직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고, 다음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노무직 순으로 나타난다. 전문직과 생산노무직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무려 0.5 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별 출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전반간의 출산 catch-up 현상이 아주 미세한 반면, 생산노무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요컨대 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30대에 진입한 후에도 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반적인 저출산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형태별로는 연령구조 표준화 전후로 공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혼여성들이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체(1.82명)와 300인 이상 사업체(1.59명)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0.23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민간부문의 대기업일수록 일-가정간의 양립 곤란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간에도 출생아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상용직 종사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58명에 불과한데 비해,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경우 1.81명,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1.93명으로 가장 많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구조 표준화 후에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고, 상용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종사상지위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고용불안정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의 용이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구조 표준화 후 남편의 직업별 출생아수는 무직의 경우 가장 적고, 다음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노무직 순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직장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는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가장 적고, 공공부문이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약 0.2명으로 나타난

다. 남편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70으로 가장 적고, 비임금근로인 경우 1.89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종사상지위간 출생아수 차이는 연령구조 표준화 이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2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¹⁾	STD ¹⁾
여성의 취업상태							
취업	0.54*	0.84	1.53	1.95	2.00	1.76	1.69
비취업	0.84	1.23	1.75	1.98	2.02	1.78	1.82
(구직중)	0.41*	0.97	1.78	2.08	1.87	1.76	1.78
(비경제활동)	0.89	1.26	1.75	1.96	2.04	1.78	1.82
여성의 직업							
전문직	0.54*	0.65	1.35	1.85	1.87	1.52	1.55
사무직	0.28*	0.83	1.45	1.88	1.93	1.53	1.62
서비스판매직	0.30*	0.83	1.69	1.92	2.01	1.83	1.73
생산노무직	1.30*	1.42*	1.71	2.11	2.07	2.00	1.89
여성의 직장형태							
10인 미만 사업체	0.16*	1.07	1.59	1.98	1.99	1.82	1.74
10~50인 미만 사업체	0.80*	0.64	1.50	1.86	2.01	1.68	1.64
300인 이상 사업체	0.75*	0.65	1.25	1.96	2.02	1.59	1.61
공공부문	0.00*	0.66*	1.62	1.91	2.01	1.70	1.68
여성의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	0.51*	1.32*	1.72	2.04	2.02	1.93	1.83
상용직	0.32*	0.67	1.37	1.88	1.98	1.58	1.60
임시일용직	0.94*	0.94	1.61	1.95	2.01	1.81	1.74
남편의 직업							
전문직	0.77*	0.87	1.62	1.90	2.00	1.73	1.71
사무직	0.84*	1.02	1.55	1.97	2.06	1.69	1.75
서비스판매직	0.78*	1.05	1.68	2.00	2.02	1.76	1.78
생산노무직	0.60*	1.32	1.79	2.05	2.05	1.86	1.87
무직	1.03*	1.18*	1.52	1.80	1.89	1.72	1.66
남편의 직장형태							
10인 미만 사업체	0.51*	1.13	1.75	2.00	2.00	1.83	1.80
10~50인 미만 사업체	0.83*	1.15	1.56	2.01	2.12	1.75	1.80
300인 이상 사업체	0.83*	0.94	1.59	1.90	1.99	1.64	1.71
공공부문	0.55*	1.05	1.73	1.97	2.08	1.83	1.80
남편의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	0.50*	1.24	1.75	2.01	2.03	1.89	1.83
상용직	0.74	1.05	1.61	1.94	2.03	1.70	1.75
임시일용직	0.68*	0.94	1.82	2.09	2.04	1.78	1.84

주: *는 30명 미만을 나타냄.

1) U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지 않은 전체 평균임, 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혼여성의 가치관이나 태도별 출생아수 차이는 <표 11-23>과 같다. 여성 입장에서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평균 출생아수는 적어지고 있다. 역으로 부부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할수록 출생아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른바 ‘페미니즘 패러독스’로 한국사회의 경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양성평등의식이 증가할수록 출생아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아질 때, 그러한 의식수준의 증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혼관은 출산수준과 뚜렷한 관계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자녀관은 일종의 합리화(rationalization) 영향으로 다자녀를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할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1-23> 기혼여성(20~44세)의 가치관별 평균 출생아수(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¹⁾	STD ¹⁾
가사분담공평성							
매우그렇다	0.48*	0.81	1.36	2.00	1.89	1.51	1.63
대체로 그렇다	0.66*	1.01	1.59	1.93	1.97	1.67	1.72
별로그렇지않다	0.90*	1.08	1.70	1.98	2.06	1.80	1.80
전혀그렇지않다	0.66*	1.43	1.81	2.01	2.10	1.93	1.89
결혼관							
반드시 결혼	1.04*	1.22	1.64	1.92	2.03	1.78	1.78
하는 편이 좋음	0.62*	1.02	1.67	1.97	2.02	1.76	1.77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0.65*	1.12	1.67	1.96	2.00	1.77	1.77
하지 않은 게 나음	1.01*	1.06*	1.62	2.07	2.01	1.83	1.79
모르겠음		0.94*	1.53*	1.66*	1.99*	1.62*	1.60
자녀관							
0명	-	1.00*	1.22*	1.79*	1.87*	1.62*	1.53*
1명	0.49*	0.77	1.46	1.78	1.86	1.59	1.57
2명	0.66	1.06	1.59	1.91	1.96	1.69	1.71
3명	0.89*	1.23	1.84	2.05	2.09	1.91	1.89
4명 이상	1.49*	1.55*	2.01	2.29	2.19	2.15	2.08

주: *는 30명 미만을 나타냄.

1) U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지 않은 전체 평균임, 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관련 건강수준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표 11-24>에 제시한다. 이 표에서 나타난 가장 주된 특징은 자연유산·사산, 인공임신중절 및 불임을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자연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74명인데 반해, 무경험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8명이다. 연령구조 표준화 후 이러한 차이는 다소 줄어들며, 여전히 유경험 여성의 출산수준이 무경험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출생아수는 1.99명으로, 경험여성의 1.63명에 비해 무려 0.36명이나 많다. 연령구조 표준화에도 다소 차이가 좁혀질 뿐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불임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의심스러워 진단을 받았던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1.38명으로 전혀 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여성의 1.80명에 비해서 많이 나타난다. 불임진단을 받고, 그 결과 불임으로 판명된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간 연령구조 차이를 표준화한 후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1-24>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관련 건강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¹⁾	STD ¹⁾
유산경험유무							
경험	0.75	1.04	1.65	1.97	2.00	1.74	1.76
무경험	0.49*	1.40	1.69	1.95	2.06	1.88	1.82
인공임신중절경험여부							
경험	0.70	1.00	1.55	1.88	1.97	1.63	1.69
무경험	0.89*	1.50	1.91	2.07	2.05	1.99	1.93
불임판정여부							
진단결과 불임	0.00*	0.78*	0.94*	0.98*	1.56*	1.14*	1.09
진단결과 불임아님	-	0.68*	1.30	1.51	1.69	1.38	1.38
진단 무경험	0.74	1.12	1.71	2.00	2.04	1.80	1.81

주: *는 30명 미만을 나타냄.

1) U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지 않은 전체 평균임, 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자녀관

1) 자녀 필요성

자녀관은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자녀의 효용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자녀관을 현재 가임세대인 기혼부인과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자녀를 갖은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11-25 참조).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1.1%, 미혼여성의 53.8%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64.9%에 비해 낮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매우 찬성하는 태도는 미혼남성 19.4%, 미혼여성 15.6%에 불과하다(표 11-26 참조).

〈표 11-2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함	갖은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
1997	73.7	16.6	9.4	0.3	10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0(6,593)
2005	23.4	41.5	35.0	-	100.0(3,588)

주: 2005년 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져야함으로, 대체로 찬성은 갖은 것이 좋음으로 분류함.

자료: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임.

〈표 11-26〉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단위: %, 명)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음	전혀 찬성 않음	계
미혼남성	19.4	41.7	33.6	5.3	100.0(1,464)
미혼여성	15.6	38.2	39.2	7.0	100.0(1,20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다음으로 이상자녀수에 관한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태도이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조사에서 15~44세 유배우여성은 이상자녀수로 2명(58.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명(25.6%), 1명(9.0%) 순으로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표 11-27). 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1970년대 3명 이상이었으나, 1980년대 이래 2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3명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4명 이상에서 2명으로 이동하였다. 1980년대에 이상자녀수는 2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1명 이하,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 이 당시 한자녀 갖기 운동의 영향으로 이상자녀수를 1명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이상자녀수는 여전히 2명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음으로 3명의 비중이 20%대로 1명의 10%대보다 높았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이상자녀수 중 3명의 비중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11-27〉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도별 이상자녀수 분포, 1971~2005
(단위: %, 명)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평균(명)
1971	0.0	6.0	42.0	52.0	-	100.0(4,616)	3.7
1973	1.0	20.0	52.0	27.0	-	100.0(1,671)	3.1
1976	4.2	39.8	36.6	19.4	-	100.0(5,064)	2.8
1985	16.3	69.6	11.1	2.4	0.6	100.0(7,010)	2.0
1988	19.8	66.0	10.1	3.9	0.2	100.0(6,509)	2.0
1991	12.8	66.7	21.5	-	-	100.0(5,848)	2.1
1994	7.3	67.9	18.9	5.4	0.5	100.0(5,173)	2.2
1997	10.0	62.6	20.3	6.2	0.9	100.0(5,409)	2.3
2000	9.3	64.3	20.1	5.7	0.7	100.0(6,361)	2.2
2003	11.5	58.8	21.7	6.7	1.2	100.0(6,599)	2.2
2005	9.0	58.7	25.6	6.8	-	100.0(3,581)	2.3

주: 1991년 자료 중 3명은 3명이상임.

자료: 1971~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임.

2005년 조사 결과, 유배우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 2.30명은 기대자녀수 2.02명보다 0.28명이 많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은 높은 이상자녀수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등 현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대자녀수를 줄이고(약 0.3명 적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간 차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커져, 고연령층이 현실적 여건으로 이상보다 적은 자녀를 기대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를 연령별로 보면, 20~29세 2.19명, 30~34세 2.25명, 40~44세 2.40명 등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적게 나타난다. 유배우여성의 기대자녀수도 20~29세 1.95명, 35~39세 2.05명 등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적게 나타나, 향후 유배우출산율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29세 유배우여성의 기대자녀수는 1.95명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가치관 변화와 양육여건을 모두 반영한 응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젊은 여성층이 기대자녀수만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11-28〉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현존자녀수, 2005
(단위: 명)

이상/기대/현존자녀수	전체	연령			
		20~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이상자녀수	2.30	2.19	2.25	2.32	2.40
기대자녀수	2.02	1.95	1.99	2.05	2.06
출생자녀수	1.77	1.03	1.66	1.97	2.03
차이					
이상-기대	0.28	0.24	0.26	0.27	0.34
이상-출생	0.53	1.16	0.59	0.35	0.37
기대-출생	0.25	0.92	0.33	0.08	0.0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는 각각 2.06명, 2.05명으로 이상자녀수는 기혼여성에 비해 다소 적고, 기대자녀수는 유사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도 30세 미만 미혼남성의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는 평균 2.0~2.1명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35~44세 미혼남성의 경우에 이상자녀수는 2.1명인 반면, 기대자녀수는 1.76명으로 0.34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5세

이상 미혼여성의 기대자녀수도 이상자녀수보다 적으며, 그 차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1명인 반면, 기대자녀수는 1.7~1.9명으로 0.2~0.4명의 차이가 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미혼남녀들이 결혼 후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심리적 상황이나 현실을 반영하여 응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1-29〉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005
(단위: 명)

성별 이상/기대 자녀수	전체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44세
미혼남성					
이상자녀수	2.06	2.09	2.07	1.98	2.10
기대자녀수	2.05	2.13	2.00	1.95	1.76
미혼여성					
이상자녀수	2.13	2.16	2.16	2.05	2.05
기대자녀수	2.07	2.16	2.05	1.82	1.6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자녀 효용가치에 대한 태도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자녀 효용성에 관한 여러 항목을 질문 한 바 있다.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음(찬성 97.8%)’과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줌(찬성 96.8%)’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찬성 79.2%)’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나, 반대도 높은 편이다.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보거나(반대 79.0%) 가문계승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나(반대 72.8%), 출산이 사회적 의무라고 보는 의견(반대 61.8%)의 경우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있더라도 모의 자유가 희생되지 않는다(반대 51.5%)’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유배우여성의 자녀 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자녀관 변화는 결국 소자녀 선호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30〉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단위: %)

가치관	전적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음	전혀 찬성 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64.1	33.7	2.1	0.1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	61.6	35.2	3.0	0.2	100.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37.0	42.2	19.1	1.7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7	17.3	63.5	15.5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7.4	19.8	53.9	18.9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7.7	30.5	46.8	15.0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는 않는다	8.7	39.7	42.6	8.9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자녀 효용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견해는 <표 11-31>에 제시하였다. 유배우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효용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측면(노후보장, 가문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등)이 약화되고, 대신 정서적 가치측면(노후 외로움 완화, 부부관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들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의무감이 약해지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다자녀보다는 소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 정도는 기혼여성에 비해서도 약하게 나타난다. 특히, 미혼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가임기간 축소, 고연령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동일 연령층의 기혼여성에 비해 기대자녀수를 더 큰 폭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들 가치관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에도 만혼현상 및 비혼현상과 함께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표 11-3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관, 2005

(단위: %)

자녀 가치(효용)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미혼남성	50.5	44.5	4.3	0.7	100.0
	미혼여성	43.2	49.3	6.7	0.7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미혼남성	45.3	48.5	5.6	0.6	100.0
	미혼여성	35.8	54.9	8.6	0.7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미혼남성	35.1	45.5	16.5	2.9	100.0
	미혼여성	32.0	47.2	18.4	2.4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미혼남성	11.1	32.8	46.2	9.8	100.0
	미혼여성	7.7	35.5	47.8	9.0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미혼남성	15.0	33.5	40.3	11.1	100.0
	미혼여성	6.5	23.4	51.9	18.3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미혼남성	10.6	30.1	45.7	13.6	100.0
	미혼여성	6.1	29.4	50.2	14.3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혼남성	12.8	47.5	34.6	5.2	100.0
	미혼여성	8.0	42.6	42.0	7.4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4) 출산 연기 및 축소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계획을 질문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들을 조사하였다. <표 11-32>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녀 여성 중 향후 출산할 계획이 있는 비율은 83.1%로 나타난다. 20대의 경우에는 약91% 수준으로 약 4%가 무자녀 상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자녀여성의 출산계획 비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급격히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35세 이상 무자녀여성의 경우 약 61%만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 당시 1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중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40.6%로 반절 이상이 1자녀에서 단산할 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여성의 추가출산계획 비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급격히 낮아지는데, 35세 이상의 경우 12.5%에 불과하다. 2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출산계획 비율은 전체적으로 평균 4.0%에 불과하며, 30~34세 여성의 경우 7.2%로 30대초에서도 단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여성 중 추가로 출산할 계획을 두고 있는 비율은 1.8%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표 11-32〉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 분포 및 추가출산계획, 2005
(단위: %)

구 분	전체				20~29세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전체	17.1	78.6	4.3	100(3,581)	58.2	32.3	9.6	100(502)
0명	83.1	9.6	7.3	100(261)	90.5	4.1	5.4	100(147)
1명	40.6	50.9	8.5	100(739)	66.3	23.4	10.2	100(205)
2명	4.0	93.0	3.0	100(2,196)	14.3	72.1	3.6	100(140)
3명이상	1.8	96.4	1.8	100(385)	27.3	72.7	-	100(11)

구 분	30~34세				35~44세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전체	23.3	69.2	7.4	100(1,011)	4.1	94.	1.5	100(2,068)
0명	78.5	10.1	11.4	100(79)	61.1	33.3	5.6	100(36)
1명	47.3	40.8	11.9	100(277)	12.5	3.7	3.9	100(257)
2명	7.2	87.4	5.4	100(573)	1.8	97.1	1.1	100(1,483)
3명이상	1.2	96.3	2.5	100(81)	1.0	97.3	1.7	100(29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취업 중인 유배우부인의 종사상지위별로 추가출산계획을 살펴보면, <표 11-33>과 같다. 가장 주된 특징은 모든 자녀수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유배우부인(20~39세)의 향후 출산계획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무자녀여성으로서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향후출산계획비율은 81.9%인 반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75.0%로 다소 낮다. 비임금근로 여성의 경우에도 향후출산계획비율이 75.0%로 임시일용직과 동일하나,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비율이 6.3%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보다는 낮다. 1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출산계획비율은 41.5%, 비임금근로 여성의 경우 30.7%인데 비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추가출산계획비율은 27.3%로 가장 낮다. 2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추가출산계획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 2.3%로 비임금근로(4.3%), 상용직(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11-33〉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2005
(단위: %)

구 분	자녀없음				1명				2명이상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비임금근로자	75.0	6.3	18.8	100(16)	30.7	66.7	2.7	100(75)	4.3	93.1	2.6	100(421)
상용근로자	81.9	7.4	10.6	100(94)	41.5	47.9	10.6	100(142)	2.9	95.9	1.2	100(419)
임사·일용근로자	75.0	19.4	5.6	100(36)	27.3	63.6	9.1	100(88)	2.3	95.6	2.1	100(38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한편,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연기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자녀교육·양육비 부담이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13.5%)를 제외하고 소득·고용불안정 25.4%, 여가 및 자아성취 7.2%, 출산건강수준 저하 4.6%, 육아인프라 부족 3.0%, 일-가정 양립곤란 2.5% 순으로 나타난다.

출산연기 이유는 현 자녀수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 출산연기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출산건강수준 저하 25.0%, 소득 부족 16.7%,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12.5%, 여가 및 자아성취 8.3% 순으로 나타난다. 1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경우, 추가출산 연기의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27.4%), 소득·고용불안정(22.9%), 여가 및 자아성취(16.6%) 순이다.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7.8%), 소득·고용 불안정(25.0%), 여가 및 자아성취(5.8%), 출산건강수준 저하(4.3%) 순으로 나타난다.

〈표 11-34〉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연기 이유, 2005
(단위: %, 명)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	육아 인프라 부족	일-가정 양립곤란	여가 및 자아성취	출산건강 수준저하	기타	계 (명)
전체	25.4	43.9	3.0	2.5	7.2	4.6	13.5	100.0 (1,905)
0명	16.7	12.5	-	-	8.3	25.0	37.5	100.0 (24)
1명	22.9	27.4	5.7	3.3	16.6	6.0	18.1	100.0 (332)
2명	25.0	47.8	2.7	2.5	5.8	4.3	11.8	100.0 (1,355)
3명 이상	32.1	48.0	1.0	1.5	1.0	2.0	14.3	100.0 (19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현존 자녀수별로 출산중단(단산) 이유를 살펴보면, 다소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무자녀 여성이 향후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불임이 69.7%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부부의 역할분담 불공평 때문 10.9%, 소득부족 4.2%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35〉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단위: %, 명)

분류	이유	전체	현 자녀수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20.5	4.2	15.8	21.3	28.9
	실업/고용 불안정	1.8	0.0	3.3	1.5	2.1
자녀양육환경 미흡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7	1.5	1.1	1.9	1.3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부족	13.0	1.3	8.1	14.9	12.9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28.6	2.3	15.6	32.7	34.0
	자녀교육비 부담	2.9	0.0	5.1	2.7	1.0
일-가정 양립곤란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0.1	0.0	0.0	0.1	0.0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3.4	1.2	3.7	3.6	2.1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3.2	10.9	4.7	2.7	0.6
개인/부부중심의 가치관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0.5	0.0	0.6	0.5	0.4
출산건강수준 열악	불임	6.1	69.7	14.2	1.3	0.5
	건강문제	6.1	1.3	12.4	5.2	1.7
기타	기타	12.4	7.6	15.3	11.5	14.5
계 (사례수)		100.0 (2,013)	100.0 (73)	100.0 (370)	100.0 (1,366)	100.0 (20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도시와 농촌별로 단산이유는 자녀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자녀양육비 부담, 불임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1-36〉 유배우여성(20~44세)의 지역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단위: %, 명)

분류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19.5	19.2	20.5
	실업/고용 불안정	1.8	1.8	1.6
자녀양육환경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7	1.8	1.3
미흡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 부족	3.1	2.9	3.8
자녀양육의	자녀양육비 부담	13.0	12.7	13.7
경제적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28.0	27.9	28.2
일(사회생활)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0.1	0.1	0.0
가정의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3.5	3.6	3.2
양립곤란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0.5	0.6	0.0
개인/부부 중심 가치관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3.4	3.8	2.4
출산건강수준	불임	6.7	6.6	6.9
열악	건강문제	6.5	6.5	6.8
기타	기타	12.1	12.3	11.5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809)	(1,403)	(40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자녀 이하에서 출산을 중단하려는 의향을 가진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소득 수준별로 그 이유는 <표 11-37>에 제시하였다.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수준의 70% 미만의 가구에서 단산이유로는 소득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이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동 이유의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 유배우여성(20~39세)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단산이유 중 소득부족 이유의 비율이 높다. <표 11-37>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1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득부족 이유비율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80% 미만인 소득계층에서 25.9%, 80~100% 미만 소득계층에서 13.1%, 100~150% 미만 소득계층에서 5.5%로 나타난다. 2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득부족 이유비율은 소득수준이 80% 미만인 소득계층 24.9%, 80~100% 미만 소득계층에서 16.0%, 100~150% 미만 소득계층 8.9%로 각각 나타난다. 단산이유로서 자녀교육비용부담과 자녀양육비용부담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11-37〉 유배우여성(20~44세)의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단위: %, 명)

분류	이유	가구소득 수준(전국가구월평균가구소득 대비)					
		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120% 미만	120~150% 미만	150% 이상
경제적 불안정	소득부족	34.2	30.2	19.5	12.7	11.0	0.8
	실업·고용불안정	4.2	1.5	2.2	1.6	1.2	0.9
자녀양육환경 미흡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4	1.9	2.4	1.8	1.2	0.9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 부족	2.4	1.6	2.0	2.3	4.3	8.8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8.8	14.5	13.4	12.8	14.7	10.9
	자녀교육비 부담	21.3	24.0	30.8	31.7	34.1	26.8
일(사회생활)-가정양립 곤란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0.0	0.0	0.0	0.4	0.0	0.0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1.8	0.7	2.1	5.5	3.7	10.5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0.0	0.6	0.2	0.3	0.0	1.4
개인·부부중심 가치관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1.1	3.0	2.7	5.6	3.2	4.7
출산건강수준열악	불임	5.8	6.7	6.6	8.5	4.3	6.9
	건강문제	7.4	4.2	7.0	5.9	9.2	9.3
기타	기타	11.4	11.0	11.1	11.1	13.1	1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75)	(524)	(357)	(334)	(173)	(22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유배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로 2자녀 이하에서 단산하려는 이유는 <표 11-38>에 제시하였다. 우선 취업여부별로 단산이유는 자녀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자녀양육비 부담, 불임 순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일(사회생활)-가정 양립곤란,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 부족 등은 비취업 여성보다 취업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난다. 취업여성의 직종별로 2자녀 이하에서의 단산이유 중 소득부족 비율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기능직 순으로 높다. 자녀교육비 부담의 비율은 전문직에서 다소 낮을 뿐, 다른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사회생활)과 가정의 양립곤란은 전무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지원시설 및 가족지원 부족은 전문직과 사무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유배우여성의 단산이유 중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13.0%이며, <표 11-38>에는 제시하지 않았으

나, 자녀수별로는 1자녀의 경우 8.1%, 2자녀의 경우 14.9%, 3자녀 이상의 경우 12.9%로 각각 나타난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중인 경우 4.4%로 비취업 중인 경우 1.9%에 비해 높다. 취업 중인 유배우부인의 직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무직 7.3%, 서비스판매직 2.8% 등으로 나타난다.

〈표 11-38〉 유배우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및 직종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단위: %, 명)

분류	이유	비취업	취업	직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등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19.3	19.8	10.6	10.8	20.2	32.9
	실업/고용 불안정	1.1	2.6	1.4	2.2	2.9	3.5
자녀양육환경 미흡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7	1.7	1.1	1.4	2.3	1.7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 부족	1.9	4.4	8.8	7.3	2.8	0.8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13.2	12.7	16.4	14.6	10.3	11.7
	자녀교육비 부담	29.7	26.2	17.2	28.8	28.0	29.8
일(사회생활)- 가정 양립곤란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0.0	0.1	0.0	0.8	0.0	0.0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2.1	5.2	13.0	5.2	2.9	1.4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0.7	0.3	0.0	0.0	0.7	0.0
개인/부부중심의 가치관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3.4	3.5	6.5	7.4	2.0	0.4
출산건강수준 열악	불임	6.8	6.6	7.0	7.6	8.4	3.1
	건강문제	7.7	5.3	7.6	3.4	4.8	5.2
기타	기타	12.5	11.8	10.6	10.5	14.8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942)	(867)	(193)	(146)	(302)	(22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1 2 장 가치관과 결혼·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일부 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식 설명방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Pollak & Watkins, 1993; Lesthaeghe and Surkyn, 1988; Preston 1987). 신가정경제이론의 취약점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집단간 차이와 역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출산을 변화는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즉, 가치관 변화는 언제나 물질적 여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성향이 결혼·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저하된 출산율 저하 원인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진단한다.

이 장에서 분석 자료로는 2005년도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며, 분석 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본 분석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이 포함된다. 결혼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결혼 필요성, 혼전동거 및 이혼에 대한 태도를, 자녀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역할관의 가치변수로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에 대한 태도이다. 각 변수는 4점 또는 5점 척도로 구성된다.

우선 결혼관 변수 중 결혼 필요성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부여한다. 성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비전통적인 혼외결합에 대한 수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결혼관이 약화되고 있다(양명숙, 1996)). 따라서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는 결혼관을 대변해 주며, 본 분석에서는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로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회귀분석에서는 두 변수의 값을 합하여 적용한다.

자녀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 자녀의 필요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이용하며,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자녀 효용관련 변수는 자녀의 경제적·도구적 가치(가문승계, 경제적 도움)에 관한 2개 문항과 정서적 가치에 관한 2개 문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가치변수로 통합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경제적·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에 높은 점수로 부여한다. 결국 자녀의 현대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높은 점수를 가진다.

〈표 12-1〉 분석에 포함된 변수

	구분	미혼남녀	기혼여성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 성 - 연령(세) - 교육수준 - 취업여부 - 부모 이혼·별거 경험여부 - 형제자매 이혼·별거 경험여부	- 연령 - 지역 - 교육수준 - 본인 취업여부 - 주택소유여부 - 양육비(care rate) - 불임여부
	결혼관	- 결혼 필요성 -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 결혼 필요성 - 이혼에 대한 태도
	자녀관	- 자녀의 필요성 - 자녀의 효용관련 태도	- 부모가치에 대한 태도 - 자녀의 효용관련 태도
	성역할관	- 성분업적 역할규범관련 태도 -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관련 태도	- 성분업적 역할규범관련 태도 -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관련 태도
종속변수		- 결혼계획여부(있다=1) - 결혼희망연령(세)	- 기대자녀수(명) - 출생자녀수(명)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확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성역할에 관련된 고정관념은 특히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의 원

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명숙, 1996). 본 분석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나 태도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조사에 포함된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성분업적인 역할규범 태도)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남성 고정적인 생계책임 태도)를 분석에 포함하며, 모두 고정 관념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로 부여한다.

본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들 가치변수가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로서 ‘결혼’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여부와 결혼희망연령을 이용한다. 종속변수로 ‘출산’은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포함한다. 가임기가 완료되지 않은 여성들이 분석에 포함된 관계로 출생자녀수는 현재 진행형의 출산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대자녀수는 현재 출생자녀수에 향후 출산 계획인 자녀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완결출산력의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족(부모, 형제자매)의 이혼·별거 경험여부, 주택소유여부, 가구소득, 자녀양육비, 불임여부 등 변수들은 주로 통제 목적으로 분석모형에 포함된다.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남녀간 가치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표 12-2 참조).

〈표 12-2〉 성별 미혼남녀간 가치관 차이(T-test)

가치변수	F	t	df	Sig(2-tailed)
결혼에 대한 태도	61.60	13.64	0.05	0.000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3.35	7.33	0.03	0.000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1.85	3.94	0.03	0.000
자녀효용성에 대한 태도	13.24	-3.89	0.01	0.000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23.44	-8.79	0.03	0.000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12.82	-10.13	0.03	0.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2 절 인구 특성별 가치관

1. 미혼남녀의 가치관

가. 미혼인구의 결혼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 미혼남녀의 결혼관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성 중 71.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는 12.9%로 남성에 비해서도 낮다.주34) 연령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낮아져, 결혼연령이 늦춰질수록 자발적/비자발적 비혼으로 이행될 여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2-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성별·연령	반드시 결혼 해야함	결혼하는 편이 좋음	해도안해도 무방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름	계(사례수)
미혼남성 ¹⁾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24세	34.9	43.1	17.6	1.2	3.2	100.0(562)
25~29세	29.4	43.1	22.3	2.7	2.5	100.0(480)
30~34세	26.8	41.5	26.8	2.2	2.6	100.0(272)
35~44세	13.7	34.6	42.5	4.6	4.6	100.0(153)
미혼여성 ¹⁾	12.9	36.3	44.9	3.7	2.2	100.0(1,204)
20~24세	14.2	38.7	42.2	3.2	1.7	100.0(654)
25~29세	12.4	37.3	43.9	3.0	3.3	100.0(362)
30~34세	9.2	29.8	53.4	5.3	2.3	100.0(131)
35~44세	7.0	17.5	61.4	12.3	1.8	100.0(5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주34) 1998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결혼관으로 반드시 해야한다 20.3%, 하는 편이 좋다 13.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32.2%, 하지 않는 게 낫다 1.3%, 모르겠다 3.2% 등으로 나타난다.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미혼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그리고 연령별로 혼전동거에 뚜렷한 찬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비전통적 결합방식에 대한 혼재된 가치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혼남자 중 찬성비율이 57.5%로 다소 긍정적인데 비해 미혼여성의 경우 44.7%로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참고로 <표 12-5>와 같이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응답자가 혼전임신에 대해 아주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2-4>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11.6	45.9	32.4	10.0	100.0 (1,463)
20~24세	13.4	46.3	32.8	7.5	100.0 (561)
25~29세	10.9	49.5	29.6	10.0	100.0 (479)
30~34세	9.6	45.6	32.0	12.9	100.0 (272)
35~44세	11.1	34.0	39.9	15.0	100.0 (153)
미혼여성	7.9	36.8	38.2	17.2	100.0 (1,205)
20~24세	7.5	38.2	36.9	17.4	100.0 (654)
25~29세	8.2	33.5	40.1	18.1	100.0 (364)
30~34세	8.5	40.8	40.0	10.8	100.0 (130)
35~44세	5.2	32.8	37.9	24.1	100.0 (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2-5>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비교, 1999~2005

(단위: %)

구분	반 대	찬성	상황에 따라서	계
한 국(2001)	78.1	21.9	-	100.0
프랑스(1999)	28.0	48.6	23.4	100.0
일 본(2000)	36.0	22.9	41.1	100.0
스페인(2000)	14.4	78.6	7.0	100.0
스웨덴(1999)	40.1	31.2	28.7	100.0
미 국(1999)	44.6	41.8	13.6	100.0

출처: World Value Surveys, 각연도.

나. 미혼남녀의 자녀관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성(53.8%)에 비해 미혼남성(61.1%)에게서 상대적으로 자녀 필요성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 큰 차이는 없다(표 12-6).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미혼남녀의 연령별로 보면,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남녀별로 여러 연령층에 걸쳐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녀도 과거에 반드시 가져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의 위치에서 점차 약화되어 선택적인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6〉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명)
(미혼남자)					
전체	19.4	41.7	33.6	5.3	100.0 (1,464)
20~24세	20.1	39.9	34.2	5.7	100.0 (561)
25~29세	17.7	44.3	32.6	5.4	100.0 (479)
30~34세	19.9	40.4	34.6	5.1	100.0 (272)
35~44세	20.9	41.8	32.7	4.6	100.0 (153)
(미혼여자)					
전체	15.6	38.2	39.2	7.0	100.0 (1,204)
20~24세	15.3	39.1	39.1	6.4	100.0 (654)
25~29세	16.5	38.3	39.4	5.8	100.0 (363)
30~34세	15.3	35.1	40.5	9.2	100.0 (131)
35~44세	13.8	34.5	36.2	15.5	100.0 (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자녀 효용에 대해 미혼남녀는 가계계승이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정서적 가치에 대해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미혼남녀 모두 기존의 도구적 가치로서의 자녀가치보다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현대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12-7> 참조).

〈표 12-7〉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단위 : %)

자녀 가치(효용)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미혼남성	45.3	48.5	5.6	0.6	100.0
	미혼여성	35.8	54.9	8.6	0.7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미혼남성	35.1	45.5	16.5	2.9	100.0
	미혼여성	32.0	47.2	18.4	2.4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미혼남성	11.1	32.8	46.2	9.8	100.0
	미혼여성	7.7	35.5	47.8	9.0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미혼남성	15.0	33.5	40.3	11.1	100.0
	미혼여성	6.5	23.4	51.9	18.3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 미혼남녀의 성역할관

미혼남녀의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67.1%, 미혼여성의 경우 51.0%로 찬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표 12-8).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찬성하는 비율이 저연령층일수록 낮다. 즉, 미혼남성의 찬성비율(매우찬성과 대체로 찬성의 합)이 35~44세 연령층에서 무려 7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24세에서는 63.9%로 낮아진다. 여성의 경우 찬성이 35~44세에서 63.7%인데 반해 20~24세에서는 46.3%로 급격히 낮아진다. 미혼남성의 두 한계 연령층간의 태도 차이가 10% 포인트인데 반해, 미혼여성의 경우 20%포인트 이상으로 젊은여성에게서 보수적인 성분업적인 역할규범이 급격히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젊은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기회 확대로 평등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성분업적 역할규범과 충돌하여 여성의 비자발적 결혼포기 또는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표 12-8〉 미혼남녀(20~44세)의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명)
(미혼남성)	17.2	49.9	29.0	3.8	100.0 (1,465)
20~24세	15.2	48.7	32.1	4.1	100.0 (561)
25~29세	15.6	52.3	28.1	4.0	100.0 (480)
30~34세	20.5	48.0	27.5	4.0	100.0 (273)
35~44세	23.5	50.3	23.5	2.6	100.0 (153)
(미혼여성)	10.9	40.1	41.3	7.7	100.0 (1,204)
20~24세	10.2	36.1	44.5	9.2	100.0 (654)
25~29세	10.7	44.1	39.7	5.5	100.0 (363)
30~34세	15.4	42.3	35.4	6.9	100.0 (130)
35~44세	10.3	53.4	27.6	8.6	100.0 (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표 12-9), 미혼남성의 찬성비율이 66.3%로 미혼여성 45.7%보다 높아, 미혼남녀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가치에 대한 남녀간 차이는 연령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녀 공히 고연령층일수록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세대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남녀간 역할에 대한 공평성 의식이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표 12-9〉 미혼남녀(20~44세)의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명)
(미혼남성)	18.8	47.5	30.5	3.2	100.0 (1,464)
20~25세 미만	16.9	47.2	31.4	4.5	100.0 (561)
25~30세 미만	19.0	46.5	32.5	2.1	100.0 (480)
30~35세 미만	19.6	48.7	28.4	3.3	100.0 (271)
35~45세 이하	23.8	49.7	25.2	1.3	100.0 (151)
(미혼여성)	11.6	34.1	48.6	5.7	100.0 (1,203)
20~25세 미만	11.0	30.7	50.8	7.5	100.0 (654)
25~30세 미만	10.5	38.7	47.0	3.9	100.0 (362)
30~35세 미만	14.6	36.2	46.2	3.1	100.0 (130)
35~45세 이하	17.2	37.9	41.4	3.4	100.0 (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기혼여성의 가치관

가. 기혼여성의 결혼관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로는 긍정적 49.3%, 부정적 49.6%, 유보적 1.1%로 나타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달리,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결혼관의 약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연령 증가에 따라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이미 결혼한 유배우여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 결혼생활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10〉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해야한다	하는게 좋다	반드시 할 필요없다	해선 안된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10.8	38.5	42.4	7.2	1.1	100.0 (3,801)
20~24세	15.7	35.7	40.0	8.6	-	100.0 (70)
25~29세	11.5	41.3	41.1	5.4	0.7	100.0 (445)
30~34세	10.2	39.0	43.3	6.0	1.4	100.0 (1,045)
35~39세	8.6	40.2	42.6	7.3	1.2	100.0 (1,171)
40~44세	13.3	35.2	42.1	8.7	0.7	100.0 (1,07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50.8%가 찬성하여,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정서적 가치가 중요한 요건으로 부상됨에 따라 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혼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로 해석되며, 궁극적으로 결혼관의 약화에도 연계된다. 이혼에 대한 찬성비율은 20~24세 연령층에서 50.0%로 40~44세 연령층 50.9%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적극적인 찬성 태도가 젊은층에서 확연하게 높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향후 결혼관 약화가 계속될 것

임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동 견해에 대한 반대태도가 54.1%로 앞선 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경향이 증가하나, 자식 문제가 결부될 경우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11〉 기혼여성(20~44세)의 이혼관련 태도

(단위: %)					
특성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매우 반대	계 (명)
부부간 갈등발생시 이혼할 수 있다	13.0	37.8	40.5	8.7	100.0 (3,800)
20~24세	7.1	42.9	37.1	12.9	100.0 (70)
25~29세	11.3	41.1	39.1	8.6	100.0 (443)
30~34세	13.1	37.0	40.3	9.6	100.0 (1,045)
35~39세	12.6	38.1	41.4	7.9	100.0 (1,170)
40~44세	14.2	36.7	40.6	8.5	100.0 (1,071)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9.1	36.8	37.7	16.4	100.0 (3,797)
20~24세	7.1	42.9	35.7	14.3	100.0 (70)
25~29세	9.2	40.5	32.7	17.6	100.0 (444)
30~34세	10.0	38.3	37.3	14.5	100.0 (1,044)
35~39세	7.9	36.8	39.0	16.3	100.0 (1,172)
40~44세	9.8	33.5	38.8	17.8	100.0 (1,07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기혼여성의 자녀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여성의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자녀관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표 1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
1997	73.7	16.6	9.4	0.3	10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0(6,593)
2005	23.4	41.5	35.0	-	100.0(3,588)

주: 2005년 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져야함으로, 대체로 찬성은 갖는 것이 좋음으로 분류함.

자료: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임.

자녀 효용에 대한 유배우여성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 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자녀 가치를 가문승계 및 노후의 경제적 지원에 두었던 남아중심의 자녀관이 정서적 가치의 부상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13〉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단위: %)

가치관	전적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음	전혀 찬성 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64.1	33.7	2.1	0.1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	61.6	35.2	3.0	0.2	100.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37.0	42.2	19.1	1.7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7	17.3	63.5	15.5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7.4	19.8	53.9	18.9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7.7	30.5	46.8	15.0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는 않는다	8.7	39.7	42.6	8.9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 기혼여성의 성역할관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찬성 65.8%로 나타나, 성역할관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 유사하게 나타나, 세대간 성분업적인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14〉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 분화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음	매우 반대	계	(명)
전체 ¹⁾	23.1	42.7	30.1	4.2	100.0	(3,800)
20~24	21.4	44.3	30.0	4.3	100.0	(70)
25~29	19.8	41.6	32.6	6.1	100.0	(445)
30~34	20.4	44.9	31.0	3.7	100.0	(1,045)
35~39	25.4	42.6	28.0	3.9	100.0	(1,170)
40~44	24.6	40.9	30.3	4.2	100.0	(1,07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찬성이 57.4%로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나 저연령층일수록 찬성경향이 낮아져,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반드시 져야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2-15〉 기혼여성(20~44세)의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매우 반대	계	(명)
전체 ¹⁾	18.7	38.7	38.2	4.4	100.0	(3,800)
20~25세 미만	14.3	38.6	38.6	8.6	100.0	(70)
25~30세 미만	14.2	38.1	42.6	5.2	100.0	(444)
30~35세 미만	17.5	36.4	41.3	4.8	100.0	(1,045)
35~40세 미만	19.8	39.0	37.9	3.3	100.0	(1,170)
40~44세 이하	20.9	40.9	33.5	4.7	100.0	(1,07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가치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미혼남성의 결혼계획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12-16), 가치변수를 제외한 모델1과 가치변수를 포함한 모델2간의 x^2 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치변수들이 집단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적인 가치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결혼관)과 자녀의 필요성(자녀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혼남녀의 결혼 승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주35)}

〈표 12-16〉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미혼남성		미혼여성	
	b(S.E.)	b(S.E.)	b(S.E.)	b(S.E.)
연령	-0.15 (0.02)***	-0.11 (0.03)***	-0.11 (0.02)***	-0.09 (0.02)***
지역(동부=1)	-0.06 (0.34)	0.02 (0.40)	-0.13 (0.35)	0.15 (0.38)
부모이혼별거경험(있다=1)	-0.53 (0.39)	-0.23 (0.46)	-0.75 (0.33)	-0.66 (0.38)+
형제자매 이혼별거경험(있다=1)	0.65 (0.65)	0.36 (0.74)	0.01 (0.62)	-0.16 (0.68)
비취업(referecne)				
취업	0.62 (0.34)+	0.50 (0.39)	0.01 (0.30)	-0.05 (0.33)
구직(비취업)	0.01 (0.40)	0.25 (0.47)	-0.28 (0.38)	-0.53 (0.43)
고졸(referecne)				
초대졸	0.40 (0.33)	0.24 (0.38)	0.30 (0.27)	0.21 (0.30)
대졸 이상	0.84 (0.35)*	0.84 (0.39)*	0.53 (0.27)+	0.48 (0.32)
결혼의 필요성		1.35 (0.16)***		1.08 (0.15)***
혼전동거		0.22 (0.17)		-0.25 (0.15)
자녀필요성		0.41 (0.18)*		0.78 (0.17)***
자녀효용		-0.01 (0.40)		0.11 (0.40)
성별분화		-0.09 (0.22)		0.29 (0.17)+
남성생계		0.08 (0.21)		-0.32 (0.18)+
상수	501.95	350.87	5.02 (0.69)***	-0.09 (1.58)
-2Log likelihood	0.050	0.162	593.342	455.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주35) 이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Sassler and Schoen, 1999)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성역할관은 미혼남성의 결혼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나,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성생계모형에 관한 태도간 영향력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반대할수록 결혼확률이 높으며, 남성생계모형에 반대할수록 결혼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미혼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의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평등주의적 관점이 공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보적 방식과 전통적 방식간에 가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함인희, 2001). 즉, 이는 의식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에 따른 미혼여성들의 선택적 입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표 12-17 참조).

〈표 12-17〉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미혼남성		미혼여성	
	b(S.E.)	b(S.E.)	b(S.E.)	b(S.E.)
만연령	0.68 (0.01)***	0.67 (0.01)***	0.64 (0.02)***	0.64 (0.02)***
지역(동부=1)	0.19 (0.14)	0.14 (0.14)	0.29 (0.18)	0.25 (0.17)
고졸	-0.99 (0.30)***	-1.01 (0.29)***	1.06 (0.52)*	0.99 (0.51)*
초대졸	-0.90 (0.30)**	-0.94 (0.30)**	1.09 (0.51)*	1.07 (0.50)*
대졸	-0.37 (0.13)**	-0.37 (0.13)**	-0.43 (0.16)**	-0.43 (0.16)**
취업	-0.75 (0.15)***	-0.67 (0.15)***	-0.23 (0.18)	-0.23 (0.18)
구직(비취업)	0.35 (0.17)*	0.41 (0.17)*	0.64 (0.21)**	0.58 (0.20)**
부모 이혼별거 경험(있다=1)	0.30 (0.18)	0.24 (0.18)	0.41 (0.22)*	0.43 (0.21)*
형제자매 이혼별거 경험(있다=1)	0.01 (0.27)	0.05 (0.27)	-0.27 (0.43)	-0.32 (0.42)
결혼의 필요성		-0.29 (0.05)***		-0.24 (0.05)***
동거		-0.02 (0.06)		0.08 (0.07)
자녀의 필요성		-0.10 (0.07)		0.02 (0.08)
자녀의 효용		-0.17 (0.14)		0.20 (0.19)
전통적 성별분화		0.07 (0.07)		0.29 (0.08)***
남편생계모형		-0.01 (0.07)		0.06 (0.08)
(Constant)	14.377 0.51***	16.48 (0.78)***	12.28 0.68***	11.55 (0.96)***
조정된 R ²	0.776	0.79	0.66	0.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2-17>은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치변수 포함 전후로 모델의 설명력에 차이가 크지 않아, 미혼남녀의 가치들은 전체적으로 결혼계획연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가치변수 중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일수록 보다 빠른 시기에 결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성분업적 역할 규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 다른 가치변수들의 결혼시기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고정적인 성역할 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실제 결혼생활은 “Marriage Package”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가치관이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18>과 같다. 가치변수들이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자녀 필요성에 찬성할수록, 자녀의 현대적 가치를 선호할수록,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의견에 찬성할수록 출생자녀수가 많게 나타난다. 그러나 결혼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의 출생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기혼여성의 결혼관은 자녀양육 등 결혼생활을 겪는 과정에서 당초의 결혼관에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도 성불평등이 오히려 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이론이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자녀수와 성평등의식간에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가치관이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모델2), 가치변수 중 이혼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필요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작아, 결혼불안정성이 자녀수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필요성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18〉 가치관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b(S.E)	b(S.E)	b(S.E)	b(S.E)
만연령	0.06 (0.01)***	0.06 (0.01)***	0.01 (0.00)*	0.01 (0.00)*
지역	-0.15 (0.03)***	-0.15 (0.03)***	-0.13 (0.03)***	-0.13 (0.03)***
가구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고졸	-0.01 (0.05)	-0.01 (0.05)	-0.07 (0.04)+	-0.07 (0.04)+
초대졸	-0.15 (0.05)**	-0.15 (0.05)**	-0.12 (0.05)*	-0.12 (0.05)*
대졸	-0.24 (0.05)***	-0.24 (0.05)***	-0.21 (0.05)***	-0.21 (0.05)***
대학원 이상	-0.42 (0.10)***	-0.42 (0.10)***	-0.37 (0.09)***	-0.37 (0.09)***
본인취업(취업=1)	-0.12 (0.03)***	-0.12 (0.03)***	-0.05 (0.02)*	-0.05 (0.02)*
주택소유(소유=1)	0.09 (0.02)***	0.09 (0.02)***	0.06 (0.02)**	0.06 (0.02)**
양육비	0.23 (0.08)**	0.23 (0.08)**	0.14 (0.07)*	0.14 (0.07)*
불임여부(불임=1)	-0.63 (0.09)***	-0.63 (0.09)***	-0.20 (0.09)*	-0.20 (0.09)*
결혼의 필요성 찬성		0.02 (0.02)		-0.01 (0.01)
이혼에 대한 태도		-0.05 (0.02)**		-0.05 (0.01)**
자녀의 필요성		0.06 (0.01)***		0.06 (0.01)***
자녀의 효용		0.09 (0.03)**		0.05 (0.03)
고정적 성분업 역할		-0.01 (0.02)		0.01 (0.01)
남편생계모형		0.03 (0.02)*		0.02 (0.01)
상수	-0.30 (0.12)***	-0.75 (0.18)***	1.88 (0.11)***	1.60 (0.16)***
조정된 R ²	0.22	0.23	0.03	0.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결혼관, 자녀관 및 성평등관으로 구분되는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결혼관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결혼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여러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장애요인들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녀관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시기)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령기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가치를 도구적·경제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녀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에 관해 미혼남녀간 의식의 괴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남녀간 의식 괴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일견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혼여성들의 의식과 실생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 후 여성에게 출산·양육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 13 장 자녀양육비용과 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이 장에서는 자녀양육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소비되는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출산에 관한 의사 즉,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대자녀수는 현존 출생아수와 추가희망자녀수를 합한 개념이고, 이상자녀수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녀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로 자녀양육비용은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이 이용되었고, 이외 거주지,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 가구소득 등 가구 및 부인 특성들이 주로 통제목적으로 분석에 포함된다. 분석대상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포함된 20~44세 기혼여성이다.

분석방법으로는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적용된다. ANOVA 분석은 가구소득별 양육비용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계층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2,937,504원)을 기준으로 60% 미만계층, 60~80% 미만계층, 80~100% 미만계층, 100~150% 미만계층, 150% 이상계층의 5개 계층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자녀양육비가 추가자녀희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고,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각 회귀모형에는 두 모델이 적용된다. 모델1은 독립변수로 양육비만을 포함하고, 모델2는 양육비 이외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거주지, 출생아수, 출생남아수, 가구소득 등이 포함된다. 모델2의 경우 출산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양육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13-1>과 같다.

〈표 13-1〉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초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추가자녀희망여부 ¹⁾	.18 (.38)	0	1	3,432
추가희망자녀수(명)	.23 (.55)	0	4	3,432
기대자녀수(명)	2.02 (.60)	0	6	3,432
이상자녀수(명)	2.30 (.76)	0	8	3,432
영유아보육교육비(천원)	82 (170)	0	1597	3,432
사교육비(천원)	303 (366)	0	3030	3,432
거주지 ²⁾	.77 (.43)	0	1	3,432
월평균 가구소득	290 (156)	0	997	3,406
모 교육수준 ³⁾	.37 (.48)	0	1	3,430
모 취업상태 ⁴⁾	.48 (.50)	0	1	3,432
모 연령(세)	35.7 (5.2)	20	44	3,432
출생남아수(명)	.95 (.72)	0	4	3,432
출생자녀수(명)	1.79 (.76)	0	6	3,43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1) 추가자녀희망하는 경우를 1로 변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 2) 거주지가 동부지역인 경우를 1로 변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 3) 교육수준이 대학교재학이상인 경우를 1로 변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 4) 취업 중인 경우를 1로 변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2 절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규모

초·중·고 자녀 또는 영·유아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가구평균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이하 ‘사교육비’)와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이하 ‘보육교육비’)는 <표 13-2>와 같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및 보육교육비 지출은 비례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평균 사교육비는 60% 미만 소득계층 14.0만원, 60~80% 미만 소득계층 22.4만원, 80~100% 미만 소득계층 27.2만원, 100~150% 미만 소득계층 37.2만원, 150% 이상 소득계층 53.4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 보육교육비는 60% 미만 소득계층 5.4만원에서 150% 이상 소득계층 13.5만원 사이에 분포된다. 사교육비와 보육교육비를 합한 총교육비는 60% 미만 소득계층 19.4만원에서 150% 이상 소득계층 66.9만원 사이에 분포하며, 이 중 사교육비 비중이 보육교육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구소

득대비 교육교육비는 소득계층별로 반비례하나, 사교육비는 가구소득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은 10% 정도, 교육교육비 비중은 3% 수준이며,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다.

〈표 13-2〉 전체가구의 양육비용(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영유아교육교육비): 20~44세 기혼여성 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초중고자녀 사교육비		영유아교육교육비		총양육비	
		금액 (천원)	가구소득 대비비율	금액 (천원)	가구소득 대비비율	금액 (천원)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소득	평균	140.8	11.2	54.0	4.1	194.9	15.5
60% 미만	표준편차	209.4	21.8	104.7	8.1	221.0	21.8
계층	수	670	642	670	642	670	642
평균소득	평균	224.2	11.0	74.8	3.7	299.1	14.8
60~80% 미만	표준편차	277.2	13.8	142.0	7.0	272.0	13.6
계층	수	750	750	750	750	750	750
평균소득	평균	272.2	10.6	74.9	2.9	347.1	13.5
80~100% 미만	표준편차	288.4	11.2	140.1	5.4	284.7	11.1
계층	수	507	507	507	507	507	507
평균소득	평균	372.8	11.0	83.1	2.4	456.0	13.5
100~150% 미만	표준편차	364.9	10.95	181.2	5.2	352.4	10.5
계층	수	995	995	995	995	995	995
평균소득	평균	534.1	9.2	135.5	2.5	669.7	11.7
15.0% 이상	표준편차	540.0	9.3	257.1	4.7	517.9	8.9
계층	수	484	484	484	484	484	484
전체	평균	302.4	10.7	81.8	3.1	384.2	13.9
	수	3,406	13.9	3,406	6.3	3,406	14.0
	표준편차	365.8	3,378	170.4	3,378	366.3	3,378
	최소	.00	.00	.00	.00	.00	.00
F	최대	3,030.0	266.6	1,597.0	63.3	3,030.0	266.6
		113.2**	1.6	17.5**	9.5**	166.4**	4.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영·유아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 및 총양육비(교육보육비+사보육비)는 <표 13-3>과 같다. 이들 가구의 평균 교육보육비는 28.5만원으로 가구소득 중 11.4% 그리고 총양육비는 평균 30.9만원으로 가구소득 중 12.5%를 차지하고 있다. 교

육보육비와 총양육비는 가구소득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보육비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0%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15.4만원에서 150% 이상소득 계층의 경우 51.4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양육비도 60% 미만소득계층 17.0만원에서 150% 이상소득계층 56.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 중 비중은 보육교육비의 경우 9.7~11.6%로 소득계층간 차이가 거의 없다.

〈표 13-3〉 영·유아를 둔 가구의 양육비: 20~44세 기혼여성 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보육교육비		총양육비 (영유아보육+사보육비)	
		금액	가구소득대비 비율	금액	가구소득대비 비율
평균소득	평균	154.4	11.6	170.6	12.9
60% 미만	표준편차	173.8	12.1	179.2	12.5
계층	수	69	66	69	66
평균소득	평균	251.0	12.5	283.5	14.2
60~80% 미만	표준편차	208.4	10.4	209.4	10.4
계층	수	69	69	69	69
평균소득	평균	283.2	11.0	304.9	11.9
80~100% 미만	표준편차	179.6	6.9	171.7	6.6
계층	수	34	34	34	34
평균소득	평균	372.7	11.0	381.8	11.3
100~150% 미만	표준편차	308.0	9.0	312.7	9.1
계층	수	47	47	47	47
평균소득	평균	514.6	9.7	563.1	10.6
150% 이상	표준편차	427.6	7.6	453.7	7.9
계층	수	32	32	32	32
전체	평균	285.2	11.4	309.4	12.5
	수	251	248	251	248
	표준편차	278.6	9.9	287.7	10.1
	최소	.00	.00	.00	.00
	최대	1597.0	63.3	1597.0	63.3
	F	12.6**	0.9	13.3**	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사교육비와 총양육비

(사교육비+영유아교육보육비)는 <표 13-4>와 같다.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49.6만원으로 가구소득대비 17.7%로 나타난다. 영유아교육보육비와 달리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규모와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모두 소득계층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반대로 나타난다. 사교육비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0% 미만 소득계층 29.6만원에서 150% 이상소득계층 76.4만원으로 증가하여 소득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가구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은 13~24%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가구살림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4>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20~44세 기혼여성 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사교육비		총양육비(사교육+보육교육비)	
		금액	가구소득대비 비율	금액	가구소득대비 비율
평균소득	평균	296.7	23.9	339.4	27.1
60% 미만	표준편차	214.9	25.4	216.6	25.6
계층	수	318	303	318	303
평균소득	평균	394.8	19.5	432.9	21.4
60~80% 미만	표준편차	260.5	13.1	253.4	12.8
계층	수	426	426	426	426
평균소득	평균	429.9	16.7	477.8	18.6
80~100% 미만	표준편차	252.1	9.8	248.3	9.7
계층	수	321	321	321	321
평균소득	평균	552.0	16.4	590.7	17.5
100~150% 미만	표준편차	313.4	9.4	308.7	9.3
계층	수	672	672	672	672
평균소득	평균	764.9	13.2	829.8	14.4
150% 이상	표준편차	490.8	8.4	492.4	8.4
계층	수	338	338	338	338
전체	평균	496.4	17.7	541.3	19.4
	수	2075	2060	2075	2060
	표준편차	351.3	14.0	351.7	14.1
	최소	20.0	.6	20.0	.6
F	최대	3030.0	266.6	3030.0	266.6
		122.6**	41.2**	110.3**	28.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자녀양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자녀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가 자녀추가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표 13-5>와 같다. 양육비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1의 결과, 보육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자녀추가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보육교육비보다 사교육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등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모델2의 결과에서도 보육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여전히 추가자녀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5>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자녀희망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변수	모델 1		모델 2	
	B	Wald	B	Wald
영유아보육교육비	-.002 ***	38.582	-.001 *	4.634
사교육비	-.007 ***	306.406	-.002 ***	15.273
모 연령			-.215 ***	163.980
모 교육수준(1=대입 이상)			.220	2.363
모 취업여부(1=취업)			-.056	.139
거주지(1=동)			-.291 †	3.427
출생아수			-1.764 ***	186.586
출생남아수			-.611 ***	26.294
가구소득			.001 **	7.491
상수	-.343	29.436	8.811 ***	225.909
-2LL	2487.479		1502.657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3-6>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모델1),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 모두 추가희망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의 영향이 보다 크

게 나타난다. 여성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후(모델2)에도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는 여전히 추가희망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가구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추가출산을 단념하거나, 그 수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6〉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희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구분	모델1(β)	모델2(β)
영유아보육교육비	-.11 ***	-.11 ***
사교육비	-.33 ***	-.05 ***
모 연령		-.32 ***
모 교육수준(1=대입 이상)		.02
모 취업여부(1= 취업)		.02
거주지(1=동)		-.02 †
출생아수		-.41 ***
출생남아수		-.10 ***
가구소득		.05 **
Adjusted R Square	.11	.47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3-7>과 같다. 모델1의 결과, 보육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예상외로 기대자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거주지, 출생아수, 남아수, 가구소득 등을 통제한 모델2에서는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 증가가 기대자녀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기대자녀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7〉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 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구분	모델1(β)	모델2(β)
영유아보육교육비	.09 ***	-.10 ***
사교육비	.17 ***	-.05 ***
모 연령		-.29 ***
모 교육수준(1=대입 이상)		.01
모 취업여부(1= 취업)		.02
거주지(1=동)		-.02 †
출생아수		.88 ***
출생남아수		-.09 ***
가구소득		.04 **
조정된 R^2	.03	.56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와 이상자녀수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다중회귀분석 모델1의 결과(표 13-8), 사교육비는 이상자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육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여성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모델2)한 후에는 사교육비도 이상자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나 보육교육비가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이상자녀수가 양육비 부담과 무관하게 형성된 일반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3-8〉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 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구분	모델1(β)	모델2(β)
영유아보육교육비	.008	.002
사교육비	.044 *	-.033
모 연령		.044 *
모 교육수준(1=대입 이상)		-.073 ***
모 취업여부(1= 취업)		-.030 †
거주지(1=동)		-.059 ***
출생아수		.153 ***
출생남아수		.022
가구소득		.042 *
조정된 R^2	.001	.045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영·유아보육 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절대 액수는 많아진다.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사교육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보육교육비의 경우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보육교육비와 사교육비는 기혼여성 및 가구의 제 특성을 통제하여도 자녀추가희망 여부 및 그 수, 기대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상자녀수는 양육비 부담과 무관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비 부담은 가구에서 출산을 줄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 혹은 부부가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좌절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제 14 장 주거와 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내용

주택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가족의 상징물로서 거주자의 개성과 위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집에 대한 소유의식은 타문화권에 비해 유난히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주거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연관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주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주택의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수급간의 불균형 문제와 이에 따른 주택구입 및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와 무주택 저소득층은 주택구입금과 전세금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4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주 가운데 85.8%가 결혼 후에 최초로 자기 집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한 평균 소요기간은 10년 1개월로 나타난다(통계청, 2004. 11, 「2004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주거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담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므로 가족 형성과 가족 확대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최적의 조건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주36)}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

주36) 최저주거기준은 설비의 시설기준, 안정성·쾌적성 등 구조·기능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부부+1자녀 가구의 경우 최소 8.8평의 주거면적에 2개의 방이 필요하며, 부부+2자녀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은 11.2평에 3개의 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건설교통부, 2004.6,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제2004-173호)」).

의 23.1%(약 330만 가구)로, 이 중 저소득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남녀는 결혼을 비자발적으로 연기하여야 하며, 결혼 후에도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자녀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주거문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주거 문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며, 분석기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20~44세 중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3,3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로는 현존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이용하는데, 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개념(period concept)의 출산수준에 가깝고, 후자는 현존 출생아수에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자녀수를 더한 개념으로 완결출산력(complete fertility)의 의미를 가진다.

독립변수로는 본 분석의 주요 관심영역으로서 주거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 집 소유 여부, 주거비용 부담 및 주거밀도를 포함한다. 자기 집 소유 여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자기(또는 가족)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주거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주거비용 부담은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생활비 중 주택관리비, 집세·주택융자금 상환 등 주거비로 지출한 정도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2순위 이내)를 주거비부담이 높은 가구(더미처리 '1')로 분류하여 작성한 지표로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다. 주거밀도는 주택 1호당 거주 가구원수로 주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다.^{주37)} 여기에

주37) 주거밀도는 자가소유 및 주거비지불능력과 함께 주거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주택의 3대 지표로서, 화장실, 복도, 벽장, 배란다 등을 제외한 방 당 사람 수(persons per room)를 나타내는 개념이다(하성규, 1999; Clark & Dieleman, 1996). 그러나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서는 주거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방수, 면적, 시설(부엌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가구원수를 고려한다.

서 가구원으로서 현존 자녀수는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므로, 통계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밀도 측정에서는 제외한다. 한편, 주거 특성과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구소득, 경제활동가구원수, 맞벌이부부 여부, 여성의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근로소득, 남편의 취업여부 및 소득 등의 변수들은 주로 통제를 위하여 모형에 포함된다.

회귀분석모형은 전국과 도시 및 농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역별로 구분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간 주택의 가격, 소유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 관련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4-1〉 다변량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변수	통계량	변수	통계량
종속변수		독립변수	
현존자녀수(명)	평균 1.78명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기대자녀수(명)	평균 2.01명	맞벌이(=1)	1,488명(44.3%)
독립변수		기타(=0)	1,873명(55.7%)
주택소유여부		부인 연령(세)	평균 36.2세
비소유(=0)	1,167명(34.7%)	부인 교육정도	
소유(=1)	2,193명(65.3%)	고졸이하(=0)	2,163명(64.4%)
주거비지출부담정도		초대졸 이상(=1)	1,197명(35.6%)
부담 적음(없음)(=0)	2,144명(63.8%)	부인의 취업여부	
부담 높음(=1)	1,217명(36.2%)	취업(=1)	1,571명(53.2)
주거밀도(자녀제외 가구원수)	평균 2.1명/주택	비취업(=0)	1,789명(46.8)
지역		부인 월평균소득(만원)	평균 51만원
읍면부(=0)	722명(21.5%)	남편 취업여부	
동부(=1)	2,638명(78.5%)	취업(=1)	3,223명(95.9)
경제활동가구원수(명)	평균 1.50명	비취업(=0)	138명(4.1)
가구월평균소득(만원)	평균 294.5만원	남편 월평균소득(만원)	평균 233만원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2 절 주거 특성과 출산수준

1. 주택과 결혼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마련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1>에 볼 수 있듯이, 25~39세 미혼남성이 결혼을 미룬 이유 중 주택마련 등의 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주택 마련의 곤란으로 인한 결혼연기의 비율은 도시에서 22.8%로 농촌의 12.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동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미혼여성(25~39세)의 경우 주택마련 곤란으로 결혼을 연기한 경우는 극히 미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결혼을 위해 남성 편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고, 여성 편에서는 혼수를 마련하는 결혼관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4-2>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단위: %, 명)

이유	미혼남자			미혼여자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소득부족	19.2	18.5	23.3	4.7	4.8	3.6
실업/고용 불안정	17.3	17.8	14.1	6.1	5.8	8.4
일-결혼생활 양립곤란	5.3	5.0	6.6	17.8	18.1	15.1
결혼비용(주택/혼수 등) 부담	21.3	22.8	12.5	13.2	13.0	14.0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5.1	5.3	4.1	8.9	8.8	9.2
마땅한 사람 못 만남	11.6	11.2	13.5	24.4	24.2	25.6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5.1	4.5	8.4	6.5	6.4	7.2
기타	15.1	14.8	17.4	18.5	18.7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51)	(642)	(109)	(460)	(402)	(5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주거 특성과 출산

주택소유 여부별 출산수준은 <표 14-3>에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85명으로 비소유의 1.64명보다 0.21명씩 더 많다. 주택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농촌과 도시에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나, 다만 농촌(0.15명)에 비해 도시(0.23명)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의 주택마련이 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대상에는 아직 출산을 완결하지 않은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어, 현 출생아수는 여전히 진행과정상의 평균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완결출산력의 의미를 가진 기대자녀수를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주택소유자의 기대자녀수가 2.04명으로 무주택자의 기대자녀수 1.97명보다 다소 많다. 지역별로도 도시와 농촌 모두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다소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여부별 평균 기대자녀수 차이는 도시(0.05명)에 비해 농촌(0.1명)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기대자녀수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에서의 주택소유여부별 차이는 연령구조 등이 덜 통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4-3>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출생자녀수				평균 기대자녀수			
	비소유(A)	소유(B)	n	차이(A-B)	비소유(A)	소유(B)	n	차이(A-B)
전체	1.64	1.85	3360	-0.21 ***	1.97	2.04	3360	-0.07 **
지역								
농촌	1.78	1.93	722	-0.15 *	2.05	2.15	722	-0.10 *
도시	1.60	1.83	2638	-0.23 ***	1.95	2.00	2638	-0.05 *
연령								
35세 미만	1.34	1.55	1364	-0.21 ***	1.94	1.99	1364	-0.05
35세 이상	1.95	2.02	1996	-0.07 *	1.99	2.06	1996	-0.07 ***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여성의 연령을 35세 미만의 출산진행세대와 35세 이상 출산완결접근세대(여기에서는 완결에 접근하고 있는 세대를 의미)로 통제하여 보면, 양 세대 모두 주택소유자의 출생자녀수(1.55명, 2.02명)가 무주택자(1.34명, 1.95명)의 출생자녀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소유여부별 평균 출생자녀수 차이는 출산진행세대의 경우 0.21명으로 출산완결접근세대의 0.07명보다 크다. 기대자녀수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수 기준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5세 간격 코호트별로 주택소유여부별 출생자녀수 차이를 살펴보면(표 14-4), 대체적으로 최근 세대일수록 주택소유여부별 출생자녀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출산이 거의 완결된 1960~64년생의 경우에도 출생자녀수의 차이가 0.11명으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연령구조를 표준화하기 이전에 출생자녀수 차이는 0.2명인데 비해, 표준화 후에는 약 0.1명으로 좁혀지고 있다. 다만, 주택소유여부별 기대자녀수 차이는 출생아수의 경우에 비해 좁게 나타난다. 주택소유여부별 출생아수 차이는 저연령층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고연령층에서는 주거불안정 및 주거공간부족으로 출산을 억제·포기하였기 때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표 14-4〉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 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자녀수
(단위: 명)

주택소유 여부	출생코호트					평균 (연령 비표준화)	평균 (연령 표준화)	사례수
	1960~ 64년생 (40~44세)	1965~ 69년생 (35~39세)	1970~ 74년생 (30~34세)	1975~ 79년생 (25~29세)	1980~ 84년생 (20~24세)			
주택소유(A)	2.04	1.98	1.70	1.14	0.88	1.84	1.80	2,393
무주택(B)	1.93	1.93	1.60	1.04	0.66	1.64	1.71	1,409
차이(A-B)/A×100	△5.4%	△2.5%	△5.9%	△8.8%	△25.0%	△10.9%	△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0~44세 기혼여성의 가구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자녀를 둔 경우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순이며, 2자녀 이상을 둔 경우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난다. 1자녀 가구의 주거비는 자

기집소유의 경우 그 중요도가 덜하나, 무주택(전·월세)가구의 경우 두 번째로 중요한 지출항목으로 나타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거비는 월세가구에 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출항목으로 나타난다.

〈표 14-5〉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지출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단위: %, 명)

주택 소유	1자녀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교육비	식료 품비	주거비	보험료	기타	사례	교육비	식료 품비	주거비	보험료	기타	사례
자가	27.0	26.3	22.7	15.3	8.5	415	61.9	15.1	11.4	6.5	5.0	1,535
전세	21.1	33.0	21.1	13.8	11.0	196	58.6	16.8	11.1	8.4	5.1	418
월세	12.7	41.9	28.2	12.0	5.3	120	45.1	19.3	24.8	7.0	3.9	241
전체	23.0	30.7	23.2	14.3	8.6	731	59.4	15.9	12.8	6.9	4.9	2,19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으로 거주비용을 응답한 경우를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로 그리고 이외의 가구를 주거비용 부담이 적거나 없는 가구로 분류하여, 평균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14-6>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1.68명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1.83명보다 0.15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도시, 농촌) 및 여성의 연령별(출산진행세대, 출산완료접근세대)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주거비 부담 정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도시와 농촌 모두 0.14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연령별로는 출산완료접근세대의 경우 주거비부담 정도에 따라 0.14명 차이가 나는 반면, 출산진행세대의 경우에는 0.08명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출생자녀수 차이가 출산이 거의 완결된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출산 수준에 대한 주거비부담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한편, 기대자녀수는 주거비 부담 정도가 클수록 적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0.08명으로 실제 출생자녀수와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

향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여성의 연령집단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농촌에서 주거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이는 0.04명인데 반해, 도시에서는 거의 1명이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커, 자녀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산진행세대의 경우에 두 집단간의 기대자녀수 차이는 0.03명인데 반해, 출산완결접근세대의 경우에는 약 1명으로 나타난다. 실제 출생자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대자녀수까지 거의 출산인 완결된 시점에서 차이가 커지다는 것은 주거비로 인한 출산 연기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포기(축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짐작케 해 준다.

〈표 14-6〉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비 부담정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출생자녀수				평균 기대자녀수			
	주거비부담 낮음(A)	주거비부담 높음(B)	차이(A-B)	명	주거비부담 낮음(A)	주거비부담 높음(B)	차이(A-B)	명
전체	1.83	1.68	0.15 **	3,360	2.04	1.96	0.08 ***	3,360
지역								
농촌	1.93	1.79	0.14 *	722	2.13	2.09	0.04	722
도시	1.80	1.66	0.14 ***	2,638	2.02	1.93	0.09	2,638
연령								
35세 미만	1.49	1.41	0.08 †	1,364	1.98	1.95	0.03	1,364
35세 이상	2.05	1.91	0.14 ***	1,996	2.08	1.97	0.11 ***	1,996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주택 당 거주인수(자녀 제외)로 측정되는 주거밀도를 기준으로 평균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4-7>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저밀도 가구에서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1.79명으로 고밀도 가구집단의 1.6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밀도에 따른 출생자녀수 차이는 지역별(도시, 농촌) 및 여성 연령별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두 집단간 차이는 농촌(0.05명)보다 도시(0.16명)에서 상대적으로 크며, 출산완결접근세대(0.03명)보다 출산진행세대(0.16명)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기대자녀수는 두 집단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농촌에서 고밀도가구의 기대자녀수가 2.23명으로 저밀도 가구의 2.10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35세 미만의 출산이 진행 중인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고밀도 가구에서 현재 출산한 자녀수보다 향후 추가를 희망하는 자녀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향후에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집단에서 희망하는 자녀수는 달성되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표 14-7〉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밀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출생자녀수				평균 기대자녀수			
	저밀도 (A) ¹⁾	고밀도 (B) ¹⁾	차이(A-B)	명	저밀도 (A) ¹⁾	고밀도 (B) ¹⁾	차이(A-B)	명
전체	1.79	1.67	0.12 **	3,360	2.01	2.03	-0.02	3,360
지역								
농촌	1.89	1.84	0.05	722	2.10	2.23	-0.12 *	722
도시	1.77	1.61	0.16	2,638	1.99	1.95	0.04	2,638
연령								
35세 미만	1.48	1.32	0.16 **	1,364	1.96	2.03	-0.07	1,364
35세 이상	2.00	1.97	0.03	1,996	2.05	2.02	0.03	1,996

† p<0.1, *p<0.05, **p<0.01, ***p<0.001

주: 1) 주택 당 거주인수(자녀제외)가 2인 이하시 저밀도, 3인 이상시 고밀도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주거 특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주거 특성과 연계되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로서 표준화 회귀계수(β)는 <표 14-8>과 같다. 전체적으로 다른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소유 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모두 출산수준(출생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무주택은 출산수준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그리고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자녀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세 가지 주택 특성 중 주거비 부담, 주택소유여부, 주거밀도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거 특성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서만 사실로서 판명되고 있다. 농촌에서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및 주거밀도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유의도 0.05 수준)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도시에서는 주거비부담, 주거밀도, 주택소유여부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주거 문제는 도시에 한정하여,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8〉 주거특성이 출생수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구분	현존자녀수		
	전체	농촌	도시
지역(도시=1)	-.076 ***		
가구소득	-.096 *	-.135	-.086 †
경제활동가구원수	.033	.002	.045
부부취업형태(맞벌이=1)	-.072	-.335	-.032
부인 연령	.374 ***	.364 ***	.378 ***
부인 교육정도(초대졸 이상=1)	-.129 ***	-.089 *	-.139 ***
부인 취업여부(취업=1)	.015	.371	-.056
부인 소득	-.004	-.003 †	.002
남편 취업여부(취업=1)	.015	.052	.007
남편 소득	.131 **	.156	.124 **
주택소유여부(소유=1)	.061 ***	.031	.068 ***
주거비부담(부담 높음=1)	-.072 ***	-.047	-.078 ***
주거밀도(고밀도=1)	-.056 **	-.020	-.069 ***
R ² (조정된 R ²)	.218 (.215)	.182 (.168)	.227 (.223)
F-값	71.94 ***	13.11 ***	64.19 ***
N(표본수)	3,360	722	2638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향후 완결출산력을 의미하는 기대자녀수에 대한 주거 특성들의 영향은 <표 14-9>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주택소유여부와 주거비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주택은 출산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밀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출산 완결시 현 주거 밀도가 가구원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출생아수(기대자녀수)에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완결출산력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거비 부담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영향력도 실제 출생자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기대자녀수에 대한 주거 특성들의 영향도 실제 출생자녀수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가 기대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14-9〉 주거특성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구분	기대자녀수		
	전체	농촌	도시
지역(도시=1)	-.085 ***		
가구소득	-.073	-.130	-.065 ***
경제활동가구원수	.157 ***	.098	.176
부부취업형태(맞벌이=1)	-.116	-.212	-.095
부인 연령	.034 †	.013	.042 *
부인 교육정도(초대졸이상=1)	-.094 ***	-.081 *	-.096 ***
부인 취업여부(취업=1)	-.022	.173	-.076
부인 소득	.011	-.009	.012
남편 취업여부(취업=1)	-.025	.034	-.041
남편 소득	.110 †	.172 †	.098 †
주택소유여부(소유=1)	.040 *	.055	.035 †
주거비부담(부담 높음=1)	-.061 ***	-.018	-.074 ***
주거밀도(고밀도=1)	-.031	.033	-.052 *
R ² (조정된 R ²)	.035 (.032)	.030 (.014)	.030 (.026)
F-값	9.47 ***	1.84 *	6.77 ***
N(표본수)	3,360	722	2638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은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선호도 차이로 인하여 수급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주택구입 및 임차 가격의 상승은 한국사회의 아주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급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주택의 질적인 측면과 주거 복지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주거문제는 출산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분석 결과, 여러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하기 전이나 통제된 후에도 무주택, 주거 고밀도, 높은 주거비 부담은 출산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도 중요하나,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적인 수준인 주거밀도 역시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의 문제들은 현재 진행 중인 출산수준뿐만 아니라, 가임기 동안 낳게 될 출산에 대한 최종적인 잠재적 수요인 기대자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대자녀수에 대한 응답자의 희망은 향후 주거문제의 해결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만약 주거 문제가 가임기 동안에 계속될 경우에 실제 출생자녀수를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거 특성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 국한된다. 현실적으로 주거문제는 도시문제로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결국 향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택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과 가격정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제 15 장 경제적 환경과 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합계출산율은 어떤 코호트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실제로 경험한 ‘실제상황’이 아니라 가상 코호트(hypothetical cohort)-혹은 합성코호트(synthetic cohort)-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다. 합계출산율의 변동은 여성이 출산할 평균 자녀수의 변동이 아니라 출산 시점의 변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혼연령의 변동이나 출산간격의 확대와 같은 개인적 행위가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변동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혼인연령과 출산간격이 변화한 배경에는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을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수용한 사례로 뽑힌다. 가족 삶의 전략이 그 가족이 사는 사회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Bourdieu, 1980; Hammel, 1990)에서 볼 때,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 가족 삶의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또 과거보다 더 서구의 글로벌 스탠더드-서구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가속화시킨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출산과 결혼은 분명 가족 삶의 전략의 일부이다. 출산과 결혼은 얼핏 보면, 개인적인 행위같이 보이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행위이다(Bongaarts and Waktins, 1996). 따라서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외환위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를 변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분석은 우선적으로 결혼과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변동-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청년실업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첫째아, 둘째아, 그리고 셋째아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 및 위험함수 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생존함수는 일반적으로 생명표 추정방법과 카플란-마이어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본 분석에서는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도표를 구한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관찰기간을 일정단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의 구간생존확률을 구하고 이들의 누적으로서 일정기간까지의 누적생존율을 구하는 방법(강상현, 2005:653)’이다. 구간간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공변량(covariates)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 ‘집단화된(grouped)’ 기간(time period)을 연구하기 위한 기법이다. 반면 일명 누계한계추정법(production-limit estimation)이라고 칭해지는 카플란 마이어 추정방법은 시간축(time axis)을 분해하여 임의로 만든다. 따라서 생명표 추정 방법과의 차이는 선택된 시점에서 발견된 사건들이 구간 간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Blossfeld, Hamerle and Mayer 1989). 그 결과 미리 설정된 구간대신 관찰된 각 시점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후 각 관찰된 사건의 시점 사이들을 하나의 구간처럼 생각함으로써 생존함수를 구한다. 카플란 마이어 추정방법에서는 우측 중도절단(right censored) 관찰값들이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및 위험함수(hazard function) 계산에서 고려된다. 더불어 공변량(covariates)을 통제함으로서 집단 간의 생존함수 혹은 위험함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카플란-마이어 추정 방법이 생명표 추정 방법보다 효율적이다.

제 2 절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결혼·출산

초혼연령 상승과 출산간격 변동과 같은 개인적 행위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를테면 전쟁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동은 출산율과 혼인율이 가장 높은 20대 여성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도록 작용하므로, 전

쟁기간 동안 혼인율과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전쟁 후에는 결혼 혹은 출산을 연기 했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함으로써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한다(Easterlin 1981).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2000년대 초의 합계출산율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20대 혹은 30대 초 여성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게 한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면,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수준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 상황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 역시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초저출산의 원인을 후자보다는 전자에 국한시켜 분석하도록 한다.

외환위기 이후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 변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인은 20대와 30대 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와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의 증가일 것이다.

1. 가임기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Becker, 1981),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는 자녀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Lehrer 1986). 그러나 거시 자료들의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 그러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Billari and Kohler, 2004;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만일 보육복지가 잘되어 있고, 또 일하는 어머니에게 우호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아직 여성의 노동시장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연계되기 쉽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전반 45% 수준에 머물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 49.0%, IMF을 맞은 해인 1997년 52.7%까지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1%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약 52~54% 수준에 도달하였다.^{주38)} 혼인과 출산이 집중된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6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5~2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대 30%수준에서 1997년에 53.8%로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직후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 60%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1990년 기간동안 약 10% 수준이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의 상승폭은 완만하다.

〈표 15-1〉 주된 가임기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여성	45.7	44.4	49.0	50.9	52.7	50.1	50.6	52.0	53.0	53.8	53.6
20~24세	53.5	55.1	64.6	66.1	66.4	61.1	60.8	60.9	61.7	62.4	61.5
25~29세	32.0	35.9	42.6	47.9	53.8	51.5	52.1	55.7	57.5	59.4	60.5
30~34세	40.8	43.6	49.5	47.6	51.1	47.5	48.4	48.6	48.9	49.8	49.8

자료: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p.8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은 연령별출산율과 직결된다. 2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2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 20~24세 출산율은 1985년 117.5에서 1990년 84.9, 1995년 61.5, 2000년 39.3, 그리고

주38)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약 2~3%대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이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실업률 계산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많은 여성들이 경기 혹은 노동시장 조건이 악화되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되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가가 됨으로써, 실업률을 상승하게하지 못하게 한다.

2004년 20.4로 감소하였다. 또한 25~29세 출산율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160선에 머물렀으나, 그 후 2004년에 104.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 출산율은 1985년에 38.6이었지만 1990년 49.2, 1995년 70.8, 2000년 82.8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84.2로 나타난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혜택-비용 계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은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상승시켰을 것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2. 청년실업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행위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결정요인으로 여성의 교육, 여성의 임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여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남성은 단지 부차적인 요소일 따름이다. 그러나 남성도 가족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eRose and Ezeh, 2005; Ahn and Mira, 2001).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결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란 어렵다. 최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강조되고 있지만, 남성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및 가족의 생계에 대한 경제적 능력을 형성하지 못한 남성은 그러한 능력을 형성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기 쉽고, 또 여성도 상대방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혼을 연기하기 쉽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Oppenheimier and Kalmijn and Lim, 1997).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결혼 조건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외모와 건강, 성격, 신뢰,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긴데 반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조건을 월등히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 상황을 제시한 반면, 여자는 결혼나이, 결혼생활의 어려움, 자아성취의 방해를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표 15-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조건

(단위: %, 명)

성별	결혼 조건					계 (명)
	외모와 건강	경제적 조건	성격/신뢰/사랑	가정환경과 종교	무응답	
남자	235(16.1)	84(5.7)	734(50.1)	155(10.6)	257(17.5)	100.0 (1,466)
여자	59(4.9)	336(27.9)	384(31.9)	108(9.0)	317(26.3)	100.0 (1,2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5-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성별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들						명 (계)
	경제적 상황	결혼비용	결혼생활 어려움, 자아성취 방해	결혼 나이	마땅한 배우자 없음	결혼생각 없음	
남자	465 (31.7)	168 (11.5)	168 (11.5)	406 (27.7)	140 (9.6)	38 (2.6)	1,405 (100.0)
여자	123 (10.2)	92 (7.6)	248 (20.6)	433 (35.9)	171 (14.2)	71 (5.9)	1,204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런데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결혼 적령기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직결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의 실업률에 비해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다(안주엽, 2002).

<표 1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직전 4.9%였던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1998년 12월에 무려 14.5%를 기록하였지만, 그 후 감소하여 약 7%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청년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2월에 최고의 정점을 차지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약 3%대에 머물고 있다. 비록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은 유사한 추세를 보였지만, 그 변화폭은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크며,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표 15-4〉 청년층 및 전체 실업률 추이

(단위: %)

	1996	1997.10	1998.12	1999	2000	2001	2002	2003.5
청년층	4.7	4.9	14.5	11.0	7.7	7.5	6.6	7.2
전체	2.0	2.1	7.9	6.3	4.1	3.8	3.1	3.2

자료: 통계청(2002년 6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200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그러나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996년 5,421천명에서 2002년 4,799천명으로 6년 사이에 622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만일 1996년 청년층에 배당되었던 일자리 수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당히 감소되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즉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또 1995~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위기 전후의 일자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 위기 직후 1998년의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율(17.0%)이 장년층의 감소율(7.7%)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기회복기인 1999~2000년에서마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노동력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1997~2001년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195천명 감소하여 전체 일자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서 32.2%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눈높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의 활발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의 실업률 감소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이병희, 2003).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1996년 총근

로자의 35.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8년에 32.3%, 1999년 29.8%로 약 5% 이상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2000년에도 계속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시직은 18.5%에서 21.1%로 3% 가까이 증가했고, 일용직도 8.7%에서 11.1%로 역시 2% 이상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일용직과 임시직을 합한 불안정한 종사 지위가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당연히 증가했다. 1996년 43.2%, 1999년 51.6%, 2000년 52.4%로 약 9%나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2000년에 들어서도 불안정한 종사지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4분기 52.8%, 3/4분기 52.3%를 기록하고 있다(김영범, 2001).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그 일자리마저도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일자리로 점점 더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직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은 젊은이,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결혼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젊은 남성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리의 고용불안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직장 자체가 젊은 남성과 결혼상대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젊은 남성들에게 결혼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결혼 자체를 힘들게 만들기 쉽다. 2004년 남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30.6세로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해인 1997년의 28.6세보다 약 2세가 증가되었다. 반면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7년 전인 1990년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은 27.9세로,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 7년 동안은 약 0.7세가 증가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불안은 젊은 남성의 평균 결혼연령을 그 이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의 증가폭도 급증되었지만, 남성의 증가폭보다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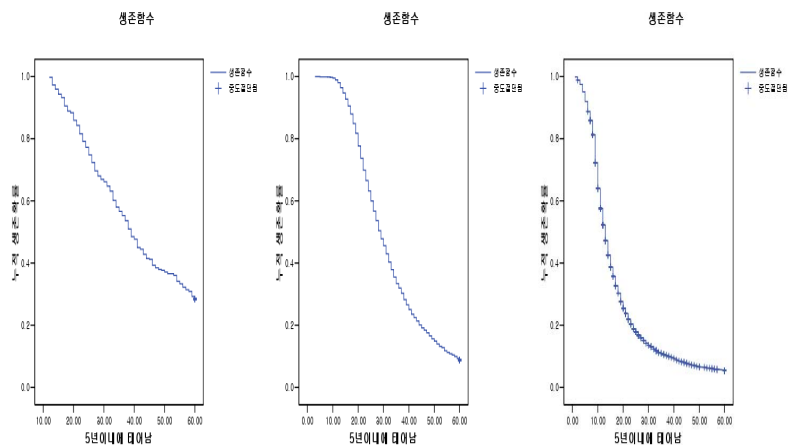
혼인연령의 상승은 출산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독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혼연령이 점점 더 상승되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 만성적인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의 혼인이 연기되거나 심지어 혼인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래의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 3 절 외환위기가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

1. 출산순위별 출산확률

외환위기 이후 결혼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를 출산하는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Kaplan-Meier 생존함수를 통해 분석한다(그림 15-1). 첫째아에 대한 생존함수는 결혼 후 일정기간까지 첫째아를 출산하지 않고 남아 있을 확률을 의미하며, (1-누적생존확률)은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을 의미한다. 기혼여성 3,738명 중 90.5%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하였고, 9.5%(누적 생존확률)만이 출산하지 않았다. 특히, 결혼 후 10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첫째아를 출생하고 있다. 둘째아에 대한 생존함수를 보면, 첫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 2,574명 중 91.2%가 5년 이내에 둘째아를 가졌다. 결국 전체 기혼여성 중 80% 정도가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아의 경우 상당수 기혼여성들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둘째아의 경우에는 첫째아 출산 후 다소 시간적 간격을 가진 뒤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고, 출산간격도 첫째아에 비해 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15-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를 출산할 생존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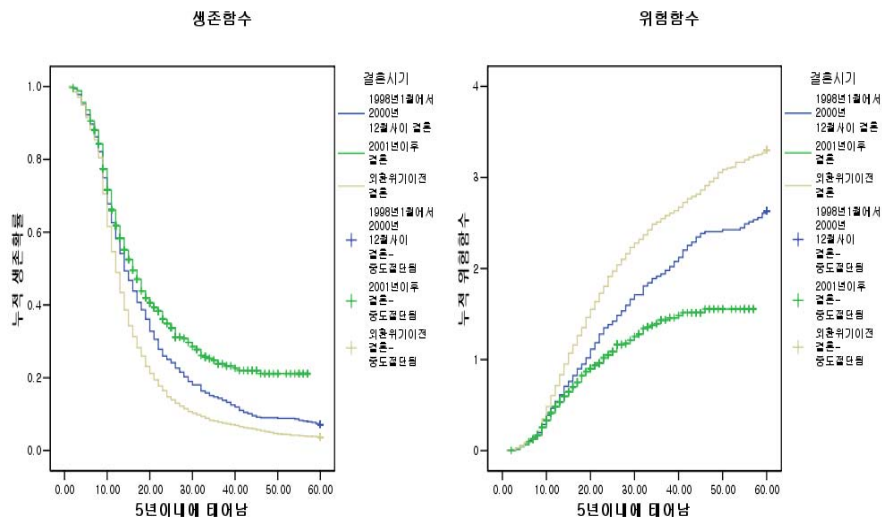
주: 첫째아 n=3,738, 둘째아 n=2,574, 셋째아 n=369

셋째아에 대한 생존함수에서는 둘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 369명 중 71.5%가 5년 이내에 셋째아를 출산하였다. 전체 기혼여성 중에는 약 48%가 셋째아 출산을 경험한 것이다. 셋째아 생존함수는 둘째아 생존함수보다 더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어, 셋째아 출산시점이 둘째아 출산시점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2. 결혼코호트별 출산확률

[그림 15-2]는 결혼시기별 첫째아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이다. 우선 생존함수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결혼코호트) 2,603명 중 96%, 1998~2000년 결혼코호트(542명) 중 93%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하였다. 반면, 2001년 이후 결혼코호트(593명) 중 62%만이 출산하였다. 결혼 후 무자녀로 남아있을 확률은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2001년 이후의 결혼코호트에서 가장 낮고, 1998~2000년 결혼코호트, 외환위기이전 결혼코호트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15-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시기별 첫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N=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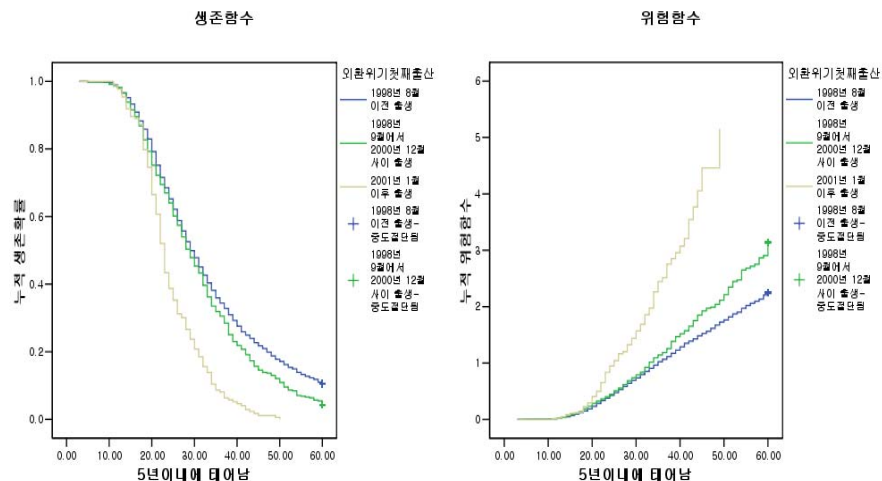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첫째아를 덜 그리고 더 늦게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Kaplan Meier 추정치가 우측 중도절단 관찰값들을 계산에서 고려할지라도, 외환위기 이후 결혼코호트의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코호트별 첫째아에 대한 위험함수에서 결혼 후 10개월 지점까지 첫째아 출산확률은 결혼코호트간 차이가 거의 없다. 그 이후 결혼 후 5년까지 첫째아 출산확률은 2001년 이후 결혼코호트, 1998~2000년 결혼코호트, 외환위기 이전 결혼코호트 순으로 낮다.

3. 출산시기별 출산확률

[그림 15-3]은 첫째아 출산시기별 둘째아에 대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나타낸다. 우선 생존함수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첫째아 출산여성(1,962명) 중 89.4%, 1998~2000년 첫째아 출산여성(439명) 중 95.7%, 2001년 이후 첫째아 출산여성(173명) 모두가 첫째아 출산 후 5년 이내에 둘째아를 출산하였다. 최근에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일수록 둘째아를 가질 확률이 높고, 그 기간도 보다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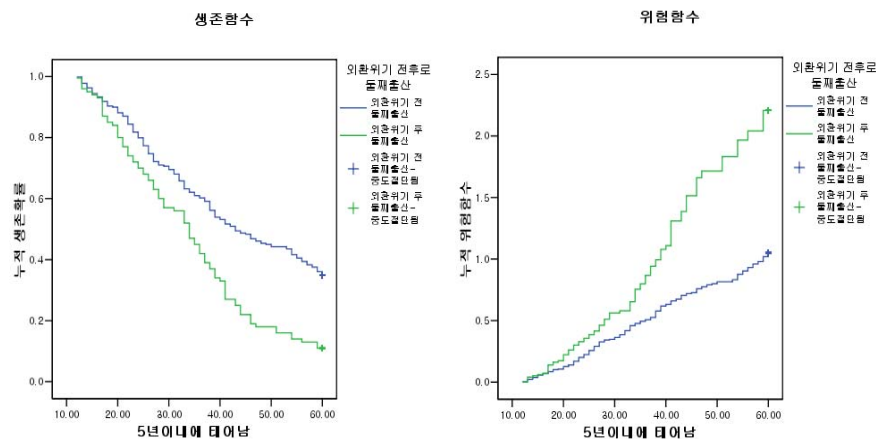
[그림 15-3] 기혼여성(20~44세) 첫째아 출산시기별 둘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N=2,574)



이는 결혼 후 첫째아 출산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 느리게 진행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첫째아 출산연령이 상승하여, 최근에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일수록 보다 짧은 출산간격으로 둘째아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즉, 고정된 2명의 이상자녀수와 상승된 초혼연령은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간격을 보다 짧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둘째아에 대한 위험함수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2001년 이후에 둘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들은 첫째아를 출생한 후 약 20개월 후부터,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에서 2000년 사이에 첫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들보다 위험함수가 급격히 상승함을 보여준다.

[그림 15-4]는 둘째아 출산시기별 셋째아에 대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나타낸다. 외환위기 이전 둘째아 출산여성 269명 중 65%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둘째아 출산여성 100명 중 89%가 둘째아 출산 후 5년 이내에 셋째아를 출산하였다. 3자녀를 계획한 여성은 최근에 올수록 더 빠른 기간 내에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둘째아 출산 후 5년 이내 셋째아 출산여성의 백분비는 외환위기 이후가 외환이전보다 약 20% 높다.

[그림 15-4] 기혼여성(20~44세의) 둘째아 출산 시기별 셋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N=369)



이러한 경향은 위험함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2001년 이후에 둘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들이 외환위기 이전에 둘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들보다 셋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더 높다. 둘째아 출산간격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기에 둘째아를 출산한 기혼 여성이 그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시기에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셋째아를 출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초혼연령 상승으로 늦게 결혼한 여성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출산행위를 완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초혼연령이 가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연령에 근접할수록, 여성들은 불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을 연기하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수의 자녀를 생산하려는 경향이 높다.^{주39)} 요컨대 점점 더 좁아지는 연령간격 하에서 출산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쉽다. 이러한 ‘출산연령 집중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일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첫째아를 낳은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짧은 연령간격에 집중적으로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째아를 출산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첫째아를 출산하려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기회가 급격히 점점 더 상실될 것이라는 점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39) 이러한 출산연령의 집중화 현상은 초저출산국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 Kohler and Ortega(2002b)는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최근 첫 번째 출산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분포가 집중되어 가는 출산연령의 집중화 현상 -혹은 출산의 사각화(rectangularization) 현상- 을 발견했다. 이를 테면, 스페인에서 첫째아 평균출산연령은 26.7세에서 30.8세(+16%)로 증가된 반면 그것에 대한 표준편차는 1980~1998년 사이에 5.4에서 4.7(-11%)로 줄어들었고, 또한 그 연령의 사분위(interquartile)로서 25%와 75% 사이의 간격 역시 줄어들었다.

제 4 절 경제적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외환위기 전후 출산수준 변화

앞선 분석에서는 외환위기가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지름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한다. 종속변수는 초혼 또는 출산순위별 출산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추가출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5년 이후에 출산하였다면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들로 부인 및 남편의 직업 안정도, 가구소득 및 주택소유여부이다. 한편, 출생코호트(연령), 초혼연령, 교육수준, 가치관 변수로 가족관과 자녀 효용성, 출산관련정책 선호도 등은 통제를 위한 변수로 모형에 포함된다. 이들 변수의 범주는 <표 15-5>에 제시하였다.

부인안정직업은 결혼 전부터 조사시점까지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혹은 상용근로자이고, 직종은 고위직 관리자 혹은 전문가이면서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전제조건은 경력(career)을 가진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출산보다 자신의 일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첫째아를 둔 경우로서 안정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결혼한 여성 중 8.1%로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6.3%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아를 가진 경우에도 안정직업비율이 외환위기 이전(6.5%)보다 이후(7.7%)에 더 높다. 전반적으로 안정직업여성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보다, 첫째아와 둘째아가 셋째아보다 높다. 남편의 안정직업은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혹은 상용근로자이고, 직종은 고위직 관리자 혹은 전문가이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남편이 안정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첫째아에서 24.9%, 둘째아 27.5%, 그리고 셋째아에서 24.9%였다. 가구소득은 150만원 이하, 151~400만원 이하, 401만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주택소유여부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지로 구분된다.

통제를 위한 다른 변수 중 출생코호트는 1960~1965년, 1966~1970년, 1971~1975년, 1976~1985년으로 구성된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 고졸 혹

은 대학중퇴, 4년제 미만 대학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성된다. 4년제 대졸비율은 첫째아 출산여성의 21.5%, 둘째아 출산여성의 18.3%, 셋째아 출산여성의 11.7%로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초혼연령은 23세 이하, 24~25세, 27~29세, 3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23세 이하에서의 결혼비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훨씬 낮은 반면, 30세 이상 결혼비율은 반대로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초혼연령이 27세 이상인 여성 집단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이는 만혼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수들로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 ‘남편은 직장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 대한 찬성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자녀관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로움’에 대한 찬성 비율은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혼인이나 첫출산을 외환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한 여성들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찬성비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1자녀 여성의 경우, 그 자녀를 외환위기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자식의 노후 경제적 가치에 더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높으며, 외환위기 이후 혼인 또는 첫째아 출산 여성보다 외환위기 이전의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출산관련 정책변수들로는 가족·여성·복지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르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질문항목에서 첫 번째 순위로 양성평등 구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질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혹은 복지수준 향상을 응답한 경우 가족·여성·복지정책 범주로 설정한다.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으로 응답한 경우는 교육정책 범주로, 학벌위주 사회문화 타파, 경기활성화(고용안정), 혹은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사회 지양으로 응답한 경우는 사회정책 범주에 포함시켰다. 첫째아 출산 여성들이 선호하

는 정책들은 사회정책 22.3%, 교육정책 31.4%, 가족·여성·복지정책 46.1%로 나타난다. 둘째아 출산여성의 경우 사회정책 23.0%, 교육정책 34.8%, 가족·여성·복지정책 42.2%로 나타난다. 셋째아 출산 여성의 경우 사회정책 22.8%, 교육정책 38.5%, 가족·여성·복지정책 38.8%로 나타난다. 요컨대,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교육정책 선호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가족·복지정책 선호도는 낮다. 결혼 또는 첫출산 시기가 외환위기 이전인 경우보다 이후인 경우 가족·여성·복지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

〈표 15-5〉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분석 변수

변수	첫째아 출산여성			둘째아 출산여성			셋째아 출산여성
	전기간	외환 이전	외환 이후	전기간	외환 이전	외환 이후	
총수(명)	3,738	2,603	1,135	2,574	1,962	612	369
5년 내 출산(비율)	90.3	96.5	77.0	91.2	89.4	96.9	47.4
교육수준(구성비)							
고졸 미만	8.7	11.5	2.1	81.7	83.2	77.0	88.3
고졸/대퇴	56.4	60.4	47.2	0.0	0.0	0.0	0.0
4년제 미만	13.2	9.6	21.6	0.0	0.0	0.0	0.0
4년제 대졸	21.5	18.2	29.1	18.3	16.8	23.0	11.7
가구소득(구성비)							
150만원 이하	20.1	19.6	21.1	19.2	18.2	22.4	23.0
151~400만원	64.2	63.7	65.6	64.7	64.7	64.5	62.6
401만원 이상	15.6	16.6	13.3	16.1	17.1	13.1	14.4
주택소유(비율)	54.0	61.6	44.4	61.1	63.5	53.4	59.1
부인안정직업(비율)	6.8	6.3	8.1	6.8	6.5	7.7	4.1
남편안정직업(비율)	24.9	28.4	17.0	27.5	29.0	23.0	24.9
가치관(찬성비율)							
개인보다 가족중시	76.8	76.5	77.4	77.2	76.9	78.3	77.5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	65.3	66.4	62.7	66.3	66.2	66.8	69.4
맞벌이부부도 남편 생계책임	57.6	59.7	52.7	59.0	61.2	52.0	58.8
자녀효용(노후의료용 완화)	78.8	78.8	78.7	80.4	80.8	79.2	84.3
자녀효용(노후경제적 보장)	21.3	21.2	21.6	21.5	22.8	17.2	28.5
자녀효용(가문계승)	27.4	28.8	24.4	28.5	30.0	23.7	34.7
출산관련정책선택호(구성비)							
사회문제 해결	22.3	24.0	18.4	23.0	24.7	17.5	22.8
교육문제 해결	31.4	35.5	22.0	34.8	37.2	27.3	38.5
가족/여성/복지문제해결	46.1	40.3	59.6	42.2	38.2	55.2	38.8
초혼연령(구성비)							
23세 이하	36.8	44.7	18.6	42.2	48.4	22.4	53.4
24~25세	39.9	40.9	37.5	41.4	40.2	45.3	35.0
27~29세	16.9	11.8	28.8	16.4	11.4	32.4	11.7
30세 이상	6.3	2.5	15.1	0.0	0.0	0.0	0.0
출생코호트(구성비)							
1960~65년	32.2	45.4	2.1	40.8	49.5	77.0	46.3
1966~70년	30.3	38.0	12.8	40.9	28.6	0.0	35.0
1971~75년	26.2	16.4	50.6	18.3	16.8	23.0	18.7
1976~85년	11.0	0.0	34.5	0.0	0.0	0.0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경제적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5-6>과 같다.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결혼후 5년 이내 첫째아 출산확률은 남편이 불안정적 직장을 가진 경우보다 안정적 직장을 가진 경우, 무주택 여성보다 주택소유 여성들이 더 높다. 가구소득과 부인 직업의 안정도는 첫째아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첫째아 출산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출산관련정책 중 교육문제해결을 제외하고는 결혼 후 5년 이내 첫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없다.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게 있어 첫째아 출산은 거의 보편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경제적 변수도 첫째아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첫째아 출산행위에 대해 부인과 남편의 직업 안정도가 결혼후 5년내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직업 안정성은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직업 안정성은 정(+)적 영향을 보여 준다. 가구소득과 주택소유여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15-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후 5년 이내 첫째아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전기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상수	-1.63 ^{***}	3.48 ^{***}	-2.57 ^{***}
교육수준(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중퇴이하	0.34	0.62	0.27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중퇴	0.27 [*]	0.18	0.21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0.10	0.21	0.09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0.07	-0.08	-0.02
151만원~400만원	-0.10	0.29	-0.39
401만원 이상	*****	*****	*****
주택소유(준거집단: 무주택)	-0.27 ^{**}	-0.20	-0.21
부인안정직업	-0.26	0.28	-0.61 [*]
남편안정직업	0.44 [*]	0.25	0.91 ^{**}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중시	-0.08	-0.23	-0.10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	-0.12	-0.18	-0.13
맞벌이부부도 남편 생계책임	0.15	-0.11	0.25
자녀효용(노후외로움 완화)	-0.24	-0.29	-0.19
자녀효용(노후경제적 보장)	0.32 ^{**}	-0.39	0.64 ^{***}
자녀효용(가문계승)	0.11	-0.28	-0.05
출산관련정책			
사회문제 해결	-0.09	0.19	-0.16
교육문제 해결	0.34	0.42 [*]	0.32
가족 여성 복지문제 해결	*****	*****	*****
초혼연령			
23세 이하에 결혼	2.66 ^{***}	0.44	4.17 ^{***}
24~25세 사이에 결혼	2.18 ^{***}	0.61	3.10 ^{***}
27~29세 사이 결혼	1.18 ^{***}	0.70	1.33 ^{***}
30세 이상에 결혼	*****	*****	*****
출생코호트			
1960~1965년 출생	2.61 ^{***}	-0.55	3.20 ^{***}
1966~1970년 사이 출생	2.65 ^{***}	-0.31	3.71 ^{***}
1971~1975년 사이 출생	1.90 ^{***}		2.59 ^{***}
1976~1985년 사이 출생	*****	*****	*****
첫째아를 출생한 부인의 수	3381(90.4%)	2502(96.3%)	874(77.0%)
총 사례 수(명)	3,738	2,598	1,135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둘째아 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 주요 관심의 변수들인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여부 등 경제적 변수들이 첫째아 출산 후 5년 내의 둘째아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간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초혼연령이 23세 이하인 여성이 초혼연령이 27세 이상인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 후 5년 이내에 둘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 코호트의 여성들이 이전의 코호트 여성들보다 첫째아 출산 후 5년 이내에 둘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늦게 결혼한 여성이 가급적 짧은 간격으로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과거 일찍 결혼한 여성보다 둘째아를 첫째아 출산후 5년 이내에 낳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아 출산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아를 둔 여성들의 둘째아 출산행위에 자녀관으로서 가문계승(자녀효용)에 대한 찬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아를 출산한 기혼여성들의 둘째아 출산행위에는 교육수준, 23세 이하 결혼, 1960~1970년 출생코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초혼연령이 27세 이상인 여성이 초혼연령이 23세 이하인 여성들보다 첫째아 출산후 5년 내 높은 둘째아 출산확률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늦게 결혼한 여성들이 짧은 연령간격에서 둘째아 출산을 마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셋째아 출산 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둘째아를 출생한 여성의 수가 너무 작아, 전체 기간만을 분석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표 15-7>에 제시되었듯이,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의 직업 안정도, 주택소유여부 등의 경제적 변수들은 둘째아 출산후 5년내 셋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다만, 초혼연령과 출생코호트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셋째아 출산에서도 늦게 결혼한 여성이 일찍 결혼한 여성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간격으로 자신의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 15-7〉 기혼여성(20~44세)의 이전출산순위 출생 후 5년 이내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의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둘째아 출산			셋째아 출산
	전체기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전체기간
상수	2.57***	1.41***	5.01***	3.85***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31	0.23	1.33**	-0.3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	*****	*****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0.16	-0.20	-0.12	0.04
151만원~400만원	0.31	0.26	-0.72	0.27
401만원 이상	*****	*****	*****	*****
가구소유	-0.16	-0.23	0.42	0.07
부인안정직업	0.29	0.40	-0.17	-1.00
남편안정직업	-0.16	-0.10	-0.91	0.29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	-0.18	-0.20	0.22	-0.13
바깥사람 안사람	0.27*	0.25	1.06	-0.25
남편생계책임	0.04	-0.07	0.82	0.17
노후외로움	-0.15	-0.15	-0.06	-0.15
노후 경제적 보장	-0.07	-0.13	0.12	0.23
대잇기	0.29*	0.41**	-1.00	0.04
출산관련정책				
사회문제 해결	0.04	0.09	-0.64	-0.05
교육문제 해결	-0.03	0.01	-0.08	0.02
가족 여성 복지문제 해결	*****	*****	*****	*****
초혼연령				
23세 이하에 결혼	-0.48**	-0.05	-2.73***	-1.56***
24-25세 사이에 결혼	-0.03	0.18	-0.30	-1.08**
27세 이상에 결혼	*****	*****	*****	*****
출생코호트				
1960~1965년 출생	-0.86***	-0.02	-2.59***	-1.19***
1966~1970년 사이 출생	-0.78***	0.03		-1.11***
1971~1985년 사이 출생	*****		*****	*****
둘째아를 출생한 부인의 수	2348(91.2%)	1755(89.4%)	593(96.9%)	264(71.5%)
총 사례 수(명)	2,574	1,962	612	369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5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분석은 외환위기가 출산순위별 출산행위 특히, 출산간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순위별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본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결혼 혹은 출산의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정은 분석에서 입증되었으며, 그 결과의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를 전후로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간격들이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약해지는 경향을 시사해 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더 빠른 출산간격 내에서 추가출산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결혼한 여성의 혼인연령이 높기 때문에 가임력이 떨어지는 35세 이전까지 출산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전 여성들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간격 내에서 출산행위를 완료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결혼 연령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첫째아와 둘째아를 출산하는 연령은 점점 더 좁은 연령간격으로 집중될 것이고, 또 연령에 따른 가임력 저하로 인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남편의 직업 안정도와 주택소유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부인의 직업 안정도는 첫째아 출산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결혼 후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하기 때문에, 부인 및 남편의 직업안정도, 가구소득, 주택소유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첫째아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외환위기 이

후에 부인의 직업 안정성은 첫째아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남성의 직업 안정성은 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직업이 안정적인 부인들일수록 출산행위보다 경력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최근 전문직 등 고임금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아 출산확률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후자는 결혼적령기 혹은 가임기 남성들의 경제적 안정 또는 직업의 안정성이 첫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넷째,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등 경제적 요인들은 첫째아 또는 둘째아 출산 후 5년 내의 추가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자녀 또는 2자녀로 출산을 완료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반드시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현상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늦게 결혼한 여성들이 짧은 연령간격에서 둘째아 출산을 마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른바 catch-up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셋째아 출산행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 16 장 일-가정 양립과 결혼·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내용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등 우리사회는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에 있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지엽적, 현상적으로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출산력 저하 등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인 가족가치와 형태를 강조, 강화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육아휴직제도, 여성의 고용상태 등 일과 가족의 양립과 같은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가 강조되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저출산 등과 같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를 통해서만 찾을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Esping-Andersen(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후기산업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의 문제에 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성 생계부양자와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성별분리에 근거한 복지체계는 가족의 변화로 야기되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은 취업기혼여성이 생계부양자와 자녀양육(가사를 포함한)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에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취업여성의 실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OECD(2002)의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일-가족양립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정책은 단순히 출산력과 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완화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본 장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취업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취업기혼여성의 종사상의 지위,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희망 여부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가사분담의 공평성, 가사분담, 육아분담 실태, 결혼과 일 등을 통해 취업기혼여성의 결혼생활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기혼여성의 출산당시 근로상태와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사유, 취업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관한 의향 등을 통해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과 근로상태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현재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과 같은 변수와의 관계를 OLS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2. 분석방법

본 장의 원 자료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원 자료 중 본 장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만 20~44세 기혼여성 3,802명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1,863명이며, 필요에 따라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모델1에서 모델4까지 OLS다중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연속변수인 현재 취업여성의 출생아수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 모델5에서 모델7까지는 각각 다른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모델 5에서는 분석대상을 자녀가 없는 무자녀 취업기혼여성으로 자녀

가 1명 있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녀가 없을 경우 종속변수는 0,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종속변수는 1로 설정하였다. 모델6과 모델7의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모델5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속변수를 만들었는데, 모델 6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0)와 2명인 경우(1)를 대상으로, 모델7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0)와 3명 이상인 경우(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독변변수는 모델에 구분 없이 모든 모델에서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단, OLS다중회귀분석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수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연속변수인 나이와 가구소득, 그리고 가변수인 교육수준(기준변수 고졸)을 사용했다(모델1). 노동시장 특성 변수(모델2에 추가)는 모두 연속변수인데, 노동비율변수는 취업기혼여성의 주간노동시간을 취업기혼여성의 주간노동시간과 남편의 주간노동시간의 합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비율변수의 최대값은 1이고(남편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치는 0(부인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을 경우)이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 노동시간비율 변수의 값은 0.5가 된다. 근로소득비율변수도 노동시간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근로소득비율변수 값이 0이면 부인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반대로 1이면 남편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0.5이면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규모변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종업원 수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결혼관련 특성 변수(모델3에 추가)는 4개인데, 먼저 가사노동 공평성은 ‘귀하는 평소 남편과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인데, 모델에서 사용한 값은 원 자료의 값을 역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혼에 관한 태도는 취업기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9가지 질문에 대한 4점 척도 값을 합하여 만든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수적 의견을 나타내며, 값이 적을수록 진보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아내와 남편의 주간노동시간은 평일, 주말,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모두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관련 특성 변수(모델4에 추가)는 3개이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취업기혼여성이 답한 이상적인 자녀수이고,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같이 4점 척도로 측정된 5가지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한 값이다. 단 점수를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2가 질문에 대해 역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낮을수록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녀의 역할에 대한 태도도 결혼 및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질문 중 관계가 없는 8번째 질문을 제외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만든 변수이다.

제 2 절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결혼생활 행태

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행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들은 <표 16-1>과 같다.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이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은 56.6%로, 유자녀 기혼여성과 비교하여 많게는 11.8%포인트, 적게는 7.3%포인트 높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2자녀 여성의 경우 4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자녀 여성의 경우 46.6%, 1자녀 여성의 경우 44.8%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보다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취업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자녀를 추가 출산한 기혼여성보다 자녀를 처음 출산한 기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6-1>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상태 (단위: %)

구분	전체 (N=3,802)	무자녀 (n=272)	1명 (n=783)	2명 (n=2,330)	3명 이상 (n=417)
취업	48.6	56.6	44.8	49.3	46.6
비취업	51.4	43.4	55.2	50.7	5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12.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가.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표 16-2>는 취업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를 나타낸다. 취업기혼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무자녀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62.0%로 높은 반면, 1자녀 여성 44.7%, 2자녀 여성 34.8%, 3자녀 이상 여성 25.2%로 감소하고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기혼취업여성과 무자녀 기혼취업여성간의 상용직 비율의 차이는 무려 36.8%포인트에 이른다. 반면,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일용직 비율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무자녀 취업기혼여성의 무급가족종사 비율은 5.4%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4.3%로 높다. 일용직 비율도 무자녀의 경우 5.3%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1.1%로 증가한다. 고용주와 임시직 비중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수에 따라 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에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 자영업 등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상용직’이라는 일자리가 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16-1>에서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일용직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양육과 취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상용직보다는 비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자발적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도 추정하기가 어렵다.

〈표 16-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종사상지위	전체 (N=1,863)	무자녀 (n=155)	1명 (n=349)	2명 (n=1,160)	3명 이상 (n=199)
자영업자	12.1	4.9	11.8	12.7	14.7
고용주	1.9	1.9	1.7	2.0	2.0
무급가족종사자	15.5	5.4	10.9	16.8	24.3
상용근로자	38.0	62.0	44.7	34.8	25.2
임시근로자	23.7	20.6	23.7	24.2	22.7
일용근로자	8.9	5.3	7.4	9.5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79.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6-3>은 취업기혼여성의 주간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소득,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주간평균근로시간을 보면 취업기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48.3시간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를 자녀수별로 보면, 예상과 달리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자녀 취업여성의 경우 주당평균근로시간이 46.5시간인데 반해 자녀가 3명이상인 기혼여성의 경우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0.3시간인 많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사와 양육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사와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유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적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일정한 반면, 자영업과 가족종사업의 경우 상용직과 같이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고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월평균근로소득의 경우, 1자녀 기혼여성이 14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자녀 여성 141만원, 2자녀 여성 116만원, 3자녀 이상 여성 102만원 순이다. 이 또한 무급종사와 자영업 비율이 자녀수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연관성 높다.

현재 기혼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는 50인 이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 취업기혼여성의 83.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50인에서 300인 이하는 9.5%, 300인 이상은 7.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자녀수별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자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3명이상 여성의 대부분인 86.4%가 50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이보다 14.6%포인트 낮은 71.8%로 나타난다.

〈표 16-3〉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주간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소득, 직장규모

(단위: %, 만원)

	전체 (N=1,863)	무자녀 (n=155)	1명 (n=349)	2명 (n=1,160)	3명 이상 (n=199)
주간평균근로시간 ¹⁾	48.3	46.5	47.5	48.4	50.3
월평균근로소득(만원) ²⁾	124	141	145	116	102
직장의 규모 ³⁾					
50인 이하	83.4	71.8	82.0	85.0	86.4
50~300인 이하	9.5	8.4	10.0	9.7	8.0
300인 이상	7.1	19.8	8.0	5.3	5.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1) F-value 1.63 2) F-value 5.92*** 3) $\chi^2=40.92****$ 전체: N=1,626, 무자녀: n=141, 1명: n=295, 2명: n=1,017, 3명 이상: n=1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음으로 기혼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85.4%에 이르고 있다. 기혼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수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무자녀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가사부담이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부부생활 곤란 17.4%, 직장일에 전념할 수 없음이 3.9%로 나타난다. 반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무자녀 기혼여성의 1/4에 해당하는 24.5%로 나타난다. 유자녀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녀수와 관계없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가사부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의 89.3%가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자녀 여성과 달리 유자녀 여성의 경우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수에 따라 7.6%(1명), 6.7%(2명), 7.2%(3명 이상)에 그치고 있으며,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하다.

〈표 16-4〉 취업기혼여성(20~44세)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단위: %)

	전체 (N=1,841)	무자녀 (n=155)	1명 (n=353)	2명 (n=1,141)	3명 이상 (n=195)
자녀양육	46.4	1.3	58.4	48.1	50.3
부부생활	3.6	17.4	2.0	2.5	2.1
가사부담	39.0	52.3	29.5	40.3	39.0
직장일 전념	0.9	3.9	1.1	0.5	-
직장에서 차별	0.7	-	0.8	0.7	0.5
기타	0.9	0.6	0.6	1.1	1.0
문제점 없음	8.4	24.5	7.6	6.7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정리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이 불안정한 고용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기혼여성에게 자녀는 노동시장에서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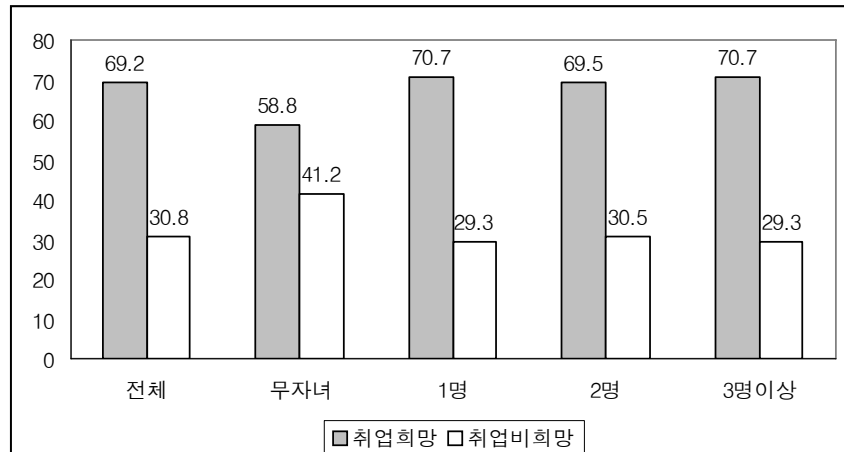
성을 비교해보면 무자녀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적은 노동시간에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유자녀 여성은 낮은 취업률(기회)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직장과 가족생활을 함께해야 하는 취업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 가사부담과 부부생활인데 반해, 유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그림 16-1]은 비취업 기혼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취업 기혼여성의 69.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자녀유무에 따른 집단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6-1]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 중 취업희망 여부(N=1,950)

(단위: %)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6.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6-5>는 비취업 기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들이다. 전체 비취업 기혼여성의 40.3%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응답해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 ‘내 자신을 위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라고 성취감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15.9%로 나타난다. 즉, 생활비부족과 자녀양육비 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비취업 기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자녀수별로 보면, 무자녀 여성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으로 성취감, 답답해서, 경제적 독립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자녀 여성의 경우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와 ‘내 자신을 위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성취감)’과 같은 비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이 경제적 이유인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문제를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나, 자녀수에 따라 자녀양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1자녀 경우 28.8%, 2자녀 경우 44.5%, 3자녀 경우 55.8%로 증가하고 있다.

<표 16-5>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 희망 사유

(단위: %)

구분	소득 부족	자녀양육 교육비용 때문에	집에있는 것이 답답해서	자아 성취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전체	25.9	40.3	5.3	15.9	7.1	4.5	1.0	1,000 (1,348)
0명	32.9	7.1	17.1	18.6	15.7	8.6	-	1,000 (70)
1명	28.8	28.8	6.8	21.0	8.1	4.5	1.9	1,000 (309)
2명	24.5	44.5	4.1	14.8	6.8	4.6	0.9	1,000 (813)
3명 이상	24.4	55.8	3.8	10.3	3.2	1.9	0.6	1,000 (15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9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러면 비취업 기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표 16-6>을 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가 어려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특히,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9%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사,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자녀 경우 25.5%, 2자녀 경우 24.9%, 3자녀 이상의 경우 34.2%로 높아져, 자녀수에 따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어려서라는 이유도 자녀양육과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유자녀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가족 양립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무자녀 여성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문제로 나타난다.

<표 16-6>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20~44세)이 취업을 하지 않는 사유
(단위: %)

구분	남편이나 가족들이 반대해서	일-가정 양립 곤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자녀가 아직 어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체	3.1	25.3	23.7	33.6	7.6	6.7	100.0 (1,350)
무자녀	2.9	7.2	30.4	-	11.6	47.8	100.0 (69)
1명	2.3	25.5	14.2	43.9	8.4	5.8	100.0 (310)
2명	3.2	24.9	27.4	32.6	7.6	4.3	100.0 (814)
3명 이상	4.4	34.2	20.3	34.2	4.4	2.5	100.0 (1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250.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정리하면 많은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와 성취감 등 비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적당한 일자리의 부재 등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취업기혼여성의 결혼생활 행태

본 절에서는 취업기혼여성의 결혼생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업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다.

가. 취업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42.2%)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응답한 비율은 9.1%로 나타난다. 자녀수별로는 무자녀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가 유자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율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무자녀 경우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비율은 4.2%인 반면 3자녀 이상인 경우 13.4%로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수가 증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양육부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7〉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전체(N=1,863)	무자녀(n=155)	1명(n=349)	2명(n=1,160)	3명 이상(n=199)
반드시 해야 한다	9.5	8.3	9.8	10.0	7.7
하는 편이 좋다	37.8	41.1	37.3	37.8	36.5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2.2	44.3	40.4	42.6	41.3
하지 않는 게 낫다	9.1	4.0	10.5	8.6	13.4
모르겠다	1.3	2.2	1.9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1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취업기혼여성의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분담에 관한 부부간의 공평성에 대한 취업기혼여성의 견해는 <표 16-8>에 나타난바와 같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절반이 넘는 54.1%로 나타난다. 자녀수별로는 무자녀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68.7%로 높다. 반면, 유자녀 취업여성의 부정적인 견해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율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자녀 취업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는 49.3%인데 반해, 3자녀 이상인 경우는 10.3%포인트 높은 59.6%로 나타난다.

<표 16-8>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단위: %)

	전체 (N=1,698)	무자녀 (n=152)	1명 (n=299)	2명 (n=1,062)	3명 이상 (n=185)
매우 그렇다	7.7	15.9	8.8	6.4	6.2
대체로 그렇다	38.3	52.8	41.9	35.8	34.2
별로 그렇지 않다	33.0	25.0	31.0	34.9	32.6
전혀 그렇지 않다	21.0	6.4	18.3	22.9	2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55.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구체적인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실태와 관련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보면 <표 16-9>와 같다. 무자녀 취업여성의 47.5%가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해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유자녀 취업여성의 경우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함께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가 함께하는 비율은 34.8%, 2명인 경우 23.8%, 3명인 경우 21.9%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녀수 증가에 따라 여성이 가사를 전적으로(대체로) 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설거지와 식사준비 등 가사를 남편이 대체로 담당하는

경우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경우 남편이 가사를 전적 또는 대체로 담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반면 부부 이외의 사람이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8.1%로 가장 높고, 2명인 경우 4.1%로 가장 낮다.

〈표 16-9〉 남편과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단위: %)

	전체 (N=1,698)	무자녀 (n=152)	1명 (n=299)	2명 (n=1,062)	3명 이상 (n=185)
전적으로 부인이	26.5	10.3	20.6	29.5	32.9
대체로 부인이	39.7	34.8	34.9	41.8	39.9
부부가 함께	27.7	47.5	34.8	23.8	21.9
대체로 남편이	1.1	1.9	2.0	0.9	-
전적으로 남편이	-	-	-	-	-
부부 이외 사람	5.0	5.5	8.1	4.1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77.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6-10>은 남편과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분담정도를 나타낸다. 부부가 함께 양육을 분담한다는 비율이 34.6%로 설거지, 식사준비 등 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인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자녀양육을 수행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55.7%로 나타난다. 반면 남편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담당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하지만, 남편담당 비율이 1.1%에 불과한 가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양육분담의 필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남편의 양육분담량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한 정도가 양육필요의 절대적 증가량에 비해 낮

은 비율로 증가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즉, 남편의 양육분담 증가분에 비해 자녀수 증가에 따른 절대 양육필요분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취업기혼여성이 남편과 자녀양육을 함께 나눈다는 의견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양육필요분이 남녀간의 성별분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 16-1>에서 보듯 자녀수 증가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어떠한 이유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사부담의 공평성이 저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표 16-10> 남편과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단위: %)

	전체 (N=1,158)	1명 (n=237)	2명 (n=773)	3명 이상 (n=148)
전적으로 부인이	19.0	10.1	21.2	21.9
대체로 부인이	36.7	27.9	38.9	40.0
부부가 함께	34.6	41.3	33.2	30.8
대체로 남편이	3.2	2.9	3.2	3.4
전적으로 남편이	0.1	-	0.1	-
부부 이외 사람	6.4	17.8	3.3	3.9
계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85.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

<표 16-11>은 결혼 전후 6개월 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둔 경험과 관련된다. 결혼 당시(6개월 전후)에 취업 중인 여성 중 61.3%가 결혼을 전후로 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결혼당시의 상황에서는 향후 자녀수는 물론이고 출산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당시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무자녀 여성의 경우 37.8%가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반면, 현 자

녀수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자녀가 3명인 경우 무려 72.4%에 달한다. 물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당시의 여성취업율과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지금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유자녀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비율이 최소 12.1%포인트에서 최대 34.6%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수는 없다. 보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결혼전후의 직종, 종사상의 지위 등 생애이력과 관련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혼전후로 직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한다.

〈표 16-11〉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6개월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둔 경험
(단위: %)

	전체 (N=2,892)	무자녀 (n=227)	1명 (n=612)	2명 (n=1,757)	3명 이상 (n=296)
그만둔 적이 있다	61.3	37.8	49.7	66.5	72.4
그만둔 적이 없다	38.7	62.2	50.4	33.5	2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124.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6-12>는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정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임신(출산), 가정일과 직장일의 양립불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도 가사에 전념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6.7%로 가장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는 가사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뒤집어 생각하면 가사노동이 직장생활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즉, 가사에 집중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직장가 가족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조건이 창출된다면 가사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16-1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사유
(단위: %)

	전체 (N=1,780)	무자녀 (n=86)	1명 (n=308)	2명 (n=1,171)	3명 이상 (n=215)
하고 싶지 않아	8.2	8.0	7.1	8.6	7.8
양립불가	16.7	16.0	14.5	17.1	18.0
해고 등	3.6	3.8	1.6	4.2	3.1
가사 전념	26.6	16.7	24.4	28.7	22.4
임신(출산)	17.3	7.4	23.9	15.0	24.3
남편/시댁 반대	3.9	2.3	3.2	3.8	5.9
기타	23.7	45.9	25.3	22.6	1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60.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과 근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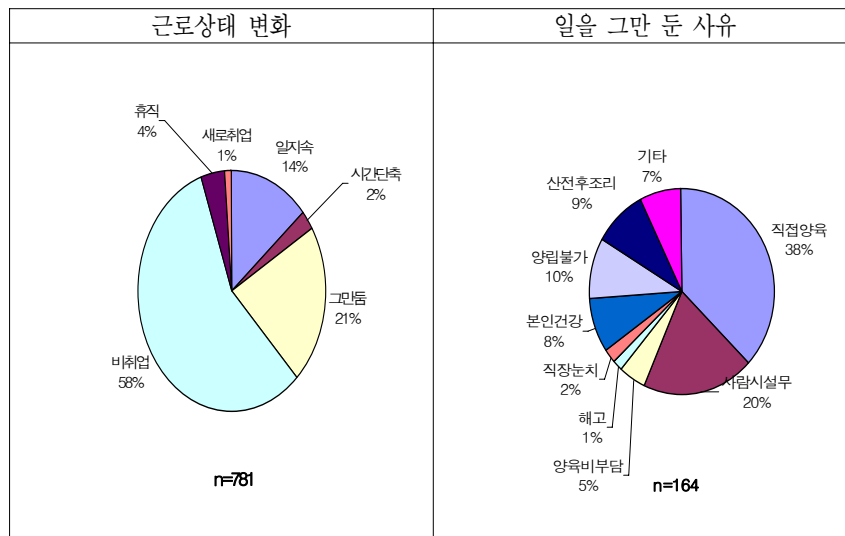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자녀출산을 전후로 근로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자녀수에 따라 살펴본다. 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출산계획과 기혼여성의 근로상태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가.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 변화

[그림 16-2], [그림 16-3], [그림 16-4]는 자녀출산으로 인한 근로상태의 변화를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출산당시의 상황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그림 16-2]에서 첫째자녀 출산당시 58%의 기혼여성이 이미 비취업 상태에 있었으

며, 21%는 첫째자녀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다. 반면 일을 지속한 경우 직장중단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 등 가족사에 대해 고용상태를 유연하게 적응시키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실제 출산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응답은 전체 출산여성의 2%에 불과하다. 이는 출산과 일간의 양립 가능한 사회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을 그만 둔 사유를 보면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고, 양육과 직장의 양립불가능 10%에 불과하다. 양육비 부담(5%)과 자녀를 돌봐줄 시설/사람 부재(20%)가 결국 일-양육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양립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는 대략 3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6-2]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1명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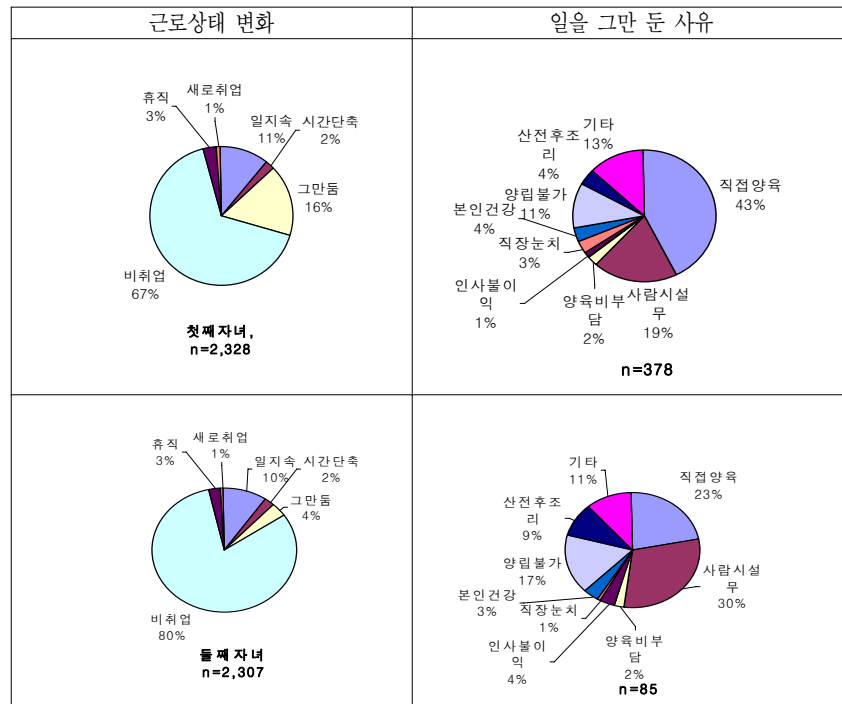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6-3]에서 첫째자녀 출산을 전후한 비취업 비율이 67%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보다 9%포인트 정도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취업 비율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16%에 그치고, 일을 지속한 경우도 11%에 불과하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직접양육을 원했던 비율이 43%로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높다. 양립불가, 자녀를 돌봐줄 사람 또는 시설의 부재, 양육비부담 등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항목을 지정한 비율은 대략 32%정도로 나타난다. 둘째자녀 출산을 전후한 비취업 비율이 첫째자녀 출산때보다 13%포인트 증가한 80%로 나타난다. 둘째자녀 출산때 일을 그만둔 사유로 직접양육을 위해서가 첫째자녀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양립관련 사람/시설의 부족, 양육비 부담, 양립불가가 전체사유의 39%로 첫째자녀 출산때보다 7%포인트 높다.

[그림 16-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2명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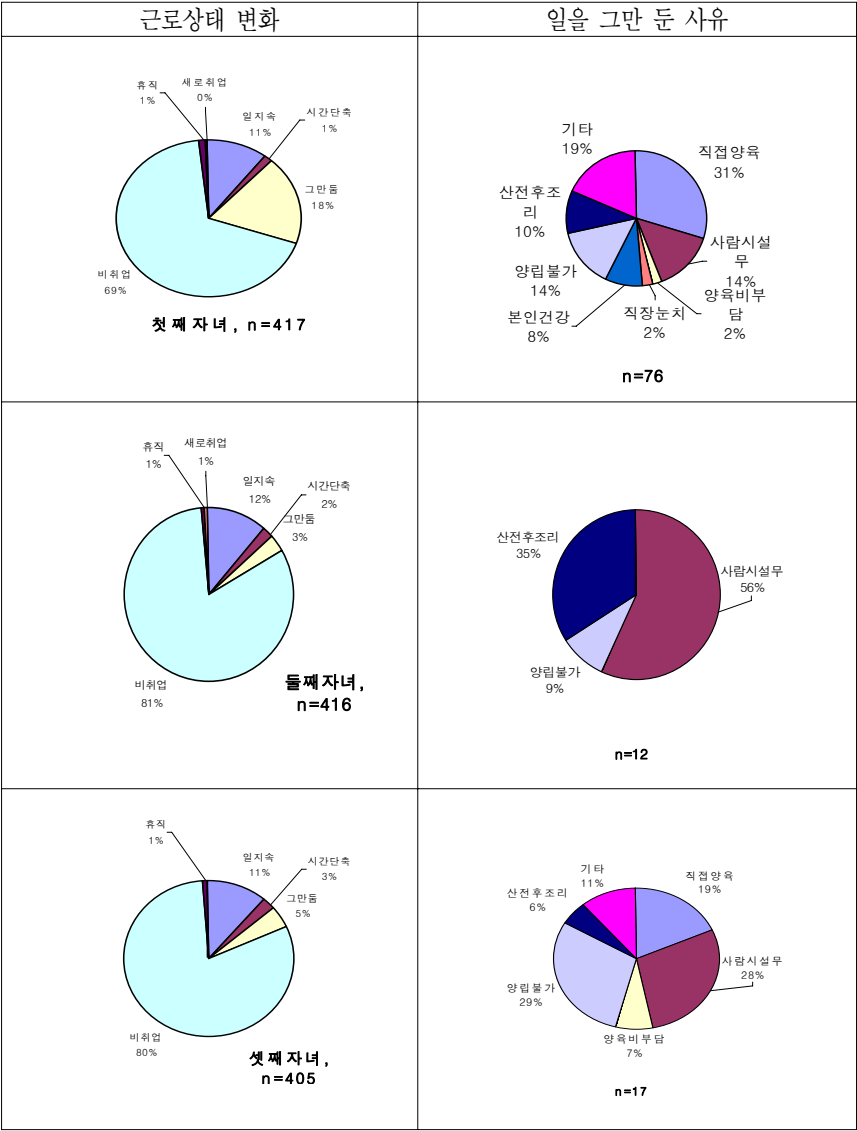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6-4]는 자녀가 3명인 기혼여성이 각각의 자녀출산을 전후한 근로상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째자녀 출산을 전후한 변화를 보면 비취업 비율은 자녀가 2명인 기혼여성보다 유사한 69%수준으로 나타난다. 첫째자녀 출산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18%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보다는 높았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보다는 낮다. 출산을 전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통해 노동시장의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비율은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가 31%로 가장 높다. 그러나 자녀가 1명, 2명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자녀를 돌볼 사람 또는 시설의 부족, 양육비부담, 양립불가 등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30%로 직접양육하려는 경우와 유사하다.

둘째자녀 출산을 전후한 변화를 보면 비취업 비율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유사한 81%이고, 출산을 전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근로조건을 조정한 경우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4%정도에 불과하다.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례가 적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일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앞선 경우와 달리 자녀를 돌볼 사람과 시설의 부족, 양립 불가 등 일가족 양립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전체의 65%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자녀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주요한 이유로 언급되었던 ‘직접양육’이라는 응답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셋째자녀 출산을 전후한 변화는 비취업 비율은 80%로 둘째 자녀 출산을 전후한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자녀를 출산한 후 일을 그만둔 기혼여성이 둘째, 셋째 자녀 출산 당시에도 계속 비취업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다. 둘째자녀 출산과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을 조정한 경우도 둘째자녀 출산당시와 유사한 수준인 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자녀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둔 이유는 직접양육을 위해서가 17%, 자녀를 돌볼 사람과 시설의 부족, 양육비 부담, 양립불가 등을 지적한 비율이 64%에 이르고 있다.

[그림 16-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3명 이상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정리하면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기혼여성의 다수는 비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비취업 상태는 둘째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증가한다. 자녀출산을 전후해 일(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기혼여성이 직접 자녀양육을 원하는 경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첫째자녀를 출산할 때 직접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31%였으나, 둘째자녀를 출산할 때는 직접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례가 없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19%로 첫째 자녀의 경우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둘 있는 경우도 유사한데 직접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첫째자녀 출산당시는 43%인 반면 둘째자녀 출산 시는 이보다 20%포인트 감소한 23%로 나타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자녀출산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는 전체 출산여성의 5%에 불과하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출산과 같은 여성노동자의 새로운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향후 출산계획과 근로상태 변화

향후 자녀(추가)출산에 관한 의향은 현재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6-13). 무자녀 여성의 경우 75.9%가 향후 자녀출산 의사가 있으며, 1자녀 여성은 29.7%, 2자녀 여성은 3.3%, 그리고 3자녀 이상의 여성은 0.5%가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무자녀 여성의 경우 평균 1.67명, 1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 대략 1명 정도로 나타난다.

〈표 16-13〉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추가)출산에 관한 의향
(단위: %)

	전체 (N=1,863)	무자녀 (n=155)	1명 (n=349)	2명 (n=1,160)	3명 이상 (n=199)
있다	14.2	75.9	29.7	3.3	0.5
없다	73.2	9.5	48.7	86.4	91.0
미정	12.7	14.6	21.6	10.3	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추가희망자녀수(평균)	1.36	1.67	1.12	1.06	1.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779.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현재 취업여성이 출산했을 때 현재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겠는가에 대한 취업기혼여성의 의견은 <표 16-14>와 같다. 단, 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사례가 1명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했다.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1자녀 여성의 경우 5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자녀 여성 38.3%, 2자녀 여성 23.7% 순이다. 반면, 2자녀 여성의 경우 50.0%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무자녀 여성의 경우 25.9%, 1자녀 여성의 경우 17.3%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비율은 무자녀 여성 36.5%, 1자녀 여성 26.9%, 2자녀 여성 26.3% 순으로 나타난다.

〈표 16-14〉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과 근로시간 조정
(단위: %)

	전체 (N=257)	무자녀 (n=115)	1명 (n=104)	2명 (n=38)
현행근로시간유지	42.5	37.3	55.8	23.7
근로시간 감소	31.7	36.5	26.9	26.3
직장을 그만 둠	25.9	25.2	17.3	50.0
계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chi^2=1.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취업기혼여성이 향후 (추가)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표 16-15>와 같다. 앞서 분석한 과거 출산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이유와 마찬가지로, 현 자녀수와 관계없이 향후 출산시 직장을 그만두려는 주된 이유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비율은 무자녀 여성 68.4%, 1자녀 여성의 65.8%, 2자녀 여성의 56.4%로 각각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무자녀 여성의 경우 일-가족 양립곤란이 15.5%, 1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시설 부재가 16.0%, 2자녀 여성의 경우 보육비용문제가 18.4%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비용과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시설 부재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반면, 일-자녀양육 양립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무자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볼 사람과 시설이 없다는 이유는 결국 자녀출산과 함께 일-자녀양육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려는 주된 이유로 일-자녀양육 양립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15>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이 향후 (추가)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

(단위: %)

	전체 (N=67)	무자녀 (n=30)	1명 (n=19)	2명 (n=18)
직접양육	64.3	68.4	65.8	56.4
사람/시설 무	11.7	7.1	16.0	14.8
가정 외 보육비용	6.5	-	4.7	18.4
직장에서 불이익	3.9	2.5	5.1	5.1
직장에서 눈치	1.4	3.2	-	-
본인 건강	2.7	3.3	4.5	-
양립(시간)불가	9.5	15.5	4.0	5.3
계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러면 향후 (추가)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누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표 16-16>의 결과를 보면, 무자녀 이거나(69.4%) 자녀가 1명인 경우(53.8%)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향후 출생할 자녀를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현재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33.3%)이 가장 높다. 그리고 취업 중임에도 본인이 나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비율은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16-16〉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 후 자녀 양육 주제: 출산 후 일을 계속하는 경우

(단위: %)

	전체(N=182)	무자녀(n=85)	1명(n=78)	2명(n=18)
본인 또는 남편	12.6	4.7	16.7	27.8
친정부모, 시부모	58.8	69.4	53.8	27.8
기타 친인척	3.8	2.4	5.1	5.6
파출부, 베이비시터	5.5	5.9	5.1	5.6
놀이방, 보육시설	17.0	14.1	17.9	33.3
기타	2.2	3.5	1.3	-
계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향후 자녀출산 후 노동시간 조정은 현재 자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일을 그만두려는 경우 그 주된 이유는 현재 자녀수와 본인이 직접양육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현재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자녀이거나 1명인 경우는 친정부모, 시부모 등 가까운 친인척의 도움을,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보육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으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3 절 일-자녀양육 양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일-자녀양육관련 요인들이 현재 취업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OLS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먼저 OLS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위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를 집단화해 현재 자녀수와 관련된 변인집단에 대해 분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현재 자녀수가 무자녀인 집단과 1명인 집단, 1명인 집단과 2명인 집단, 2명인 집단과 3명인 집단을 개별모델로 분석해 관련변수들을 분석한다. 한편, 이 절에서

는 일-자녀양육 양립과 출산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참고로 또는 통제목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중요 분석은 일-자녀양육 양립과 관련하여 실시되며,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는 가급적 압축 또는 생략하도록 한다.

[모델1]은 현재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표 16-17).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유의미한 변수는 나이와 교육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기혼여성의 나이가 많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Sleeboss(2003)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 정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교육수준과 출산력과의 관계가 부로 OECD국가군의 80년대 이전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변수가 가지는 특성은 이후 노동시장 특성, 결혼관련 특성, 자녀관련 특성 변수들을 추가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와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종사하는 소위 ‘좋은 직업’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좋은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과 높은 임금 이외에도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들이 제도화되어있는 일자리인 반면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좋은 직업의 특성은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으로 국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일-가족양립의 보장을 제도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선 분석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상용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델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노동시장 특성을 더한 것이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세 변수 모두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편의 노동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수

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근로소득이 부부의 근로소득의 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자녀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여성이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해당 가구가 치러야할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혼여성(부인)의 근로소득은 자녀수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나머지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자 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표 16-2>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상용직 비율이 감소하고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순되는 결과로 이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모델3]은 결혼관련 변수들을 추가한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현재 부부간에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b=.059, p<.01$). 그리고 아내의 주간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b=.023, p<.001$), 이는 아내의 주간 가사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역인과성). 반면 남편의 주간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수와 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007, p<.001$). 이는 <표 16-8>의 결과를 보면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정도가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분담에 있어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역인과성). 부부의 주간가사노동시간과 자녀수간의 역인과성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수가 증가하면, 설사 취업여성일지라도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가사에 전담할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하는 남성은 가계유지를 위해 생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가사에 투입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는 역으로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위해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 모두가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 여성 또는 부부는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결혼 자체를 기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저출산현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모델4]는 자녀와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했을 경우 변수들과 자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와 자녀에 관한 태도들은 현재의 자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자녀와 관련된 변수 중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취업기혼여성 바라는 이상자녀수와 현재의 자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b=.154, p < .001$). 즉, 모든 여성이 원하는 자녀수만큼 자녀를 다 낳은 것은 아니지만 둘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17〉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에 관한 OLS 다중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0.836 (0.104)***	0.800 (0.121)***	-0.061 (0.174)	-0.328 (0.2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028 (0.003)***	0.027 (0.003)***	0.027 (0.003)***	0.027 (0.003)***
교육수준				
고졸미만	-0.032 (0.054)	-0.049 (0.054)	-0.066 (0.053)	-0.094 (0.052)
(고졸)				
대제이상	-0.291 (0.040)***	-0.281 (0.040)***	-0.268 (0.040)***	-0.256 (0.039)***
가구소득	-0.001 (0.010)	0.005 (0.010)	0.001 (0.011)	-0.001 (0.010)
노동시장특성				
노동비율		0.004 (0.002)*	0.006 (0.002)**	0.005 (0.002)**
근로소득비율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사업체 규모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결혼관련 특성				
가사노동 공평성			0.059 (0.020)**	0.054 (0.020)**
결혼에 관한 태도			0.023 (0.005)***	0.019 (0.005)***
부인주간가사노동시간			0.007 (0.001)***	0.007 (0.001)***
남편주간가사노동시간			-0.007 (0.002)***	-0.007 (0.001)***
결혼관련 특성				
이상자녀수				0.154 (0.022)***
부부역할 관한 태도				0.014 (0.009)
자녀에 관한 태도				-0.009 (0.005)
F 값	55.14***	37.73***	32.69***	30.99***
조정된 R ²	0.10	0.12	0.16	0.19
사례수	1,860	1,860	1,856	1,85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교육수준만이 가변수로 ()안은 준거집단을 의미함.

<표 16-18>은 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무자녀 여성과 1자녀 여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과 자녀수와의 관계는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모델6)에 약화되고, 2명과 3명 이상을 비교(모델 7)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교육수준 변수로 대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세 모델 모두에서 자녀수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재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를 적게 가질 가능성은 모델5에서 48.9%인 반면, 모델7에서는 26.4%로 낮게 나타난다. 가구소득은 전체 모델을 통해 자녀수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특성변수는 부인의 노동시간과 사업체 규모는 무자녀 여성과 1자녀 여성을 비교한 모델5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 모델5에서 부인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수록($b=.029, p<.05$),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b=.010, p<.01$)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비율은 모델5에서는 자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모델6에서는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델6에서 부인의 근로소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자녀가 2명일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012, p<.001$).

결혼관련 특성변수들을 살펴보면 모델5와 모델6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각각 자녀가 1명일 가능성과 2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자녀 여성과 3자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혼에 관한 태도는 자녀를 1명 더 갖는 것과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과 남편의 주간가사노동시간은 모델5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의 노동시간 비율은 자녀수와 정의 관계를 갖는 반면 남편의 노동시간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관련 변수들 중 이상자녀수만 세 모델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수가 2명인 경우와 3명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7에서 이상자녀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자녀가 3명이상일 가능성이 81.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403, p<.05$).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수가 무자녀 대 1명, 1명 대 2명, 2명 대 3명 이상의 각각의 모델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상이함은 물론, 세 모델을 통해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 해도, 해당 변수와 자녀수와의 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고민할 때 각각의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변수들은 무자녀 기혼여성과 자녀가 1명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체 규모의 경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한 명인 기혼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6-18〉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 결정에 관한 Logistic 다중 회귀분석

	모델 5		모델 6		모델 7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상수	-8.292 ***		-2.275 **		-3.600 ***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107 ***	1.112	0.058 ***	1.059	0.013	1.013
교육수준						
고졸미만	-0.528	0.590	-0.390	0.677	0.145	1.156
(고졸)						
대제이상	-0.672 **	0.511	-0.457 **	0.633	-0.453 *	0.636
가구소득	0.036	1.036	-0.025	0.976	-0.062	0.940
노동시장특성						
노동시간비율 ¹⁾	0.029 *	1.029	0.010	1.010	0.001	1.001
근로소득비율 ²⁾	-0.010	0.990	-0.012 ***	0.988	-0.005	0.995
사업체 규모	0.010 **	1.010	0.001	1.001	0.003	1.003
결혼관련 특성						
가사노동 공평성	0.152	1.164	0.133	1.142	0.001	1.001
결혼에 관한 태도	0.066 *	1.068	0.036 *	1.036	0.034	1.035
부인주간가사노동시간	0.056 ***	1.058	0.006	1.006	0.005	1.005
남편주간가사노동시간	-0.053 ***	0.949	-0.008	0.992	-0.005	1.005
결혼관련 특성						
이상자녀수	0.462 *	1.587	0.296 **	1.344	0.403 *	1.812
부부역할 관한 태도	0.115	1.122	-0.007	0.993	0.034	1.123
자녀에 관한 태도	-0.014	0.986	-0.012	0.988	-0.043	0.958
F 값	481.385		1,512.117		1,123.002	
조정된 R ²	135.369***		106.234***		46.469***	
사례수	499		1,501		1,353	

주: 1)노동시간비율=부인근로시간/(부인근로시간+남편근로시간) 2)근로소득비율=부인근로소득/(부인근로소득+남편근로소득).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이상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상용직 비율도 감소한다. 둘째, 일-가사를 병행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 유자녀 취업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문제와 가사 부담을 들고 있다. 셋째, 현재 비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절대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을 원하지만 일-가족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가사분담에 있어 성별분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결혼과 출산을 전후해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며, 특히 출산을 전후해서는 직접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향후 출산에 대한 의사에서 무자녀 기혼여성을 제외하고는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만 있는 취업기혼여성의 경우도 단지 29.7%만 추가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추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높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다양한 변수들이 자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현재 자녀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을 달리했을 때 자녀수와 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출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와 자녀양육이 취업기혼여성이 일을 계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자녀출산/양육과 일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여성이 자녀출산/양육과 일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현재와 같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여성이 일 대신 자

녀출산과 양육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비취업 기혼여성의 대다수가 생활비와 자녀양육비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중요한 점은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자녀양육 등)이 실제적으로 양립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해당 국가의 빈곤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OECD, 2002, 2005).

둘째, 직장을 그만두는 다수의 기혼여성이 자녀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부 또는 모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 바라는 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양자택일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부모휴가)과 같은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취업 여성의 대다수가 다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의 부족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해 전체 근로여성에게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한다. 더불어 일을 그만두고 직접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생활비와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수준이 휴직전의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만 자녀출산으로 인한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윤홍식, 2005, 37~8).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여성취업자의 피보험률은 26.2%에 불과하다(김종

숙·문유경·김영옥·강민정, 2004). 더욱이 고용보험의 피보험률을 학력별로 보면 초졸이하가 5.7%, 중졸 이하가 17.7%, 고졸이하가 38.3%로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의 피보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결국 재원에 대한 문제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해야한다(윤홍식, 2005). 즉,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할 때 단순히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보편적 보장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시민이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성(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참여에 대한 문제이다. OLS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듯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현재 자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성분업적 역할이 강화되어,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 증가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성이 일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 심지어는 결혼 자체를 기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남성이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에서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의 양육기간을 제도화하는 ‘아버지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출산력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부성출산휴가제도를 시급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출산력의 저하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양육 및 가사참여는 출산력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보면 남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홍식, 2005).

마지막으로는 정책개발을 현재 해당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무자녀에서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장

애가 되는 요인과 자녀가 1명에서 추가적인 출산을 고려할 때 직면하는 장애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지스틱 결과는 물론 각각의 자녀를 출산할 때 마다 일을 그만둔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시민들의 생계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다양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제 17 장 노동시장과 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주40)} 선행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혼·출산과 관련된 개인 또는 가구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과 관련된 자료 외에도 결혼·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충실히 반영한 자료가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개인 또는 가구의 결혼·출산 행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연구관점의 다양성의 결여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학적 접근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결혼은 대안적인 가족형태 중 하나이므로 개인이 대안적 가족형태들이 주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결혼 여부를 선택한다고 파악한다. 출산은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학적 접근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행위라는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적 접근의 의의는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 행위라고 가정할 경우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incentive*)은 무엇이며 이러한 유인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준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구의 결혼·출산 행위를 분

주40)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포함된 새로운 정보들을 이용하여 개인과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혼·출산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노동시장 참여는 결혼·출산에 큰 영향을 주며 반대로 결혼·출산은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결혼·출산행위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의 출산행위를 분석하여,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별 출산행태를 비교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노동공급과 결혼·출산과의 관계를 밝힌다. 즉, 결혼과 출산 전후에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고 여부를 살펴보고 이것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2 절 노동시장과 출산

1. 경제활동참여와 출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생아수간의 관계는 <표 17-1>에 제시하였다. 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76명으로 비취업여성의 1.78명보다 0.02명이 작게 나타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 출산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여성의 가구내 시간투입을 감소시킴으로서 출산을 감소시키는 서로 상반된 효과가 존재한다. <표 17-1>에서는 후자의 효과가 전자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간의 차이를 보다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의 동태적 모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형성하는 초기단계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비취업여성의 출생아수가 취업여성의 출생아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

징적인 점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간의 출생아수 차이가 20대에 크게 나타나다가, 30대에 들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20대의 경우 취업여성의 출생아수는 비취업여성의 출생아수보다 약 0.3명 적으나, 30대 초반에 양자의 차이는 0.2명으로 줄어들고, 30대 후반에 들어서는 0.03명으로 차이가 아주 작다. 이는 취업여성들이 20대까지 억제하였던 출산을 30대에 집중시키는 catch-up 현상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그림 17-1).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상당수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경력형성 초기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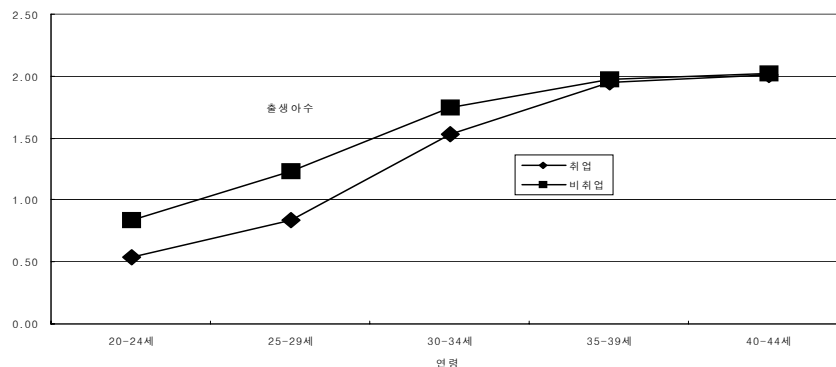
〈표 17-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참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취업	비취업	합계	차이
20~24세	0.54	0.84	0.73	-0.30
25~29세	0.84	1.23	1.09	-0.39
30~34세	1.53	1.75	1.66	-0.22
35~39세	1.95	1.98	1.96	-0.03
40~44세	2.00	2.02	2.01	-0.02
합계	1.76	1.78	1.77	-0.0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7-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표 17-2>에서 취업여성의 출생아수는 주당 근로시간이 36~45시간인 경우 1.6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의 경우 출생아수는 1.99명으로 가장 많고, 주당 근로시간이 15~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취업자와 같은 1.78명이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간에 부(-)의 관계가 확인된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하면 출생아수는 증가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46~60시간인 경우에는 1.73명,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1.85명으로 증가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61시간 이상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이유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69.7%)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비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상회한다.

<표 17-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근로시간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15시간 미만	15~35시간	36~45시간	46~60시간	60시간 이상	비취업
20~24세	na	2.00	0.49	0.62	0.27	0.84
25~29세	0.91	0.81	0.72	0.82	1.07	1.23
30~34세	1.79	1.61	1.55	1.43	1.51	1.75
35~39세	2.11	1.89	1.93	1.96	2.00	1.98
40~44세	2.27	2.08	1.93	1.97	2.03	2.02
합계	1.99	1.78	1.66	1.73	1.85	1.7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0~24세 연령집단의 36시간 미만 기혼여성수는 한 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한편 출산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앞의 단순한 경제모델에서 우리는 자녀가 열등재가 아닌 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게 됨을 보였다. 남성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남성의 취업 여부는 소득효과를 통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17-3>은 남성의 취업여부별 출생아수를 연령계층별로 보여주고 있다.

남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수는 1.77명으로 비취업의 1.65명 보다 0.13명이 많다. 연령계층별로는 20~24세와 40~44세 집단을 제외하고 취업남성의 출생아수가 비취업남성의 출생아수보다 0.2명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3〉 기혼여성(20~44세) 남편의 취업여부와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취업	비취업	사별이혼별거	차이
20~24세	0.71	1.04	1.00	-0.33
25~29세	1.08	0.87	1.69	0.21
30~34세	1.67	1.41	1.63	0.26
35~39세	1.98	1.78	1.81	0.20
40~44세	2.03	2.05	1.82	-0.02
합계	1.77	1.65	1.78	0.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앞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남성의 취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표 17-4>는 남성과 여성의 취업여부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출생아수를 비교한 것이다. ‘남편 취업-부인 비취업’ 경우 출생아수가 1.78명으로 가장 많고, ‘남편 취업-부인 취업’ 경우 1.7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다. 반면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 비취업-부인 취업’인 경우의 출생아수는 1.69명으로 남편이 취업상태인 경우보다 적다.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집단은 ‘남편 비취업-부인 비취업’경우로 1.58명에 불과하다.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출생아수 차이가 0.02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남편의 취업여부라고 할 수 있다.

〈표 17-4〉 남편과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남편 취업	남편 비취업	사별이혼별거
부인 취업	1.76	1.69	1.76
부인 비취업	1.78	1.58	1.85
합계	1.77	1.65	1.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노동시장 지위와 출산

여기에서는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를 분석해 보자. 이를 위해 기혼여성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한 후 취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출생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비임금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표 17-5>에서 출생아수는 비임금근로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용직 근로자가 1.90명, 임시직 근로자가 1.77명이며, 상용직 근로자는 1.58명으로 가장 적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78명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보다는 적고, 임시직 근로자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많다. 이러한 경향은 20~24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확인된다.

<표 17-5> 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취업
20~24세	0.51	0.32	1.12	0.46	0.84
25~29세	1.32	0.67	0.98	0.67	1.23
30~34세	1.72	1.37	1.58	1.70	1.75
35~39세	2.04	1.88	1.92	2.02	1.98
40~44세	2.02	1.98	1.98	2.06	2.02
합계	1.93	1.58	1.77	1.90	1.7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7-6>은 기혼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출생아수와 비취업여성의 출생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상용직 여성의 출생아수는 비취업여성의 출생아수보다 적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의 경우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며, 30대 후반 이후에는 차이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의 기회비용이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크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상용직의 경우 가장 크며, 따라서 상

용직 근로여성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시직 여성과 비취업 여성간의 출생아수 차이 역시 20~24세의 연령집단을 제외하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상용직의 경우보다 차이가 적다. 일용직 여성과 비취업 여성간의 출산율 차이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20대 초반의 일용직 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출산율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30대 후반 이후의 일용직 여성의 출산율은 비취업여성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단순히 연령집단효과(age cohort effect)로 볼 수도 있으나, 출산을 마친 여성들이 주로 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17-6〉 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
(단위: 명)

	비임금근로-비취업	상용직-비취업	임시직-비취업	일용직-비취업
20~24세	-0.34	-0.52	0.28	-0.38
25~29세	0.09	-0.56	-0.25	-0.56
30~34세	-0.03	-0.38	-0.17	-0.05
35~39세	0.07	-0.10	-0.06	0.04
40~44세	0.00	-0.04	-0.04	0.04
합계	0.15	-0.21	-0.01	0.1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남성의 취업 여부와 함께 종사상 지위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7>은 동일한 취업남성의 경우에도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출산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남성 비임금근로자의 출생아수가 1.89명, 상용직 근로자 1.70명, 임시직 근로자 1.59명으로 각각 나타난다. 일용직의 경우 출생아수가 2.0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점은 이들 남성의 학력수준이 낮아, 출산에 대한 계획(가족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7-7〉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취업
20~24세	0.50	0.74	0.92	0.18	1.04
25~29세	1.24	1.05	0.80	1.55	0.87
30~34세	1.75	1.61	1.70	2.12	1.41
35~39세	2.01	1.94	1.95	2.23	1.78
40~44세	2.03	2.03	1.91	2.10	2.05
합계	1.89	1.70	1.59	2.05	1.6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7-8>은 남성과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를 모두 고려하여 출생아수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적은 출생아수를 보이는 것은 ‘남성 임시직-여성 임시직’인 경우로 1.37명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평균 출생아수가 적은 집단은 ‘남성 상용직-여성 상용직’의 1.51명이다. ‘남성 임시직-여성 비임금근로자’와 ‘남성 비임금근로자-여성 상용직’의 경우도 출생아수가 1.62명과 1.67명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의 지위가 매우 안정된 ‘남성 상용직-여성 상용직’ 경우와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한 ‘남성 임시직-여성 임시직’, ‘남성 임시직-여성 비임금근로자’, ‘남성 비임금근로자-여성 상용직’의 경우 출산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시장의 지위가 불안한 ‘남성일용직-여성일용직’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이 고연령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7-8〉 남편과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출생아수

(단위: 명)

	여성 비임금근로자	여성 상용직	여성임시직	여성일용직	여성비취업
남성 비임금근로자	1.96	1.67	1.89	1.91	1.88
남성 상용직	1.91	1.51	1.79	1.80	1.74
남성 임시직	1.62	1.63	1.37	2.12	1.60
남성 일용직	2.09	1.89	2.00	2.17	2.07
남성 비취업	2.00	1.56	1.57	1.84	1.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기혼여성과 남편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표 17-9>와 같다. 기혼여성의 직종별 출생아수는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에서 2.40명으로 가장 많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7명, 단순노무종사자 1.97명 등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종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1명, 전문직 1.53명, 사무종사자 1.53명 등이다. 서비스 종사자(1.82명), 판매종사자(1.84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97명) 등의 평균 출생아수는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혼여성 남편의 직종에 따른 출산수준도 다르게 나타난다.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2.28명), 단순노무종사자(1.88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79명) 등이 많이 나타나는 점은 여성과 동일하나, 전문직이 1.77명으로 많은 점은 여성과 달라 이른바 소득효과로 간주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림 17-2]는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출산수준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출산수준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이다. 위와 같은 직종에서 여성의 출산수준은 남성의 출산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남성의 경우 보다 여성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출산수준이 매우 낮다. 이러한 직종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직종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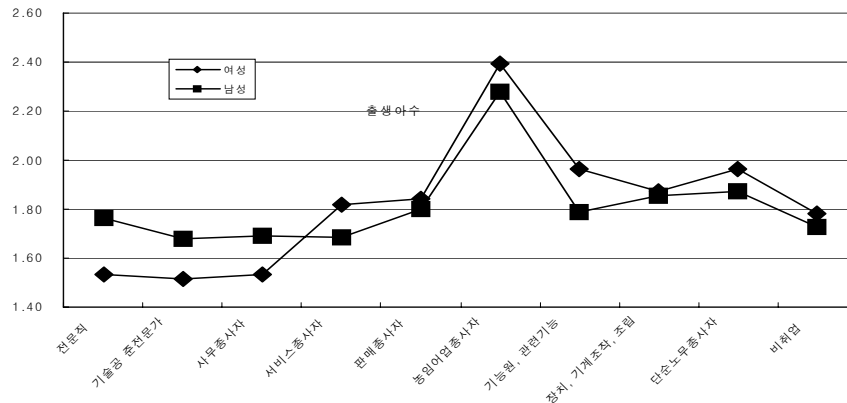
<표 17-9> 취업기혼여성(20~44세)과 남편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기혼여성	남편
전문직	1.53	1.77
기술공·준전문가	1.51	1.68
사무종사자	1.53	1.69
서비스종사자	1.82	1.68
판매종사자	1.84	1.80
농·임·어업종사자	2.40	2.28
기능원, 관련기능	1.97	1.79
장치, 기계조작, 조립	1.87	1.85
단순노무종사자	1.97	1.88
비취업	1.78	1.72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7-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직종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시간당 임금·소득과 출산

시간당 임금·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불확실하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여 자녀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통상재(normal goods)인 경우에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의 증가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해 자녀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는 이 양자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반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의 증가는 소득효과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는 소위 자녀수와 질(number-quality)의 대체(substitution)가 발생하면 소득효과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다.

<표 17-10>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별 평균출생아 수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소득은 여성취업자(비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소득을 주당 근로시간으로 추계한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표본상의 시간당 임금·소득 수준에 따

라 4분위, 즉, 0~25%, 25~50%, 50~75%, 75~100%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 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는 시간당 임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간당 임금·소득이 가장 낮은 0~25% 집단에서는 2.00명, 25~50%집단에서는 1.84명, 50~75%집단에서는 1.61명, 75~100%집단에서는 1.57명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효과는 연령계층별로도 뚜렷이 나타난다. 20~24세 연령집단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여성의 시장에서의 획득할 수 있는 임금·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감소한다. <표 17-10>은 여성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10>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시간당 임금·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0~25%	25~50%	50~75%	75~100%
20~24세	0.99	0.36	0.55	0.25
25~29세	1.44	0.86	0.65	0.67
30~34세	1.76	1.60	1.50	1.38
35~39세	2.14	1.94	1.86	1.85
40~44세	2.10	2.00	1.93	1.95
합계	2.00	1.84	1.61	1.5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17-11>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소득별 평균 출생아수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소득별 평균 출생아수는 0~25%집단에서 1.75명, 25~50%집단에서는 1.71명, 50~75%집단에서는 1.77명, 75~100%집단에서는 1.87명이다. 따라서 최하위 임금·소득집단을 제외하면 시간당 임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생아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출생아수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단순한 해석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40~44세 연령계층에서 시간당 임금·소득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 연령집단에서의 출생아수는 각각 2.05명, 2.01명, 2.03명, 2.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5~39세 집단에서도 출생아수는 최대

2.01명 최소 1.96명으로 매우 유사하다. 시간당 임금·소득에 따라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20세 집단의 하위 25% 이상의 집단에서이다. 따라서 남편의 시간당 임금·소득이 출산율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주로 출산시기의 결정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표 17-11〉 남편의 시간당 임금·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0~25%	25~50%	50~75%	75%~100%
20~24세	0.60	0.77	0.97	0.89
25~29세	1.24	0.95	0.99	1.14
30~34세	1.73	1.67	1.59	1.71
35~39세	1.97	1.97	2.01	1.96
40~44세	2.05	2.01	2.03	2.03
합계	1.75	1.71	1.77	1.8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4. 인적자본수준과 출산

여성의 학력수준은 여성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활동의 기회와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17-12>와 [그림 17-3]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출생아수는 고졸미만의 기혼여성에게서 2.02명으로 가장 높고, 고졸이상 대졸미만(대학 중퇴, 재학, 휴학자 포함)에서 1.86명, 4년제 미만 대학졸업에서 1.58명, 대학졸업에서 1.59명, 대학원졸업에서 1.35명을 나타낸다. 연령집단별로 교육수준과 출생아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30세~34세의 연령집단을 제외하고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생아수와의 부(-)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대학원 졸업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집단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12〉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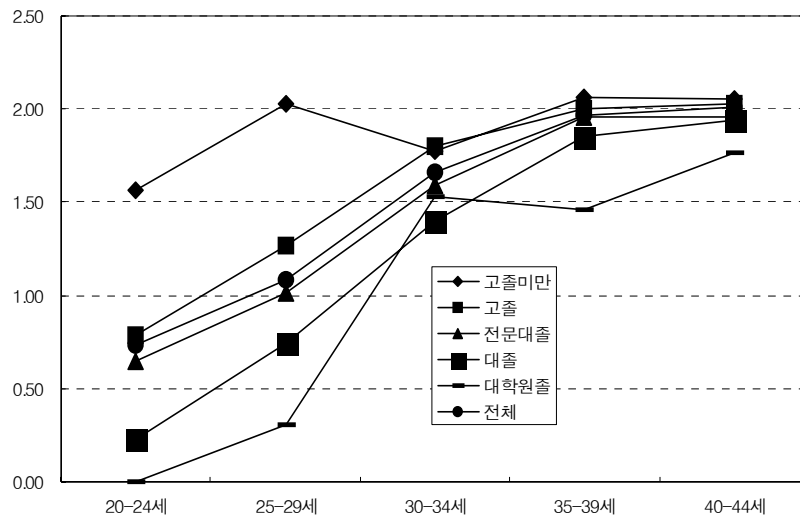
(단위: 명)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20~24세	1.07	0.80	0.64	0.23	na	0.73
25~29세	2.02	1.30	1.02	0.75	0.30	1.09
30~34세	1.77	1.80	1.59	1.40	1.53	1.66
35~39세	2.06	2.01	1.96	1.86	1.46	1.96
40~44세	2.06	2.02	1.95	1.94	1.77	2.01
합계	2.02	1.86	1.58	1.59	1.35	1.7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7-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한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아수를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분석한 <표 17-13>과 [그림 17-4]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졸미만의 학력을 지닌 기혼여성의 경우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출생아수가 많은 반면, 대학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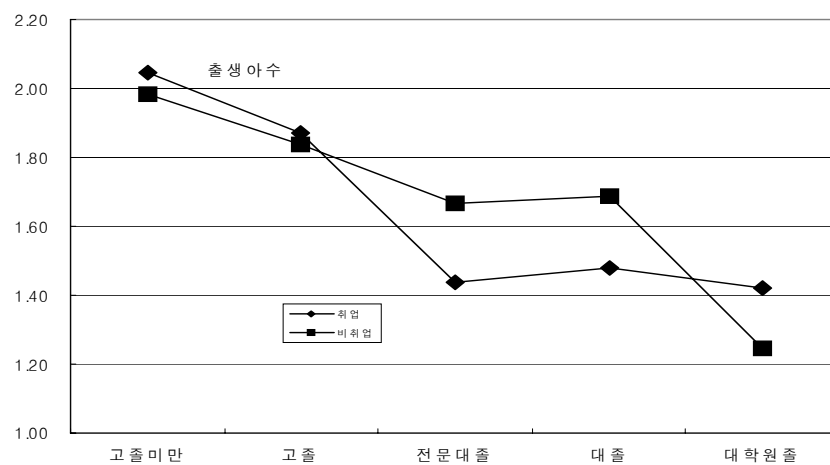
업자(4년제 미만 대학졸업자를 포함)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출생아수가 비취업자의 출생아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학력 취업여성의 출산율이 낮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7-1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취업	2.04	1.87	1.44	1.48	1.42	1.76
비취업	1.98	1.84	1.67	1.69	1.24	1.78
차이	0.06	0.03	-0.23	-0.21	0.18	-0.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그림 17-4]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제 3 절 결혼·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여성을 단절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hapiro & Frank, 1994; Barrow, 1999).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력단절이 여성을 시장에서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가용가능한 시간이 시장활동(market work) 대신 가구내 생산활동(home production)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가구내 서비스의 생산이 증대되는데 여성의 가구내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출산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추가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반대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여성의 효용극대화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시장활동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는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은 자신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활동 대신 가정내 생산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데서 오는 효용의 감소이다. 둘째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 재진입시 여성의 소득능력을 감소시킨다. 임금수준은 개인의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수준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경험(labor market experience)과 개별기업에서의 근속연수(tenure)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근속연수가 임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만큼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능력의 감소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력단절로 인해 지불해야하는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편익이 큰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나 자발적 결혼과 출산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출산은 감소

하게 된다. 왜냐하면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거나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을 기피하고자 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증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의 결혼과 출산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결혼과 여성의 경력단절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는 기혼여성에게 결혼 당시의 취업여부를 묻는 설문과 함께 결혼전후 6개월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이 있다. 또한 동 조사는 기혼여성의 현재의 취업상태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을 결합하여 활용하면 과거 결혼전후 6개월간 발생한 경력단절이 현재의 취업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다.

<표 17-14>는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6개월 기간 중의 경력단절 경험과 현재의 취업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혼여성 중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6.7%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결혼전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29.5%, 비취업 상태에 있었던 여성은 23.7%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단절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17.2%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단절의 경험을 현재의 취업상태로 따라 살펴보면 현재 취업중인 여성과 비취업중인 여성이 경력단절 경험에 있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비취업중인 여성 가운데 결혼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51.4%이고 계속 취업상태에 있었던 비율은 22.2%임에 반해, 현재 취업중인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41.8%,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37.3%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이 취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7-14〉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과 현재의 취업여부
(단위: 명,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합계
결혼시 경력단절	773(41.8)	1003(51.4)	1,776(46.7)
결혼시 계속취업	690(37.3)	433(22.2)	1,123(29.5)
결혼시 비취업	386(20.9)	516(26.4)	902(23.7)
합계	1,849(100.0)	1,952(100.0)	3,801(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과거의 경력단절 여부가 현재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기 위해 결혼시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현재 취업의 조건부 확률을 구한 것이 <표 17-15>이다. 우선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취업하고 있을 확률은 0.435임에 반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0.565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비취업일 확률이 취업일 확률보다 0.13 가량 높다. 결혼 전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결혼전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이 현재에도 취업상태일 확률은 0.614로 현재 비취업 상태일 확률 0.386보다 0.228이나 높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결혼이후 여성의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1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P(현재 취업 결혼 전후 경력단절)	0.435
P(현재 비취업 결혼 전후 경력단절)	0.565
P(현재 취업 결혼 전후 계속취업)	0.614
P(현재 비취업 결혼 전후 계속취업)	0.386
P(현재 취업 결혼 전후 비취업)	0.428
P(현재 비취업 결혼 전후 비취업)	0.5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여성의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결혼 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임금·소득은 결혼전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보다 낮아야 한다. <표 17-16>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전후 경력단절 여부와 현재 시간당 임금·소득을 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시간당 임금·소득을 나누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임금이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표에 의하면 시간당 임금·소득은 결혼전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8,4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6,300원보다 무려 2,100원이 높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소득은 결혼당시 비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5,400원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에 비하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시간당 임금·소득에서 나타나는 계속취업>경력단절>비취업의 관계는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7-1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과 시간당 임금·소득
(단위: 천원)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경력단절	3.0	6.0	7.0	10.7	6.3
계속취업	3.9	6.0	7.2	12.1	8.4
비취업	4.3	4.4	4.5	14.5	5.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마지막으로 결혼전후 경력단절에 여부에 따라 출산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표 17-17>에 따르면 결혼전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와 비취업 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출생아수는 1.86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출생아수는 1.55명

으로 0.31명 정도가 낮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경력단절이 출산에 미치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 중 전자의 정(+)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결혼전후 계속 취업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보육보다는 시장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소위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는 가설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17-17〉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전체
경력단절	1.91	1.82	1.86
계속취업	1.48	1.67	1.55
비취업	1.94	1.80	1.86
합계	1.76	1.78	1.7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결혼 못지않게 출산, 특히 첫째아 출산시의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 6개월간 일하는 시간을 변경하였습니까?”하는 설문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항목으로는 “① 평소대로 일했다 ② 시간을 줄여서 일했다 ③ 그만 두었다 ④ 비취업 ⑤ 육아휴직 ⑥ 새로 취업했다”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③의 항목에 답변한 경우를 ‘경력단절’로, ①과 ②의 경우를 ‘계속취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④ 비취업 ⑤ 육아휴직 ⑥ ‘새로 취업’을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하여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간의 상태를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기혼여성의 현재의 취업상태에 관한 질문을 결합하여 과거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간 발생한 경력단절이 현재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7-18>은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기간 중의 경력단절 경험과 현재의 취업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혼여성 중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17.8%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첫째아 출산전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13.9%,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은 3.2%, 신규 취업한 경우는

0.7%이다. 마지막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비율은 무려 64.4%로 나타난다. 결혼의 경우와 달리 출산전후 6개월 이내 비취업 상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단절 판단의 기준이 되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임기간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직후 직장을 그만두는 상당수의 경우도 비취업상태로 파악된다. 따라서 비취업상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취업 상태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의 경험비율이 17.8%로 나타난 것은 첫째아 출산이 결혼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단절의 중요한 계기임을 보여준다.

경력단절의 경험을 현재의 취업상태로 따라 살펴보면 현재 취업중인 여성과 비취업중인 여성이 첫째아 출산시의 취업상태에 있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비취업중인 여성이 첫째아 출산시에도 비취업이었던 경우는 전체 비취업 여성의 73.2%나 된다. 반면 현재 취업중인 여성이 출산시 비취업인 경우는 전체 취업 여성의 54.9%이다. 또한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이 출산시 계속 취업한 경우는 전체 비취업 여성의 6.4%에 불과한데 비해 현재 취업상태인 여성이 출산시 계속 취업한 경우는 전체 취업여성의 22.1%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취업중인 여성중 출산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현재 취업중이면서 출산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결혼에서와 같이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이 취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7-18〉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과 현재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전체
경력단절	281(16.6)	345(18.9)	626(17.8)
계속취업	374(22.1)	117(6.4)	491(13.9)
비취업	930(54.9)	1,341(73.2)	2,271(64.4)
육아휴직	88(5.2)	25(1.4)	113(3.2)
새로 취업	20(1.2)	5(0.3)	25(0.7)
합계	1,693(100.0)	1,833(100.0)	3,526(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출산시 경력단절 여부가 현재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출산시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현재 취업의 조건부 확률을 구한 것이 <표 17-19>이다. 우선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취업하고 있을 확률은 0.449임에 반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0.551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비취업일 확률이 취업일 확률보다 0.10가량 높다. 출산 전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출산전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이 현재에도 취업상태일 확률은 0.762로, 현재 비취업 상태일 확률 0.238보다 0.524이나 높다. 이는 결혼시 취업계속의 여부가 현재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훨씬 크다. 따라서 첫째아 출산시 취업여부의 계속은 여성의 출산후 경제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출산시 육아휴직을 이용한 취업여성일수록 현재 취업하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이 여성의 현재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효과는 출산전후 취업이 현재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상회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취업상태와 동일한 효과를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은 전체 첫째아 출산여성의 3.2%에 불과하다.

<표 17-19>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첫째아)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P(현재 취업 출산 전후 경력단절)	0.449
P(현재 비취업 출산 전후 경력단절)	0.551
P(현재 취업 출산 전후 계속취업)	0.762
P(현재 비취업 출산 전후 계속취업)	0.238
P(현재 취업 출산 전후 비취업)	0.410
P(현재 비취업 출산 전후 비취업)	0.590
P(현재 취업 출산 전후 육아휴직)	0.779
P(현재 비취업 출산 전후 육아휴직)	0.221
P(현재 취업 출산 전후 새로 취업)	0.800
P(현재 비취업 출산 전후 새로 취업)	0.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첫째아 출산전후의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전후의 경력단절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을 감소시킨다. <표 17-20>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여부와 현재 시간당 임금·소득을 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수준별로 시간당 임금·소득을 나눈 것은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다.

표에 의하면 시간당 임금·소득은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이 비취업 여성이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은 8,2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5,700원보다 무려 2,500원이 높다. 비취업 상태의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은 6,2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보다 오히려 높다. 특이한 현상은 출산전후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인데 11,3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2배나 높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의 학력구성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중 시간당 임금·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대졸이상의 여성의 비중은 50.0%로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다.^{주41)} 시간당 임금·소득에서 나타나는 계속취업>비취업>경력단절의 관계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미치는 영향은 특히 고학력일수록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7-20>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시간당 임금·소득

(단위: 천원)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합계
경력단절	2.9	5.2	6.0	8.7	5.7
계속취업	2.0	5.1	7.0	13.7	8.2
비취업	3.6	5.7	6.8	12.6	6.2
육아휴직	3.0	9.7	13.5	12.2	11.3
새로취업	na	4.1	7.6	9.6	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주41) 첫째아 출산전후 육아휴직을 이용한 표본수가 작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에 여부에 따라 출산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표 17-21>에 따르면 출산전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출생아수는 1.86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출생아수는 1.94명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었던 여성의 출생아수에 비해 0.8명 정도가 높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의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출산전후 새로 취업한 여성의 1.61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전술한 대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학력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산전후 새로 취업한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도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과 출산율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7-2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현재취업 중	현재 비취업 중	전체
경력단절	1.88	1.85	1.86
계속취업	1.82	1.99	1.86
비취업	1.99	1.90	1.94
육아휴직	1.74	1.76	1.75
새로 취업	1.61	2.00	1.6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4 절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17-2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은 연령, 연령의 제곱, 여성의 학력, 남편의 소득,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 여성의 취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2는 여성의 취업여부를 종사상의 지위로 세분하여 본

것이다. 모형3은 여성의 취업여부를 직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나 직종별 출산율의 분석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은 비취업여성이다.

분석결과, 출산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는 연령이다. 출생아수는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의 제곱 변수는 연령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추정계수의 부호가 (-)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아수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학력은 출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미만의 학력수준을 가진 여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추정계수의 절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형2와 모형3에서 고졸미만 학력의 여성과 고졸여성간의 출생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학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결혼연령과의 관계이다. 모형에 초혼연령을 추가하게 되면 학력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다. 따라서 학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경로는 결혼지연 효과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지연되어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그 결과 결혼시장에 조기에 진입한 여성들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소득은 출생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계수는 세 가지 모형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며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녀의 수요에 대한 소득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부는 더 많은 자녀수를 갖게 된다. 이는 자녀가 정상재(normal good)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요한 가구소득원인 남성의 소득수준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남성의 소득을 통제하면 남성의 종사상의 지위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이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인 여성의 출생아수는 남편의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과 유의미한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만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인 여성의 경우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발견이기는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찾기 어렵다.

여성의 취업은 출생아수와 뚜렷한 (-)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여성의 취업은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이므로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가구 소득을 증대시켜 출산율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자의 효과가 후자의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취업여부를 종사상의 지위로 분류하여 추정한 결과가 모형2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계수는 모든 종사상의 지위에서 (-)의 부호를 가지나 상용직과 일용직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상용직의 경우 출산과 강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다른 종사상의 지위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조건도 좋으며 고용안정성도 보장될 것이므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종사상의 지위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상용직 여성의 출산과 직장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모형3은 여성의 취업여부를 직종별로 추정하여 본 것이다. 추정결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 여성의 출생아수는 비취업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사무직의 경우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149만원으로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직과 판매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9시간과 51.3시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가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서 사용된 변수로는 주거상태와 도시거주 여부가 있다. 자가소유에 비해 전세가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세의 경우는 추정계수의 부호는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또한 거주지가 도시인 여성의 출산율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22〉 노동시장특성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 (S.E)	b (S.E)
상수항	-6.033 (0.449)***	-6.022 (0.449)***	-6.062 (0.449)***
연령	0.408 (0.026)***	0.407 (0.026)***	0.408 (0.026)***
연령 ²	-0.005 (0.000)***	-0.005 (0.000)***	-0.005 (0.000)***
여성의 학력			
고졸	-0.077 (0.046)*	-0.067 (0.046)	-0.034 (0.047)
전문대졸	-0.213 (0.055)***	-0.193 (0.055)***	-0.157 (0.056)***
대졸	-0.356 (0.052)***	-0.330 (0.053)***	-0.291 (0.055)***
대학원졸	-0.538 (0.099)***	-0.510 (0.099)***	-0.483 (0.102)***
남편의 소득	0.034 (0.010)***	0.033 (0.010)***	0.034 (0.010)***
남편의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0.051 (0.064)	0.032 (0.065)	0.042 (0.065)
상용직	0.004 (0.062)	0.012 (0.062)	0.006 (0.062)
임시직	-0.022 (0.075)	-0.021 (0.075)	-0.023 (0.075)
일용직	0.227 (0.079)***	0.228 (0.079)***	0.223 (0.079)***
여성의 취업여부	-0.108 (0.023)***		
여성의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0.023 (0.036)	
상용직		-0.183 (0.031)***	
임시직		-0.099 (0.038)**	
일용직		-0.054 (0.062)	
여성의 직종			
전문직			-0.091 (0.061)
기술공·준전문가			-0.098 (0.071)
사무종사자			-0.185 (0.043)***
서비스종사자			-0.109 (0.046)**
판매종사자			-0.092 (0.040)**
농림어업종사자			0.285 (0.101)***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0.048 (0.070)
장치, 기계조작, 조립			-0.112 (0.107)
단순노무종사자			-0.029 (0.051)
주택소유형태			
전세	-0.113 (0.026)***	-0.112 (0.026)***	-0.109 (0.026)***
월세	-0.052 (0.037)	-0.056 (0.037)	-0.051 (0.037)
기타	0.114 (0.078)	0.103 (0.078)	0.115 (0.078)
도시거주	-0.056 (0.023)**	-0.057 (0.023)**	-0.053 (0.023)**
조정된 R ²	0.247	0.250	0.251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5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에서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혼·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구의 속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취업여성의 출산율이 비취업여성의 출산율보다 낮다. 특히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또는 임시직이며,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용직 또는 사무직 여성의 경우 다른 종사상지위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서비스직과 판매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9시간과 51.3시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취업여성의 출산과 직장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출산은 여성의 인적·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구구성원인 남편의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편의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소득능력(earning power)은 출산시기를 앞당겨 출산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주요 가구소득원인 남편의 소득수준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결혼과 출산 전후에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결혼·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노동시장과의 단절은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물론 임금·소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 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현재 취업중일 확률이 19.7% 감소되며 임금·소득수준도 25%나 감소된다. 초아 출산전후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확률과 임금·소득수준의 감소효과는 더욱 커서 각각 31.3%, 30.5%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노동시장 재진입의 확률과 재진입시의 임금·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유인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혼 여성 비율의 증가와 취업여성의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출산전후 육아휴직이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단절을 방지하고 소득 능력의 저하를 방지한다는 분석결과는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제18장 생식보건과 출산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내용

과거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일찍이 결혼하여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자, 여성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즉, 여성들은 신체·생리적으로 인구 재생산을 위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며, 아울러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여성들은 산업화 사회의 진전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이라는 노동과 경제적 생산을 위한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현대사회 여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고는 여성의 건강 특히, 생식보건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생식보건은 유산 및 사산 등의 임신소모와 불임 및 생식관련 질환으로 한정하여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가치관 변화로 또는 출산·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이중고를 피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여성들은 늦은 나이에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성의 생식보건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의 생식보건수준은 결국 출산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식보건 실태가 출산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여성의 생식보건 상태가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분석에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가 이용된다. 종속변수로는 출생아수를 사용하며, 독립변수로는 여성의 생식보건 특성변수들 이외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주로 통제목적으로 포함한다. 여성의 생식보건 특성변수들로는 임신소모의 원인이 되는 자연유산, 사산 및 인공임신중절과 임신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불임이 포함된다. 실제 분석에서 임신소모원인으로 자연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은 각각 총횡수와 첫째아 출산전 횡수가 사용되며, 불임의 경우 불임진단 경험이 사용된다. 이외 인구학적 변수로 현연령과 초혼연령, 남아출생여부, 사망자녀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로 학력, 취업,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및 주택소유 등이 포함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용 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고려하고자 변수간 상관관계의 공차한계값(tolerance)이 낮은 변수들은 그 중 한 변수만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출산노출기간을 의미하는 결혼기간은 연령변수와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아 제외한다.

〈표 18-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과 범주

변수	특성	범주
현존출생아수	연속변수	· 20~44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 출산중단 20~44세 유배우여성의 출생아수 · 출산중단 20~34세 유배우여성의 출생아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현재 연령	연속변수	세
초혼연령	연속변수	세
여성학력	단계구분 연속변수	0=중졸 이하 1=고졸 2=대졸 3= 대학원졸
여성직업	가변수	0= 없음, 1= 있음
여성 월평균소득	연속변수	만원
가구 월평균 총소득	연속변수	만원
주택소유여부	가변수	0=주택없음 1=주택있음
사망자녀	연속변수	명
남아출생	가변수	0= 없음, 1= 있음

〈표 18-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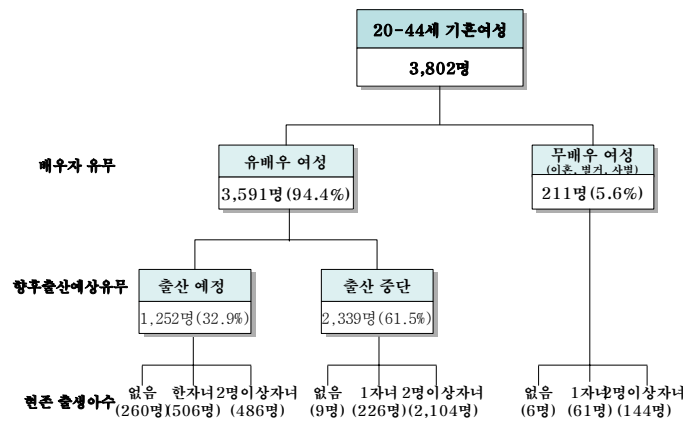
변수	특성	범주
[생식보건 특성]		
사산 경험	연속변수	횟수
자연유산	연속변수	횟수
인공임신중절	연속변수	횟수
첫째아 출산전 사산	연속변수	횟수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	연속변수	횟수
첫째아 출산전 인공임신중절	연속변수	횟수
불임진단 경험	가변수	0= 없음, 1= 있음

제 2 절 생식보건수준과 출산행태

1. 출산중단여성의 특성

기혼여성(20~44세) 3,802명 중 조사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94.4%(3,591명)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 피임실천을 통해 출산 중단을 결정한 여성은 전체여성 중 61.5%(2,339명)이고, 임신 중이거나 향후 출산예정이어서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성은 32.9%(1,252명)이다(그림 18-1).

[그림 18-1]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상태



출산중단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은 0.2%(9명), 1자녀 여성은 6.0%(226명), 그리고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은 55.3%(2,104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 18-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여성 중 일시적 피임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62.2%이고, 특히 출산이 활발한 35세 미만이 72.8%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여성의 생식보건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분석하여 출산중단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출산예정인 여성 1,252명 중에서도 본인의 건강 문제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7.9%로 파악되어 출산을 원하는 여성 12명 중 1명은 의료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1자녀 이하에서 출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의 83.2%가 일시적 피임방법(콘돔 31.1%, 자궁내장치 17.9%, 월경주기법 16.3%, 질외사정법 11.5%)을 실천하고 있고, 특히 수태기능이 활발한 20~34세 연령층 모두가 일시적 피임방법(콘돔 45.4%, 자궁내장치 19.4%, 월경주기법 14.8%, 질외사정법 15.8%)을 실천하고 있어 임신·출산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2> 연령계층별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피임실천 방법
(단위: %)

	전체 출산중단 여성			1자녀 이하 출산중단 여성		
	20~34세 (N=703)	35~44세 (N=1,636)	전체 (N=2,339)	20~34세 (N=101)	35~44세 (N=131)	전체 (N=132)
[영구피임]	27.2	42.6	37.8			
난관수술	(6.4)	(16.4)	(13.3)	-	8.4	4.9
정관수술	(20.8)	(26.2)	(24.5)	-	21.0	11.9
[일시피임]	72.8	57.4	62.2			
자궁내장치	(16.2)	(19.5)	(18.4)	19.4	16.8	17.9
콘돔	(24.7)	(16.4)	(19.0)	3.7	4.9	4.4
월경주기법	(14.7)	(11.8)	(12.7)	45.4	20.2	31.1
질외사정법	(13.9)	(7.6)	(9.6)	0.9	2.1	1.6
먹는피임약	(2.4)	(1.4)	(1.7)	14.8	17.5	16.3
살(질)정제	(0.5)	(0.7)	(0.6)	15.8	8.4	11.5
기타	(0.4)	(0.0)	(0.2)	-	0.7	0.4
계(R)	100.0(797)	100.0(1,761)	100.0(2,558)	100.0(108)	100.0(143)	100.0(25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R은 일시피임 중복응답건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출산을 중단한 여성의 주된 중단사유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출산하여서’가 4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 41.2%, 고령 6.0% 등으로 나타난다(표 8-2). 자녀수별 출산중단 여성의 비율은 1자녀 이하의 경우 13.2%인데 반해, 2자녀 이상의 경우 45.2%로 높다. 1자녀 여성의 출산중단 사유는 경제적 이유(44.7%), 사회적 이유(12.0%), 가치관(8.9%) 순으로 나타난다. 1자녀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 중 고령(10.2%)과 건강문제(6.8%)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고령(5.6%)과 건강문제(1.7%)도 높게 나타난다.

〈표 18-3〉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생아수별 출산중단 사유
(단위: %)

출산중단 사유	전체	1자녀 이하 출산 여성	2자녀 이상 출산 여성
계획한 만큼 자녀 출산	42.0	13.2	45.2
경제적 이유(소득, 고용, 자녀양육비 등)	41.2	44.7	40.9
사회적 이유(보육인프라 부족, 일-가정 양립곤란, 치열한 경쟁 우려 등)	5.1	12.0	4.3
부부중심 가치관	1.9	8.9	1.2
고연령	6.0	10.2	5.6
건강문제(장애·질환)	2.2	6.8	1.7
기타	10.6	4.3	1.1
계 (명)	100.0 (2,339)	100.0 (235)	100.0 (2,1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기혼여성의 생식보건수준과 출산행태

가. 임신소모와 출산

여성의 임신기간 동안에는 모체 내 태아가 출생에 이르기 전에 자연유산이나 사산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유도하여 임신을 중단하는 인공임신중절(인공임신중절) 기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여기에

서는 임신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만을 대상으로 임신 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소모원인에 따라 출산수준을 분석한다(표 18-4).

먼저 20~44세 여성 중 자연유산 경험에 없는 집단의 평균 출생아수는 2.04명, 1회 경험한 경우 1.95명, 2회 경험한 경우 1.91명, 그리고 3회 이상 경험한 경우에는 1.79명으로 자연유산 경험횟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유산 시기와 관련하여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P<0.001$). 자연유산은 의학적으로 초산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증가되며, 특히 3회 이상의 유산은 습관성 유산이라 하여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유산과 달리,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첫출산 전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평균 출생아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P<0.01$). 이들의 첫 인공임신중절 실시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이 26.9%, 출산연기 17.6%, 태울조절 11.4%, 그리고 혼전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9.3%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여성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자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과 법률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친척간 임신,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료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14조). 그러나 출산을 원치 않아 인공임신중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를 못하였을 경우, 이후 임신이 자연유산이나 조산이 초래될 수 있고 불임(이차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불임(이차성) 여성 및 비불임 여성집단의 임신소모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불임여성의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의 평균횟수가 비불임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황나미, 2003).

〈표 18-4〉 임신경험 유배우여성(20~44세)의 임신소모 양상별 평균 현존출생아수 비교

(단위: 명)

	전체 유배우여성 ¹⁾			출산중단 유배우여성 ²⁾		
	(분석 대상수)	평균 출생아수	F값	(분석 대상수)	평균 출생아수	F값
전체	(3,114)	2.01		(2,210)	2.11	
총자연유산횟수			8.038**			.614
없음	(2361)	2.04		1707	2.10	
1회	(589)	1.95		401	2.12	
2회	(121)	1.91		79	2.10	
3회 이상	(43)	1.79		23	2.0	
총인공임신중절횟수			1.813			1.828
없음	(1711)	2.02		1196	2.12	
1회	(916)	1.99		657	2.08	
2회	(364)	2.0		262	2.10	
4회 이상	(123)	2.10		95	2.18	
첫째아 출산전 사산경험			0.041			.677
없음	(3081)	2.01		2189	2.11	
있음	(33)	2.03		21	2.19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경험			82.253**			11.146**
없음	2741	2.04		1979	2.12	
있음	373	1.77		231	2.01	
첫째아 출산전 인공임신중절 경험			70.665**			27.281**
없음	2724	2.04		1964	2.12	
있음	390	1.79		246	1.96	
남아유무			139.089**			26.006**
없음	(647)	1.79		363	1.99	
있음	(2,467)	2.07		1847	2.1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1)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여성 포함. 2) 출산이 완결된 여성. 3) * P<0.05,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불임진단과 출산

불임은 부부가 자녀를 위하여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저도 12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다(Woods, 1981). 따라서 불임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를 일차성(primary) 또는 원발성 불임이라고 한다. 반면, 과거에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secondary) 또는

속발성 불임으로, 자궁외 임신이나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경우 1개월 내에 25%, 6개월에 70%, 1년 내에 85% 정도에서 임신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에는 1년이 지나도 5% 정도에서만 추가로 임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ttmacher, 1956).

불임의 발생빈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임기 부부의 10~2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차성 불임 발생정도가 이차성 불임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빈도는 2000년 유배우 가임여성(6,393명)을 대상으로 할 때, 13.5%로 나타난다(황나미, 2003). 최근 여성의 고령임신으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 생식기 질환의 증가, 작은 인공임신중절 또는 자연유산, 계획된 출산을 위한 지나친 피임방법 사용의 증가,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그리고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불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본 분석의 대상 중 결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은(응답 자료의 한계로 미피임기간을 1년이라고 가정) 유배우여성(683명)을 대상으로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즉, 일차성 불임비율을 파악한 결과 7.5%로 나타난다. 나머지 임신경험이 있는 92.5%의 여성 중에서도 유산 및 사산으로 종결되어 출생아가 없는 여성의 비율은 2.5%를 차지하여 결국 10%(부부 10명 중 1명)은 적극적인 불임치료대상이라 추정할 수 있다(이 수치는 과거 임신 또는 출산 경험 이후 발생한 이차성 불임은 제외된 수치이다).

조사대상 3,802명 중 7.5%(285명)가 결혼기간 동안 불임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20%(58명)은 불임으로 진단받았으며, 조사일 현재 불임치료를 성공한 경우는 59.6%이었고, 36.8%는 자녀를 원하지만 불임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3.5%는 현재 치료 중이었다. 불임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36.8%), 그 이유로는 치료비 부담 때문이 12.3%로 1/3을 차지하였고, 치료과정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10.5%, 영구불임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10.5%, 시간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3.5%로 나타난다(표 18-5).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복잡하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즉, 불임원인진단을 위한 기초검사를 배우자와 함께 수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배란유도제를 투여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기술(IVF) 등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이들이 불임을 치료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불임치료를 뒤늦게 하게 되면, 난자가 노화되고 수태기능까지 떨어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방문 대상자에 국한하여 치료중단 또는 미치료 사유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의료기관 자체를 방문하지 못한 여성(또는 부부)들이 제외되었다. 이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비용부담으로 불임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불임치료는 빠를수록 치료성고가 높기 때문에 개개인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기에 진단, 치료받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므로 조기진단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첫째아를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75.4%로 대다수이며, 첫째아 출산이후 불임진단을 받은 경우가 21.5%, 둘째아 출산이후는 5.2%로 나타난다. 한 자녀 출산이후 자녀를 더 출산하기 위해 불임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약 25%라는 점은 저출산 시대에 고무적이다.

〈표 18-5〉 불임진단 경험부부(20~44세 여성기준)의 치료중단 사유 및 출생아수
(단위: %)

구분	비율
<불임진단 시기>	
첫째아 출산전	75.4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 출산전	21.5
둘째아 출산 후	3.1
<불임 경과>	
불임치료 성공	59.6
치료중단 또는 미치료	36.8
· 치료비용 부담때문	12.3(1.8*)
·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0.5
· 영구불임 판정받아	10.5(5.3*)
·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서	3.5*
현재 치료 중	3.5
계(명)	100.0(5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수치는 미치료 경우의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생식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전체 기혼여성의 생식보건 수준과 출산

임신 및 출산 진행과정에 있는 20~44세 전체 기혼여성(3,802명)을 대상으로 조사일 현재 출생아수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8-6>과 같다. 이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향후 여성의 출산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여성들은 출산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9%이며, F값은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표 18-6〉 기혼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구분	β
현연령	.314 ***
초혼연령	-.242 ***
교육수준	.011
취업여부	-.061 ***
근로소득(월평균)	-.067 ***
주택소유여부	.038 **
가구소득(월평균)	.013
총자연유산횟수	.089 ***
총인공임신중절횟수	.094 ***
첫째아 출산전 사산횟수	-.011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횟수	-.083 ***
첫째아 출산전 인공임신중절횟수	-.074 ***
출생남아 유무	.296 ***
불임진단 경험여부	-.083 ***
사망자녀수	-.062 ***
R^2 (조정된 R^2)	.389 (.386)
F	157.742 ***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우선 생식보건 특성변수로서 임신소모 원인이 되는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횟수는 출생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아 출산 전에 경험한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의 경험횟수도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적어 첫 임신의 종결형태가 향후 출생아수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P<0.001$). 한편, 불임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P<0.001$).

사망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P<0.001$), 자녀 사망에도 불구하고 추가출산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아수는 출생아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P<0.001$), 남아출산을 위해 출산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출산중단 유배우여성의 생식보건 수준과 출산

최종적인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아 출산을 완결한 여성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녀를 원치 않아 출산 중단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2,339명의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식보건 수준이 출생아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표 8-10). 여성의 가임능력이 최대인 연령은 24세 전후이며, 이후 매 5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신될 때까지의 기간은 2배 정도 소요되어 35세 이후부터는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Guttmacher, 1956). 35세 이후에는 임신이 되더라도 자연유산이나 다운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다(WHO, 1990). 이러한 점 때문에 출산을 장려할 목표대상은 35세 이전의 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선 20~44세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연령에 따른 생식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35세전후로 두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20~44세 가임기층에 있는 전체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생식보건 특성 중 임신소모의 원인으로서는 자연유산 경험횟수와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는 출생아수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의 경험횟수가 많다는 것은 보다 많이 임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분석결과는 잦은 임신소모를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임신소모 횟수가 적거나 거의 없는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보다 많은 정상출산을 경험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아 출산 전에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많이 경험한 여성일수록 출생아수는 적어져($p<0.001$),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향후 출산수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중단 여성은 출산을 완결하지 않은 여성이 포함된 경우와 달리 불임진단 경험여부가 출생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불임진단을 받은 여성 중 출산을 완결한 여성은 모두 불임치료에 성공하여 출산을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8-7〉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20~44세 출산중단 유배우여성	20~34세 출산중단 유배우 여성	35~44세 출산중단 유배우여성
	β	β	β
현재 연령	.097 ***	.231 ***	-.017
초혼연령	-.147 ***	-.288 ***	-.129 ***
여성교육정도	-.044	-.030	-.057 *
여성취업여부	-.055 *	-.182 ***	-.028
여성 월평균 소득	-.006	.079	-.022
가구 월평균 총소득	-.012	-.031	-.004
가족 소유의 집 유무	.040	.024	.041
총 자연유산 횟수	.124 ***	.112 *	.122 ***
총 인공임신중절 횟수	.103 ***	.063	.106 ***
첫째아출산전 사산횟수	.007	-.055	.025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횟수	-.107 ***	-.112 *	-.105 **
첫째아 출산전 인공임신중절횟수	-.116 ***	-.089 *	-.127 ***
출생남아수	.140 ***	.180 ***	.122 ***
불임진단 경험여부	-.011	-.002	-.011
사망자녀수	-.087 **	-.086 *	-.088 ***
R ² (조정된 R ²)	.100 (.094)	.179 (.160)	.080 (.071)
F	16.92 ***	9.80 ***	9.26 ***

†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생식능력이 보다 왕성하나 출산을 중단한 20~34세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총자연유산횟수가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반면, 첫째아 출산전에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아수에 대한 자연유산횟수의 정적인 관계는 가임능력이 있어 임신횟수의 증가에 따라 자연유산과 정상출생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총인공임신중절횟수는 임신노출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 여성들의 출생아수가 전체적으로 적어, 인공임신중절경험 정도 별로 출생아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아 출산전에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의 경험은 전체 가임기간 동안의 출생아수를 줄이고 있어, 초산전 임신소모 경험이 이후 생식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임능력이 보다 활발한 연령층에 있는 여성의 불임진단 경험 여부가 전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인 여성의 경우에서 설명되었듯이, 불임진단을 경험한 여성 대부분은 계속적으로 아직 원하는 수만큼의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불임을 치료하여 출산을 시도하고 있어, 이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생식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연령층에 속하면서 출산을 중단한 35~44세 유배우여성의 경우, 생식보건관련 요인 중 총자연유산횟수와 총인공임신중절횟수는 출생아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첫째아출산전 자연유산 횟수와 첫째아출산전 인공임신중절횟수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 요인들의 부정적인 관계는 고연령층 여성들이 임신능력이 장애가 없는 한 임신노출기간에 비례하여 많은 횟수의 임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상출생 또는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된 것으로 횟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첫째아 출산전에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이후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첫째아 출산전 사산횟수나 불임진단 경험여부는 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연령층이나 부분적인 연령층으로 구분한 분석모형에서 사산횟수와 불임진단경험여부가 출생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산횟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임진단경험여부의 경우에는 진단을 통해 불임을 판정받거나 판정받지 않은 유배우여성들이 여전히 출산을 원하거나 진행하고 있어, 이 모형에서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44세 기혼여성의 생식건강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관리와 ‘부모됨’의 중요성이 강되어야 할 방향으로 나타난다. 본 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만혼은 저출산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수태기능이 낮아질 뿐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높고, 아울러 선천성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5세 미만의 출산완결 여성의 경우, 자연유산 횟수가 많을수록 현존출생아수가 적었으며, 임신소모가 적더라도 첫째아 출산전에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는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첫 임신을 정상출산으로 종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임신의 소모는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그 후유증이 크다. 특히 사산과 자연유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원하는 임신 및 자녀이어서 그 상실감은 매우 커서 다음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유산과 사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충분한 휴식이 요구됨에 따라 2005년 ‘근로기준법’에 유·사산 유급휴가제도를 마련,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및 사산에 대해 45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유·사산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모성의 건강보호는 물론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 휴가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소모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과 직결되어 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지원이라는 일방향성의 목적만이 아닌 가임기에 이르는 남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복지적이며 결과적으로 질적 인구의 생산을 기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및 가임여성을 대상

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 12명 중 1명이 본인의 건강문제나 질병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접근이 수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성보호는 국가의 원동력이 될 인구 재생산 기능에 대한 보호이다. 임신초기에는 유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유산이 이 시기에 발생되므로 임부와 태아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외견상 임부로 판별하기 어려워 임신초기부터 임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어렵다. 따라서 임부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좌석의 확보, 대중시설에서 대기하지 않고 우선 이용, 쇼핑물건 이동 등). 임신 초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예비엄마’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임부에게 배지를 배부, 임신초기부터 임부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한다.

본 분석에서 불임여성(또는 배우자)의 37%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미치료 상태로 나타난다. 그 사유는 치료비 부담, 치료과정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영구불임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각기 1/3을 차지한다.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불임치료를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불임치료를 뒤늦게 하게 되면 난자가 노화되고 수태기능까지 떨어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2003년 조사에 의하면 불임치료 여성(479명)이 불임 진단 및 검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평균 164만원, 불임치료비용은 18개월 동안 평균 603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불임진단 전에 민간요법 등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고 과반수가 2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임진단을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임의심 이후 3~5년에 진단을 받은 경우가 24.1%, 5년 이후 진단을 받은 경우가 13.7%로 약 40%가 3년이 지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황나미, 2003).

유배우 가임여성 중 적극적 불임치료 대상인 35세 미만의 원발성 불임여성은 약 3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임여성의 84.2%는 본인의 기능의 결함과 가족의 기대의 상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고 가정 해체 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황나미, 2003). 자녀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 원하는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불임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충족은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불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불임 원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임은 사회적 환경 또는 원인불명으로도 초래되기 때문에 불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빠를수록 치료 효과를 높이며, 검사는 부부가 같이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임 및 유전질환 등 생식건강 관련 전문 상담시설의 개설·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불임환자 또는 불임이 의심되는 대상자, 출산에 따른 유전적 문제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미혼남녀가 관련 상담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이나 미혼시기에는 방문하기 불편한 시설이다. 이에 출산에 장애가 되는 건강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상자가 조기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건강 상담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불임전문의료기관과 학교 및 산업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결혼 적령계층 및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불임전문의사, 여성학자, 심리전문가와 연계하여 불임관련 상담 및 지도사업을 실시한다.^{주42)}

한편, 불임을 개인의 사생활로 간주하여 불임 노출을 기피하는 우리나라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한 불임대상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불임치료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의료인들은 불임대상자에게 사전 진단과정 및 결과, 시술 및 치료방법, 치료 후 대처방안 등에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치료과정에서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면 본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불임치료기관에서 치료 전후 상담의 의무화와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실험 및 치료과정의 공개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42)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1999년 신엔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전의 보육시설 확충 이외에 ‘불임전문상담센터’를 정비하여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 불임상담 및 정보 제공 시설을 1999년 24개소, 2004년 47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불임전문간호사(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nursing)를 양성하여, 불임 대상자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제 19 장 저출산 원인분석 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2부에서 사건사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생애과정별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3부에서는 구체적인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은 우선 출산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이들 인구학적 요인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출산과 제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단변량적 분석결과,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또는 영역)들이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영역)들로는 문화적 요인으로서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영역별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으로 구분되는 가치관의 소영역 중 결혼관의 약화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남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녀관 약화는 기혼여성의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령기부터 결혼 및 자녀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가치를 고양시키며, 특히 자녀를 도구적·경제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관에는 남녀간 성차가 존재하여,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의식과 실생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로 측정된 자녀양육비용담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비 부담은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 혹은 부부가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좌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주거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주택에는 출산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거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사실로 판명된다. 주거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에서는 출산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래의 가임수준까지 감안한 기대자녀수에 대한 주거문제의 영향은 주거문제가 결부시키지 않는 출산계획을 반영한 결과,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특히 주택소유여부는 미래 잠재적인 완결출산력에 아주 약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래의 완결출산력에 대한 영향도 도시지역에 국한된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출산수준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의미한다.

경제적 환경 변화도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만혼으로 가임력이 떨어져, 출산수와 출산간격을 줄이려는 경향이 높다. 남편의 직업 안정도와 주택소유는 첫째아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부인의 직업 안정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는 소득효과로 인하여, 후자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등 경제적 요인들은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인과관계

도 성립되어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성분업적 가사분담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자녀출산·양육과 일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자녀양육 등)을 실제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빈곤과 계층간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다수의 기혼여성이 자녀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부 또는 모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부모휴가)과 같은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취업 여성의 대다수가 다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의 부족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급여수준이 휴직전의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보편적 보장체계를 제도화하여, 전체 시민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성분업적 역할이 강화되어,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 증가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성이 일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 심지어는 결혼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부성휴가출산 등의 제도 도입 및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개발을 현재 해당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무자녀에서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과 자녀가 1명에서 추가적인 출산을 고려할 때 직면하는 장애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지스틱 결과는 물론 각각의 자녀를 출산할 때 마다 일을 그만둔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다양하

고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시민들의 생계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다양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안정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과 재진입시 임금·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유인도 크게 감소하여, 결국 여성의 미혼율 증가와 취업여성의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긴요하다.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수준이 높으므로, 가구소득원인 남성의 소득을 안정화 하는 일도 중요하다.

20~44세 기혼여성의 생식건강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관리와 ‘부모됨’의 중요성이 강되어야 할 방향으로 나타난다.

만혼으로 여성의 수태기능이 낮아질 뿐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높고, 아울러 선천성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발생확률이 높아진다. 자연유산 횟수, 특히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산과 자연유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원하는 임신이어서 상실감이 매우 커, 다음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사산을 사전예방하는 것은 모성보호는 물론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휴가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이 중요하다. 청소년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조기치료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불임은 직접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과 달라, 원하는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

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 불임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충족은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 불임치료를 뒤늦게 하게 되면 난자가 노화되고 수태기능까지 떨어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은 <표 19-1>에 요약·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및 고령출산이 출산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와 성분업적 역할관도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경제적 환경 변화(IMF외환위기, 남편의 소득 및 고용 불안정, 무주택 등), 일-가정 양립 곤란(남편의 가사시간, 성분업적 역할 강화, 부부간 가사노동 불공평 등), 노동시장(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 등), 출산 건강 수준(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검증결과를 토대로 제4부에서는 저출산 원인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 19-1〉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종합

영역	요인	세부요인	결혼·출산과의 관계	비고
가치관	결혼관	미혼남녀 결혼필요성	+(결혼의향)*** -(결혼연령)***	
		기혼취업여성 결혼필요성	+(출생아수)***	기혼여성 전체의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에 는 영향 무의미
		미혼남녀 혼전동거관련 태도	-	결혼의향·시기에 영향 무의미
		기혼여성 이혼관련 태도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기혼여성 대상
	결혼시기	유배우여성 조혼연령	-(출생아수)***	
	자녀관	미혼남녀 자녀필요성	+(결혼의향)***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의향에 영향 무의미
		기혼여성 자녀필요성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미혼남녀 자녀효용 가치		결혼의향·시기에 영향 모두 무의미
		유배우여성 자녀효용가치	+(출생자녀수)	정서적 가치 중시의 경우. 단, 기대자녀수에 영향 무의미
	성역할관	미혼여성의 성분업적 역할규범 태도	+(미혼여성 결혼시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미혼남성의 결혼의향 ·시기에 영향 무의미
		유배우여성의 성분업적 역할규범 태도	-	출생·기대자녀수에 영향 무의미
		미혼남녀의 남편생계모형관련 태도	-	결혼의향·시기에 영향 모두 무의미
		기혼여성의 남편생계모형관련 태도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에 영향 무의미
노동 시장	노동시장 참여	부인 취업	-(출생아수)***	출산시 기회비용 상승 효과
		남편 취업	+	소득상승 효과
	부인 고용안정도	상용직	-(출생아수)***	고학력, 고임금등으로 출산 증가시 기회비 용 증가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	-(출생아수)***	고용불안정
	남편 고용안정도	상용직, 비임금근로	+(출생아수)***	소득상승효과
		임시직	-(출생아수)***	고용불안정
		일용직	+(출생아수)***	
	부인직업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출생아수)***	출산시 기회비용상승
		서비스, 판매직	-(출생아수)***	
		농림어업직	+(출생아수)***	
	여성인적 자본수준	고학력(고소득, 기회비용상승)	-(출생아수)***	
	경력단절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출생아수)	기회비용(소득, 취업기회 감소) 상승으로 미 혼인구의 결혼포기로 연계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출생아수)	기회비용 상승으로 출산축소 가능
	근로소득	여성 근로소득	-	출산시 기회비용 상승
		남성 근로소득	+(출생아수)***	소득효과(***)

〈표 19-1〉 계속

영역	요인	세부요인	결혼·출산과의 관계	비고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성분업적 역할	부부간 가사노동 공평성(취업기혼여성)	+ (출생아수)***	유의
		부인의 가사시간 남편의 가사시간	+ (출생아수)*** - (출생아수)***	자녀 증가시 분업화 강화: 여성의 자 아 실현·생계유지위해 취업희망시 결혼 ·출산 포기도 연계
가구 경제 수준	가구경제	가구소득	+ (출생아수)***	소득효과(기대자녀수, 추가출산의향에 도 유의미)
	주택안정	주택소유 여부	+ (출생아수 + (기대자녀수)*)	도시에서 주택소유로 증가
		주거비 부담	- (출생아수)*** - (기대자녀수)***	도시에서 부담정도 클수록 감소
		주거밀도	- (출생아수)*** - (기대자녀수)*	도시에서 고밀도일수록 감소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보육비	영유아 보육교육비	- (기대자녀수, 추가출산)***	부담가중
	사교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 (기대자녀수, 추가출산)***	부담가중
생식 보건 수준	불임	유배우여성 진단경험유무	- (출생아수)***	
	인공임신중절	유배우여성 초산전 경험횟수	- (출생아수)***	
	자연유산	유배우여성 초산전 경험횟수	- (출생아수)***	
	사산	유배우여성 초산전 경험횟수	-	

제 IV 부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제20장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틀

제21장 저출산 원인별 정책과제

제22장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제23장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제 20 장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틀

출산율 감소는 가임기 남녀·부부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이다. 앞선 분석에서 미혼남녀나 기혼여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자녀수는 2명을 다소 초과하여 인구대체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실제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16명(2004년 기준)으로 나타나 개인이나 부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희망 내지 욕구가 사회환경 변화 등 제 요인에 의해 좌절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장애요인 또는 환경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제3부)에 따르면 크게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장애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개인 및 가구의 고용·소득 불안정성 증가,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장애요인으로는 고용·소득의 불안정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녀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겨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는 현상도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임신소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은 크게 가치관과 사회환경간의 부조화,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생식보건수준 저하, 육아인프라 부족, 일-가정 양립 곤란, 고용·소득 불안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여,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개인 또는 부부가 원하는 자녀수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간격으로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가장 주효할 것이다.

다소 예외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생애경로(life course)는 미혼,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이행하며, 그 시기는 주로 10~40대 연령의 범위를 가진다. 미혼 상태로 머무르는 기간은 결혼 이전 모든 기간을 포함하며, 이는 다시 학령기(가치관형성기)와 결혼준비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생애경로는 교육, 취업·결혼준비,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애경로 단계들은 서로 분절되지 않은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어느 한 경로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미혼(교육, 취업, 결혼준비),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의 경로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관련정책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될 경우에도 투입된 노력(예산, 시간)의 양에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은 미미할 것이다. 환언하면, 생애경로 모든 단계에서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제거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될 경우, 개인 또는 부부의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관련 정책들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생애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수직적 종합).

이를 위해, 앞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들을 생애경로의 연속선상에 배열하고, 저출산 원인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한편, 저출산 원인의 치유나 극복은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통계분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원인간 또는 원인과 현상간의 분리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 각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제 영역을 망라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수평적 종합).^{주43)}

이상 논의를 토대로 저출산 대응 정책방안들은 [그림 20-1]과 <표 20-1>의 생애경로단계×저출산원인의 매트릭스 형태에 의거하여 개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단계에서는 주로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간의 부조화를 치유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둔다. 학령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학령인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가족을 형성할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학령인구들을 대상으로 생식보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교육 등 보건·의료관련 지식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물론, 가치관과 생식보건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모든 생애단계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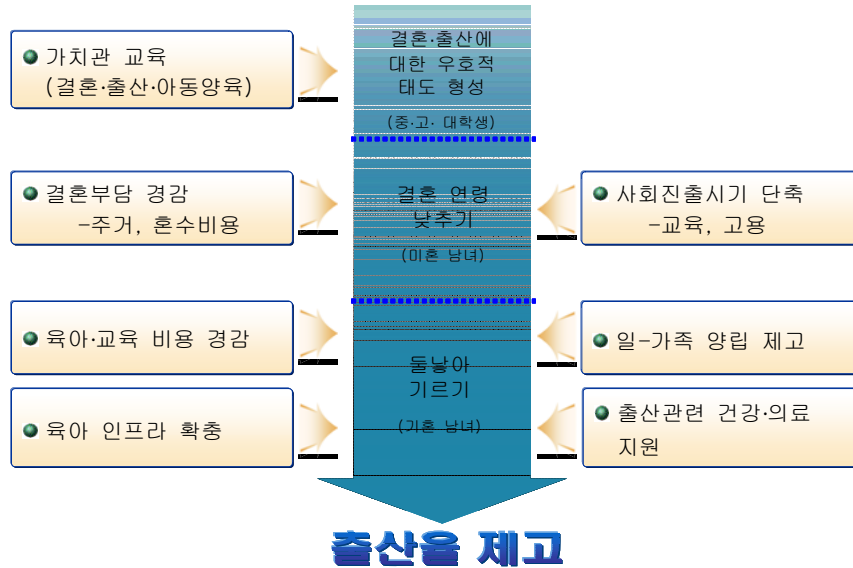
다음으로 취업·결혼단계에서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고용·소득 불안정, 지나친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결혼 연기 및 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교육기간 단축(학제개편), 실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청년 실업 대책, 고용안정, school-to-work 등 고용정책,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균형 등 주택정책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한 분야로서, 저출산 대책은 이들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신·출산단계에서는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인한 생식보건 수준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임신·출산관련 의료 지원,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관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자녀양육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들 세부적인 정책방안들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주43) 저출산현상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자녀양육비용 지원(현금 및 세제지원)·고용·보육 등 국가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해야 극복이 가능하다(OECD, 2005).

[그림 20-1]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의 기본틀



〈표 20-1〉 생애경로단계와 저출산원인간의 매트릭스

구분		저출산원인					
		가치관 변화	보육·육아 인프라 부족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생식보건 수준 저하	소득·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생애 경로 단계	교육단계						
	취업·결혼단계						
	임신·출산단계						
	자녀양육단계						

저출산 대응 정책별로 원인과 대상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들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2장에서는 주 정책대상으로서 가임기인구의 정책선호도를 진단한다. 이어서 저출산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주체들의 협력 방안과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 2 1 장 저출산 원인 대응 정책과제

제 1 절 교육단계 정책과제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 및 포기 경향과 기혼여성의 저출산 경향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들과 환경 변화에 기인하나, 한편으로 가치관 자체의 변화에도 일부 기인한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다른 여건들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관(결혼관, 자녀관)과 양성평등가치관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는 크게 노동시장과 가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불평등은 여성의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조성된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 및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식과 관행 및 제도는 증가하는 여성의 자아성취욕구와 충돌하고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취업 중인 여성들조차도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 형성된 가족관(결혼관, 자녀관)과 양성평등관은 생애 전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치관 관련 교육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중점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형성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전 사회적으로 지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사회운동 및 홍보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교육관련 정책과제

우선 결혼, 자녀, 가족, 양성평등 등에 관한 가치관과 실상에 대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도덕, 사회 등)와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교육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육의 교과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각급학교 교과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교과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교과내용의 적절성은 가족관(결혼관, 자녀관) 및 양성평등관이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다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결혼관, 자녀관)과 양성평등관에 대한 교과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저출산현상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인구교육의 내용이 적절하며, 양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주44)}

인구의 질적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성, 생식보건 등과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불임 등 생리적·의료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문제점들과 그 영향을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여 인식 제고와 가치판단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식보건 문제점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육아체험 등 실생활의 현장학습을 통해 결혼 및 육아의 가치와 즐거움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관행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가족 내에서 양성평등적 역할분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가치관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주44)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아동과의 만남 촉진사업을 실시하여, 육아체험을 통한 육아에 대한 불안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엔젤프로그램(2004년 12월)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시책과 목표로서 체험활동을 통한 풍부한 인간성 육성 및 어린이의 학습 지원, 중·고교생 대상 차세대 부모가 될 준비를 위한 육아이해강좌 개설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사회교육 및 문화조성관련 정책과제

가부장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타파하여,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족주거나 가족형태(신혼부부, 예비부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자녀양육에의 공동참여 등을 통한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주45)} 이러한 사회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수요에 적합한 차별화된(one-to-one) 접근을 추진하도록 한다.

〈표 21-1〉 교육단계에서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약화	▶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육 강화(교과내용 개편, 교과체계 개선 등) ◦ 인구: 저출산·고령화 추이, 원인 및 파급효과, 인구자질(성교육 포함) 등 ◦ 가족: 결혼·육아가치와 즐거움 교육(육아체험 등) ◦ 양성평등: 양성평등적 가사분담, 성 평등적 고용문화, 사회환경 조성 등
생식보건 수준 저하	▶ 성문제, 출산·임신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 상담시설 확충 및 민간단체 지원 확대 ◦ 인력개발(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사업복지사 등) ◦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 인식 부족	▶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책 홍보 강화 ◦ 효과적인 내용 개발,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주45) 예를 들어, 시간의 근무를 지양하기 위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일제 소등제 실시, 가정의 날 운영 등과 같은 상징적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급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군인부부 동일지역 배치, 배우자 출산시 장병휴가 부여, 다자녀가정의 군숙소 입주평형 상향 조정 등의 혜택 등이 있을 것이다.

제 2 절 취업·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으로 규명된 혼인연령 상승은 다시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요인들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미혼남녀가 결혼을 미룬 이유에서 잘 나타난다. 미혼남성(20~44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소득 및 고용불안정 31.7%, 결혼비용 부담 11.5%, 결혼생활 부담 또는 자아성취 방해 11.5%, 마땅한 배우자 없음 9.6%, 평생독신 선호 2.6% 등으로 나타나다(표 21-2).

〈표 21-2〉 미혼남녀(20~44세)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성별	경제적 상황	결혼비용	결혼생활 어려움, 자아성취 방해	결혼 나이	마땅한 배우자 없음	결혼생각 없음	기타	계(명)
남자	31.7	11.5	11.5	27.7	9.6	2.6	5.5	100.0(1,465)
여자	10.2	7.6	20.6	35.9	14.2	5.9	5.6	100.0(1,2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미혼여성(20~44세)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들로는 가부장적인 결혼생활 부담 또는 자아성취 방해 20.6%, 마땅한 배우자 없음 14.2%, 소득·고용불안정 10.2%, 결혼비용 부담 7.6%, 평생독신 선호 5.9%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혼여성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자아성취 방해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경력단절을 발생시키는 비자발적인 요인 중 일-결혼생활의 양립 곤란이 17.2%로 가장 높다(표 21-3).

〈표 21-3〉 유배우여성(20~44세)이 결혼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가정 양립 곤란	해고/ 인사상 불이익	가정에 전념 희망	임신 (출산)	남편· 시댁 반대	알자라 맘에 안들어	몸이 아파서	힘들 어서	기타	거리가 멀어서	계(명)
전체	8.5	17.2	3.7	27.5	17.9	4.0	1.8	1.5	3.9	4.9	9.1	100.0(1,719)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따라서 미혼남녀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의 결혼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미혼남녀들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우선 고용·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주46)} 이는 결혼 및 출산관련 정책의 틀에서 다루기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층이 학교졸업 후 짧은 기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school to work)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취업정보 제공, 장학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에서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보육 및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립하여 근로자에게는 여가생활과 육아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대졸 미취직자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제를 확대하고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방

주46) 일본에서는 젊은이의 안정적 취업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오고 있다. 2001년 12월부터는 프리타(フリタ), 대졸 미취직자 등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해 단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청년시험적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6년에 상용고용이행률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전국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 및 구직자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기회가 늘어나도록 주말 및 야간시간을 활용한 직업훈련코스를 추가하였다. 단시간 노동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정사원 전환 조건 정비 등(2003년)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이 자립·도전 플랜’을 도입(2003년 6월)하여, 지방공공단체, 산업계, 학교 등이 제휴하여 젊은이에게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이를 위한 윈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직장 견학, 인턴쉽(취업체험) 등 지원함과 아울러 그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는 ‘중고생의 일 체험 지원사업’ 실시(2003년부터)하고 있다. 신신엔젤프로그램(2004. 12)의 5년간 시책에도 젊은이 취로 지원의 충실화, 장학금 사업의 충실화 등 젊은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과 연계를 통한 신중히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실현시키면서 결혼생활이 가능하도록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가정의 양립 곤란 및 결혼 후 직장에서의 차별을 우려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은 물론, 결혼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 및 자녀양육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에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결혼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취업 후 결혼에 지장이 없도록 장학금 장기저리 융자를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 융자를 강화하고,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주47)} 뿐만 아니라, 주요 신혼용품 등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비용의 복잡한 결혼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결혼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며, 결혼상담업(결혼중매·미혼자데이트서비스)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건전한 민간결혼 정보회사를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주48)}

주47)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지원금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월 급여 싱가포르 \$8,000 이하) 미혼시민에게 아파트구입 지원금으로 grant를 지급한다. 결혼을 하면 위 지원금에 덧붙여 top-up방식의 부가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주48) 일본에서는 미혼 종업원의 혼인을 제고를 위해 dating서비스 제공 등을 장려한다. 많은 대기업에서 추진 중이며, 정부 내에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표 21-4〉 취업·결혼준비 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원인	정책대안
결혼관 약화, 가부장적 결혼생활부담	▶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 양성평등 가치관련 사회교육 강화
청년층 실업 증가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 전국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구직자에게 취업관련 정보 제공 ◦ 장학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에서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청년층 실업과 보육문제 동시 해결) ◦ 주 40시간 근무제 확립(※근로자 가족생활시간과 일자리 확대 동시 도모) ▶ 청년층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 대졸 미취직자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제 확대 및 상용 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절차 제도화 ▶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중장기 검토추진
결혼비용 부담	▶ 장학금 환수기간 및 이자율 등은 취업 후 혼인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저리 강화 ▶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주택구입비 지원(장기저리이자) 및 전세금 보조 등 ◦ 신혼용품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제공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고비용·복잡한 결혼절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결혼문화 개선운동 전개
경력단절 및 직장차별	▶ 결혼 및 자녀 출산 후 재취업 강화 ◦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회 및 비용 제공 등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	▶ 결혼정보 부재 해소 ◦ 국공립 결혼정보센터 운영 ◦ 건전한 민간결혼정보회사 육성 및 지원

제 3 절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1. 생식보건수준 제고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불임증, 습관성 유·사산 등과 같은 가임기 여성의 생식보건 문제들이 출산을 감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생식기 건강문제들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에 기인한다.

생식건강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나, 여성의 교육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자아성취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는 현상이 지배적인 현실에 비추어 결혼 촉진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2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임은 출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추정에 따르면, 2003년 불임부부(15~39세 여성기준)는 총 635천쌍으로 가임기 유배우여성의 약 13.5% 수준에 이른다. 보다 심각한 점은 이들 불임부부 중 출산이 보다 활발한 35세 미만의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불임부부 중 전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부부는 61만쌍(임신 무경험 부부 44만쌍, 임신경험은 있으나 출산 무경험 부부 17만쌍)으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표 21-5〉 연령별 불임부부 추계, 2003

(단위: 쌍)

부인연령	임신경험 없음(A)	임신경험있으나 출산경험없음(B)	출생아 있으나 재임신 안됨(C)	최우선 불임극복 부부(A+B)
15~24세	14,775	12,486	2,497	27,261
25~29세	43,431	56,702	2,413	100,133
30~34세	147,793	38,708	96,769	186,501
35~39세	232,793	65,708	510,641	298,501
계	438,792	173,604	612,320	612,3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재구성.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자녀출산을 위해 불임 치료하다가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다. 조사 결과 불임부부 중 계속 치료를 받을 계획인 부부는 64.2%, 얼마간 받다가 중단할 계획인 부부는 26.4%, 곧 중단할 계획인 부부는 5.9% 등으로 총 32.3%가 치료를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표 21-6). 치료중단 이유로는 심신의 어려움(45.0%)에 이어 비용부담(2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6〉 불임부부(20~44세 여성기준)의 치료계획여부, 2005. (단위: %)

치료계획여부	계속 치료계획	치료 후 중단	곧 중단 계획	미결정	계
구성비(%)	64.2	26.4	5.9	3.5	10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치료중단이유: 비용부담 26.6%, 심신 어려움 45.0%, 가족권유 5.5%, 효과 기대 불가능 19.3%, 한방/민간요법 이용 1.8%, 기타 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실제 시험관아기 1회 시술료가 약 3백만원으로 고가인데다가, 적어도 3회 이상을 시도하여야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진단검사 등 대부분 불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고액이 소요되는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불임부부가 치료를 중단하여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도 관련 시술수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의 즉각적인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뿐 아니라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미국, 프랑스, 독일 등 미주 및 유럽국가)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불임치료를 적극 지원(일본 등)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주49)

주49) 미국에서는 불임치료비에 대하여 14개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특정불임치료비 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사 진단에 의해 임신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호적상 부부, 부부합산 전년도 소득 650만엔 미만이다. 대상치료는 체외수정과 현미수정이며, 급부내용은 1년 상한 액수 10만엔으로 통산 2년간 지급하고 있다. 사업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자정도시, 핵심시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즉, 일정 소득이하 불임부부 중 임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지원대상 불임부부로는 1차적 불임(원발성 불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과 2차성 불임(속발성 불임: 분만, 유산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도록 한다. 참고로 2005년 조사에서 무자녀 기혼여성의 14%가 불임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임부부 중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 15.9%, 100~200만원 미만 40.3%, 200~3000만원 미만 23.3%, 300만원 이상 20.5% 등으로 200만원미만의 비중이 절반 이상(56.2%)으로 나타난다. 지원수준은 불임부부 당 1회의 시술비(3백만원이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예로 4년간 한시적 집중지원방식을 통해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임신성공 확률이 30%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불임부부의 30%(약 19만명)에 대해 4년에 걸쳐 매년 5~10%(약 3~5만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불임부부 또는 유·사산 경험 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주50)} 현재 정부(노동부)는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급 유사산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산의 경우 임신 3개월(84일)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나,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45일 그리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산휴가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

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특정불임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불임부부 치료 급부 사업제도로 도도부현 내 시정촌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투여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불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액의 1/2 지원하고, 1년간 진료에 대해 상한 3만엔이며, 조성회수나 조성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50) 일본에서는 임신부가 보건지도와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화(균등법 제22조) 되어 있다. 휴가기준으로는 임신 23주까지 4주간 1회, 임신 24주~35주까지 2주간 1회, 임신 36주~출산까지 1주간 1회, 출산 후 1년 이내에 의사와 조산부가 지시하는 횟수 등이다.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의 경우 산후휴직이 제공된다(노동기준법).

며, 태아검진 휴가나 불임 치료를 위한 휴가제는 전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임신부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일반여성보다 과소 보호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산 휴가제를 도입(법제화)하여 임신 4개월 이상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사산했을 때에도 45일 한도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사회분담에 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월 1일 혹은 반일(무급)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시 험관아기기술 등 불임치료시 질병휴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임 부부에게 일정기간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불임휴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후천성불임증이나 유·사산의 원인이 되는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1973년 제정) 상 의학적인 사유들에 한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될 뿐, 이외 이유로의 인공임신 중절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은 출산억제정책 시대부터 원치 않은 임신을 해소하기 위해, 터울조절을 위하여,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 등에 의해 법적 허용조건에의 부합 여부를 떠나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 결과 인공임신중절은 기혼여성은 물론 미혼여성 사이에 만연되어 왔다(표 21-7).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공임신중절은 윤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후천성불임증 등 모성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표 21-7〉 유배우 부인(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단위: 천건, %)

구분	1991	1997	2000	2003
인공임신중절 건수	403	230	156	146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54	44	39	4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여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원인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후적인 조치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중절을 금하는 경우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원치 않은 임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임신된 경우 임신여성 및 아동의 여러 상황을 지원하여 가급적 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들에는 무엇보다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생명·인간존중운동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불임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을 저하시키는 다른 요인들로 성병 등을 들 수 있다. 성병은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은 생식기관의 영구적 손상, 유산, 자궁외임신, 영구불임 등의 결과 초래하여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2002년 현재 최소 3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21-8). 이들 중 유흥주점 등에서 겸업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241천명, 집창촌(일명 사창가) 9천명, 보도방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이 79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1-8〉 성매매 종사여성인구 현황, 2002

구분	종사여성수	업소수
겸업형(산업형) 성매매	241,114	57,938
전업형(집창촌) 성매매	9,092	2,938
기타(전자형, 출장형) 성매매	79,012	19,224
계	329,218	80,100

주: “성매매 종사 여성”이란 해당업소에 ‘고용’되어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소위 ‘보도방’을 통해 그때그때 해당업소에 조달되는 여성들도 포함.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20~30대가 90% 이상(평균 24.7세)이며, 90.7%가 미혼으로(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3), 대부분이 결혼 및 출산이 활발한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성매매 여성들은 죄의식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임질, 매독 등의 성병의 영향(후유증 포함)으로 인하여 생식보건의 손상으로 후천성불임증,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표 21-9). 이들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하는 빈번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도 후천성불임증 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출산 시에도 기형아 출산, 신생아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표 21-9〉 성매매 종사여성의 성병,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 2002
(단위: %, 명)

구분	없음	1회 이상	계
성병경험(2003) ¹⁾	81.2(332)	18.8(77)	100.0(409)
임신경험(2003) ¹⁾	42.5(174)	57.5(235)	100.0(409)
인공임신중절경험(1996) ²⁾	54.7(111)	45.3(92)	100.0(203)

주: 인공임신중절경험 유무는 유흥업소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1)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우리나라 재래식 매춘지역에서의 성병 및 에이즈 예방전략 개발』, 2003.

2) 한국인구학회,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1996. 채구성

가임기 여성의 생식보건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수용하는 남성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 규모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중등 및 대학교육에서 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상담 및 학교 사회사업을 강화한다.

〈표 21-10〉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생식보건수준 제고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불임	▶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득수준, 임신가능성, 연령 등 고려 ▶ 불임휴가제도 도입 ◦ 불임치료를 위하여 불임부부에게 일정기간 불임휴가 부여(무급, 경력인정 등 고려)
유사산	▶ 유사산 휴가제 도입(법제화) ◦ 임신4개월 이상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사산시 45일한도의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분담 (고용보험에서 지급) ▶ 태아검진 휴가제(월 1일 혹은 반일 무급) 도입 ◦ 임신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 부여
인공임신중절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존중운동 등 사회인식 개선 추진 등
성매매 및 성산업	▶ 성매매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 강화 및 성매매를 수용하는 남성문화 변화 모색 ▶ 보건 및 성교육관련 상담 및 학교 사회사업 강화

2.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의료적인 지원은 주로 임신·출산기와 아동성장기에 집중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으로 우선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의 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 1자녀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산전검사와 분만비용을 포함하여 자연분만시에 약 130만원(주요산전검사 90만원, 분만비용 40만원) 그리고 제왕절개시에 약 180만원(산전검사 90만원, 분만비용 80~12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녀 출산시 산전검사와 분만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임신·출산관련 건강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51)} 구체적으로 산전검사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양수검사, NST(태아안녕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융모막 검사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도록 한다.^{주52)} 이는 출생 아동의 사후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분만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피임목적의 정관 및 난관중절수술은 다자녀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유지시키되 비급여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산모들은 고령화 추이 등으로 인하여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3주 기준 1~2백만원, 산모도우미는 1백만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단체를 통해 산모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

주51) 출산관련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3년 기준 2,133억원이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국민전체 총 출산비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출산관련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2000년 2,340억원, 2001년 2,270억원, 2002년 2,027억원, 2003년 2,133억원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52) 싱가포르에서는 강제저축 방식인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서 산전후 의료비용을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취업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임산부 출산보조금'을 임신 6개월 미만 9,230엔(약 10만원), 6개월 이상 13,960엔(약 15만원), 산모에게 8,580엔(약 9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시하여 관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여성 또는 부부로 하여금 관련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가능케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 제공이 민간위주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에 관해 수요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모성 및 영유아 보건관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전산망을 통해 보건소로 출산관련 건강정보가 직접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출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생아 출산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접종 바우처 티켓을 제공하는 등 모자보건수첩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표 21-11〉 임신·출산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임신·출산비용 부담 증가	▶ 산전검사 보험급여 적용대상 추가 확대 ◦ 양수검사, NST(태아안녕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융모막 검사 등
임신·출산 조력자 부족	▶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산모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제고(※ 여성인력을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의 이중효과)
임신·출산관련 정보 및 체계적인 보건관리 부재	▶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제공 ▶ 전문민간단체를 통해 보건소에 전문인력 파견 및 주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 상담시설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확대 ▶ 인력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체계적인 모성·영유아 보건관리 추진

제 4 절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제3부에서 분석 결과, 가구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성취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직 등에의 취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이나 출산 후 직장을 떠났던 과거와는 달리, 계속 동등한 일에서 종사하면서 승진 등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출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대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보육인프라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아진다.

고소득층 맞벌이부부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수준에 보다 관심이 있다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용부담이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영유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시설에 맡기는 것이 자녀의 교육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높은 자녀교육열과도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저소득층가정에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이 출산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미혼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결혼생활 자체를 취업 등의 자아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은 고학력일수록,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특히 상용직이면서 근로시간이 길수록,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등에 종사할수록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승(취업기회, 임금 등 감소)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의 여건 내지 환경이 일과 가사(육아 등)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

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 환경은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이나 출산 등의 가족생활에 친화적이지 못하며,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 여성들에게 육아 등의 가사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부재로 남성 역시 가정에서의 육아 등 가사를 분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할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인의 가사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남편의 가사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남성은 생계책임에 전념하고 여성은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성분업적 역할이 더욱 강하게 고착화되고 있다. 결혼 또는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수준은 계속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단절을 기피하기 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계속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출생아수가 오히려 적다는 결과로 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보육·교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간접적으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은 일-가정 양립을 용이케 해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육비용 경감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영·유아보육·교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구할 때,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1.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보육·교육(공교육과 사교육) 등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원래 희망에 반하여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러한 양육비는 자녀 성장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재정을 감안하면 포괄적인 개념의 양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나 사회는 어느 특정 부분만을 감당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특정계층의 특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녀양육기간을 임신·출산부터 자녀교육까지 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녀양육 지원 방안을 크게 의료적 지원, 보육·교육 지원, 생활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보육·교육 지원

한국사회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간의 간극,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조기교육, 사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2005. 4)에 의하면, 가계가 부담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04 30.4%로 증가하고 있다(표 21-12).

〈표 21-12〉 교육비 지출 추이

(단위 : 만명, %)

교육비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교육비	93.6	92.9	91.8	90.9	89.1
• 공교육비	67.1	63.7	62.3	60.3	58.8
• 사교육비	26.6	29.2	29.4	30.6	30.4
해외교육비	6.4	7.1	8.2	9.1	10.9

자료: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05.4.1).

소득수준별 학생당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저소득층(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경우 151만원, 중하층(150~300만원 미만) 218만원, 중상층(300~450만원 미만) 308만원, 상층(450만원 이상) 435만원 등으로 추정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국내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와 함께 조기 유학의 지속적인 증가(2004년 현재 약 20만명 추산)로 인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중 부모부담은 약 70%(2003년)에 이른다.

한편, 국가가 지원하는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수준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매우 높아(3.4%), GDP 대비 총 공교육비 비중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OECD 평균 6.2%)이다(표 21-13).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동(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 포함)은 종일보육센터나 가정보육 및 유치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가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고소득층은 소득의 10-15%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등록시설이나 집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3자녀 미만 가족에게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수당을 지불한다. 한편, 등록보육사에게 고용보조금을 주며, 6세미만 자녀를 가족 외의 보육사에게 맡길 때 가족수입과 관계없이 연금납부금액, 보육자의 연금납부금과 별도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2000년 7월부터 보육지원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아동보육상환제도(Child Care Rebate)를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로 통합하여, 자녀가 1명인 가정에 주당 50시간의 보육에 대한 최대 급여액으로 \$122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1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1

구 분	(단위: %)						
	OECD평균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GDP	6.2	8.2	7.3	6.1	5.3	5.5	4.6
정부부담	4.8	4.8	5.1	4.9	4.3	4.7	3.5
학부모부담	1.4	3.4	2.3	1.3	1.0	0.8	1.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5세 이하 전체아동 중 44%(147만명)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전체 아동의 28%인 93만명, 유치원 이용아동은 16%인 54만명으로 나타난다(표 21-14). 학원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13%이며, 나머지 43%는 어떠한 시설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아시설의 낮은 희망률을 감안하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대부분은 영유아기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는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아동은 2004년 36만명에서 2005년 5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1-14〉 육아지원시설 이용 현황(2004년 연말 기준)

(단위: 개소, 만명, %)

구 분	계	육아지원시설			기타 (학원 등)	미이용
		소계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수	35,149	35,149	26,903	8,246	-	-
아동수	331	147	93	54	41	143
이용비율	(100%)	(44%)	(28%)	(16%)	(13%)	(43%)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영·유아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표 21-15 참조). 정책과제를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0~4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의 60%까지의 저소득층에 정부 보육료 단가의 100%, 80%, 60%, 30%(4개 층)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보육료·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모두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인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까지 그리고 이후 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월 3~6만원의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준을 확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자녀 이상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동생의 보육료를 현행 20%에서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셋째아와 넷째아의 경우에는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한다.

넷째, 현재 2ha 미만 농어가에 대해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만 5세아 100%)을 지원하는 것을 농지소유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농어가로 확대하며,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농어촌 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한다. 다섯째, 현재 장애아동·입양아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표 21-15〉 유아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2005년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대상자(만명)
저소득층 차등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정부 보육료단가의 100%, 80%, 60%, 30%(4개 층)	35.3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월 153천원	12.7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모든 장애아	월 299천원	10.5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월 6~3만원	36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2ha 미만 농어가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만 5세아 100%)	3.1

주: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인정액 기준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사교육비 경감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저출산 원인으로서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연계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교육비 감소만을 추구하기 이전에 과도한 경쟁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과 임금수준에서의 과도한 차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비 경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사회구조 개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저출산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몇몇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2005년 27천명)으로 학자금 연 46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으며,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소득분위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 가구에 2명이상 자녀가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주53)} 향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지원범위를 연 50만명 내에서 2자녀이상 대학(원)생 가정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출생순위별로 대학 학자금 지원 수준에 차별을 두어, 첫째아의 경우 장기저리 융자, 둘째아의 경우 장기 무이자 대출, 셋째아 경우 학비 무료 지원도 검토한다. 한편, 대학졸업 후 융자금 상환으로 인하여 결혼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장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체에서 자녀수를 제한하지 않고 종사근로자의 학비를 보조하도록 장려한다.^{주54)}

나. 소득 지원

앞선 분석 결과, 자녀양육비용 부담은 출산수준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구소득 수준은 출산수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구의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가구소득 수준의 증가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직접 또는 간접적

주5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계류('05.6.22)

주54) 일본에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사업으로 2004년 중 전년 대비 약 10만명 늘어난 96만 5천명에게 무이자 또는 유이자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정규노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경우, 가계 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4년부터 셋째 아이에게만 지급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으로는 모가 최소 2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으면 된다. 시간제 근무일 경우에는 일부만 보조되나, 부모 모두가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2,990프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 소득 지원 방안으로는 세제지원,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OECD 국가의 중산층 조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2002~2003년 대상), 우리나라는 독신근로자와 4인 가족(부부 및 자녀 2명) 근로자간의 조세부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평균 두 집단간의 조세부담률 차이는 11.9%에 이르며, 유럽이나 미주국가들에서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독일 22.4%, 미국 14.2%). 반면, 일본의 경우 두 집단간 조세부담률 차이는 3.1%로 작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무시할 수준인 0.9%에 불과하다. 즉, 자녀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극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가에서는 오히려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16〉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차이, 2002~2003

구분	OECD평균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독신자와 4인가족간 순조세부담률 격차	11.9%	0.9%	3.1%	14.2%	22.4%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정부는 최근 2004년부터 다자녀가정의 조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자녀 1인당 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공제 100만원(이전과 동일),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신설(연 120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액 100만원(이전 50만원),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액 200만원(이전 15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영유아 교육비와 6세 이하 추가공제액은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독신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키로 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부여 등 출산장려 측면의 지원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여 유자녀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 출산시 혹은 육아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출산·육아크레딧(Credit for childcare)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에서는 37.5년 가입이 완전연금수령에 필요조건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마다 2년을 연금기간에 합산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3자녀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연금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4년 이래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후생연금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조치를 자녀가 3세 도달시까지 연장하였다.^{주55)} 이외 독일에서는 3년, 스웨덴에서 4년, 오스트리아에서 4년의 보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육아의 사회화 일환으로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주어, 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최대 50개월)의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한다.^{주56)}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도록 하되,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쪽에 균분한다. 소요재원은 국고에서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표 21-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향후 재정소요 전망

(단위: 억원)

연도	2015	2020	2030	2040	2050
급여지출액	1	3	180	4,112	14,739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주55) 일본에서는 출산장려 일환으로 디스인센티브제도를 연금에 도입하고 있다. 즉, 자녀가 없는 30세 미만의 유족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급부기간을 5년간으로 제한하고, 중고령 과부에 대한 가산지급대상을 남편 사망시 현행 35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주56) 평균소득자(월 159만원)를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24만원, 3명인 경우 연 60만원 정도 인상되어, 평균수명(77세)까지 살 경우 각각 약 360만원, 약 90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지원도 소득 지원과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연간소득 5백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건강보험료(지역)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게 불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휴직시 보수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자녀가정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육아휴직시 실제 받은 보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선한다. 더 나아가서 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도록 한다.

현재 정부기관 및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가족수당을 자녀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4인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금액을 물가 등과 연동하여 책정하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에 대처하여 실질적인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효과를 발생토록 한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당의 지급형태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부모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국가의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태어난 아동들이 가구소득 등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그리고 양질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책들이 부모나 아동의 특성 또는 수요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 형평성을 기반에 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양육 부담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57)} 아동수당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자칫 다른 선택적인 급여의 보조적인 잔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단계적으로 증액시켜 부분적으로 중복적인 요소를 가진 다른 현물 또는 현금 지원들을 흡수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주58)} 그 경우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립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주59)}

경제적 곤란, 성개방 풍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부부, 미혼모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거 또는 미혼 여성이 임신

주57) 북서유럽 국가의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인구정책적 차원과 함께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88개국에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OECD(2005)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사회 양극화와 빈곤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주58) 아동수당제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출산정책으로서보다 아동 및 가족 복지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월 800유로, 3세까지 500유로 가족수당 지급되, 급여조건으로 소득, 편부모, 무주택, 다자녀 등을 고려한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는 16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약 131,700원을 지급한다. 확대아동수당은 16세 이상 중등학교 아동에게 지급하며, 추가아동수당은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에 지급되, 출생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셋째아 SEK 254/mon, 넷째아 SEK 760/mon, 다섯째 이상 SEK 950/mon씩 추가 지급). 이외 학비보조금으로 고등학교 재학 아동에 대해 1년에 10개월 동안 SEK 950/mon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 상한연령은 3세(1991), 6세(2000), 초등학교 3학년(2004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로 확대(1991년)하였다. 지급액은 첫째아 및 둘째아의 경우 월 5천엔 그리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 월 1만엔이다.

주59)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은 출산에 따른 소득보전을 통해 자녀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d'Addio, 2005). 캐나다 및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가족수당)은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아동수당제도는 자녀수나 출생순위에 차등을 두으로써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인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을 하였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낙태를 하거나, 출산 후 자녀를 해외입양 또는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또는 미혼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주60)} 미혼모 및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부부 및 혼인외자에 대한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다양한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 등을 위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주61)}

다. 의료지원

영유아 및 임신부의 의료지원은 직접적으로 의료비용 지원을 통한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건강수준을 제고시켜 향후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시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무료이나 일반병원에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둔 저소득층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1인당 최고 7백만원)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혼현상, 고령출산 등으로 미숙아는 신생아의 8%(4만여명)을 차지하는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대한신생아학회), 이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생

주60)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혼외출산비율이 높다(스웨덴 54%, 노르웨이 49%, 프랑스 39%, 영국 37%, 미국 32% 등).

주61) 일본의 경우 모자가정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2002년 11월 “모자 및 과부복지법” 개정, 2003년 7월 모자가정 모친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육아·생활 지원, 취업 지원, 양육비 확보, 경제적 지원(아동부양수당 지급) 등 모자가정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부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18세 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까지)을 양육하는 모친에게 아동 1명의 경우 월 42,370엔, 2명은 월 47,370엔, 3명이상일 경우는 1명당 월 3,000엔을 가산하여 제공하고 있다(소득제한: 2001년 기준, 수급자의 전년 연수입이 2인가구의 경우 204만8천엔 미만). 스웨덴에서는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에 대한 양육비(생계비)를 아이를 맡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월 1,173 SEK)하고 있다.

아에 대한 장애예방검사 항목(2종)이 협소하고, 1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검사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생아부터 만5세까지 아동의 필수 영양분 섭취 및 영양보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한다.^{주62)} 저소득층 미숙아 지원을 확대라고, 저체중일수록 의료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현실화한다.^{주63)}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을 현행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현행 3%에서 확대한다. 저소득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고위험 신생아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라. 주거 지원

분석 결과, 주택소유 여부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주택공급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특히 저소득층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는 큰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 소요관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무주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출산과 관계를 가진다. 하나는 주택구입 즉, 주거 안정화를 이루기 전까지 희망하는 자녀수의 출산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또는 부부의 생애경로에서 계획된 시기까지 주택구입을 완료하는 경우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계획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출산 및 자녀양육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자녀수가 많은 가정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에 비해 주거가 불안정해져 생활이 곤란해 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외국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주64)}

주62) 호주에서는 출산·예방접종수당(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방접종을 마친 생후 18~24개월 아이에게 1회 213.60AUD를 지원(2명 이상 부양자가 있다면 1명에만 지급)하고 있다.

주63)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미숙아 지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주64) 싱가포르에서는 셋째자녀 우선지원 방안(Third-Child Priority(TCP) Scheme)으로 아파트 분양

우리나라도 출산장려 차원보다는 다자녀 출산에 따라 시급해진 주거안정화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의 주거지원은 부분적으로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시 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회수, 저축총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분양시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세대에 대해 일부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취약계층(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지원 또는 기타 정책목표 실현(경제자유구역 내 무주택외국인,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등)을 위해 주택공급물량의 10%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주택공급규칙 제19조). 국민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부여제도(1인 1점, 2인 2점, 3인 이상 3점)를 실시하고 있다.

〈표 21-18〉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현황

구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일정금액이하 전세계약자 (서울 5천만원)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70%범위내 (최대 1억원)	전세보증금의 70%범위내 (최대 6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2년만기	2년만기
대출이자	5.2%	5%	3%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시 셋째자녀가 있는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TCP 신청자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의 5%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만약 다른 TPC신청자들과의 1차 추첨에서 5%내에 들지 못하더라도 2차로 일반 신청자와 재추첨을 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월 급여 싱가포르 \$8,000 이하) 미혼시민에게 아파트구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위 지원금에 덧붙여 top-up방식의 부가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영주택의 입주 전형에서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이 3명이상 있는 세대에 우선권 부여, 특정우량임대주택에서 동거친족이 많은 사람, 그 외 특히 거주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모,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위 관점에서 우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정을 국민주택 등 일정비율(건설량의 10%) 특별공급대상에 포함한다. 그 후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현행의 국민주택규모 뿐만 아니라 전 평형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검토가 요구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표 21-19〉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보육교육비용 부담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0~4세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단계적 현실화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 연차적 확대 지원 ◦ 두자녀 이상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동·입양아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무상 지원(※장애인복지 확충 및 입양활성화 동시 도모) ◦ 유아학원 이용아동에 대한 수강료 지원(부모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보육적 기능 등 기준을 갖춘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에 대한 수강료 지원) ▶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지원범위 내에서 2자녀이상 대학(원)생 가정의 학자금대출 이용 확대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04.2.17~) -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원 ◦ 방과후교실 등에서 예체능교육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소득부족 및 자녀양육비용 부담	▶ 출산·자녀관련 세제지원 ◦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독신보다는 결혼 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 지원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여부가 결정되면,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부여 등 출산장려 측면의 지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Credit) 제도 도입 ◦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적 적용,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도록 하되,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쪽에 균분 ▶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 육아휴직시 실제 받은 보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선 ▶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기준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방안 ◦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자립 교육 등 지원 확대
의료비용 부담	▶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 저소득층 미숙아 지원 단계적 확대 및 지원수준 제고 ▶ 저소득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실시 ▶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 확대 및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현재 시행중인 국가 예방접종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평가, 일반 병·의원 확대 검토 ▶ 미숙아 등 건강상태관리가 요구되는 신생아 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 캠페인 및 ‘엄마와 아기가 같이 쓰는 병실’ 확충 등을 통한 모유수유율 제고
주거 불안정 및 질적 수준 미흡	▶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가점 부여 ◦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융자시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2. 일-가정 양립 지원

가. 육아관련 휴가제도 개선

1) 산전후휴가제도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여성의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가제도(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휴가기간과 급여수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우선 출산휴가(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프랑스의 경우 모든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유급출산휴가를 강제적(의무화)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귀 후 직장이 보존되도록 하고 있다. 주된 특징으로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부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수록 휴가 기간이 늘어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수혜 조건으로는 산전 3개월 동안 최소 200시간 이상 고용 경력이 있어야 하고, 산전 최소 10개월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급여내용은 둘째아까지 16주(산전 6주 포함) 동안 소득의 84%에 상당하는 급여와 산후 수당을 제공하며, 셋째아의 경우 26주(산전 8주 포함) 그리고 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34주(산전휴가 12주 포함)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주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리고 쌍둥이는 34주(산전휴가 12주), 세쌍둥이 이상 다태이는 42주(산전 24주) 휴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 일을 할 수 없는 임산부들에게 최대 50일까지 통상 임금의 80%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간(다태아 임신인 경우 14주), 출산 후 8주간(산후 6주를 경과한 여성이 취업신청을 하고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업무에는 산후 6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기본급의 60%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출산 후 휴가 8주 중 6주는 강제적이다. 산전후휴가수당(휴가기간 중의 소득보장)으로 피고용자인 피보험자가 분만한 경우에 출산육아일시금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 전에는 임부의 정기검진, 양친학교프로그램 참가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부친출산휴가로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인이 출산한 당일과

그 다음날, 퇴원 전후 5일간 휴가를 부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휴직 기간 및 휴직 후 1자녀에 대해 14일, 다수의 자녀에 대해 21일까지 유급부친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부의 출산휴가(Dad's days)로 출산이후 60일 이내에 10일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20〉 선진국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국 가	도입시기	휴가기간	휴가급여(임금대비)
영 국	1948	26주	92% ~ 104%
프 랑 스	1928	16 ~ 24주	100%(2,432euro/월)
독 일	1979	14주	100%
일 본	1980	14주	60%
스 웨 덴	1974	420일	80%
네덜란드	1976	16주	100%(최고한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로 이 중 기업주가 60일분 급여를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30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출산휴가 급여 중 2/3를 사업주가 부담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기피로 오히려 이용률이 낮거나 여성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전후 휴가 급여체계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 등은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산전후휴가급여는 전체 출산 여성의 약 8%(49만명 중 4만명)만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21-21〉 우리나라 출산휴가 이용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상	23	32	39
예산	226	335	416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모성보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ILO협약에서도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자 출산휴가급여(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 실시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우선 시행하며, 그 이후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주65)}父에게도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자녀를 둔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참고로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에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도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휴직기간과 급여수준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는 1985년에 입법화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1994년에 확대되었다. 급여조건으로 육아휴직제도 사용 이전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 고용된 경력이 있는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 1994년 이래 양 부모의 동시 휴직 또는 연속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휴직기간은 자녀가 3세에 이를 때까지 최장 3년간이며, 자녀가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휴직수당으로 첫째아에 대해서는 무급이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액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휴직형태로 전일휴직 또는 주당 16~32시간의 시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휴가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제공된다. 물론 육아휴직 후, 이전 또는 유사한 일에 복귀가 보장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휴직 전 임금과 연동하여 유급 390일(정률제)과 90일(정액제 보험급부)을 제공하고 있다. 휴직기간은 희망에 따라 부와 모간 분리

주65)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05. 5. 31 공포)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기업이 포함된다.

가 가능하다. 부성휴직기간은 1995년 30일(daddy month)이었으나, 2002년 이래 60일이 배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즉, 480일 휴직기간을 부모가 240일씩 똑같이 나눌 수 있고, 180일까지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60일은 부(父)가 사용하도록 강제성이 부여되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가 현금급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녀가 8세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탄력적 이용이 가능하다. 첫째아 출산후 1~2년 간격으로 추가출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 480일 모두 유급으로 제공되는데, 390일은 임금의 80% 수준, 추가 90일 동안에 대해서는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1일 60SEK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부모의 임금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일 180 SEK를 보장해 주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 지급은 1974년 제도도입 이후 3%에서 2004년 18.7%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육아·개호휴직법에 의거하여,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신엔젤플랜(2004)에서는 육아휴직 취득을 목표를 여성 80%, 남성 10%로 책정하기도 하고 있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1991년부터 법제화되었다. 2004년부터 자녀가 1세를 초과하여도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동연령 기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자녀 2명의 육아에 6년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기간까지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부(1995년부터 고용보험법 제61조)는 휴직 전 임금의 총 40%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육아휴직기본급부금(휴직전 임금의 30% 상당액)과 직장복귀 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자직장복귀금(휴직전 임금의 10% 상당액)으로 구성된다. 이외 육아휴직기간 중 연금 및 건강보험 등 피고용자보험의 보험료가 면제되며(건강보험법 제71조), 고용보장, 불이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로 월 40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월 10~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제도 도입초기보다는 다소 증가했으나 육아휴직수당이 비현실적이고 직장복귀 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2004년 말 현재 산전후휴가 대비 이용률은 약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조한 육아휴직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에게 부분근무(파트타임)제도와 대체인력뱅크제를 도입하였다. 부분근무제도는 일부시간(주당 15~32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22〉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대상	3.7(출산휴가자의 17%)	6.8(21%)	9.3(24%)
예산	31	106	208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현행 월 4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임금대체수준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하여 가계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연차적 증액하도록 한다. 또는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한 정률제와 정액제를 절충하여 휴직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40만원 미만인 경우 40만원을 지급하며, 상한선을 정하여 그 금액이상인 경우 상한금액을 제공한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영유아 성장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으로 자녀연령을 만3세에서 만 5세로 상향조정하며,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시키고, 육아휴직장려

금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지도감독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중점 홍보한다. 우수한 활용사례 등을 사업장에 전파하여, 파급효과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산하도록 한다.

나. 탄력적 근무제 도입

일-가정 양립을 용이케 하는 제도로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무제는 많은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즉, 1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가 계속 취업하면서 자녀 양육이 용이하도록 육아·개호휴직법에 의거하여 부문육아휴직제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부문육아휴직제도의 형태로는 단시간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근제, 일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탁아시설 운영 등 편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력적 근무제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2.3%에 불과하며, 그 중 금융업(7.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근로기준협회, 2004).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5년 초부터 시차출퇴근제가 15개 부처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이용률은 14%(1,392명)에 불과하며, 재택근무제는 특허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탄력적 근무제와 관련한 정책과제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활성화를 통한 확대가 필요하며, 그 후에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직장으로는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서 작업 특성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

문의 운영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양질의 탄력적 근무제(파트타임 근로모델)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육아휴직제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해서 마치는 1일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탁아형태, 통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가사(육아포함)와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가 높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44세 유배우부인 중 ‘2자녀이상+시간제’(54.2%)와 ‘1자녀+시간제’(10.0%)를 선호하는 비중이 총 65% 수준으로 높다. 미혼여성(20~44세)도 47%가 ‘2자녀이상+시간제’(36.3%)와 ‘1자녀+시간제’의 파트타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좋은 처우, 장기적인 고용보장,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이 전제된 양질의 파트타임모델 개발 및 활성화가 중요하다.

〈표 21-23〉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단위: %, 명)

연령	무자녀 + 전일제	무자녀 + 시간제	무자녀 + 비취업	1자녀 + 전일제	1자녀 + 시간제	1자녀 + 비취업	2자녀 이상 + 전일제	2자녀 이상 + 시간제	2자녀 이상 + 비취업	계(사례수)
유배우부인	2.1	0.5	0.1	6.0	10.0	0.9	11.2	54.2	15.1	100.0(3,566)
20~29세	2.5	0.4	0.0	6.8	11.9	1.6	11.5	46.7	18.5	100.0(501)
30~34세	1.9	0.6	0.1	6.5	10.9	0.8	10.5	52.0	16.8	100.0(1,005)
35~39세	2.6	0.4	0.1	5.3	9.2	0.9	10.8	57.2	13.5	100.0(1,103)
40~44세	1.2	0.7	0.1	5.9	8.9	0.6	12.2	57.3	13.1	100.0(958)
미혼여성	2.9	0.6	0.4	10.3	10.3	1.8	21.1	36.3	16.3	100.0(1,459)
20~29세	2.8	0.3	0.1	12.5	10.7	1.6	22.4	37.0	12.5	100.0(1,016)
30~44세	3.7	0.5	0	13.8	14.4	1.1	14.4	43.1	9.0	100.0(188)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 출산 및 양육 후 여성의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M-curve)현상과 대졸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후 재진입포기(L-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출산·육아부담의 상존, 특히 2세미만 영아보육 부담의 영향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동현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여, 자아성취나 생업을 위해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 포기 또는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및 자녀양육 후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직장복귀)하는 것은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한 장애요인들로는 6~7년 동안(2자녀 출산 및 양육시 예상되는 기간) 지식과 기술 등의 낙후, 시장에서의 차별 존재, 재취업시 지위의 현저한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용이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양질의 파트타임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귀(재취업)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 등에서 자녀양육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고용에 대한 차별관행 철폐와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주66)}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

주66) 일본에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2003년 7월 제정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i) 3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은 종업원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자체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시 벌칙은 없으나, 계획 승인시 아동-친화 고용주(child-friendly employer)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마크를 생산품이나 광고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지방노동사무소에서 평가, 유효기간 2~5년). ii)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일과 육아의 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환경정비 행동계획 수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환경 정비에 임하는

극적 참여가 관건이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외국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바 있다(인증마크제: 일본, 미국, 영국 등, 재정지원: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결혼·출산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록 한다. 인센티브로는 포상, 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 인증마크제 도입,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복지사업 우선순위 부여,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안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초과근무 축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가정간의 양립을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욕구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이 부족하여, 남녀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정생활을 희생하는 경향이 높다. 노동부에서 조사한 『2004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달 평균 정상근로시간은 183.7시간이며, 초과근로시간은 18.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41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표 21-24).

이와 같은 장시간의 근무조건 하에서 남녀근로자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희망하는 자녀수

사업체에게는 육아휴업취득촉진장려금, 육아휴업대체요원확보등조성금, 육아·개호휴업자 직장복귀프로그램실시장려금, 육아양립지원장려금, 사업소내탁아시설조성금, 육아·개호비용조성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행조치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경험자의 상담 및 정보제공, 3세미만 자녀양육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육아참가 프로그램 실시, 복직시 업무 연수, 육아휴업 취득율의 목표치 설정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초과근무 축소(정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이 많은 부서를 인사당국이 파악하여 관리·감독, 초과근무 상한설정 등), 휴가취득의 촉진(자녀예방접종일과 수검참관일에 연차휴가 촉진, 직원 1인당 연차휴가 취득일수를 전년도 대비 100% 증가, 휴가제도를 이용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전근 및 사원주택 대여에 있어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우선 배려, 직장우선의 환경 및 고정적인 성별 역할분담의식 등의 시정을 위한 시행방침 수립(파트너십의 날 설치, 여성 관리자 및 감독자에 의한 커리어 상담원 설치, 신엔젤플랜에서 소학교 취학전 근무시간단축률 25% 책정) 등이다.

싱가포르에서는 WoW Fund(Work-life Works!)를 조성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을 개발한 회사와 비영리 조직은 WoW fund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정부의 감사를 받는다.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1달러 투자시,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통해 생기는 수익이 1.68달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가정일에 전념한다면, 남성 홀로 생계유지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생계유지를 위해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녀출산은 포기되거나 축소될 것임은 자명한 결과이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장시간의 초과근무가 축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초과근무 상한을 설정하여 정시퇴근이 불가능 직원들이 많은 부서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21-24〉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순위	국가명	연간근로시간
1	한국	2,390
2	체코	1,972
3	폴란드	1,956
4	그리스	1,938
5	멕시코	1,857
6	호주	1,814
7	슬로바키아	1,814
8	뉴질랜드	1,813
9	일본	1,801
10	스페인	1,800

자료: OECD FACTBOOK 2005-Actual Hours Worked, 2005.

결혼 및 자녀양육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고용확대·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여성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저부가가치서비스업 중심의 취업 및 비정규직화 등으로 임금 및 안정성이 낮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남녀간의 임금비율(남성=100)을 보면, 한국은 64.2(2003)로 스웨덴 82(2000), 영국 81.6(2002), 미국 76.0(2000), 일본 65.3(2001), 기타 EU 국가 75 등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취업에 대해 폐쇄적이며,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양육을 직장일과 병행하는 것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즉, 여성에 대한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출산·양육과 일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스페인 등 전통적인 가톨릭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불리한 환경으로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이 동시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서 출산율과 취업률 모두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여성의 고용확대·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일정규모(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우수기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한다(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고용평등평가센터는 참여기업과 network를 구축하여 지역·규모·업종·직종별 여성인력 통계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한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평가센터에는 AA 전문가, 통계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을 유치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한다.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1.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의 사용(3년간)
2.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예방점검) 면제
3.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1.5점) 부여
4. 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5~10점) 부여
5.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장학사업,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 ※ 장학사업: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3개월이상 근무)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지원
 - ※ 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 복지시설 설치·구입시 1억원한도 융자
6.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기업이미지 제고
7.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반영
 - ※ 기타 관계부처와 우대방안 지속 협의 추진중

〈표 21-25〉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직장일과 병행 곤란	▶ 산전후휴가제도 개선 ◦ 근로자 출산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제도 도입 검토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육아휴직장려금 단가 인상 ◦ 육아휴직 관련제도 지도감독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 ◦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만3세→만 5세) 및 기간(1년→3년) 연장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강제 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중점 홍보, 우수사례 전파 등)
직장일과 병행 곤란	▶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형태 도입(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 공공부문부터 우선 확대한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으로서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 ◦ 공공부문의 운영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사업장에 전파 및 홍보 ▶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 및 보급 ◦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또는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양질(적정임금, 장기고용보장, 적합한 근로조건 등)의 파트타임 모델개발 및 활성화 ◦ 단시간 일자리를 통해 여성고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체계 등 단시간 일자리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개발(보육, 파트타임 일자리 알선 네트워크 구성·운영)
가부장적 및 가족비 친화적 고용문화	▶ 여성고용확대·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일정규모(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근로자현황 및 고용평등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고용평등평가센터 설치·운영 ◦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등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정부·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기업 1직장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기업 대상 1사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각급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 - 결혼한 군인에 대한 군복무 여건 개선 : 부부군인 동일지역 보직, 배우자 출산시 장병휴가 부여, 다자녀가정에 군속소 입주평형 상향 등 ◦ 가사·자녀양육 공동참여를 위한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시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가.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59.2%로 민간시설(29.3%), 비영리법인시설(6.9%)에 비하여 높으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실제 이용률은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10.9%에 불과할 실정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처럼 국공립시설 선호이유는 저렴한 비용(54.1%)과 신뢰(43.1%)가 대부분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대기아동 비율이 정원의 73%로, 사회복지법인시설(8.4%) 및 민간시설(3.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2005년 현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사업주는 재정 및 시설 운영 부담 등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행률은 33.1%에 불과하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직장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시간 보육이 가능하여 선호가 높으나, 아동 동반 출근의 문제 등으로 실제 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표 21-26〉 보육시설 수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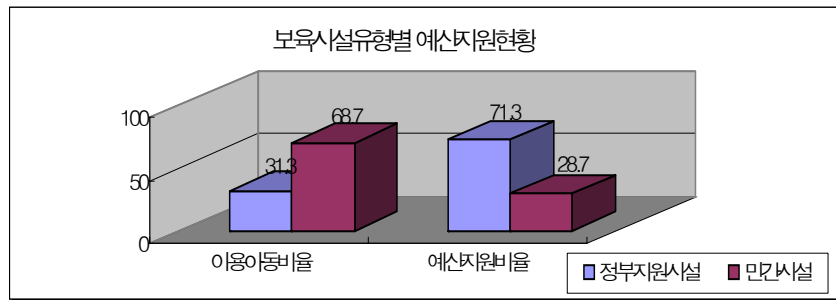
구 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직장	가정
시설수(개소)	28,040	1,352	2,527	12,701	251	11,209
(%)	(100)	(4.8)	(9.1)	(45.3)	(0.9)	(40.0)
아동수(명)	972,391	106,443	185,413	540,588	12,571	127,430
(%)	(100)	(10.9)	(19.1)	(55.6)	(1.3)	(13.1)

자료 : 보육통계('05.6), 여성부

육아지원서비스는 양육책임의 사회화, 미래 자원 육성 등의 목적에 비추어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이나,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큰 실정이다. 2005년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8.7%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이용아동

의 46.7%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국공립 시설과 비영리법인 시설에 치중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과 부모부담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육아지원시설의 보육환경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흡하다.

[그림 21-1] 보육시설 유형별 예산지원 현황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005.

따라서 우선 양적으로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확충하도록 한다. 현재 저출산 추이가 계속된다면, 가임여성인구 규모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확충은 영·유아인구 규모의 변동추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육아지원시설 이용 아동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특성별로 수급이 불균형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이용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및 아동의 연령별로 육아지원시설 수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2004년 유아교육·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확충계획(여성가족부, 2005)에 의하면, 영아시설(0~2세 아동 대상)은 207개 시군구에서 137천명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유아시설(3~5세 아동 대상)은 63개 시군구에서 79천명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 중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간의 균형배치를 고려하여, 추가시설의 50% 이상을 국공립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국공립 육아지원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인구저망에 따른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공급한다. 예를 들어,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에 육아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소요된 개·보수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병설 육아지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통합육아지원시설로 운영한다. 이들 국공립시설은 지역사회 거점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국공립시설을 육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육아정보 및 부모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민간시설에 대한 모델이 되도록 한다.

농어촌 취약지역에서의 육아지원시설 확충은 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설확충 방안으로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육아지원시설로 이용하고, 개·보수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에 영아보육 또는 방과후 보육·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육아지원시설로 운영한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공립유치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차량 지원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4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시설은 전체 시설의 2.8%(약 670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별·규모별로 보육시설 설치현황, 운영실태, 거주자의 이용실태 등 파악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0세대이상에서 3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외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장기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및 재건축시 육아지원시설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임대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육아지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재 열악한 민간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시설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으로 표준보육비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부모의 보육료를 일원화하여, 부모의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의 분화 및 다양화, 소비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부부의 근로형태가 다양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해지고 있다. 부모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주67)}

첫째, 취업모의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안전장비 설치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육아지원시설 중 일부를 시간제 보육시설·유치원으로 지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로 추

주67) 일본의 다양한 자녀보육지원사업 계획: 자녀양육종합지원사업(다양한 자녀양육서비스 정보를 파악하여 개별 가정에 제공), ‘화합광장’사업(영유아 부모대상 육아상담 장소제공),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출산 후 가정에 자녀양육경험자나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 원조), 육아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가정이나 산후 질병 등 복잡한 가정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사, 조산사, 보육사, 아동지도원 등에 의해 특수한 육아지원에 관한 방법을 강구), 방문형 일시보육사업(보호자의 질병, 입원 등으로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자택에 보육사를 파견해 보육서비스 제공), 단기보호사업(보육시설에 7일 이내의 단기간 거처하면서 보육서비스 제공받음), 특정보육사업(파트타임 보호자를 위해 3세 미만아를 대상으로 주 2~3일 또는 오전, 오후 등 유연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조금 등 1,492백만엔), 패밀리서포트센터(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대해 보육 및 돌봄서비스 등 상호원조 활동 지원), 가정보육사업(보호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정에서 보육이 어려운 0~3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육자의 거처에서 24시간 보육 제공), 환자 보육사업(질병으로 인한 병후회복기에 질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아동을 보육소와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보조금 등 1,098백만엔), 야간·주말보육(보호자의 귀가가 늦거나 휴일근무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 및 저녁식사 제공).

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성(중고령자)육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운영원칙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시켜, 종일제 유치원을 확대한다. 종일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과 연계, 육아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도우미 이용기간을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 기간과 동일 수준으로 연장(도우미 활용 1일 3만원) 한다.

넷째,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장애아동 방과후 무상보육을 확대한다.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조기진단대상 장애 영·유아 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장애 영·유아 발견, 정보 관리 및 가족 상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녀 출산 후 영아를 둔 취업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5.5%에 이르고 있다(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첫째아 23.3%, 둘째아 39.9%). 또한, 영아의 단기 보육충족률은 60.4%로 유아(88.1%)에 비해 현격히 낮다(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따라서 영아보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 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의무설치 사업장 227개소 중 보육수당 제공 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100개소(44.1%)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공단주변 등에 1995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건립·운영 중('04년 현재 21개소, 3개소 건립 중)이나, 아동동반 출근 곤란 등 시설 이용의 어려움, 공급자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2004년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지원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 파악을 통해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를 파악하

여 기관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직장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유지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직장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다.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부모 특히 취업여성들의 육아부담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다. 현재 학습 보충의 목적 또는 방과후 가정 내 보호 곤란 등의 이유로 방과후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귀가후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71.6%, 고학년의 6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시설활용 어려움 등으로 2005년 현재 681개교 (8,500명 해당)에 불과하고(전체 초등학교 5,542교 중 12%), 보육시설은 취약보육 형태로 소극적으로 운영(259개소, 20,000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68)} 이를 위해, 전담교사 및 보조인력 규모와 자격요건, 특기·적성교육과의 연계운영 등 방과후 교실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주68) 스웨덴에서 6~12세 학령기 아동은 자격을 갖춘 교사(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아동보육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과후교실(after-school center)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문화활동, 자연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와 작업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학교 교과를 벗어나 휴식과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교실은 수업 전·후 및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으며, 부모는 매달 방과후 보육 비용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개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수업 종료 후 아동관, 학교 여유 교실 등을 이용해 방과후 아동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놀이 및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라. 지역아동센터 확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간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망 구축 필요하다. 특히, 빈곤·결손아동, 가족과 학교로부터 이탈하여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 형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지방 청소년상담센터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내·외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개별기관의 프로그램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의 중복·누락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하되, 이중 일부는 위기아동지원형, 탈학교 아동·청소년 중심형 등 소외아동에 특화된 특수목적형 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27〉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저출산원인	정책대안
육아인프라의 양적 부족 및 질적수준 미흡, 접근성 제약 등	▶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의 표준보육비용을 산정, 단계적 적용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 ◦ 육아지원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연차별 시행 ◦ 국공립시설 비율 연차적 확대 ▶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다양한 방안 도입 및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국공립 육아지원시설 확충 - 기존 공공건물 사용시 개보수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시설 신축보다 기존시설 활용 - 지자체 건축비 부담 완화를 위해 BTL 방식 활용 유도 -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하여 국공립 시설로 운영 ◦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운영 ◦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시설 우선 확충 ◦ 어린이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 공동주택 보육시설 확충 ◦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별·규모별 보육시설 설치

저출산원인	정책대안
	◦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을 장기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 국민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임대 배정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육·육아서비스 부재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 ▶ 가정보육 활성화 ◦ 0세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및 영아반운영비를 기본보조금 도입 등에 따라 현실화 및 가정보육시설 설치규모의 소규모화 ◦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꺼리는 부모를 위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아동안전측면 고려하여 관리방안 구체화 후 도입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육아도우미 파견제도 도입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지원 현황에 대한 관리·평가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비용 부담 완화 ◦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직장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 ◦ 방과후 교실(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확충 ▶ 방과후 전담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 확충 ▶ 저소득층위주에서 이용대상자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능 재정비

제 2 2 장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고 해도, 그 대상이 되는 집단들의 인식도와 수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저출산 관련 대응방안들에 대한 가임기 남녀들의 태도와 선호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입안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가임기 남녀들의 저출산관련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가 이용되었다.

제1절 저출산관련 태도

기혼여성(20~44세)과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관련 태도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임기 남녀들이 저출산 현상을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주체에 관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직장이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임기 남녀들의 태도를 살펴본다. 끝으로 국가가 세금을 이용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가임기 남녀들의 태도를 살펴본다.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태도는 <표 22-1>과 같다. 기혼여성 중 80.9%가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혼남성의 75.2% 그리고 미혼여성의 78.7%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각 집단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 정도는 기혼여성, 미혼여성, 미혼남성의 순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 현 가임세대의 상당수가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2-1〉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2005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모르 겠음	계(명)
기혼여성	33.3	47.6	15.2	0.6	3.3	100.0 (3,800)
미혼남성	24.6	50.6	17.1	1.8	5.9	100.0 (1,465)
미혼여성	20.9	57.8	15.0	0.3	6.1	100.0 (1,20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다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국가가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기혼여성(97.8%)과 미혼여성(98.7%) 및 미혼남성(96.5%)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표 22-2). 특히, 미혼여성 중 매우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46.2%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태도와 비교된다. 즉,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약 80% 수준이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응답자들도 저출산 관점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2-2〉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5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 겠음	계 (명)
기혼여성	38.6	59.2	1.5	0.1	0.5	100.0 (3,799)
미혼남성	36.7	59.8	2.0	0.3	1.2	100.0 (1,464)
미혼여성	46.2	52.5	0.6	0.3	0.4	100.0 (1,2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국가가 세금으로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기혼여성의 83.6%, 미

혼남성의 87.3%, 그리고 미혼여성의 88.0%가 찬성하고 있다(표 22-3). 조세에 의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 기혼여성의 15.4%, 미혼남성의 11.1%, 미혼여성의 10.6% 반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세부담에 의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 태도를 감안하면, 조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제원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3〉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세금을 이용한 국가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 2005

(단위: %,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기혼여성	38.6	45.0	13.7	1.7	1.1	100.0(3,800)
미혼남성	36.5	50.8	9.5	1.6	1.5	100.0 (1,464)
미혼여성	35.3	52.7	9.3	1.3	1.3	100.0 (1,2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직장(기업 등)에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기혼여성(98.1%), 미혼남성(95.3%) 및 미혼여성(98.1%)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매우 찬성”의 비율을 감안하면, 미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의 지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미혼여성 중 상당수가 취업 중임을 감안하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2-4〉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태도, 2005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기혼여성	33.0	65.1	1.2	0.2	0.5	100.0 (3,800)
미혼남성	26.0	69.3	3.0	0.6	1.1	100.0 (1,463)
미혼여성	39.5	58.6	0.9	0.2	0.7	100.0 (1,20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2 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이 절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들에 대한 가임기 인구(20~44세 기혼여성, 20~44세 미혼남녀)의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방안들은 세분화하기보다 저출산 원인들에 대응하는 영역별로 구분한다. 그러한 영역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지원 인프라(시설·서비스) 지원, 자녀양육(교육)비용 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실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세부적으로 산전후 및 육아 휴가 제공, 자녀간호 휴가 제공, 부성휴가 제공, 여성의 탄력적 근무시간, 남성의 탄력적 근무시간,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등을 포함한다. 육아지원 인프라(시설·서비스) 지원은 세부적으로 육아지원시설 확충, 방과후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다. 자녀양육(교육)비용 지원은 세부적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지원, 아동양육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세금공제, 다자녀가정 학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임신·출산 지원은 세부적으로 임신·출산 비용 지원, 불임부부 치료 지원, 태아·임산부 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들 세부 정책방안들에 대한 가임기 인구의 선호도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인구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등은 저출산 대책들로 중요하나, 선호대상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정책선호도에 대한 분석은 우선 기혼여성과 미혼남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혼여성의 정책선호도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조만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거나 예견되는 장애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욕구로 간주될 수 있다. 미혼남녀의 정책선호도는 향후 결혼 후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지원들로 간주될 것이다. 한편, 정책선호도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모든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정책수요자의 특성으로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 경제활동상태, 자녀수, 가구소득 등 그리고 미혼남녀의 경우 성, 연령, 경제활동상태가 포함된다.

1. 연령별 정책선호도

기혼여성(20~44세)의 정책선호도는 자녀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22-5).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26%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9세에서 24.0%로 나타난다. 20~24세나 30~34세 연령층에서 동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25~29세 기혼여성들은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35세 이상 고연령층 여성들은 미취학 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일과의 양립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25~29세 22.3%, 30~34세 19.9% 등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의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이들 여성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임신·출산관련 지원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24세 저연령층에서 동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25.3%로 자녀양육비용 지원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다.

〈표 22-5〉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양육(교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24.6	16.9	35.5	13.6	2.4	100.0 (3,799)
20~24세	19.7	19.7	39.4	25.3	1.4	100.0 (71)
25~29세	24.0	22.3	32.4	20.0	2.0	100.0 (445)
30~34세	21.8	19.9	36.6	13.0	1.9	100.0 (1,044)
35~39세	26.2	13.2	33.5	11.5	1.5	100.0 (1,172)
40~44세	26.2	15.4	37.6	13.1	4.2	100.0 (1,07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미혼남녀(20~44세)의 출산·양육관련 사회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기혼여성보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22-6). 우선 미혼여성(20~44세)의 선호도를 살펴 보면, 자녀양육비용 지원(24.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19.6%), 임신·출산관련 지원(18.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5.7%) 순이다. 이러한 선호도 패턴은 모근 연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고연령층에서,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기혼 여성과 미혼여성간의 선호도 차이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연령이 비교적 높은 미혼여성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결혼을 연기했을 개연성이 크며, 이에 따라 향후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6〉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양육(교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미혼남성	21.9	12.3	32.9	25.5	1.5	100.0 (1,457)
20~24세	24.0	11.2	31.3	26.2	2.0	100.0 (562)
25~29세	21.7	13.1	32.5	27.3	1.3	100.0 (480)
30~34세	20.4	12.2	35.5	20.0	0.7	100.0 (270)
35~39세	16.2	13.5	34.2	30.6	0.9	100.0 (111)
40~44세	20.6	15.4	38.5	20.5	5.1	100.0 (39)
미혼여성	19.6	5.7	24.4	18.2	1.2	100.0 (2,203)
20~24세	19.5	5.0	23.4	21.2	0.8	100.0 (655)
25~29세	17.9	6.3	26.4	13.8	1.1	100.0 (364)
30~34세	20.8	6.2	24.7	18.5	3.1	100.0 (130)
35~39세	27.8	11.1	22.3	13.9	5.6	100.0 (36)
40~44세	23.8	4.8	19.1	14.3	-	100.0 (2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자녀수별 정책선호도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정책선호도는 <표 22-7>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그 비중은 고연령층일수록 높다. 예를 들어, 3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무려 51.6%로 나타난다. 이는 자녀수에 비례하여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 당시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25.1%가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다른 정책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자녀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1자녀 또는 2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임신·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무자녀 여성들은 임신·출산관련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초산을 앞두고 있거나 불임문제를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다음으로 많이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표 22-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양육(교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24.6	23.9	36.0	13.7	1.8	100.0 (3,796)
무자녀	24.4	19.9	25.1	29.5	1.1	100.0 (271)
1자녀	24.8	24.8	30.7	17.3	2.4	100.0 (791)
2자녀	26.2	24.8	36.3	11.2	1.6	100.0 (2,317)
3자녀 이상	16.1	19.7	51.6	10.1	2.6	100.0 (417)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한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정책 선호도는 <표 22-8>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주된 특징은 향후 추가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4세 기혼여성의 정책선호도는 자녀양육비용 지원에서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책영역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영역들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둔 35세 이상 기혼여성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다음으로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표 22-8〉 무자녀 또는 1자녀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자녀양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24.8	23.4	29.4	20.3	2.1	100.0 (1,062)
20~24세	21.3	14.8	36.1	27.9	-	100.0 (61)
25~29세	24.1	23.7	27.5	23.7	1.0	100.0 (295)
30~34세	25.3	23.4	28.6	20.3	2.5	100.0 (364)
35~39세	26.9	30.1	25.8	15.1	2.2	100.0 (186)
40~44세	23.7	18.6	36.5	17.3	3.8	100.0 (156)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표 22-9>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여성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임신·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30~34세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보다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

〈표 22-9〉 2자녀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자녀양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26.2	24.8	36.2	11.2	1.6	100.0 (2,318)
20~24세	-	12.5	62.5	12.5	12.5	100.0 (8)
25~29세	23.2	17.4	45.7	12.3	1.4	100.0 (138)
30~34세	21.7	29.6	38.4	9.5	0.8	100.0 (591)
35~39세	28.3	27.5	32.2	11.3	0.6	100.0 (829)
40~44세	28.2	19.7	36.9	12.2	3.1	100.0 (753)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경제활동상태별 정책선호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정책 선호도는 <표 22-10>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27.2%)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3.9%)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22.2%로 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자녀가 없거나 1자녀만을 둔 취업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30.3%)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자녀수를 두고 있는 비취업여성의 19.5%보다 월등히 높다. 한편, 무자녀 또는 1자녀 비취업여성은 자녀양육비용 지원(30.3%)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4.4%), 임신·출산관련 지원(23.5%)을 선호하고 있다.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인프라 지원 순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 중인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10>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자녀양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24.6	23.9	36.0	13.7	1.8	100.0 (3,799)
취업	27.2	23.8	35.2	12.0	1.8	100.0 (1,848)
비취업	22.2	23.9	36.8	15.3	1.8	100.0 (1,951)
1자녀 이하	24.7	23.4	29.4	20.4	2.1	100.0 (1,062)
취업	30.3	22.4	28.3	17.1	1.8	100.0 (508)
비취업	19.5	24.4	30.3	23.5	2.3	100.0 (554)
2자녀	26.2	24.8	36.3	11.2	1.6	100.0 (2,320)
취업	27.1	25.6	35.8	9.9	1.7	100.0 (1,145)
비취업	25.3	24.1	36.7	12.5	1.4	100.0 (1,175)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향후 결혼 및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혼남녀(20~44세)들의 자녀 출산·양육관련 정책선호도를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기혼여성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22-11). 우선 미혼여성들은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 임신·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취업여부별로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현재 재학 중인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취업여성, 취업여성 순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장래 취업을 앞두고 있고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취업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별 정책 선호도는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22-11〉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자녀양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미혼남성	21.8	18.2	32.9	25.5	1.5	100.0 (1,461)
취업	20.0	19.0	33.1	26.5	1.4	100.0 (843)
비취업	19.6	19.2	31.7	28.3	1.3	100.0 (240)
학생	27.2	15.9	33.3	21.7	1.9	100.0 (378)
미혼여성	39.8	16.3	24.9	18.2	0.8	100.0 (1,206)
취업	38.5	16.5	25.6	18.9	0.4	100.0 (745)
비취업	39.3	18.5	25.1	15.6	1.4	100.0 (211)
학생	44.0	13.6	22.4	18.4	1.6	100.0 (25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4. 가구소득 수준별 정책선호도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로 정책선호도는 <표 22-12>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비용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낮고,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난다.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50% 미만 계층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50% 이상 계층에서 높으며, 100% 미만 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소득계층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50% 미만 소득계층은 자녀양육비용 지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임신·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 고소득층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양육비용 지원, 임신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자녀수를 1자녀 이하, 2자녀로 통제한 후에도 소득계층별 정책선호도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22-12〉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지원 선호도, 2005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자녀양육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가구	24.7	23.8	36.1	13.5	1.8	100.0 (3,764)
100% 미만	21.2	20.3	41.4	15.0	2.1	100.0 (2,195)
100~150% 미만	30.4	25.7	30.4	12.1	1.4	100.0 (1,043)
150% 이상	27.9	35.0	25.3	10.3	1.5	100.0 (526)
1자녀 이하 가구	24.9	23.6	29.3	20.2	2.0	100.0 (1,053)
100% 미만	20.8	20.8	33.4	22.6	2.4	100.0 (629)
100~150% 미만	31.4	23.8	24.8	18.3	1.7	100.0 (290)
150% 이상	29.9	35.8	20.1	13.4	0.7	100.0 (134)
2자녀 가구	26.1	24.8	36.4	11.1	1.5	100.0 (2,301)
100% 미만	23.3	20.8	41.8	12.2	1.8	100.0 (1,307)
100~150% 미만	30.6	27.6	30.9	9.7	1.2	100.0 (660)
150% 이상	28.1	35.0	26.3	9.6	0.9	100.0 (334)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가구소득 수준은 2005년 1/4분기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937,504원)의 상대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제 3 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생애경로 단계별로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정책방안들은 생애경로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수요도를 감안하여 대상(소득수준, 자녀수,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가임기 인구의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도에 차이가 있다. 요컨대, 정책방안들 각각은 적어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방안들이 동시에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실시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책방안들간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몇몇의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대상별 정책 선호도 내지 수요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 국가나 사회는 구성원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들이어야 한다.

셋째, 출산을 촉진하기보다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장애요인 중에서도 장애정도가 큰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요인들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특히, 어느 특정 생애경로에서 장애 정도가 커 전체적인 생애경로에서 자연스러운 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치유하는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

넷째, 1가지 정책으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들 수 있다. 또한, 적령기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지원 정책은 출산율과 모성건강수준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 수요가 많으면서 가급적 예산소요가 낮은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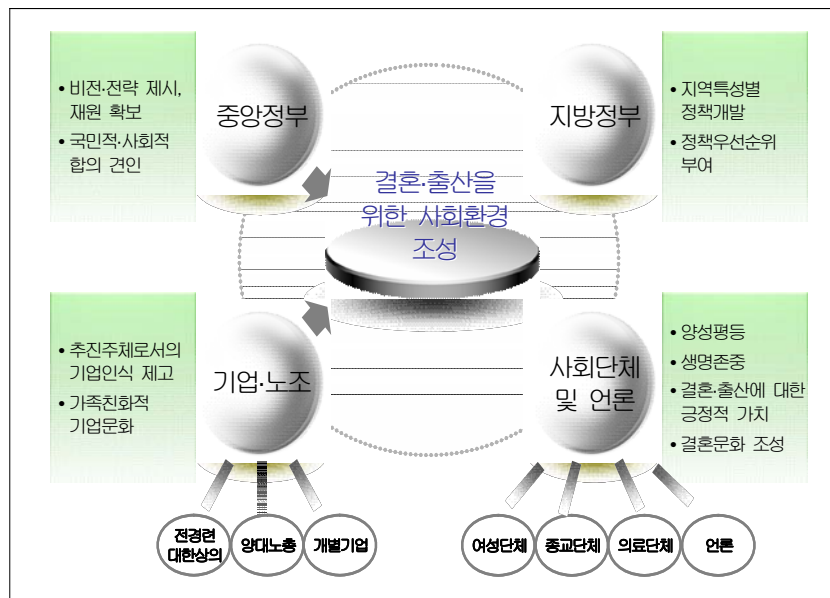
끝으로, 사회문화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 효과가 아주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되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제 2 3 장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제1절 저출산 대응 협력체계 구축방안

저출산 원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저출산현상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사회의 양육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중앙, 지방)와 민간(기업, 민간단체)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이들 주체간의 협력체계(네트워킹)를 유기적으로 연계·구축하도록 한다(그림 23-1). 이들 각 참여주체별로 역할과 타 주체와의 협력 관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3-1] 저출산대책 추진관련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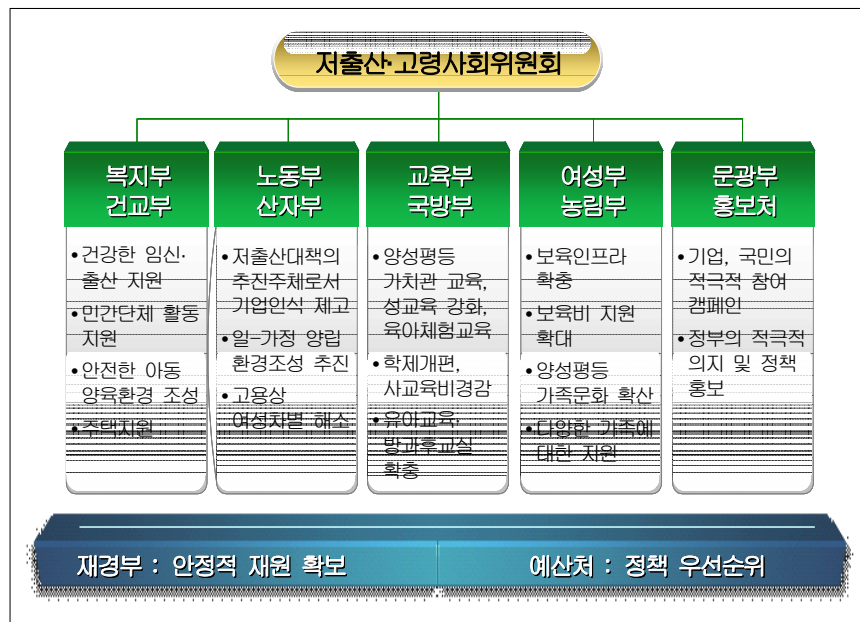


1. 정부(중앙·지방정부)

가.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결혼·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저출산대책들은 정부 기능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다. 부처별로 접근하는 방식은 다각적이기 보다는 다기화되어 정책대응의 한계가 있다. 즉, 부처간 정책우선순위의 상이성, 중복기능과 불분명한 관할권, 정책목표의 혼선, 단기적 결과중심의 정책관리, 정책성격의 다차원화,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기존의 관료문화 등으로 인한 정책갈등 발생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그림 23-2).

[그림 23-2]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저출산대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 둘째, 소요예산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 셋째,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참여주체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출산대책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행정적 필요한 지원을 하며, 관련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나. 지방정부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책대응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접근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하다 하더라도 지역간에 서비스 수요, 지역복지자원, 기존 시설 충족정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서비스 이용자 부담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란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대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통제위주의 평가, 보고위주의 지도감독 방식이 유지될 경우 지역실정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이에 기반한 정책집행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단위로 한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지역협력네트워크가 아직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된 기능의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중첩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중복성’(redundancy)이 우려될 수 있다. 지역에서 서비스 결정자, 공급자, 생산자, 이용자 간에 유기적인 조정,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는 미약한 지방정부 또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역량을 약화시키고, 부족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단위로 NGO,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 저출산대책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조례 등)를 제정하고 정비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대책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셋째, 지역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업, NGO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역 내 기업체, 기관 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

다섯째,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시킨다.

한편, 중앙정부의 저출산대책들과 지역단위의 정책들간의 일치와 조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연찬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책 담당자들에게 국가정책의 방향 및 세부계획에 대한 의의와 목적 및 내용 등을 정확히 전달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저출산대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변경을 요구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하도록 한다.

2. 민간(기업·단체)

민간영역은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며, 저출산 대응에 대한 이들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민간영역이 저출산 대응에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각 주체는 저출산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은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서, 일반국민에 의해 수용성이 높은 주체들의 참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들은 사회 제 부문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영역 각 주체의 이해관계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미래의 노동력 및 소비자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산을 회복의 수혜자가 되는 기업은 저출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비용인을 근로자로서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통해 복리후생 등에서 일-가정 양립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업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한 경제단체들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협의 및 결의를 통해 각종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주69)}

기업의 세부역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성(결혼) 및 출산을 저해하는 기업 내 각종 관행을 검토하고 시정한다.

둘째, 일-가정의 양립을 제고하기 위해 야근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양육휴일제를 채택하고, 탄력적 근무형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셋째, 이른 귀가, 육아휴직 이용 권장 등을 통해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지원한다.

넷째, 직장보육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 직장의 보육시설 공동이용 등을 섭외하

주69) 일본에서는 육아가정을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 등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을 통해 차세대 지원을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각각의 의무를 규정한 바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주무장관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의 행동계획 수립시 근거가 되는 지침을 책정하고,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주(30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노력의무만 부과)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해 강구할 조치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다섯째,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단체들간 협의를 통해 출산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다음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저출산의 결혼과 출산은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여성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 등)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측면지원이 필수적이다. 민간단체의 주요역할은 결혼·출산·자녀양육 가치관 및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대상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다음과 같다.

- i)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절·불임 등에 대한 지식전달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
- ii)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전개
- iii) 청소년 대상 육아체험 학습 등 보급
- iv)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 확산
- v) 다양한 가족 수용도 제고

끝으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영역의 역할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저출산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추진 과제 및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부문별, 정책집단 내 이견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생 가능한 주요쟁점들로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 유도, 참여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법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대책을 출산장려 수단만으로 인식되는 경우,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미혼모, 동거부부, 독신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가족관만을 강조하는 경우, 새로운 가족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남녀간, 신·구세대간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대책 관련 다양한 시각과 인식 차이를 극복하여 일정한 공감대 내지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도,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쟁점으로 기업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참여주체로서 기업·직장 문화의 변화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 여전히 향후 출생아들이 기업의 노동공급원이자 소비자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고가 미흡하며, 종사자의 가족에 대한 배려 등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식이 아직 팽배하다. 또한, 정부도 경제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고, 기업의 태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여러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저출산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규모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출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재원마련방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고도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냐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과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다. 기본계획 등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 제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경제단체,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범국민적 저출산대책 민간기구”가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정책파트너십 구축 및 정책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각 사회주체들의 책임과 역할,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각 부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합의점들은 앞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에다가 기업·노동부문에서의 출산·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구조 정착, 시민사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언론에서의 사회적 공론화 및 사회 각 주체들에 대한 공정한 비판과 지원에 관한 것들이다. 이상 논의된 참여주체와 그 역할분담은 <표 23-1>에 요약, 제시되어 있다.

〈표 23-1〉 생애경로단계별 참여주체의 주요 역할 분담(안)

생애경로 (대상)	정책대상 및 주요정책 영역	정부(중앙/지방)	민간(기업)	민간(NGO)
교육 단계 (중·고· 대학생)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성교육, 결혼·출산가치, 남성의 육아 참여 등)	-교과서·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육아체험 교실 등) -전문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등		-의식전환 운동전개 등
취업 결혼 단계 (미혼 남녀)	-청년층 고용안정 -교육제도 등 개선 -결혼비용 경감 -일·결혼 양립제고	-제도 개선(법 제·개정) -기업관행개선을 위한 권고 -계몽/민간활동 지원	-노동시장 결혼차별 시정 등	-결혼문화개선운동 전개 등
임신 출산 양육 단계 (기혼 남녀)	-임신출산 건강·의료지원 -일·가족 양립제고 -육아인프라 확충 -자녀양육(교육)비용 경감	-자녀출산·양육 친화적 보건의료제도 확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양질의 교육·보육인프라 확충 -양육비용의 사회적 지원 (분담)체계 구축	-노동시장 스스로 출산 관련 여성차별 근절 -육아휴직 활성화 -자녀양육 친화적 근무 형태 도입 및 적극적인 환경 조성	-저출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생명존중의식고취(인공 임신중절 등 예방) -가족내 양성평등 의식 제고 -양성평등적 고용환경 개선운동

제 2 절 인프라 구축

이 절에서는 저출산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프라는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저출산대책들을 효율성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 그리고 저출산 추이를 상시감시하고 관련 대책들을 평가 및 환류(feedback)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대응은 부처별로 접근함에 따라 다기화되고 평면적인 정책 대응으로 한계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기화된 정책대응은 여러 정책갈등을 야기한다. 내부적으로는 부처간 정책우선순위의 상이성, 중복기능과 불분명한 관할권, 대안선택의 견해차, 정책목표의 혼선, 단기적 결과중심의 정책관리 등으로 인한 정책갈등 발생 소지가 있다.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정책성격의 다차원화, 희소자원을 둘러싼 관련 기관간의 경쟁,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기존의 행정문화(관료문화) 등으로 인한 정책갈등 발생 소지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정책갈등의 증대 및 이에 대한 관리메커니즘의 미비는 전반적인 국정관리차원의 비효율성 및 가시적인 정책성과의 미달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앙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대응은 지방정부로 내려오면, 담당 부서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전달체계 내에서 병목현상(bottle-neck)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오면 1개국 또는 2개국(보건복지국 또는 여성정책국)으로 업무분담이 좁혀지며, 개별 시·군·구의 경우 대개 1개과(사회복지과)에서 업무전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지시나 방침의 단순한 집행자, 전달자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 1~2개 부서에 집중되었던 관련 업무는 실제 서비스제공 및 집행단계에서는 개별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 다시 분산되는 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저출산에 대응하려는 중앙부처의 정책, 전략이 병목구간을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투입·산출 관련 계량지표를 사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중심의 성과관리체계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통계수치의 수집, 취합, 보고하는 역할에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① 다기성과 분산성, ② 상충적 쟁점, ③ 정책효과 책임기간의 장기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적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주70)} 성과관리는 단지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주체들에게 일종의 전략기획개념으로 작용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조정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성과관리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i)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한다. ii)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최종 성과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iii) 부처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네트워크 정립에 기여한다. iv) 국정방향과의 연관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v) 국민들에게 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vi)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정책방향 및 성과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vii) 예산요구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으로는 핵심성과지표 제시를 통한 통합적 정책 유도과 성과목표별 비용부담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우선 통합적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다양한 중앙 부처들에 공통의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저출산관련 정책은 세대간, 성별, 계층별 형평성 및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전제하여, 성과목표뿐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분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현

주70)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및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중시했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성과관리의 유용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자원의 합법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확인·평가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어 성과관리의 본래 의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종합대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 및 신속 집행, 중앙부처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시·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등에 초점을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방향으로는 민간시설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요 및 지역복지자원 등 조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 마련, 정책대상 집단의 접근성 제고, 지역 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지역 내 관련 공공기관간의 협력체제 유지, 정책대상 집단의 의견수렴 등에 초점을 둔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항은 첫째, 저출산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적 관점에서의 평가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의 전략목표와 분야별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성과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표 및 척도 개발시 전문가, 피평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평가체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평가결과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심의, 기관자체의 주요 평가 등에 활용한다. 그리고 성과목표별 비용부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출산대책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단체, 기업체 등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한다.

2.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저출산대책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 지방자치단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관련 다양한 정책들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권 하에서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그 중 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공무원을 관련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부재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전문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지역 또는 부처별 관련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종합적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한다. 상설조직의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한 예로 기존의 훈련기관이나 정책연구기관에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교육수준별, 교육기간별 등)하여 개설한다.

셋째,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동워크숍,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정책사례를 전파하여 공동으로 정책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 상시 인구변동감지 체계 구축

인구 변동이 사회경제와 개인생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 등)의 변화와 그 원인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시인구변동감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구변

동에 대한 실태분석이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시계열적 변화양상 및 그 원인을 고찰할 수 있는 정밀한 통계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변동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와 미시적 원인 및 사회·경제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인구동태조사」도 출생과 사망의 건수와 인구변동의 기본특성만을 파악하고 있어, 인구변동의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이외 인구변동관련 여러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가족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인구변동 원인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조사가 가족단위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및 생활양상의 변화가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 각종 저출산 대책의 인구학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전략 및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료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구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구패널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책의 환류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출산율 등 인구변동요인들이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 추진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단위 인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V 부

결 론

제 24 장 결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동안 1.5~1.7명 사이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다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에는 1.2명 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에서 보편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사회에서의 초저출산현상은 향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을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재정 압박, 경제성장 둔화 등에 사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 그러한 사후적인 대응책들로는 좌절된 개인의 출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늘어나는 사회부담을 무한정으로 해소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 지속과 사회부담 증가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처방안은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통해서만 인구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은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논쟁이 있었으며, 그 사례로 외국의 경험들을 인용하곤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및 사회복지 수준이 서로 달라, 외국의 저출산 원인들이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만의 원인 규명으로는 개인 또는 부부(가구)의 미시적인 상황

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고찰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횡단면적인 접근과 종단면적인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미혼, 결혼, 출산순위별 출산으로의 이행수준과 장애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생애경로별 사건사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방법(로지스틱 또는 OLS 회귀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치관은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과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결혼관)는 결혼으로의 이행을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출산수준을 감소시키고 있다. 자녀 필요성의 약화는 출산수준을 감소시키고, 결혼의향을 줄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자녀의 효용성에 대한 수단적 가치(가문계승, 노후생활보장 등)는 오히려 출산수준을 감소시키고 있다.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관은 미혼남녀의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는 반면,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은 증가시키고 있다. 환언하면,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들은 결혼으로의 이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을 수용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할수록 보다 많은 자녀를 두고 있다.

둘째, 인적자본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수록 여성의 출산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결혼 또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출산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 및 출산의 기회비용과 연계된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

를 들어, 가족 내에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부의 역할분담이 불공평할수록 출산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환경이 출산 및 육아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가족 내에서 조차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출산수준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특히, 부인의 가사시간이 출생아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편의 가사시간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환경이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셋째, 부인과 달리 남편의 고용 및 소득이 안정될수록 출산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증가도 출산수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남편의 고용안정과 가구소득 안정은 출산율 회복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 적 불확실성과 빈곤 및 사회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와 취학자녀의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자녀양육비용은 출산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의 양과 질 사이 선택의 여지를 주기보다,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양육비용이 기대출산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출산수준은 더욱 감소하거나 적어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개연성이 클 것이다.

다섯째,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주택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와 기대 출산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젊은층들이 무주택으로 단순히 출산을 연기할 수 있으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비용 부담이나 주거 밀도도 실제와 기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만혼, 고령출산,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등으로 인한 생식보건수준 저하는 불임증 등을 야기하여 출산수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은 경제적으로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불안정, 보육·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

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원인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지원 기능 내지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여성 고용 차별관행 만연,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보건 측면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만혼 및 고령출산 증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만연 등과 이들 요인들에 기인한 불임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초래된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출산수준을 감소시키는 원인들은 어느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다기보다 생애경로 전 단계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결국 저출산 원인들을 치유하여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직적 및 수평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접근은 개인이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생애경로의 제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단계별 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평적 접근은 생애경로의 각 단계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 부문에 한정하기보다 교육, 고용, 경제, 보건·의료, 복지 등 제 부문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직적 및 수평적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경로별 부문별 저출산 대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즉, 생애경로를 크게 교육, 취업 및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의 단계들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교육 제공, 소득 및 고용 안정화, 보건·의료 지원,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인프라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우선적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기능 내지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들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의 공공성 확대,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생식보건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들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양한 양질의 임신·출산관련 정보 제공,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이 포함된다.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사회·국가간의 분담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및 가족친화적 고용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안들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최소한의 부모권 보장, 개별 가족·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고용형태를 고려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형태와 보수의 유연적 적용, 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통한 여성취업 약화 방지, 기업 내 수혜자 확대, 근로시간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출산여성의 재취업기회 보장 등이 포함된다. 직장보육시설을 확충을 통한 취업모의 취업유지 및 자녀 양육의 병행을 보장하되, 직장보육시설의 위치와 형태는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 완화, 직무만족도 제고, 아버지의 보살핌노동권 회복, 직무스트레스 감소 등 일·가정의 건강한 환류를 도모한다. 가사·보살핌 노동이 특정한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족 내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 및 가족 내 성 형평성(gender equity)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의 지속적 시행이 포함된다.

이들 저출산 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 자원,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변동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노조, 지역사회 내 각종 단체(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등)간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추진주체의 역할을 명백히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대책들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인력 등을 교육시키는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장애요인들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수준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제도개선, 환경조성 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저출산 대책방안들은 궁극적으로 개인 또는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희망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간격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총합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성장동력 확보, 고령화 수준과 속도 완화 등이 가능하여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완전한 종단면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과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완전한 종단면적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방안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변동 상황을 즉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구패널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저출산 대책들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도 정책변수와 인구변동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인구패널 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전광희·조성남,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한국인구학회』 19(1): 93~122, 1996.
- 김경신, 이선미,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1998.
-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1991.
- 김성희, 「인적자원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 행동: 시간 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승권·최병호·정경희·이삼식·박덕규·박인화·장지연,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김영범,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5(1): 31~58, 2001.
- 김종숙·문유경·김영옥·강민정,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실태와 효과분석』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4.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 김현정, 「자녀 양육비 결정 요인 및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문숙재·김성희, 「자녀교육과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302~313, 1995.
- 박경숙·김영혜,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서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63~90, 2003.
- 박민자,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109~135, 2004.
- 송경일·안재억, 『생존분석』 SPSS아카데미, 1999.
- 안주엽, 「경기변동과 청년층 실업률」, 『매월노동동향』 2002년 2월: 1~23, 2002.

- 양명숙,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167~181, 1996.
- 양세정, 「가구원수와 가계 지출 규모」, 『사회과학연구』 제9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321~334, 1996.
- 이병희,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변화」, 『노동정책연구』 2(4):1~16, 2002.
-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2003년 11월:53~66, 2003.
- 이삼식·변용찬·김동희·김형석,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윤홍식, 「OECD 국가들의 남성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5.
-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165~183, 2005.
- 장혜경,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13~23, 2005.
- 정귀호, 「이혼과 부양」, 『민사판례연구』 4:295~413, 1987.
- 정순희, 「가족구성원간 소득 분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측정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 연구』 7(2), 한국소비자학회, 1996.
- 천혜정,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3(3):25~31, 200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02)」, 2003.
- ,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 ,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 , 『한국의 사회지표』, 1999.
- 한경혜, 「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103~120, 1990.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2003.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월보』,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2005.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우리나라 재래식 매춘지역에서의 성병 및 에이즈 예방전략 개발』, 2003.
- 함인희,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민설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3~28, 2001.
-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서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8(2):1~19, 1997.
- 황나미,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황수경, 「노동력 활용지표에 대한 소고: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3(4):1~24, 한국노동연구원, 2003.
- Ahn N. and Mira P., "Job bust baby bust? Evidence from Spai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14(3):505~522, 2001.
- Allison, Paul D.,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NC: SAS Institute Inc., 1995.
- Atoh, Makoto,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e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117~150, 1998.
- Barrow, Lisa,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Oxford University Press*, Vol.37(3):432~51. 1999.
- Becker, G. A., "An Economic Analyse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BER Conference Series 11, Princeton, 1960.
- Becker, G. S.,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cker, G. A. and H. 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79~288, 1973.
- Beets, Gijs,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e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 Billari, Francesco and Hans-Peter Kohler, "The impact of union formation dynamics on first births in West Germany and Italy: Are there signs of convergence?", In E. Klijzing and M. Corijn (Eds.), *Dynamics of Fertility and Partnership in Europe: Insights and Lessons from Comparative Research*, Volume 2, Geneva/New York: United Nations:43~58, 2002.
- ,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161~176, 2004.
- Blake, Judith,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Population Studies* 22:5~26, 1968.
- Blossfeld, Hans-Peter, Alfred Hamerle, and Karl Ulrich Mayer, *Event history analysi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9.
- Bongaarts, J. and G. Feeney,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271~291, 1998.
- Bongaarts, John and Robert Potter, Jr.,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Bongaarts, J. and S. C. Watkins, "Social interactions and contemporary fertility transi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639~682, 1996.
- Booth, Alan, *Urban Crowding and Its Consequenc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 Bourdieu, P.,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271~296, 2000.
- Choe, Kim Minja and Li Lei,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 Cox, D.R. and Oakes, D., *Analysis of survival data*, Chapman and Hall, London, UK., 1984.
- Curry, James P. and Gayle D. Scr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Living and Fertility for Blacks, Mexican-Americans, and Other Americans in

- Racine, Wisconsin", *Demography*, 15(4):477~485, 1978.
- D'Addio, A. C. and Marco Mira d'Ercole,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27. OECD, 2005.
- Davis, Kingsley,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345~366, 1963.
- DeRose, Laurie F., and Alex C. Ezeh, "Men's Influence on the Onset and Progress of Fertility Transition in Ghana, 1988~1998," *Population Studies*, 59(2):197~210, 2005.
- Easterlin, Richard A,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Age Structure", *Demography*, 15:397~32, 1978.
- Eberstadt, Nicholas, "Demographic Shocks After Communism - Eastern Germany 1989~93",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1):137~152, 1994.
- Engelhardt, H., Kogel T. and A. Prskawetz.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 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58:109~120, 2004.
- Ernisch, J. F., "Econometric Analysis of Birth Rate Dynamics in Britai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563~576, 1988.
- Espenshade, T., *Investing in Children: 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The Urban Institutes Press, Washington DC., 1984.
- Esping-Andersen, G., "A New Gender Contract,"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pp.68~95, edited by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Easterlin, R. A., "New directions for the economic of fertility." In Yinger, J. Milton and S. J. Culter, eds. *Major Social Issues*, pp. 310~320. NY, 1978.
- _____, "Modernization and fertility: a critical essay." In Bulatao, R. A. and R. D. Lee. pp.562~86, The Free Press, 1983.
- Felson, Marcus, and Mauricio Solaun,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 of Crowded

- Apartment Living in a Tight Housing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6):1410~1427, 1975.
- Freedman, Ronald, "Asia's recent fertility decline and prospects for future demographic change," *Asia-Pacific Population Research Reports*, No.1. Honolulu: East-West Center, Program on Population, 1995.
- Friedlander, Stanley, and Morris Silver, "A Quantitative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Demography*, 4:30~70, 1967.
- Fuller, T. D, J. N. Edward, S. Sermisri, and S. Vorakitphokatorn, "Housing, Stress, and Phys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ailan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11):1417~1428, 1993.
- Gauthier A.H., and Hatzius J.,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295~306, 1997.
- Guttmacher, A.F., "Factors Affecting Normal Expectancy of Conception," *JAMA*, 161, 1956.
- Hammel, E. A., "A theory of culture for demograph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455~485, 1990.
- Happel, S., Hill, J., and Low, S.,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ation Studies*, 38:299~311, 1984.
- Heer, David M,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3(2):423~44, 1966.
- Hermalin, A. I., "Fertility Regulation and its Costs: A Critical Essay", *En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Vol.II, 1~53. Nueva York: Academic Press, 1983.
- Hoem, Britta and Jan M. Hoem,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3-4):1~22, 1996.
- Hotz, V. J., and Miller, R. A.,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 Cycl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Econometrica*, 56:91~118, 1988.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Maternity and*

- Work*, Geneva: ILO, 1994.
- Kim, Minja,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Workshop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Policies*, 2005.
- Kohler H.-P., "Social interaction and fluctuations in birth rates", *Population Studies*, 54(2):223~238, 2000.
- , *Fertility and Social Interactions: An Econom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Kohler, Hans-Peter and Jose Antonio Ortega. "Tempo-adjusted period parity progression measures: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delayed childbearing for fertility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Spain", *Demographic Research*, 6(7):91~144, 2000.
- ,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641~680, 2002a
- , "Tempo-adjusted period parity progression measures, fertility postponement and completed cohort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6(6):91~144, 2002b.
- Kohler, H.-P and D. Philipov, "Variance Effects in the Bongaarts-Feeney Formula," *Demography*, 38(1):1~16, 2001.
- Lazear, E. P. and R. T. Michael,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Lehrer, E. and M. Nerlove, "Female labou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81~204, 1986.
- Lesthaeghe, Ron and Johan Surkyn,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1~45, 1988.
- Lino, Mark,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2~18, 1990.
- Macunovich, Diane J.,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economics of

- fertility", pp.91~150 in Paul Menchik (ed.) *Household and Family Economics*, Kluwer Academic, 1996.
- McDonald, P., "Contemporary fertility patterns in Australia: first data from the 1996 Census", *People and Place*, 6(1):1~12, 1998.
- Moffitt, R., "Optimal Life-Cycle Profiles of Fertility and Labor Supply",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5:29~50, 1984.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Paris, France: OECD, 2002.
- , *Education at a Glance*, Paris, France: OECD, 2004.
- ,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aris, France: OECD, 2004.
- ,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4: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aris, France: OECD, 2005.
- , *OECD FACTBOOK 2005*, France: OECD, 2005.
- Oppenheimer, V. K., M. Kalmijn and N. Lin,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311~330, 1997.
- Palomba R, Menniti A., Caruso M.G.,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11~17 Ottobre, 1997.
- Pollak, Robert A. and Susan Cotts Watkins,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é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467~496, 1993.
- Preston, Samuel H., "Changing Values and Falling Birth R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176~195, 1986.
- , "Changing values and falling birth rates". In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uses, consequences, policies*,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87.
- Roussel, L, "Fertility and the Family". *Proceedings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 Geneva 1993, Vol. I.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p.35~110, 1994.
- Shapiro, David and Frank L. Mott, "Long-Term Employment and Earnings of Women in Relation to Employment Behavior Surrounding the First Birth", *Journal of Human Resources*, 26:248~275, 1994.
- Sassler, S. and R. Schoen, 1999, "The Effect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Feb.):147~159.
- Sleebos, J.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2003.
- Teitelbaum, Michael. S. and Jay M. Winter, *The Fear of Population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1985.
- Torr, B. Miller and Susan E. Short,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109~130, 2004.
- UN, *Women's Education and Fertility behavior: recent evidence from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New York, NY: United Nations, 1995.
- Willis, R.,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u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14~64, 1973.
- Witte, J. C. and G. G. Wagner,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387~397, 1995.
- Woods, N. F., Olshansky, E., & Draye, M.A., "Infertility: Women's Experiences," *Health Care for International*, 12:179~190, 1991.
- Yamaguchi, Kazuo, *Event History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1991.

부 록

[부록 1] 인구증가억제대책 보완대책내용(1981): 49시책

[부록 2]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부록 3]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설문지(양식)

〔부록 1〕 인구증가억제대책 보완대책내용(1981): 49 시책

주요시책	관련부처	시행 년월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1) 정부지원 피임시술비 인상	보건사회부	'82. 7
2) 피임약제기구의 보급 다양화	보건사회부	'83. 7
3) 불임시술 지정병의원 확대	보건사회부	'82. 1
4) 불임시술 확인증의 발급	보건사회부	'82. 5
5) 공중보건의 활용(이동시술반등)	보건사회부	'82. 6
6) 시·도 및 보건소에 가족보건계의 설치운영	보건사회부	'82.12
7)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강화	경제기획원	'82.12
8) 보건요원의 양성화 및 통합운영을 위한 훈련 실시/ 피임보급의 확산	보건사회부	'82. 1
9)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강화	내무부	'83. 1
10) 가족계획 시범마을(227개 리·동)육성	내무부	'83. 1
11) 공장새마을 사업을 통한 사업강화	상공부	'82. 1
12) 농촌지도사를 통한 사업강화/자비피임실천의 촉진	농수산부	'82. 1
13) 피임약제기구 및 원료 등 관세인하	재무부	'82. 7
14)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피임시술포함/규제 및 보상제도의 강화	보건사회부	'82. 6
15) 의료보험의 분만급여를 두 번째 출산까지 제한	보건사회부	'83. 1
16)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2자녀로 제한	총무부	'83. 1
17) 공무원의 가족수당지급을 2자녀로 제한	총무부	'82. 1
18) 교육비 보조금의 바과세범위를 2자녀 이내로 제한	재무부	'82. 1
19) 생업자금 융자시 2자녀 불임수용자에게 우선융자	재무부	'82. 1
20)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중·장기 복지주택자금융자우선	재무부	'82. 1
21)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건설부	'82. 1
22) 2자녀 불임수용자에 대한 영농·영어자금 융자우선	농수산부	'82. 3
23) 2자녀 불임수용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범사업)	보건사회부	'82. 7
24) 불임수용영세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2자녀 이하:10만원, 3자녀 이상: 3만원)	보건사회부	'82. 5
25) 2자녀 불임수용가정의 0~5세 자녀에 대한 1차무료진료	보건사회부	'82. 5
26)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의 차등부과	내무부	미조치
27) 의료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부과	보건사회부	미조치
28) 불임수용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사업제도개선 및 남녀차별 시정	노동부	미조치
29) 출가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실제부양시)	총무처	'83. 1
30) 여성취업금지 직종의 완화(30종에서 6종으로 축소)	노동부	'82. 7

주요시책	관련부처	시행 년월
31) 가정의례준칙상 차별시정	보건사회부	'83. 3
32) 여성 선원채용금지조항 개정	항만청	'84. 8
33) 새마을유아원 증설(401개소)	내무부	'82. 1
34)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 직계존속 포함	보건사회부	'84.12
35) 여성전문기구(여성개발원)설치	보건사회부	'83. 4
36) 가족법상의 차별조항 개정	법무부	미조치
37) 가족법상의 혼인연령 상향개정	법무부	미조치
38)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보건사회부	'83. 1
39) 육아휴직제의 제도화	노동부	'83. 1
홍보활동 강화		
40) 반상화를 통한 홍보계몽	내무부	'82. 1
41) 군장병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국방부	'82. 1
42) 예비군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국방부	'82. 1
43) 해군홍보선의 지원을 통한 낙도주민에 대한 홍보	국방부	'82. 1
44) 학교인구교육의 강화	문교부	'82. 1
45) 교육과정 및 교육개편시 인구교육 내용 보완	문교부	'82. 1
46) 교사에 대한 인구교육실시	문교부	'82. 1
47)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	문공부	'81.12
48) 국민계도방송협의회에 가협 홍보실무자 포함	문공부	'81.12
49) 공무원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실시	총무처	'81.10

[부록2]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부표 2-1-1〉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12.9	7.6	1.4	16.5	1.7	10.7	4.9	7.4	5.7	4.2	17.8	7.7	1.5	100.0 (1,457)
지역	$\chi^2=14.5$													
읍·면부	11.9	6.4	1.4	17.4	0.9	10.6	5.0	9.2	5.0	1.8	18.8	7.8	3.7	100.0 (218)
동부	13.1	7.8	1.4	16.3	1.9	10.7	4.8	7.1	5.8	4.6	17.7	7.7	1.1	100.0 (1,239)
연령	$\chi^2=59.9$													
20~24세	15.1	6.6	2.3	14.4	2.1	8.7	3.7	7.5	6.4	5.0	19.4	6.8	2.0	100.0 (562)
25~29세	11.9	8.8	1.0	15.8	1.5	10.2	4.6	8.5	4.4	4.8	17.7	9.6	1.3	100.0 (480)
30~34세	11.9	7.8	0.7	21.5	1.9	14.4	6.3	5.9	6.7	2.2	13.3	6.7	0.7	100.0 (270)
35~39세	9.0	7.2	-	16.2	1.8	14.4	8.1	5.4	5.4	0.9	22.5	8.1	0.9	100.0 (111)
40~44세	10.3	7.7	2.6	15.4	-	7.7	7.7	7.7	7.7	7.7	15.4	5.1	5.1	100.0 (39)
기대자녀수	$\chi^2=53.0$													
0명	10.0	-	-	30.0	-	10.0	10.0	5.0	10.0	-	15.0	5.0	5.0	100.0 (20)
1명	13.7	12.1	1.6	18.1	3.3	7.7	6.0	4.4	8.2	0.5	16.5	5.5	2.2	100.0 (182)
2명	13.0	7.0	1.3	16.4	1.4	10.9	4.6	8.5	5.1	4.9	18.0	7.6	1.2	100.0 (906)
3명 이상	12.7	6.5	1.5	14.5	1.8	12.1	4.4	6.8	5.6	4.4	18.3	9.5	1.8	100.0 (338)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게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1-2〉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 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취업여부	$\chi^2=26.4$													
취업	12.1	7.0	0.9	17.6	1.4	10.9	6.0	6.9	5.7	3.6	17.9	8.5	1.4	100.0 (843)
비취업(학생)	15.4	9.0	2.5	13.8	2.5	11.2	2.5	8.1	6.2	5.1	16.3	5.6	1.7	100.0 (356)
비취업(기타)	12.1	7.6	1.1	16.3	1.9	9.5	4.2	8.3	4.9	4.9	19.3	8.3	1.5	100.0 (264)
종사상지위	$\chi^2=16.9$													
비임금근로자 ⁶⁾	9.9	6.9	1.0	16.8	1.0	12.9	4.0	7.9	5.0	2.0	19.8	10.9	2.0	100.0 (101)
상용직	12.3	7.9	1.0	18.7	1.6	9.9	6.5	7.1	6.7	3.0	16.3	7.3	1.6	100.0 (504)
임시/일용직	12.0	4.7	0.9	15.9	1.3	12.9	6.0	6.0	3.9	5.2	20.6	9.9	0.9	100.0 (233)
소득	$\chi^2=67.0^{***}$													
150만원 미만	14.1	6.3	1.2	14.6	2.2	10.5	7.6	7.3	4.6	3.2	18.3	8.3	1.7	100.0 (410)
150~200만원 미만	9.6	6.9	--	17.4	0.5	9.6	4.6	8.3	5.5	3.7	25.2	7.3	1.4	100.0 (218)
200~300만원 미만	9.9	8.2	0.6	22.8	1.2	14.0	5.8	3.5	5.3	5.3	10.5	12.3	0.6	100.0 (171)
300만원 이상	13.6	9.1	4.5	25.0	--	11.4	--	9.1	15.9	2.3	4.5	2.3	2.3	100.0 (4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6)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부표 2-1-3〉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 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20.3	15.9	3.7	14.8	1.5	9.6	2.1	5.7	4.6	2.4	12.0	6.2	1.2	100.0 (2,203)
지역	$\chi^2=9.8$													
읍·면부	16.0	13.3	2.7	16.0	2.7	10.7	3.3	6.7	4.0	2.0	14.0	6.0	2.7	100.0 (150)
동부	20.9	16.2	3.8	14.6	1.3	9.5	1.9	5.6	4.7	2.5	11.7	6.3	1.0	100.0 (1,053)
연령	$\chi^2=61.9^{\dagger}$													
20~24세	20.6	15.7	3.8	12.7	1.7	8.5	1.7	5.0	5.0	3.2	14.0	7.2	0.8	100.0 (655)
25~29세	22.0	14.6	3.3	17.3	1.6	12.1	1.4	6.3	4.7	1.9	9.1	4.7	1.1	100.0 (364)
30~34세	16.2	16.2	4.6	16.2	0.8	12.3	3.1	6.2	3.1	-	10.8	7.7	3.1	100.0 (130)
35~39세	11.1	22.2	5.6	19.4	-	2.8	5.6	11.1	-	2.8	8.3	5.6	5.6	100.0 (36)
40~44세	23.8	23.8	-	19.0	-	-	9.5	4.8	4.8	-	14.3	-	-	100.0 (21)
기대자녀수	$\chi^2=64.8^{\dagger}$													
0명	32.1	3.6	-	21.4	3.6	7.1	3.6	7.1	3.6	10.7	3.6	-	3.6	100.0 (28)
1명	18.8	18.3	5.4	12.9	1.6	9.1	1.6	6.5	2.7	1.6	14.5	4.8	2.2	100.0 (186)
2명	19.0	15.3	3.8	17.0	1.1	10.1	1.6	5.8	5.4	2.1	12.3	5.8	0.7	100.0 (706)
3명 이상	23.9	16.7	2.3	8.3	1.9	10.2	3.8	5.3	3.8	2.7	11.0	8.3	1.9	100.0 (26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1-4〉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 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 타 ⁵⁾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취업여부	χ ² =18.4													
취업	19.8	15.5	3.4	14.7	1.9	10.1	2.4	5.9	4.3	2.2	13.0	5.9	1.1	100.0 (744)
비취업(학생)	22.2	17.7	4.9	12.8	0.8	7.0	0.8	4.9	6.6	2.9	11.5	6.2	1.6	100.0 (243)
비취업(기타)	19.7	15.1	3.7	17.4	0.9	11.5	1.8	6.0	3.2	2.8	9.2	7.3	1.4	100.0 (218)
종사상지위	χ ² =25.2*													
비임금근로자 ⁶⁾	14.5	17.7	3.2	17.7	-	8.1	6.5	6.5	6.5	-	9.7	6.5	3.2	100.0 (62)
상용직	18.9	16.0	3.9	15.0	2.0	11.1	2.0	6.8	3.7	2.3	11.9	5.3	1.2	100.0 (488)
임시/일용직	23.6	13.6	2.1	13.1	2.1	8.4	2.1	4.2	4.7	2.1	16.8	7.3	-	100.0 (191)
소득	χ ² =84.6***													
150만원 미만	19.6	14.7	3.8	12.1	2.0	11.5	2.6	6.5	4.4	2.4	14.3	5.8	0.4	100.0 (504)
150~200만원 미만	20.9	14.4	3.6	20.9	0.7	8.6	2.2	3.6	6.5	2.2	10.8	5.0	0.7	100.0 (139)
200~300만원 미만	20.8	23.4	-	22.1	3.9	5.2	1.3	6.5	1.3	-	7.8	2.6	5.2	100.0 (77)
300이상	6.7	13.3	-	13.3	-	6.7	-	-	-	-	13.3	40.0	6.7	100.0 (1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어나 임산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6)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2.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표 2-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11.4	11.2	2.0	18.7	5.1	13.5	3.4	7.6	5.4	5.6	6.9	6.7	2.4	100.0 (3799)
지역														$\chi^2=20.7^{\dagger}$
동부	11.6	11.7	2.1	19.1	5.2	12.5	3.6	7.2	5.4	5.4	6.9	6.8	2.4	100.0 (3,008)
읍·면부	10.6	9.6	1.6	17.2	4.8	17.0	2.5	9.0	5.3	6.4	7.1	6.4	2.5	100.0 (793)
가구 소득														$\chi^2=202.0^{***}$
60% 미만	9.3	8.6	1.6	12.7	5.3	16.1	5.4	8.5	6.0	7.0	9.9	5.7	4.0	100.0 (872)
60~80% 미만	10.0	9.6	2.0	16.5	5.1	15.0	3.7	9.3	5.8	7.3	7.2	6.1	2.2	100.0 (804)
80~100% 미만	12.8	10.1	0.8	16.4	5.4	15.1	3.1	7.7	5.4	5.8	7.7	9.1	0.6	100.0 (517)
100~150% 미만	13.8	14.2	2.4	20.9	4.8	11.8	2.5	6.6	4.9	3.7	5.1	7.0	2.3	100.0 (1,043)
150% 이상	11.0	13.2	3.0	29.4	5.3	8.9	1.4	5.2	4.6	4.4	4.8	6.6	2.1	100.0 (562)
주택소유여부														$\chi^2=74.8^{***}$
무주택 가구	11.1	9.7	1.8	15.9	4.8	15.7	5.4	6.9	5.0	5.2	9.3	6.5	2.7	100.0 (1,406)
유주택 가구	11.6	12.2	2.2	20.4	5.3	12.1	2.1	7.9	5.6	5.9	5.5	6.9	2.2	100.0 (2,39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2-2〉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 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연령	χ ² =234.3***													
20~24세	12.7	7.0	-	9.9	4.2	18.3	1.4	9.9	7.0	2.8	21.1	4.2	1.4	100.0 ((71))
25~29세	12.8	9.4	1.8	20.2	1.3	19.8	2.5	5.6	2.0	2.5	12.4	7.6	2.0	100.0 ((445))
30~34세	10.4	9.9	1.5	21.0	5.7	17.2	2.7	8.5	4.8	3.4	6.0	7.0	1.9	100.0 ((1,044))
35~39세	10.2	13.9	2.1	21.0	6.4	10.1	3.1	7.3	5.9	7.1	5.8	5.7	1.5	100.0 ((1,172))
40~44세	13.0	10.7	2.5	14.1	4.9	10.5	4.9	7.7	6.6	7.9	5.7	7.4	4.2	100.0 ((1,070))
현존자녀수	χ ² =247.8***													
0명	12.1	11.4	0.7	18.4	1.8	13.6	2.9	4.4	2.6	1.1	13.2	16.2	1.5	100.0 ((272))
1명	10.5	12.0	2.2	20.8	3.4	14.0	3.0	6.4	4.4	2.6	10.2	7.5	3.1	100.0 ((802))
2명	11.9	12.0	2.2	18.7	6.2	13.1	3.2	7.9	6.0	5.4	5.5	5.6	2.2	100.0 ((2,317))
3명 이상	10.1	4.7	1.2	15.3	4.7	14.3	5.4	10.3	5.4	15.8	4.4	5.4	3.0	100.0 ((406))
추가출산계획	χ ² =134.8***													
있다	12.3	10.1	0.7	21.2	2.3	16.8	2.3	4.7	2.6	1.8	13.4	9.5	2.3	100.0 ((612))
없다	11.6	11.8	2.1	18.6	6.0	12.7	3.1	7.9	5.9	6.4	5.4	6.0	2.4	100.0 ((2,812))
모르겠음	7.7	9.0	2.6	23.1	1.9	19.9	2.6	5.1	5.8	5.1	7.7	7.7	1.9	100.0 ((156))
기대자녀수	χ ² =135.6***													
0명	8.7	21.7	4.3	13.0	-	8.7	4.3	-	8.7	4.3	13.0	13.0	-	100.0 ((23))
1명	10.3	14.4	1.9	19.4	4.1	13.3	3.2	6.9	3.9	2.2	8.0	9.2	3.2	100.0 ((465))
2명	12.3	12.0	2.0	19.9	5.9	13.0	2.7	7.0	5.7	4.8	6.6	6.2	2.0	100.0 ((2,411))
3명 이상	10.3	6.1	1.3	15.4	4.0	15.8	4.0	9.5	4.8	12.4	6.9	6.1	3.4	100.0 ((525))
모르겠음	7.7	9.0	2.6	23.1	1.9	19.9	2.6	5.1	5.8	5.1	7.7	7.7	1.9	100.0 ((15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게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2-3〉 기혼여성(20~44세) 및 남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chi^2=38.7^{***}$													
취업	13.8	11.4	2.1	18.5	5.4	12.1	3.7	7.1	5.9	5.6	6.7	5.3	2.6	100.0 (1,847)
비취업	9.2	11.1	1.9	19.0	4.9	14.7	3.0	7.9	4.9	5.7	7.2	8.1	2.2	100.0 (1,953)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	$\chi^2=72.3^{***}$													
비임금근로자	9.7	9.5	1.6	20.5	5.9	13.4	3.5	7.9	7.1	6.8	4.9	6.0	3.1	100.0 (546)
상용직	17.4	14.6	2.7	19.8	4.0	10.6	2.1	7.8	4.0	4.1	6.4	4.3	2.1	100.0 (701)
임시/일용직	13.1	9.3	1.7	15.1	6.5	12.6	5.6	5.6	7.1	6.1	8.5	6.0	2.7	100.0 (602)
남편의 종사상지위	$\chi^2=61.4^{***}$													
비임금근로자 ⁶⁾	10.4	10.9	1.6	20.0	5.1	13.5	2.5	7.9	6.8	7.2	4.9	6.7	2.5	100.0 (1,152)
상용직	12.0	12.5	2.2	20.2	4.6	13.8	2.9	7.3	4.5	4.3	7.1	7.1	1.6	100.0 (1,925)
임시/일용직	13.2	7.7	1.1	14.8	7.4	16.4	4.1	6.0	4.4	6.6	8.8	6.3	3.3	100.0 (365)
가구소득모형	$\chi^2=112.3^{***}$													
무소득자가구	5.5	7.3	1.8	12.7	9.1	10.9	1.8	1.8	10.9	1.8	14.5	10.9	10.9	100.0 (55)
남편1인소득자가구	9.4	11.4	1.9	19.4	4.7	15.1	2.9	8.0	4.8	5.7	7.0	7.8	1.9	100.0 (1,848)
부인1인소득자가구	11.6	9.3	0.0	12.8	5.8	5.8	5.8	5.8	4.7	7.0	18.6	4.7	8.1	100.0 (86)
맞벌이가구	14.2	11.6	1.9	19.6	5.5	12.6	2.8	6.6	5.8	5.4	5.9	5.8	2.3	100.0 (1,59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6)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부표 2-3-1〉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무자녀 지역	12.5	11.1	-	18.5	2.3	14.8	2.8	5.1	1.9	0.5	13.9	15.3	1.4	100.0 (216)
동부	13.6	11.4	-	22.2	1.7	14.8	2.8	4.5	1.1	-	11.9	14.2	1.7	100.0 (176)
읍·면부	7.5	10.0	-	2.5	5.0	15.0	2.5	7.5	5.0	2.5	22.5	20.0	-	100.0 (40)
1자녀 지역	11.6	9.6	1.3	24.6	2.7	16.3	1.7	3.0	3.3	2.0	14.0	7.0	3.0	100.0 (301)
동부	11.3	10.0	1.7	26.8	2.5	13.8	2.1	2.5	3.3	2.5	14.2	6.3	2.9	100.0 (239)
읍·면부	12.9	8.1	-	16.1	3.2	25.8	-	4.8	3.2	-	12.9	9.7	3.2	100.0 (62)
2자녀 이상 지역	12.6	9.5	-	16.8	1.1	24.2	3.2	9.5	2.1	4.2	10.5	4.2	2.1	100.0 (95)
동부	12.9	8.6	-	15.7	1.4	27.1	2.9	7.1	2.9	4.3	8.6	5.7	2.9	100.0 (70)
읍·면부	12.0	12.0	-	20.0	-	16.0	4.0	16.0	-	4.0	16.0	-	-	100.0 (2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3-2〉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프라자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무자녀	12.3	11.4	-	18.7	2.3	15.1	2.7	5.0	1.8	0.5	13.7	15.1	1.4	100.0 (219)
가구평균소득	$\chi^2=33.2$													
60% 미만	7.1	9.5	-	16.7	4.8	19.0	7.1	-	2.4	-	11.9	19.0	2.4	100.0 (42)
60~80% 미만	7.7	10.3	-	15.4	2.6	12.8	0.0	7.7	0.0	-	17.9	20.5	5.1	100.0 (39)
80~100% 미만	10.5	5.3	-	13.2	2.6	15.8	2.6	10.5	2.6	-	18.4	18.4	-	100.0 (38)
100% 이상	17.0	15.0	-	23.0	1.0	14.0	2.0	4.0	2.0	1.0	11.0	10.0	-	100.0 (100)
1자녀	11.7	9.7	1.3	24.7	2.7	16.0	1.7	3.0	3.3	2.0	14.0	7.0	3.0	100.0 (300)
가구평균소득	$\chi^2=40.0$													
60% 미만	15.9	10.1	-	21.7	1.4	14.5	2.9	5.8	1.4	4.3	18.8	2.9	-	100.0 (69)
60~80% 미만	9.2	6.2	1.5	23.1	1.5	15.4	1.5	4.6	1.5	0.0	18.5	12.3	4.6	100.0 (65)
80~100% 미만	2.4	14.3	-	21.4	4.8	21.4	-	2.4	7.1	2.4	14.3	9.5	-	100.0 (42)
100% 이상	13.7	9.7	2.4	28.2	3.2	15.3	1.6	0.8	4.0	1.6	8.9	5.6	4.8	100.0 (124)
2자녀이상	12.6	8.4	-	16.8	1.1	23.2	3.2	10.5	2.1	4.2	11.6	4.2	2.1	100.0 (95)
가구평균소득	$\chi^2=31.9$													
60% 미만	19.0	4.8	-	9.5	-	23.8	4.8	4.8	-	4.8	14.3	4.8	9.5	100.0 (21)
60~80% 미만	9.5	4.8	-	28.6	-	23.8	4.8	14.3	-	9.5	4.8	0.0	-	100.0 (21)
80~100% 미만	6.7	0.0	-	13.3	-	33.3	-	26.7	-	-	13.3	6.7	-	100.0 (15)
100% 이상	13.2	15.8	-	15.8	2.6	18.4	2.6	5.3	5.3	2.6	13.2	5.3	-	100.0 (38)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3-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아동 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무자녀	12.4	11.5	-	08.9	2.3	04.3	2.8	5.1	1.8	0.5	03.8	15.2	1.4	100.0	(217)
연령	$\chi^2=47.1^*$														
20~24세	11.5	3.8	-	11.5	7.7	15.4	-	7.7	7.7	-	30.8	3.8	-	100.0	(26)
25~29세	10.3	10.3	-	22.4	1.9	17.8	2.8	4.7	0.9	0.9	13.1	14.0	0.9	100.0	(107)
30~34세	21.0	14.5	-	11.3	1.6	9.7	1.6	3.2	1.6	-	9.7	22.6	3.2	100.0	(62)
35~39세	0.0	18.2	-	31.8	0.0	9.1	9.1	9.1	-	-	9.1	13.6	-	100.0	(22)
1자녀	11.9	9.6	1.3	04.1	2.6	06.5	1.7	3.0	3.3	2.0	03.9	7.3	3.0	100.0	(303)
연령	$\chi^2=37.9$														
20~24세	13.6	18.2	-	13.6	4.5	22.7	-	-	-	4.5	22.7	-	-	100.0	(22)
25~29세	14.5	10.3	1.7	19.7	0.9	18.8	0.9	3.4	1.7	0.0	18.8	6.0	3.4	100.0	(117)
30~34세	9.9	9.2	1.5	26.7	3.1	13.0	2.3	3.8	4.6	3.1	10.7	8.4	3.8	100.0	(131)
35~39세	9.1	3.0	-	36.4	6.1	18.2	3.0	-	6.1	3.0	3.0	12.1	-	100.0	(33)
2자녀이상	12.6	8.4	-	16.8	1.1	24.2	3.2	9.5	2.1	4.2	11.6	4.2	2.1	100.0	(95)
연령	$\chi^2=21.1$														
20~29세	16.7	4.2	-	16.7	-	33.3	-	8.3	-	-	16.7	-	4.2	100.0	(24)
30~34세	14.6	4.9	-	14.6	-	29.3	4.9	9.8	2.4	7.3	7.3	2.4	2.4	100.0	(41)
35~44세	6.7	16.7	-	20.0	3.3	10.0	3.3	10.0	3.3	3.3	13.3	10.0	-	100.0	(3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 5)는 앞의 <표 14-17> 참조

〈부표 2-3-4〉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취업여부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무자녀	12.5	11.6	-	19.0	2.3	14.8	2.8	5.1	1.9	0.5	13.4	14.8	1.4	100.0 (216)
취업여부	$\chi^2=16.2$													
취업	16.2	12.0	-	19.7	0.9	17.1	1.7	6.8	0.9	0.9	11.1	12.8	-	100.0 (117)
비취업	8.1	11.1	-	18.2	4.0	12.1	4.0	3.0	3.0	0.0	16.2	17.2	3.0	100.0 (99)
1자녀	11.7	9.7	1.3	24.7	2.7	16.1	1.7	3.0	3.0	2.0	14.0	7.0	3.0	100.0 (299)
취업여부	$\chi^2=23.5^*$													
취업	15.1	11.3	1.9	26.4	4.7	13.2	2.8	0.9	1.9	-	10.4	4.7	6.6	100.0 (106)
비취업	9.8	8.8	1.0	23.8	1.6	17.6	1.0	4.1	3.6	3.1	16.1	8.3	1.0	100.0 (193)
2자녀 이상	12.9	8.6	-	17.2	1.1	23.7	3.2	9.7	2.2	4.3	10.8	4.3	2.2	100.0 (93)
취업여부	$\chi^2=24.5^{**}$													
취업	18.4	13.2	-	13.2	2.6	7.9	2.6	18.4	5.3	-	13.2	5.3	-	100.0 (38)
비취업	9.1	5.5	-	20.0	-	34.5	3.6	3.6	-	7.3	9.1	3.6	3.6	100.0 (5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 표 2-3-5〉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현존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동부 현존자녀수	12.4	10.3	0.8	23.5	2.1	16.1	2.5	3.9	2.5	1.9	12.6	9.1	2.5	100.0 (485)
0명	13.6	11.4	-	22.2	1.7	14.8	2.8	4.5	1.1	-	11.9	14.2	1.7	100.0 (176)
1명	11.3	10.0	1.7	26.8	2.5	13.8	2.1	2.5	3.3	2.5	14.2	6.3	2.9	100.0 (239)
2명 이상	12.9	8.6	-	15.7	1.4	27.1	2.9	7.1	2.9	4.3	8.6	5.7	2.9	100.0 (70)
읍·면부 현존자녀수	11.0	9.4	-	12.6	3.1	20.5	1.6	7.9	3.1	1.6	16.5	11.0	1.6	100.0 (127)
0명	7.5	10.0	-	2.5	5.0	15.0	2.5	7.5	5.0	2.5	22.5	20.0	-	100.0 (40)
1명	12.9	8.1	-	16.1	3.2	25.8	-	4.8	3.2	-	12.9	9.7	3.2	100.0 (62)
2명 이상	12.0	12.0	-	20.0	-	16.0	4.0	16.0	-	4.0	16.0	-	-	100.0 (2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3-6〉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인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0% 미만	13.6	9.1	-	18.2	2.3	17.4	4.5	3.8	1.5	3.0	15.9	8.3	2.3	100.0 (132)
현존자녀수	$\chi^2=28.3$													
0명	7.1	9.5	-	16.7	4.8	19.0	7.1	-	2.4	-	11.9	19.0	2.4	100.0 (42)
1명	15.9	10.1	-	21.7	1.4	14.5	2.9	5.8	1.4	4.3	18.8	2.9	0.0	100.0 (69)
2명 이상	19.0	4.8	-	9.5	0.0	23.8	4.8	4.8	0.0	4.8	14.3	4.8	9.5	100.0 (21)
60~80% 미만	8.8	7.2	0.8	21.6	1.6	16.0	1.6	7.2	0.8	1.6	16.0	12.8	4.0	100.0 (125)
현존자녀수	$\chi^2=27.0$													
0명	7.7	10.3	-	15.4	2.6	12.8	-	7.7	-	-	17.9	20.5	5.1	100.0 (39)
1명	9.2	6.2	1.5	23.1	1.5	15.4	1.5	4.6	1.5	-	18.5	12.3	4.6	100.0 (65)
2명 이상	9.5	4.8	-	28.6	-	23.8	4.8	14.3	-	9.5	4.8	-	-	100.0 (21)
80~100% 미만	6.3	8.4	-	16.8	3.2	21.1	1.1	9.5	4.2	1.1	15.8	12.6	-	100.0 (95)
현존자녀수	$\chi^2=22.4$													
0명	10.5	5.3	-	13.2	2.6	15.8	2.6	10.5	2.6	-	18.4	18.4	-	100.0 (38)
1명	2.4	14.3	-	21.4	4.8	21.4	-	2.4	7.1	2.4	14.3	9.5	-	100.0 (42)
2명 이상	6.7	-	-	13.3	-	33.3	-	26.7	0.0	0.0	13.3	6.7	-	100.0 (15)
100% 이상	14.9	12.6	1.1	24.4	2.3	15.3	1.9	2.7	3.4	1.5	10.3	7.3	2.3	100.0 (262)
현존자녀수	$\chi^2=22.9$													
0명	17.0	15.0	-	23.0	1.0	14.0	2.0	4.0	2.0	1.0	11.0	10.0	-	100.0 (100)
1명	13.7	9.7	2.4	28.2	3.2	15.3	1.6	0.8	4.0	1.6	8.9	5.6	4.8	100.0 (124)
2명 이상	13.2	15.8	-	15.8	2.6	18.4	2.6	5.3	5.3	2.6	13.2	5.3	0.0	100.0 (38)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어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3-7〉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연령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5세 미만 현존자녀수	13.1	9.8	0.8	20.1	2.1	17.4	1.9	4.5	2.5	1.7	14.2	9.3	2.7	100.0 (528)
	$\chi^2=43.5^{**}$													
0명	13.8	10.8	-	17.4	2.6	15.4	2.1	4.6	2.1	0.5	13.8	15.4	1.5	100.0 (195)
1명	11.9	10.4	1.5	23.0	2.2	16.0	1.5	3.3	3.0	1.9	15.2	6.7	3.3	100.0 (269)
2명 이상	15.6	4.7	-	15.6	-	29.7	3.1	9.4	1.6	4.7	10.9	1.6	3.1	100.0 (64)
35세 이상 현존자녀수	5.9	11.8	-	29.4	3.5	12.9	4.7	5.9	3.5	2.4	8.2	11.8	-	100.0 (85)
	$\chi^2=18.1$													
0명	0.0	18.2	-	31.8	-	9.1	9.1	9.1	-	-	9.1	13.6	-	100.0 (22)
1명	9.1	3.0	-	36.4	6.1	18.2	3.0	-	6.1	3.0	3.0	12.1	-	100.0 (33)
2명 이상	6.7	16.7	-	20.0	3.3	10.0	3.3	10.0	3.3	3.3	13.3	10.0	-	100.0 (3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표 2-3-8〉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수
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일-가정 양립지원 ¹⁾			보육·육아 프라지원 ²⁾		양육(교육) 비용 지원 ³⁾					임신·출산 의료지원 ⁴⁾		기타 ⁵⁾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취업	16.1	11.9	0.8	21.5	2.7	14.2	2.3	6.1	1.9	0.4	11.1	8.4	2.7	100.0 (261)
현존자녀수	$\chi^2=44.6^{**}$													
0명	16.2	12.0	-	19.7	0.9	17.1	1.7	6.8	0.9	0.9	11.1	12.8	-	100.0 (117)
1명	15.1	11.3	1.9	26.4	4.7	13.2	2.8	0.9	1.9	-	10.4	4.7	6.6	100.0 (106)
2명 이상	18.4	13.2	0.0	13.2	2.6	7.9	2.6	18.4	5.3	-	13.2	5.3	-	100.0 (38)
비취업	9.2	8.9	0.6	21.6	2.0	18.7	2.3	3.7	2.9	2.9	15.0	10.1	2.0	100.0 (347)
현존자녀수	$\chi^2=40.5^*$													
0명	8.1	11.1	-	18.2	4.0	12.1	4.0	3.0	3.0	-	16.2	17.2	3.0	100.0 (99)
1명	9.8	8.8	1.0	23.8	1.6	17.6	1.0	4.1	3.6	3.1	16.1	8.3	1.0	100.0 (193)
2명 이상	9.1	5.5	-	20.0	-	34.5	3.6	3.6	0.0	7.3	9.1	3.6	3.6	100.0 (5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1) 일-가정양립지원-①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등, ②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③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④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⑤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
3) 양육(교육)비용 지원-⑥영유아 보육비 지원, ⑦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⑧아동 양육수당 지급, ⑨건강보험료 부담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⑩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4) 임신·출산의료지원-⑪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⑫불임부부의 치료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5) 기타-⑬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기타 등

[부록 3]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설문지(양식)

연구보고서 2005-30 (2)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Cause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14,000원
저 자	이 삼 식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81-X 93330

ISBN 89-8187-378-X 93330(전3권)